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24년부터 달라지는 산림 정책·제도

기획조정관실 및 직속실과 소관

기획재정담당관실

1. 숲으로 잘사는 산림강국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 · 17
2. 재정사업 성과관리 · 22

혁신행정담당관실

3. 산림분야 정부혁신 추진 · 26
4. 산림행정 성과관리 및 평가 · 30
5.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 33

법무감사담당관실

6. 주요 법령 적기 마련 및 법제 플랫폼 역할 강화 · 36
7.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산림산업 활력 제고 · 38
8.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 · 41
9.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 43
10. 갈등 사전예방 및 선제적 대응 · 46
11.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반듯한 조직문화 조성 · 48
12. 자체감사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 51

산림디지털담당관실

13.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림지능정보화 추진체계 강화 · 54
14.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통한 디지털전환 촉진 · 57
15. 농림위성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으로 위성시대 준비 · 59
16. 디지털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공간정보 확대 및 최신화 · 61
17.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 · 63
18. 디지털 기반 국가 산림경영활동 관리체계 강화 · 65
19. 디지털전환 뒷받침을 위한 안정적 전산자원 운영 · 68
20.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활용기반 조성 · 71
21. 정보보안 체계 강화로 침해사고 및 정보 유출 차단 · 74
22. 데이터로 소통하는 대국민 포털시스템 운영 · 78

산림빅데이터팀

23.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기반 강화 · 80
24. 과학적 산림행정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 · 개선 · 83
25. 고품질 통계 생산 및 정책활용성 향상 · 86
26. 수요자 중심의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89

대변인실

27. 산림정책 소통강화 · 92
28. 숲품 중심 디지털 소통 확대 · 95

국제산림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1. 국제사회로의 한국형 산림정책 모델 전파 · 101
2. AFoCO를 활용한 한-아시아 산림협력 증진 · 105
3. 글로벌 산림선진국으로서 다자간 산림협력 논의 주도 · 108
4. 전략적 양자 협력으로 국익과 산림정책 발전에 기여 · 111

해외자원담당관실

5. 민간부문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지원 · 114
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DD+ 이행 본격화 · 119
7.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세계화를 위한 그린 ODA 추진 · 124

임업수출교역팀

8. 임산물 수출 촉진 · 129
9. 임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 133
10.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운영 · 136
11.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 139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

1.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 145
2.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건립 추진 · 147
3. 기후위기 대응 산림분야 역할 강화 · 148
4.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 151
5.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활성화 · 153
6. 한국임업진흥원의 역할 강화 및 경영효율 개선 · 155
7.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구조물 · 목재수확 기술 개발 · 157

산림자원과

8. 경제림 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영 체계 구축 · 159
9. 우수한 종자·묘목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166
10.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나무심기 · 172
11. 정책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 · 177
12.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 · 183
13.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구축 및 목재자금률 제고 · 187
14. 임업기계화를 위한 장비 활용 다양성 제고 · 193

목재산업과

- 15. 고부가가치 목재수요 창출 및 국내 목재소비 여건 강화 · 197
- 16. 수요자 맞춤형 목재이용 활성화 체계 확립 · 201
- 17.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 205
- 18. 목재제품 품질관리 효율화로 국민안전 확보 · 209
- 19. 산림경영 및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확충 · 213

사유림경영소득과

- 20. 경영지원 강화 및 산림경영주체 육성 · 224
- 21.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 227
- 22. 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및 품질관리 내실화 · 231
- 23. 임산물 가공·유통기반 지원 및 소비활성화 · 234
- 24. 임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피해복구 지원 강화 · 238
- 25.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 및 산주·임업인 서비스 확대 · 242

국유림경영과

- 26. 국유림 경영계획 강화 및 지역과의 협력 강화 · 245
- 27. 국유림의 효율적인 확대 및 관리 · 249
- 28.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개선 및 재산관리 강화 · 254

임업직불제팀

- 29. 임업직불제 운영 관리 · 258
- 30. 임업경영체 등록·관리 · 262
- 31.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제도 운영 · 264

산림복지국

산림복지교육과

1.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기반 구축 · 269
2.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내실화 · 272
3. 종합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활성화 · 276
4.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 279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 편의성 제고 · 281
6.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 · 285
7. 공공수목장림의 활성화 · 289
8. 탄소중립 산림교육 강화 · 292
9. 사람을 키우는 산림교육 · 296
10. 체계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으로 교육 품질제고 · 300
11. 산림문화 가치 제고 및 산림문화진흥기반 마련 · 304

산림휴양치유과

12. 산촌진흥정책 기틀 마련을 위한 산촌기초조사 · 308
13. 산촌자원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 311
14. 산림휴양서비스 품질 제고 · 315
15. 국가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접목 확대 · 321
16.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추진 · 326

산지정책과

- 17. 합리적인 산지관리 제도개선·운영·329
- 18. 산지전용지 등 복구 및 재해예방 철저·333
- 19. 토석채취허가지·채석단지 관리 강화·335
- 20.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337
- 2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339

숲길등산레포츠팀

- 22.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 및 국가숲길 활성화·342
- 23. 산림레포츠 저변확대 및 진흥정책 추진기반 구축·349
- 24.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353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25. 현장 중심의 안전한 산림사업 기반 강화·355
- 26.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359
- 27. 산림일자리 지원 강화·363
- 28. 산림기술분야 운영체계 내실화·367
- 29. 산림기술자 전문성 강화 및 자격관리·370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375
- 2. 산림보호구역 기능 강화 및 관리체계 확립·380
- 3.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384
- 4.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기반 조성·389

산림생태복원과

5. 산림복원정책 개선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 · 392
6. DMZ일원 산림복원 · 397
7. 섬숲 산림복원 · 400
8. 백두대간, 정맥 보호·관리기반 강화 · 402

도시숲경관과

9.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관리 · 405
10. 도시숲 등의 질적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410
11. 도시숲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 415
12. 가로수 조성·관리 체계 강화 · 419
13. 산림과 도시의 다양한 경관서비스 기반 조성 · 422
14. 나라 꽃 무궁화 보급 확대 및 국민 인식 제고 · 424

수목원정원정책과

15. 지속가능한 수목원 운영·관리 기반 구축 · 427
16.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민간협력 플랫폼 강화 및 경영개선 · 431
17. 정원으로 도시를 녹색생활공간으로 전환 · 434
18.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역량 강화 · 439
19. 정원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 442
20. 국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 · 445
21. 정원정책 제도지원 · 448

수목원조성사업단

22.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 450
23.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 454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불방지과

1. 산불예방대책 추진 · 461
2.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로 연중 · 대형화 산불 방지 · 467
3. 공중진화체계와 항공안전 강화 · 475

산사태방지과

4. 산사태 예방 · 대응 체계 강화 · 478
5. 산사태 정보체계 고도화 · 484
6. 기후위기와 대형재난에 대비한 사방사업 실시 · 488
7. 체계적인 산사태 피해조사와 적기 복구 · 494
8. 땅밀림 등 새로운 유형의 산사태 대비 · 498

산림병해충방제과

9.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 및 실행기반 강화 · 501
10.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 505
11. 3대 산림병해충 피해 안정화 · 516
12. 기타(돌발·외래 등) 산림병해충 대응 강화 · 519

중앙산림재난상황실

13.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체계 강화 · 522

2024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24년부터 달라지는 산림 정책 · 제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산림 정책 · 제도

<국제산림협력관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자 신고제 도입	○ < 신 설 >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서류 등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함	「개발도상국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24.2월 시행)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088)

<산림산업정책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고시 제정에 따라 ‘연간 운영계획서’ 제출 및 ‘협약서’ 체결	○ 한국임업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름	○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내용 구체화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24년부터 적용)
			산림정책과 (042-481-4037)
2. 산림탄소상쇄제도 공모사업 공고일정 변경	○ 산림탄소상쇄제도 공모사업 공고 일정 : 사업계획서 공모 1월 / 모니터링·검증 공모 4월	○ 산림탄소상쇄제도 공모사업 공고 일정 : 사업계획서 / 모니터링·검증 통합공고 1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4년부터 적용)
			산림정책과 (042-481-403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3. R&D 성과평가 (중간평가) 개편	○ 중간평가 시 '미흡' 등급 사업 수를 30% 이상 비율로 정하도록 권고	○ 중간평가 시 '미흡' 비율을 20% 이상으로 의무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4년부터 적용)
			산림정책과 (042-481-8860)
4. 고유 R&D 과제 선정·집행·평가 등 전주기 관리 체계개선	○ 신규과제 선정 : 기획(1월) → 설계·계획 검토(9월) → 설계심의(11월)	○ 신규과제 선정 : 기획(1월) → 설계·계획 검토(6월) → 설계심의(6월, 9월) ○ 과제기획·신규과제 선정 및 과제관리에 참여하는 산림 과학전문위원 제도 신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24년부터 적용)
			산림정책과 (042-481-8860)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02-961-2574)
5. 출연 R&D 과제 선정·집행·평가 등 전주기 관리 방법 개편	○ 산림과학기술정보 서비스(FTIS) 활용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 및 FTIS 폐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24년부터 적용)
			산림정책과 (042-481-8860)
6. 출연 R&D 기술수요조사 방식 조정	○ 기술수요조사 상·하반기 실시 및 신규사업 기획 및 기술지정 등에 활용	○ 상반기 기술수요조사 : 차년도 신규사업과 기술지정 등 과제기획 시 활용 * (예시) '24년 상반기 기술 수요조사 → '25년 신규사업 기획에 반영 ○ 하반기 기술수요조사 : 차차년도 신규사업 투자분야 검토 시 활용 * (예시) '24년 하반기 기술 수요조사 → '26년 신규투자 분야 결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24년부터 적용)
			산림정책과 (042-481-422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출연 R&D 신규과제 선정평가 시기 조정	○ 전년도 11~12월 과제 선정평가	○ 당해년도 2~3월 과제 선정평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4년부터 적용)
			산림정책과 (042-481-8860)
8. 국민 안전을 위한 긴급벌채 제도개선	○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시설물 및 거리 기준이 모호 ○ < 신 설 >	○ 생활권, 계곡부 기준 거리 명시 등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명확화 ○ 소생 가능 입목 존치근거 명문화	「산림자원법」 (23.12월)
			산림자원과 (042-481-1226)
9. 국유임산물 매각	○ 국유임산물 매각시 매각계약서 생략 기준 완화 - 매각량 기준, 10m ³ 이내	- 매각금액 기준, 100만원 이내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24.상반기)
			산림자원과 (042-481-1226)
10. 목재정보서비스 운영을 통한 국민 체감 디지털서비스 제공	○ 우편·방문으로 처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목재제지 KS인증, 신기술 지정, 탄소저장량 표시 등)	○ 온라인으로 처리(목재제품 검사, 인증심사 등 디지털화) ○ 국산목재 생산이력, 벌채 실적관리 등 업무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국·사유림 목재데이터 연계를 통한 품질단속 등 현장업무 지원 강화	「목재이용법」 제18조 (23.12월)
			목재산업과 (042-481-8875)
11. 탄소저장량 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대상) 15개 목재제품	○ (대상)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로 만든 목재제품 (연료용 제외)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 (24.상반기)
			목재산업과 (042-481-8875)
12. 임도 구간 재해예방 구조물 설치 의무화	○ (신설)	○ 계곡부 하류에 보호해야 할 시설(주택 등) 있는 경우 옹벽·석축 시설, 계곡부 사방댐 설치 의무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3.10.11)
			목재산업과 (042-481-427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3.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 사업장으로 개정	○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은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을 경우 자체 규격·품질 검사 가능	○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한 자의 공장으로 대상 확대	「목재이용법」 (‘23.12월)
			목재산업과 (042-481-1803)
14. 목재생산업에 대한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유통량 관련 장부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일에서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	○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대체과징금 부여	「목재이용법」 (‘23.12월)
			목재산업과 (042-481-8875)
15. 국산목재제품의 정의, 확인제도 등 도입	○ (신설)	○ 국산목재제품의 용어를 정의하고, 공공부문에 국산 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확인 받도록 함(목재정보서비스 이용)	「목재이용법」 (‘23.12월)
			목재산업과 (042-481-8875)
16.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관리 강화	○ (신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증명, 수집 허가, 변경 허가, 변경신고, 허가취소 법제화	「목재이용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23.12월)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자에게 사법권 부여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센터 지정 및 산림바이오에너지 보급 관련 지원 ○ 위법행위 관련 벌칙 부여 혹은 과태료 부과	
			목재산업과 (042-481-420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7. 산림소득사업 시행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작업로 포장 지원 불가 ○ 산림경영관리사 지원 불가 ○ 산림버섯재배시설 신축 시 토지소유자만 지원 ○ 표고·꽃송이·복령버섯 자목 지원 3년 1회 (지원한도 3천만원) ○ 굴착기는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자에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외경작자 지원제한 차별 금지 ○ 작업로 위험구간 포장 지원 가능 - 종단기울기 15% 초과 시 구간거리 40m이내 포장 ○ 산림경영관리사 지원 가능 ○ 산림버섯재배시설 신축 시 토지 임차인도 포함 지원 ○ 표고·꽃송이·복령버섯 자목 지원 2년 1회 (지원한도 2천만원) ○ 육림업도 굴착기 지원 	산림소득사업 시행지침 (24.1월 시행)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4)
18. 산림사업 집행지침 개정 * 전문임업인, 귀산촌인 정책자금 대출조건 완화, 임업분야 자격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 - 3년 이내 12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요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요건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 시 대출 불가 ○ 버섯재배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 정책자금 대출 시 가산점 미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완화 - 임업분야 국가자격증 보유 시 교육이수 면제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 요건 - 단기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대출 가능 ○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정책자금 대출 시 가산점 부여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24.1월 시행)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19. 산림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조합은 휴양림 내 건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 이하 소규모 건축시공 가능(휴양림 등 9종 사업) 	「산림조합법」 (23.12.21)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0.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주업기준 완화	○ (경영면적) 3ha (임산물판매액) 1,600만원 (경영투입비) 800만원	○ (경영면적) 1ha (임산물판매액) 900만원 (경영투입비) 450만원	「임업직불제법」 (‘24.4월)
			임업직불제팀 (042-481-1242)
21.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 임가당 120만원	○ 임가당 130만원	「임업직불제법」 (‘24.4월)
			임업직불제팀 (042-481-1242)

<산림복지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신청 시 사전입지 조사서 제출 기준 완화	○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신청 시 신규로 포함되는 구역을 대상 으로 사전입지조사서 제출	○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 사전 입지조사서 제출 생략이 경우 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12월)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2.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입장 시 제한	○ 정기 휴관일에도 등산을 위한 입장 시에는 허용	국립자연휴양림시 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3.11월)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3.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조정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입실시간은 사용일 15시 부터 22시까지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입실시간을 사용일 14시 부터 22시까지로 변경	국립자연휴양림시 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3.11월)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4.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 자연휴양림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을 적용시 등급 구간을 3개로 (1~3급, 4~7급, 8~14급) 구분하여 적용	○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설이용 시 요금 감면을 적용시 등급 구간을 2개로(1~3급, 4~14급) 구분하여 적용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23.11월)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5.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만 석재산업진흥 지구 지정 신청 가능	○ 석재사업자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 가능토록 확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4.2월)
			산지정책과 (042-481-4193)
6. 임업분야 외국인력 제도 최초 도입	(신설)	○ (고용허가제) 임업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자(법인), 산림용 중요생산업자(법인)에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을 1천여 명 도입 * 상시근로 : 3년, 연장 1년 10개월 ○ (계절근로) 법무부 협의 후 시범사업 및 법률개정 추진 * 단기근로 : 5개월, 연장 3개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4, 법무부 협조)
			산림안전보건 일자리팀 (042-481-1852)
7.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시기 완화	○ (신규교육) 최초 업무수행 일부터 1년 이내 이수 ○ (전문교육) 신규교육일 또는 이전 정기교육일 부터 3년 이내 이수	○ (신규교육) 최초 업무수행 연도의 다음연도 이내 이수 ○ (전문교육) 신규교육 이수기 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 내 이수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표 1 (‘24.1. 예정)
			산림안전보건 일자리팀 (042-481-418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8.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민원서류 간소화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 시 산림기술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수탁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7조 ('24.1. 예정)
			산림안전보건 일자리팀 (042-481-4187)
9.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에 적용	○ 모든 5인 이상 사업장 및 50억 미만 건설공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산림안전보건 일자리팀 (042-481-1854)

<산림보호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강화	(신설)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복원지에 대한 유지·관리 추진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2)
2.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신설)	○ 자생식물 공급센터 지정·운영 및 자생식물 인증, 표시 및 이력관리 등	「산림자원법」 (‘24.5.1)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2)
3.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범위 확대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지보전협회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지전문기관 -산지보전협회, 치산기술 협회 지정요건 충족 기관· 단체	「산림자원법」 (‘24.5.1)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2)
4.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매장문화재 발굴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매장문화재 발굴 불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허용	「백두대간법」 (‘24.5.1)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4)
5. 백두대간 기본계획 공표	(신설)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제출 및 누리집 게재	「백두대간법」 (‘24.5.1)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4)
6. 도시숲법 일부 개정	○ 산림 풍경, 식물, 역사 가치 등에 대한 보전· 활용을 위한 산림경관 정의 명확성 부족 ○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 위원으로 도시숲 등 전문가, 관할지역 주민 대표, 시민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 산림 풍경, 식물, 역사 가치 등에 대한 보전·활용을 위해 도시숲 조성·관리 계획에 포함 ○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에 국유지 도시숲 업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 포함	「도시숲법」 (‘24.3월 예정) 도시숲경관과 (042-481-422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7.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도시숲법」 (‘24.6월 예정)
			도시숲경관과 (042-481-4227)
8. 지방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실시	(‘23.7월 제도시행 이후부터 시범 실시)	○ 국가정원에 한정되었던 품질평가를 지방정원으로 확대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24.7월)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9. 국가·지방정원 내 행위제한 신설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정원 내 식물,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행위와 과태료를 규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 신설 (‘24.6월 예정)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10. 실내정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 실내정원 단가 5억원 ~ 10억원	○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업 구조 개선 (개선) 0.5억원 ~ 10억원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1211)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1211)
11. 국가 희귀·특산 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	(신설)	○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을 국가 희귀·특산 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4.6월 예정)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1211)

<산림재난통제관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 사방지 행위 허가	○ 사방지 내 벌채 등 행위허가 시 착수·종료일을 허가권자에게 통보	○ 사방지 내 벌채 등 행위허가 시 착수·종료일을 허가권자에게 통보부분 삭제	「사방사업법 시행령」 (23.11.16.)
			산사태방지과 (042-481-4271)
2. 나무의사 자격시험 연 1회 실시	○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시 시행 * ('19) 1회 → ('20) 2회 → ('21) 2회 → ('22) 2회 → ('23) 2회	○ 나무의사 자격시험 연 1회 시행(1·2차 시험 각 1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23.12월)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3.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	○ 집단발생지역(대구 달성, 경북 포항·안동·성주·고령, 경남 밀양)으로부터 주변 산림으로의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관리	「산림보호법」 제27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24.1월)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8)
4.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평가 도입	-	○ 책임방제 사업자(설계·시공 감리)에 대하여 평가하고 우수·미흡 사업자에게 혜택·패널티 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VI. 방제의 시행 - 5. 사업의 시행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8)
5.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 발령 - 피해발생 자료 제공 (공문, 홈페이지 게시)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 발령 고도화 - 피해발생 자료, 단계별 조치사항 제공 - 홈페이지 게시와 더불어, 주요 이슈 병해충에 대한 월간 방제정보 발간 * 발생, 해외동향, 방제방법 등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6조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269)

2024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기획조정관실 및 직속실과 소관

1. 숲으로 잘사는 산림강국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4058)

목 표

- ◇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반으로 임업인·지역 요구를 반영한 예산 편성
- ◇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 마련으로 국정과제 이행과 신규수요 반영

가. 정책여건

- (재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발생원인*이 다양해지고, 여러 재난이 중첩되며 대형피해를 초래하는 복합재난화 현상 심화
* 강릉 대형산불(4.11)은 소각실화 등 기존 산불과 달리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며 발생
- (경제) 나무 등 산림자원은 플라스틱 등 고탄소·화석연료 소재를 대체하며 ‘바이오 순환경제’ 시대를 이끄는 자원으로 성장* 전망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만든 제품의 수요는 세계적으로 매년 2~3% 증가 예상('22, EU)
- (사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며 숲은 국민들에게는 건강·휴식의 공간으로, 지역에는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자리매김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약 2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23 언론보도)
- (환경) 숲은 탄소를 대규모로 감축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지구 열화’를 저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연기반 해법으로 부상
* 숲은 '30년 세계 탄소감축목표의 27% 기여가능('22, UN)

나. 기본방향

- (재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 (산 불) 고성능 진화차, ICT 플랫폼 등 첨단장비 도입 확대
 - (산사태) 산지태양광시설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집중점검
 - (병해충) 과학적 예찰과 총력 방제로 피해 확산 차단

- (경제) 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돈이 되는 임업 육성
 - (경영) 과학적인 나무심기, 숲가꾸기로 우수자원 육성
 - (산업) 국산목재로 고부가 탄소중립 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산업 육성
 - (지원) 임업직불금 지급 확대, 수해피해 추가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 (사회)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임업 확대
 -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정원, 산림문화 등을 확산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
- (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임업 촉진
 - 숲의 탄소감축과 기후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산림관리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중기사업계획('24~'28) 수립(1~3월)

-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24~'28)'을 기초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유사·중복, 저성과 사업 등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신규·중점사업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전년 수준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실시
 - * '24년 중기사업계획 구조조정 목표 : 2,310억원('23년 재량지출 예산의 15% 수준)
- 연례적 이·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연차 조정 등 해소 방안 마련
 - *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국립등산학교 등
- 신규 제·개정 법령에 맞는 예산 비목 조정 : 보조 ↔ 위탁·대행 등
- 대내외 지적사항* 및 '24년 예산 편성 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논리 보완
 - * 고정익 항공기 활용 방안, 목재친화도시 집행 저조, 정원도시 집행 부진 등

2) 수시배정사업 협의(연중)

-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 복구를 위한 기재부와 수시배정 협의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4예산	수시배정 사유	배정 협의
합계	41,037		
산림재해대책비	35,687	'23년 수해복구비 643억 원을 제외한 357억원 집행 점검 필요	수시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산림계곡 범람 예측사업)	3,250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수시
임도시설 (임산물 운반로 구조개선)	2,100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수시

3) 과목구조개편(5월)

- 정책여건 변화, 조직개편 등을 반영하여 사업 분리 및 사업의 통폐합
 - 내역사업이 복잡한 사업은 유사 내역 간 세부내역을 분류하여 사업 분리
-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적합한 명칭 변경 및 사업간 이동 적극 반영

4) '25년도 예산안 편성 추진(5~8월)

□ 신규사업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 예산소요 반영
 - *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보호법(보전지불제)」 등
-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¹⁾ 도약을 위한 新사업 발굴*
 - * 첨단 과학·기술 접목사업, 미래 융·복합 산업, 부처 협업사업, 국민참여형 사업 등

□ 중점사업

- 국정* 및 핵심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중점 예산소요 발굴·반영
 - * '25년 주요 국정과제 : 산림헬기 확충(2대), 산불진화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 구조조정

- 국회 지적,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대내외 평가 미흡사업 및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관행적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 소통강화

- 지자체, 임업인 등 수요 반영을 통한 현장중심 예산 편성 및 결과 공유

5) '24년도 예산 적기 배정 및 총사업비 사업 관리(연중)

- 적극 집행을 위한 예산 적기 배정 및 총사업비 대상 사업* 자율·협의조정 관리
 - * 지덕권 산림치유원, 새만금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국립산림레포츠센터, K-포레스트관,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1) 자료보기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주요정책정보→‘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 메뉴에서 확인

라. 추진일정

- 중기사업계획('24~'28) 제출(산림청 → 기획재정부) : 1월
- 중기사업계획('24~'28) 심의 및 지출한도 확정(기획재정부) : 2~4월
- '25년 예산요구서 제출(산림청 → 기획재정부) : 5월
- '25년 예산안 심의(기획재정부) : 6~8월
- '25년 정부 예산안 제출(국회) : 9. 3.까지
- '25년 예산안 심의(국회) : 10~11월
- '25년 예산 확정 : 12. 2.까지
 - * '25년 예산 가내시(9.15까지), 확정 내시(12.15까지)

①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 : '23. 12월
-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1. 31.
-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마련 : 2~4월
-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 : 4월

②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

- '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 : 3월말
- 각 부처 편성 : 4~5월
- 각 부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5월말
- 기획재정부 협의·보완 : 6~8월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국회제출

- 국무회의 보고·의결 : 8월말
- 국회제출 : 9. 3.

2.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4055)

목 표

- ◇ 예산 신속 집행을 통한 국가경제성장에 기여
- ◇ 재정성과평가를 통한 재정집행 성과관리 및 예산 환류
- ◇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가. 정책여건

- (신속집행) 대외여건 악화,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경기둔화 흐름의 완화 및 방향 전환을 위하여 재정의 적극 집행 요구
 - * 상반기 산림청 집행목표(%) : ('21) 64.6, ('22) 66.9, ('23) 70.4
- (성과관리)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환류하는 등 체계적인 선순환적 평가제도 운영 필요
- (보조금) 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예방 등 재정 건전성 강조

나. 기본방향

- (집행) 1분기부터 집행을 제고를 위해 재정집행 계획 조기 확정
 - 주요사업 집행계획, 현장점검계획 수립 등 집행점검관리 철저
- (성과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 내실화로 평가결과 예산 환류
 - 평가결과를 다음 예산편성 시 반영, 집행 부진사업의 제도개선에 활용
- (보조금) 「보조금법」에 따른 부정수급 차단, 재정누수 방지
 - 보조사업 실태점검,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등

다. 세부추진계획

1) 상반기 신속집행(1~6월)

- 집행목표 및 사업 추진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집행계획 수립(1월)
 - 과거 집행실적, 정부목표, 사업별 집중투자시기 등을 분석·반영

- 상반기 신속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 유형별로 집행, 실집행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안 모색
 - (일자리사업) 관리대상 일자리 사업을 즉시 확정·추진하고, 전년도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은 연초에 즉시 교부하고, 전년도 집행부진 지자체는 지자체간 자금 재교부 등 실집행률 제고
 -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목적대로 사용되는 지 여부를 파악
 - (이월사업) '23년 이월사업은 상반기 집행을 독려하고, '24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집행관리 철저
 - (소비투자)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비·투자비목 분기별 집행 관리
 - * 소비투자비목 : 110목(인건비), 200목(물건비), 420목(건설비), 430~440목(자산취득비)

2) 예산집행 점검(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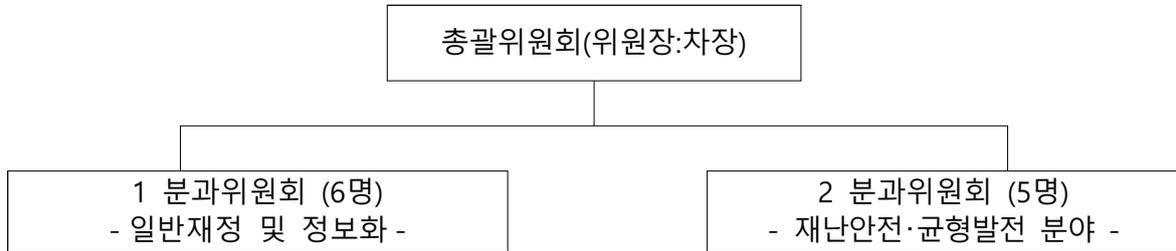
- 예산집행심의회 및 재정집행점검회의 운영(연중)
- 연례적 부진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특별관리*로 집행률 제고(연중)
 - * 집행률 파악 등 집행현황 점검, 사업현장 방문 점검, 애로사항 파악후 해소방안 마련
- 예산집행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연중)
- 예산절감, 수입증대 우수사례는 발굴 후 성과금 지급(상·하반기 각 1회)
- 100억이상 대규모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등 현장점검(연중)
 - 공모사업은 전년도에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 소요기간 단축, 인허가에 따른 협의절차 조속 이행 완료
 - * 산림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실질적인 제도이행실태 파악(연중)
- 산림예산 적극집행 우수 부서(기관)에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12월말)

3) 재정사업 평가(1~3월)

- (평가대상) 일반재정(정보화), 재난안전, 균형발전으로 구분하고, 재정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1월)
 - *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종료, 소액사업) 및 타 평가(책임운영기관 평가) 사업 등은 제외

- (평가방법)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자율평가로 실시
 - (환류)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마련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 (자체평가) 각 분과위원회 사업별 평가 → 총괄위원회 조정 심의
 - 분과위원회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총괄위원회에서 조정·심의

4) 재정사업 성과관리(연중)

-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한 핵심재정사업 밀착 성과관리(1월~)
 - 12대 핵심재정사업군²⁾에 ‘산불 대응 능력 강화’ 포함 (산림헬기 도입교체, 고성능산불진화차, 산불진화임도 및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 영농부산물 파쇄)
- 재정집행과 성과관리를 연계한 '25년 성과계획서 수립(5월)
 - 자체평가위원회 사전검토를 통해 성과계획서 지표 등 적정성 검증
 - * 계획수립(전년 5월, 9월) → 수정계획(당년 2월) → 실적보고·평가(익년 1~3월)
- '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자율 검증 실시
 - 재정사업에 관한 성과측정은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검증

5)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

- 보조사업에 대한 전 주기 절차 이행
 - 보조사업자 선정(공모사업 등) 및 보조금 교부(2차례 이상 분할),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점검(월 1회), 실적보고서 제출(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내), 보조사업 정산 및 반납(집행잔액, 이자, 수익금), 정보고시 및 중요재산 공시
 - * 관련법령 : 「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의10, 제27조

2)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 ‘산불대응능력강화’는 10번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에 포함되어 향후 5년('23~'27)간 집중적, 지속적 관리를 통해 성과제고

-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 준수
 -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시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배제,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
 - * 관련법령 :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의2 등
- 보조금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절차 이행 등 적기 조치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 집행점검 모니터링(월 1회)
 - e나라도움 부정징후 모니터링 결과(연 2회)에 따라 기재부 등 관계 기관 합동 점검 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 부정수급 적발현황 : ('21) 32건 104백만원, ('22) 8건 231백만원, ('23) 4건 18백만원
- 부정수급 사례 홍보 및 교육
 - 부처별·사업별 주요 부정수급 적발사례를 분기별로 홍보·공유
 - 보조금 업무담당자(중앙, 지자체, 민간)는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필수 이수(10시간)
-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운영(연중)
 - e나라도움 상 보조사업자 등록여부 및 월별 집행상황 점검(매월)
 -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실적 관리, 미수납금 환수 독려(상·하반기)

라. 추진일정

- '24년 주요사업 재정집행계획 수립 : 1월
-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체평가계획 수립 : 1월
- '23년 성과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2월
- '24년 성과계획서(수정) 제출(기획재정부) : 2월
-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체평가결과 제출(기획재정부) : 3월
- '25년 성과계획서 제출(기획재정부) : 5월
- '25년 국고보조금 통지(가내시) 및 확정 통지 : 9월, 12월
- '24년 예산집행심의회 및 재정집행 점검회의 운영 : 연중
-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 연중

3. 산림분야 정부혁신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042-481-1877)

목 표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으로 신뢰받는 산림청 실현
-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가. 정책여건

- 대국민 인식조사 분석결과* '정부혁신'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투명성'이 선정되는 등 정책과정에서의 국민소통 중요성이 대두
 - *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온라인 인식조사(2천명 응답, '23년 1월 시행)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정목표로서의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할 필요
 - * 【국정목표 1】 약속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나. 기본방향

- 다양한 정책수요와 대외의견을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산림정책 추진
- 산림청 조직현황을 진단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업무방식 개선과 소통 활성화

다. 세부추진계획

- 1) 다양한 국민참여 및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국민중심의 정책혁신 추진
 - (국민정책디자인·제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정의 문제해결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구현방안 마련('24.3월~)
 - 국민생각함, 소통24 등의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활성화를 병행하여 일반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개선 노력(연중)

- (국민평가단) 정책기획·집행·평가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3기 산림사랑평가단’을 지속운영하며 권역·분야별 활동 활성화(연중)
 - 기관장-국민이 함께 정책참여 및 집행 과정에서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나누고 향후 민관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과의 만남’ 개최('24.5월)
- (정책실명제) 산림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및 체계적인 실태점검 이행(연중)
 - 산림청 누리집을 통한 '23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 모니터링
 - 행정안전부 관련지침에 따라 「'24년도 산림청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24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2) 대외 산림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도모

- (전문가) 산림정책 운영 및 개선방향에 대한 심층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림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최('24.1월, 4월, 8월)
-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시·도 산림부서장 협의회’ 등 중앙부처(산림청)와 지자체가 모여 산림분야 정책협력 방안 및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24년 하반기)

3) 산림청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수준 진단을 통한 세부 개선방안 수립

- (진단) 행정분야 학회와 연계하여 '23년과 비교한 산림청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수준 개선여부 진단 연구용역 실시('24.3월)
 - 연구용역 과정에서 소속기관별 심층인터뷰를 병행, 진단 이후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및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마련
- (계획수립)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정부혁신 종합계획, 일하는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가이드라인 등)의 비전·전략을 반영하여 산림청 기관 특성에 맞는 「'24년 산림청 일하는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혁신방안」 수립('24.3월)

4) 직원 역량강화 지원 및 소통확대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 추진

- (역량강화) Design Yourself(자기주도적 역량개발프로그램), 혁신아카데미Live(전문가 특강) 등의 운영으로 직원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24년 상반기)
- (캠페인) '청 내 칸막이행정 타파 캠페인'을 추진하여 근무과정에서의 사일로 이펙트 최소화, 협력하고 소통하는 문화 확산('24.11월)
- (직원소통)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산림청장-직원 토크콘서트 '林기자가 간다!'를 개최하여 직급·세대 막론 격의없는 소통기회 마련('24.9월)
 - * SNL코리아 '주기자가 간다' 코너를 차용하여 참여자가 기자로서 조직문화 토론

5) 효율적인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추진·지원

- (공간혁신) 기획조정관실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사업 종료('23.12월)에 따른 직원 만족도 조사 추진 및 애로사항 개선 추진('24.2월)
 - 업무용 노트북(온북) 시범도입에 따른 자율좌석제(업무좌석, 집중근무석)활성화, 재택근무·출장 등에 온북사용문화 정착 지원
- (연구모임)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경진대회' 개최, 우수 연구모임 운영비 추가 지원('24.8월)
- (어벤져스) 산림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자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년 간담회, 타부처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한 운영과정 모니터링(연중)
- (매뉴얼) 산림청 혁신어벤져스를 주축으로 한 '알쓸공잡(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직 잡학사전, 업무매뉴얼) 시즌3' 개최, 자기주도적 혁신 문화 확산('24.9월)
 - 시즌1 '신규공무원을 위한 업무매뉴얼('22년), 시즌2 '산림, 안전하자! 산림분야 안전관리 매뉴얼('23년)에 이어 현안관련 주제로 선정

라. 추진일정

- 국민정책디자인, 국민제안 운영 : 연중
- 산림청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 행안부 '24년 지침 시달 후
- 산림청 정책실명제 운영 : 연중
- '24년 제7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1월
- 혁신어벤져스 모임 : 신년모임(1월), 중간모임(7월), 성과보고회(12월)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수준 진단 연구용역 착수 : 3월
- 기획조정관실 대상 공간혁신 내부 만족도 조사 : 2월
- '24년 산림청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 수립 : 3월
- '24년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신규위원 위촉 : 4월
- 365 산림사랑평가단과 함께하는 '국민과의 만남' 개최 : 5월
- 연구모임 경진대회 : 8월
- '24년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 8월
- 산림현장 매뉴얼 '알쓸공잡(알면 쓸모있는 공직 잡학사전)' 추진 : 9월
- 산림청장-직원 소통콘서트 '林기자가 간다' : 9월

4. 산림행정 성과관리 및 평가

(혁신행정담당관실, 042-481-4115)

목 표

- ◇ 환경·사회·경제임업을 지향하는 합리적 성과관리체계 운영으로 국정과제 및 산림분야 주요정책과제 성과 창출을 지원
- ◇ 내부평가의 선택과 집중, 상위평가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평가 부담경감 경감 및 정부업무평가 실익을 동시에 지향

가. 정책여건

- 「현 정부 국정방향」 및 「산림 르네상스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분야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필요
- 산림정책 성과관리 역량 강화와 국정과제 성과창출 견인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 평가체계 및 외부 평가 대응방안 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 국정방향과 산림르네상스 전략을 지향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연계 강화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 1) 현 정부 국정과제와 정책여건을 반영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
 - 주요정책과제, 정부혁신, 규제혁신,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국가 중점과제의 주요 지표 및 내용을 반영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이행 실적 점검 및 점검 결과 자체평가 반영

2)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연계로 통합적인 정부업무 성과 제고

< 특정평가 >

- '24년 특정평가 방향 및 '23년 결과 분석을 통해 성과관리 방향 설정('24.3월)
- 지표달성도, 이행실적 등 정량평가 항목 상시 관리로 감점 최소화(연중)

< 주요정책 자체평가 >

- '23년 평가결과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계획 수립('24.3월)
- 이의신청, 재평가, 결과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절차 운영('25.1월)

< 본청·소속기관 평가 >

- 피평가기관(부서),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계획의 수립·시행('24.5월)
- 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 환류를 통해 성과 창출 원동력 제공
 - 평가 결과는 6급 이하 성과급 및 5급 이상 성과연봉 책정에 반영
 - 우수부서·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25.1월), 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 주관) >

-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국정과제, 핵심 정책 위주로 '24년 지표 선정('24.6월)
 - * '24년 지표(6개) : 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률, ②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③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④ 임도시설 실적률, ⑤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⑥ 목재이용 우수사례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23년)에 의한 산림분야 지표달성 우수기관과 국정과제 및 현안이슈 대응 우수기관을 분야별로 선발·포상('24.6월)
 - * 목표달성 우수기관(광역지자체) : 최우수 2(도1, 시1), 우수 3(도2, 시1)
 - * 현안대응 우수기관(광역지자체) : 최우수 1(도1), 우수 1(시1)
 - * 우수광역지자체(7개)별 도는 2개, 특광역시 및 제주는 1개 기초지자체 추천

3) '24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23년 경영실적 대상)

-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24.1월)
 -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및 소관 국장(3명)은 당연직
 - 자평위 위원 중 행정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위원(5명) 구성
 - * 간사 : 혁신행정담당관(당연직)
- 경영평가편람 작성 및 평가단 구성·운영은 타부처 사례를 준용하여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계약 추진
 - '23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편람은 작성 완료('23.9월)
 - 경영평가 위탁('24.1~6월) 및 경영평가 결과 발표('24.6월)

4) 산림정책평가위원회 활성화

- 평가위원의 산림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소위별 현장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24.7~8월)
- 위원회 정기회의('24.1, 3월) 및 자체평가 실적보고회 개최('24.12월)

라. 추진일정

- 「산림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 1월
- '24년 특정평가 주요정책과제·지표·이행계획 수립 : 2~4월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개최(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확정) : 3월
- '24년 본청 및 소속기관 평가계획 수립 : 5월
- '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공개 및 포상 : 5~6월
- 경영평가 위탁('24.1~6월, 용역), 경영평가 결과 발표 : 6월
- '23년 정부업무평가 기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추진 : 6월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 7월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현장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 7~8월
- 특정평가 추진실적 제출(국무조정실) : 11~12월
- 특정평가 부처 실적 설명회(국무조정실) : 12월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개최(주요정책 자체평가) : '24. 12월~'25. 1월
- '24년 본청·소속기관 평가 결과 포상 : '25. 2월

5.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혁신행정담당관실, 042-481-4232)

목 표

- ◇ 국정과제 및 현안업무 이행 지원을 위한 조직 강화
- ◇ 미래 정책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직 관리방안 마련

가. 정책여건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통합활용정원제³⁾를 도입하고 각 부처에 인력효율화를 요구

나. 기본방향

- 산림분야 국정과제와 산림르네상스 추진전략('22~'27) 및 산림재난 등 현안과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조직 효율화
- 법령 제·개정, 시설·장비 도입 등 신규 행정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인력 확보와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적정 인력 감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정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기구 및 인력 적기 반영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맞춰 '24년 정기직제 반영 등

《 '24년 통합활용정원 직급별 감축규모 》

- 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국정과제 79), 산림재해대응체계 강화(국정과제 70-4)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적기 반영
 - 산불진화임도 1명, 산림신품종 특허심사 1명, 난대수목원 조성 1명('24.1분기)
 -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8명('24.2분기)
- ② 수목원조성사업단(한시조직)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연장 협의 : '24.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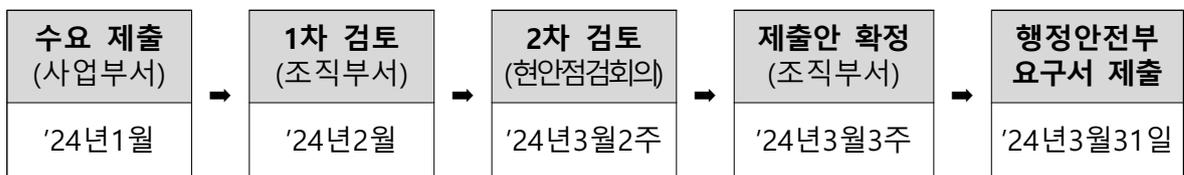
3) 통합활용정원제 : 각 부처에서 일정비율의 감축인력을 발굴하여 정부전체 인력풀로 관리

-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수행을 최대한 지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기구 신설 및 기 증원 인력의 연장을 검토('24.4월)
 - 총액팀. 증원인력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 검토

2)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조직 및 인력 확보

- '25년도 정기직제 요구 및 중기인력운영계획('24~'28) 수립('24.1분기)
 - 국정과제 이행, 법령 제·개정, 시설 도입 등에 따른 기구·인력 요구

《 소요정원 요구일정 》



- 긴급한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긴급대응반(가칭)' 신설·운영('24.1월)
- 기관·부서별 공무원근로자 적정 정원 검토('24.4~6월) 및 증원 추진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근로자 전환을 연차별 전환 계획을 고려하여 추진
 -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고용현황('23.11월) : 공무원 390명, 기간제 45명

3)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 감축안 마련

- 산림청 감축목표(5년간 81명)에 따라 '24년 감축안(16명) 마련('24.3월)

《 '24년 통합활용정원 직급별 감축규모 》

- 본청 : △2명(5급1명, 6급1명)
- 소속기관 : △14명(5급1명, 6급4명, 7급2명, 8급3명, 9급4명)

- 통합활용정원 감축 시점은 향후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확정('24.12월)

4) 산림행정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한국행정학회, 한국산림행정학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 및 간담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정책 방향을 모색(연중)

라. 추진일정

- 자율기구인 산림재난 긴급대응반(가칭) 신설 : 1월
- '24년 정기직제 반영 직제 개정 : 1/4분기, 2/4분기
- '25년 정기직제 요구 : 자체검토(1~3월), 행안부 제출(3월말), 기재부 협의(7월)
- '24년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변경 : 4~6월
 - 증원인력 존속기한 연장 검토 반영
- '24년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직제 시행규칙 개정 : 7월
- '24년 공무원근로자 증원 검토
 - 수요조사(3~4월), 자체 요구안 확정(6월), 기재부 협의(~8월)
- 수목원조성사업단 한시조직 및 정원 존속기간 연장 협의 : 10월
- '24년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변경 : 10월
 - 총액팀, 직급조정 유지 검토 반영
- '24년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직제 시행규칙 개정 : 12월
- '24년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실적 제출 : 12월
- '24년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력 감축 : 12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관리 : 연중

6. 주요 법령 적기 마련 및 법제 플랫폼 역할 강화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049)

목 표

- ◇ 국민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 관련 법률 중점 정비
- ◇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로 법안 신속처리 지원

가. 정책여건

-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다양한 산림정책 변화에 따른 법령 제·개정 수요 증가
-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다양한 입법수요가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입법계획 수립·대응 필요

나. 기본방향

-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법령 중점 정비
- 국민안전 및 체계적인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
-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신속한 입법 지원

다. 세부추진계획

1) 규제개선 및 산림재난 관련 산림관계법률 중점 정비

- (국회심의) 국회 계류 법률안의 적기 처리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협의
 - '24년 제21대 국회 심의대상(85건) : 농해수위 77건, 법사위 8건
- (법률개정) 제22대 국회 개원 및 변화하는 산림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산림관계법률(정부안, 의원발의) 제·개정 추진(연중)
 -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법안 제·개정 우선 추진
 - * 산림재난방지 법안(6건),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법안(2건), 암업진흥법 등 전부개정 법안(4건)

- (규제개선) '22~23년 규제혁신TF 후속조치에 따른 규제개선 법령 개정
 - '24년 정비대상 : 총 83건(법률 44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9건, 행정규칙 14건)
 - * 정비 완료 : 총 64건(법률 12건, 시행령 19건, 시행규칙 8건, 행정규칙 25건)
- (하위법령) 국회 심사 완료된 법률의 차질없는 하위법령 적기 추진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소법 등 '23년 제·개정된 주요 법률의 하위법령 제때 마련
 - * 대상(8건)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등 3건('24.2.17 시행) 및 산림자원법 등 5건('24.5.1 시행)

2) 국회 등 관계기관 긴밀한 협력을 통한 법제업무 플랫폼 역할 강화

- 의원입법지원제도,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적기 대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 업무협력 강화
- 법률안 심사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쟁점사항 해소 등 법령정비협의회 심의기능 강화

3) 법령위임 근거에 따른 행정규칙 일체 정비 및 타부처 법령 검토 강화

- (행정규칙) 제·개정 시 법령 상향 여부 및 위임 범위 이탈 등 중점 정비
 - * 부패영향평가 시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 병행(법령 상향 입법 지원)
- (타부처 법령)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강화

4) 법제업무 실무자 전문성 및 법령입안·소송 지원 대책 마련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법령 입안 매뉴얼 보완(연중)
-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등 포괄적 법제업무 적극 지원
 - * 2개 자문기관(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솔) 활용

라. 추진일정

- 자체 입법계획 수립 : 1월
-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 2월, 4월, 6월, 8월, 10월 / 수시
- 규제개선 등 제·개정 법률안 사전검토 협의 : 연중
- 산림관계법률 제·개정 추진현황 점검 : 매일
- 산림관계법령 부패영향평가 및 서식 승인 : 연중
- '25년 정부입법계획 작성·제출 : 11월

7.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산림산업 활력 제고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281)

목 표

- ◇ 민생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성과 창출
- ◇ 적기 법령 등 제·개정을 위한 신속한 규제심사 추진
- ◇ 정책수요자별 소통방식을 다양화하여 규제혁신 성과 확산

가. 정책여건

- 산림분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보다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 필요
- 민생현장의 불편, 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 지속 증대

나. 기본방향

- 현장소통 강화로 국민 불편, 산림산업계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개선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중복규제를 우선 발굴하여 개선
- 규제혁신 성과의 신속한 현장이행을 위한 홍보·교육 확대
-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규제심사로 산림정책 추진 지원

다. 세부추진계획

1) 현장소통 중심 규제혁신 TF 운영으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과제 발굴

- 임업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등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산지이용 등 7개분야 민·관·학 전문가 현장 논의
- 4대 중점과제* 중심의 국민애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 청년일자리 창출 저해규제 집중 개선

* ①산지이용 합리화, ②진입장벽 완화, ③임업경영 여건 개선, ④청년일자리 지원

- 다양한 채널을 통한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임업현장의 의견 적극 청취
 -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신문고, 경제규제혁신TF,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자치단체 등 건의과제 적극 검토

2) 효율적인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추진

- 기업현장 애로과제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 건의과제 검토기준 마련
 - 건의과제 검토의견 결정 시 “불수용”, “중장기검토” 과제 검토 기준 강화
 - * 검토의견 답변 시 “수용” 과장 결재, “불수용”, “중장기검토” 국장 결재
-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 형태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3) 신속한 사전규제심사로 개선과제 적기 입법추진 지원

- 발굴과제의 신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등 체계적인 입법추진 지원
 - * 입안 → 법령정비협의회 → 부패영향평가 등 → **사전규제심사** → 입법(행정)예고 → **자체규제심사** → 예비심사/본심사(국무조정실) → 법제처 심사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규제비용 감축,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법령담당자 대상 규제혁신 전문교육 실시

4) 규제혁신 제도의 현장 안착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 정책담당자(지자체 등), 임업인 및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적기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강화
 - 임업인 간담회(수시), 담당공무원 순회교육(반기)을 지속 추진하고, 테마형 홍보콘텐츠*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 정책수혜자가 참여하는 쇼츠영상, 기고, 현장인터뷰 등
- 규제혁신 법령 개정 단계별 보도자료 배포 및 산림청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리플릿 등 홍보 채널 다양화
- 현장지원센터 운영 시 국민 및 산림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사항 집중 홍보

5) 규제혁신 과제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모니터링단’ 운영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규제혁신 과제 현장 체감성과 점검 및 보완사항 발굴 등 사후관리 추진

* 규제혁신TF 현장토론 시 등 임업인, 산림산업계 현장소통 추진

라. 추진일정

- '24년 규제혁신 과제 선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3. 12월~'24. 1월
-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및 현장모니터링단 운영 : 매월
- 규제혁신 현장담당자(지자체 등) 순회교육 : 2월, 8월
- 산림교육원 규제혁신과정 교육 : 3월, 6월
-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 연중(수시)
-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 연중(수시)
- 규제혁신 홍보계획 및 실적 파악 : 월별

8.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281)

목 표

- ◇ 적극행정 지원으로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실현
- ◇ 현장 소통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

가. 정책여건

- 급속한 경제·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현안의 신속 대응 필요
- 국민수요를 예측하고 적극 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산림정책 요구

나. 기본방향

-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파, 의사결정 신속 지원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 현장 소통 강화로 파급효과·체감도 높은 핵심 성과 창출
- 국민참여형 적극행정 운영 및 성과 확산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적극행정 지원으로 산림르네상스, 탄소중립 성과 창출

- 산림르네상스 6대 전략⁴⁾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으로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부문 탄소흡수기능 강화 대응으로 새로운 산림관리 전략이행에 필요한 적극행정 지원
 - *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사강화, 산림분야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적극행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사가점 우대 등

4) ① 돈이 되는 경제 임업, ② 함께 가는 환경 임업, ③ 삶에 깃든 사회 임업,

④ 산림재해 대응, 보전·복원 강화, ⑤ 산림을 국제 협력 중추 사업화, ⑥ 산림과학·기술연구 촉진

2) 현장 소통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

-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현장 컨설팅 강화
 - * 각 부서·소속기관·공공기관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센터」 운영 강화
- 국민참여형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 * 「적극행정 국민신청」 안건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소통 강화

3) 적극행정 우수사례 지속 발굴(분기별) 및 인센티브 개선

- 산림분야 적극행정 분기별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산림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센티브 개선보완
 - *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협업·실패 사례 인센티브 확대
- 적극행정 마일리지 보상 방안 개선
 - * '23년 상품교환권 지급 → '24년 특별휴가, 포상금 등 보상 방안 확대

4) 적극행정 역량강화 및 우수사례 홍보

- 산림교육원, 본청 및 소속기관 직장교육 등을 통한 사례중심 교육 추진
 - * 산림교육원 :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정(2회),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실시
 - * 본청, 소속기관 : 인사혁신처 강사 및 산림청 우수사례 선정자를 활용 우수사례 전파
- 쇼츠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콘텐츠 다양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ON', 산림청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 * 적극행정모니터링단 등 국민소통 채널 적극 활용, 국민 눈높이에서의 체감 사례 확산

라. 추진일정

- '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3월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연중(수시)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분기별
- 산림청(소속기관 포함) 및 공공기관 현장컨설팅 실시 : 연중(수시)

9.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281)

목 표

- ◇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의 확대
-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개선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가. 정책여건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와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 지속 발생
-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담당자 역량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합리한 민원제도 적극 발굴·개선
-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 모니터링 강화
- 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불합리한 민원제도의 적극적인 발굴·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 국민신문고 건의사항,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및 국민의 소리, 민원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활용한 국민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 * 연 1회 이상 본청 부서 및 소속기관 대상으로 민원제도 개선과제,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민원제도·서비스 파악
- 민원처리 기간 단축,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구비서류 간소화, 이해하기 쉬운 민원명 변경 등 개선 가능한 민원사무 적극 발굴
 - * 반기별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추진’으로 산림청 소관 법정민원(148종, '23.12.기준)에 대한 현행화 및 간소화 등 국민편의 증대

2)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현황 월간 분석’을 통해 접수·처리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 및 민원처리실태 등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공유(매월)
-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응답자 추첨’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매월)
 - * 매월 5명 선정·기념품 제공, 설문조사 병행으로 국민 의견 청취 등
- ‘민원신호등’을 통한 부서(기관)별 민원만족도, 답변충실도 등 모니터링으로 산림청 민원서비스 현황분석 및 품질관리(매주)
 - * 부서별 민원만족도 및 답변충실도에 따라 단계별 경보(관심,주의,심각) 발령
-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처리기간 도래 민원 사전알림’ 실시(매일)
 - * 1단계 : SMS 통보, 2단계 : 온나라 메모보고(부서장 포함), 3단계 : 전화알림

3) 민원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 산림교육원 ‘민원 및 갈등관리’ 교육과정 개설·운영(연 2회)
 - 갈등관리 전문지식 습득 및 대응, 소통 능력 강화로 민원 업무효율 극대화
- 현장 컨설팅을 통한 민원응대, 민원처리 우수·미흡사례 전파(수시)
 - 민원처리 방식 및 응대 교육을 통해 현장대응능력 강화, 산림청 민원 서비스 품질향상 및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
- 민원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부여
 - 힐링프로그램 추진으로 감정노동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 기회 제공
 - 민원 우수공무원 선발·포상(30명 : 분기별 5명, 연간 10명)
 - * 청장표창 1점, 인사가점 최대 6명(상·하반기 각 3명 이내 추천), 포상금 지급
 - 민원 담당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진단 시스템, 상담센터 매칭을 통한 맞춤형 심리상담

라. 추진일정

- 민원신호등 보고(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현황분석) : 매주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현황 실태점검 및 보고 : 매월
-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응답자 추첨 및 기념품 제공 : 매월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시행 : 3월
-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 10월
-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포상 : 분기별, 12월
-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연중(수시)

10. 갈등 사전예방 및 선제적 대응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281)

목 표

◇ 체계적인 갈등관리 운영으로 공공갈등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

가. 정책여건

- 국민의 산림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 참여 욕구가 증가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게 표출되고 그 양상이 다양해짐
- 공공갈등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전 리스크 점검 등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

나. 기본방향

- 다양한 갈등상황의 사전 리스크 점검을 통한 갈등과제 발굴·선정
- 갈등관리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체계적 갈등 대응
- 갈등관리 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갈등상황 대응능력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공공갈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갈등현안 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

-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지역주민 여론, 언론보도 및 민원 등을 수렴하여 갈등 상황을 예측·분석하는 등 선제적 갈등과제 발굴
 - * 본청 부서 및 소속기관 대상으로 갈등과제 발굴을 통해 사전 리스크 점검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한 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활용, 갈등영향 분석서 작성으로 갈등현안 쟁점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11명) : 민간위원 7명(학계2, 법조인1, 갈등분야3, 산림분야1), 정부위원 4명(당연직)

2) 갈등관리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효과적 갈등 상황 대응

- 갈등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컨설팅 추진
 - 공공갈등 예방 또는 발생 시 갈등전문기관(전문가)을 통한 코칭, 컨설팅 등을 연중 지원하여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갈등관리 실시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3) 갈등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 산림교육원 및 갈등 전문기관 교육 실시로 담당자 갈등 대응능력 제고
 - (산림교육원) ‘민원 및 갈등관리’ 교육과정 운영(연 2회) 및 기타 교육 과정에 갈등분야 교과목 편성·운영
 - * 기타 교육과정 :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연2회), 리더십역량과정(연2회)
 - (전문기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의 전문교육 지원(기본·유형·전문)
 - *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으로 공무원 인식전환 및 갈등관리 전문성 강화
- 산림분야 갈등관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 본청 및 소속기관 대상 갈등관리 유공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 갈등관리 우수공무원 선발하여 표창(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1점)
 - * 산림청 갈등과제 발굴 우수자, 자체과제 이행담당자 중 공공갈등 예방·해결·완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라. 추진일정

- 갈등과제 발굴 : 1월
-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시행 : 3월
- 민원 및 갈등관리과정 교육 : 3월, 7월
-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 연중(수시)
- 맞춤형 갈등관리 컨설팅 : 연중(수시)
- 갈등관리 우수공무원 포상 : 12월

11.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반듯한 조직문화 조성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003)

목 표

- ◇ 내·외부 청렴 인식도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조직 구현
- ◇ 부패취약분야 감찰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가. 정책여건

- 공정과 상식의 원칙 확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증대
- 공직사회 일탈·비위 등 부패행위에 대한 엄격한 잣대 요구

나. 기본방향

-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조직전반의 청렴수준 제고
-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취약시기 집중점검으로 부패예방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추진

-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한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분야 진단
 - 취약 원인,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하여 청렴정책 추진에 실질적 활용
- 부패인식 개선 강화를 통한 조직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법규를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및 공직자의 권한남용 행위 근절
 - * 부패인식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으로 공직자의 기본 소양 내재화
- 청렴도 설문조사, 권익위 청렴도 평가를 기반으로 청렴컨설팅 추진
 -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 기여 또는 자체 청렴도 향상 도모
- 기관별 부패방지담당관을 통한 반부패·청렴 소통창구 활성화
 - 신규 공무원, MZ세대, 소수직렬 등 청렴소통 사각지대 해소
 - * 행동강령·이해충돌·청탁금지 등 반부패 질의·상담 활성화로 부패인식 개선 도모

2) 반부패 법률·제도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한 반부패 역량강화

-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 보상금 등) 누수실태 점검(상·하반기 각 1회)
 -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부정청구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 *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사업부서의 기록·관리사항 작성 철저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통한 부패 발생 예방
 - 권고내용에 부합하도록 담당부서의 명확한 이행 및 조치기한 준수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공공행정에 국민의 시각을 적극 반영하여 불합리한 관행 개선
 - * 부패예방을 위한 청렴시민감사관의 개선요구사항 등을 적극 반영 및 조치
- ‘민간단체 보조금 신고센터’(23.6월 개설) 활성화로 부조리 차단
 -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부조리 적발 건에 대한 엄정 조치

3) 공직기강 확립 및 갑질근절 활동 강화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기간 부패행위 등 특별감찰 강화
 - 선거관여 행위,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및 부당지시 등
 - *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비상상황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직무 감찰 활동 강화
- 본청 공직감찰팀 및 소속기관별 자체 공직기강 확립 활동 강화
 - 금품수수,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공직자 적발시 엄정 처분
- 갑질 실태조사 및 산림청 노조협약 이행을 통해 갑질근절 문화 정착
 - 갑질에 대한 인식조사,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근절방안 마련
 - * 「산림청 갑질 실태조사 개선 계획(22.10.26.)」을 참조하여 실태조사 추진
 - 노조에서 노조원의 갑질피해 대리신고시 진행사항 등을 노조에 통지
-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 추진
 -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교육 성과 제고
 -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

라. 추진일정

- '24년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통보 : 1분기
- '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참여 신청 : 1분기
- '24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 2분기
- '24년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추진 : 2분기
-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제도 실태점검 : 상·하반기 각 1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연중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 연중
- 기관별 갑질 근절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 4분기
- 부패행위 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 : 연중
- 소속기관 반부패·청렴시책 평가 : 하반기

12. 자체감사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002)

목 표

- ◇ 제도개선형 감사로 산림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 제고
- ◇ 주요 취약분야 및 공직윤리 부문의 내부통제 강화

가. 정책여건

- 윤석열정부 3년차, 산림행정의 개선·발전을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본격 지원
- 사회재난, 경제난, 취업난이 계속되어 공공기관 불신 등 대국민 신뢰 저하

나. 기본방향

- 제도개선형 감사를 통해 산림행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긍정적 변화 유도
- 주요 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공직윤리 강화로 부정부패 원천 차단
-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사후관리를 통한 자체감사활동 실효성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자체감사 내실화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 2024년 자체감사의 효율적 수행(16회, 41개 기관)
 - 종합감사(6회) : 산림항공본부(1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4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5월), 북부지방산림청(7월), 산림조합중앙회(10월), 중부지방산림청(11월)
 - 복무감사(6회) : 명절(설·추석) 전후, 하절기, 을지훈련, 연말연시, 선거 등
 - 합동감사(2회) :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3월, 9월)
 - 특정감사(2회) : 산하기관 채용실태 점검(4월), 민간단체보조금 점검(12월)
- 자체감사 내실화를 위한 실지감사 이전 예비감사 추진
 -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실지감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전조사·확인

- 감사처분 이행실태 사후관리 강화 및 반복 지적사례 사전 예방
 - 자체감사 처분이행 실태의 주기적 관리(연 2회)로 감사처분의 실효성 제고
 - 자체감사 반복지적 사례 예방을 위한 기관별(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자체교육 실시로 자주 발생하는 일선현장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개선
- 자체감사 결과의 공정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한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운영

2) 현장 애로사항 및 문제점 발굴로 지속가능한 산림행정의 변화 유도

- 현장중심 및 소통하는 감사로 불합리한 제도의 신속한 정비 지원
 - 인·허가 분야, 예산낭비 분야, 인력채용 분야, 보조금 분야, 안전분야 등
- 정부합동감사 적극 참여를 통한 국고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 일자리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지관리 등
-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 촉진
 - 감사장에 면책제도 안내문 부착, 감사 단계별 교육 및 홍보 추진
 - 예산절감, 창의적 업무수행 등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및 기관 표창

3) 주요 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인프라 개선 노력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 국고수입금·국유임산물 매각, 부적정한 물품구매 등 회계분야 감사 강화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금횡령·유용 등 적발·시정조치
- 준정부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 등의 부정·비리 집중 감사
 -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인사·채용 비리, 예산 낭비, 공금 부당사용 등 근절
- 내부통제체계 점검·관리 및 지원 강화로 사후감사체계 한계 보완
 - 내부통제 관련 규정의 모니터링으로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
- ‘감사협의회’ 운영으로 공공기관 감사기구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 감사성과, 감사사례, 감사기법, 감사의 일반기준 등을 공유
- 감사기구 인력확충 추진으로 감사활동체계 인프라 개선 노력
 -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갑질분야, 일상감사 전담인력 확충

4) 공직자 재산신고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등 공직윤리 강화

-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 재산증식 여부 등에 관한 재산심사 강화
 - 신규 취득 또는 소득 대비 증가한 재산의 형성과정 등 심사
 - 재산등록의무자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 가상자산 등록
 -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 개정('23.12.14. 시행)으로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 추가
- 부동산 관련 부서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위반사항 집중 점검
 -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임야) 신규취득 여부 등 조사
 - *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22.1.1. 시행)
- 재직·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취업제한제도 안내로 위반사항 사전 예방
 -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대한 취업불가 및 예외사항 안내(연 2회)
 - *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라. 추진일정

- '24년 연간 감사업무 추진계획 수립 : 1분기
- '감사협의회' 운영 : 연중
-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 연중
- 자체감사 반복지적사례 전파 : 연중
- 모범사례 발굴, 우수기관 및 모범공무원 표창 : 연중
- 감사처분 이행실태 점검 : 연중
- 공직자 재산신고 및 자체심사 : 연중

13.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림지능정보화 추진체계 강화

(산림디지털담당관실, 042-481-4161)

목 표

- ◇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산림 행정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가. 정책여건

- ICT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요구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범정부적 디지털 전환 추진 중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으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며, 사이버위험에 대응하고 사이버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
- 부서별 업무에 따른 개별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 간 연계가 어려워 업무 효율성·유연성 저하

나. 기본방향

- 디지털 데이터와 최신 ICT 기술의 결합으로 정부의 정보화 정책 반영 및 산림행정의 합리성과 과학성 제고
- 업무 프로세스 혁신, 사이버위험 대응 등 산림정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4차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산림청 정보화 연계 TF」 운영을 통해 산림청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 방안을 검토하여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효율화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1) [신규] 제4차 산림지능정보화 기본계획('25~'29) 수립(부제:산림정책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 제3차 기본계획 만료에 따라 차기 산림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제4차 산림지능정보화 기본계획('25~'29)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1월)
- * (법적 근거) 전자정부법 제5조,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4조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2022)에 따라 산림정보화 기본계획을 산림지능정보화 기본계획으로 수정
- 「산림청 정보화 연계 TF」를 통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 방안 마련 및 분야별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추진과제 발굴 등을 통해 기본계획 로드맵 수립(3월)
 - 산림 자원·경영·복지·보호·재난 등 산림 전 영역에 대한 디지털 전환 추진
- 최신 ICT 동향과 정부 정보화 정책 등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산림지능정보화 중기 마스터플랜 및 거버넌스 체계 수립
 - 제4차 산림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발굴 및 과제별 이행 계획 수립

2) [신규] 「산림청 정보화 연계 TF」를 통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 방안 마련

- 5개 분야(산림복지·재난·경영·자원·환경) 업무시스템 및 대국민 서비스 연계·통합을 위해 관련 부서(기관) 간 격월 회의를 통해 과제 검토
- 정보시스템 분석 및 대민서비스 설문 결과 등을 활용하여 연계·통합 방안 도출

3)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 등 단계별 추진활동 강화

- 예산 수립단계에서 정보화사업 예산요구(안)을 검토하여 정보화사업 심의 강화
-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EA(정보기술 아키텍처) 관점에서 사업계획, 발주 관리, 산출물 인수, 점검, 사전협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강화
- 정보화사업 발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독려(매월)
 - *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 등 2024년 48개 정보화사업(418억원)

4) 정보화사업 담당자 및 사업수행업체 담당자 역량강화

- 정보화사업 담당자 대상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실시
 - 최신 ICT 동향 공유 및 지능정보화 추진 방안 마련 위한 워크숍 추진(2월)
-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관리를 위한 사업 수행업체 대상 교육실시(연중)
 - 산림청 EA, 정보화사업관리 표준지침 및 정보화 관련 정책 소개 등

라. 추진일정

- 「산림청 정보화 연계 TF」 킥오프 및 분야별 과제 발표 : 1월~격월
- 제4차 산림지능정보화 기본계획('25~'29) 수립 사업 계획 마련 : 1월
- 제4차 산림지능정보화 기본계획('25~'29) 수립 사업 착수 : 3월
- 산림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 : 3~7월
 - * 본청 및 소속기관, 지체 담당자 방문 인터뷰, 자문위원·전문가 의견수렴 등
- 제1차 정보화실무위원회 개최 : 4월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공공앱(모바일) 운영실태 점검 : 5~10월
- 산림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 및 자문위원·전문가 자문 : 9월
- 제2차 정보화실무위원회 개최 : 11월
- 산림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추진계획 수립 : 12월
- '24년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 12월

14.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통한 디지털전환 촉진

(산림디지털담당관실, 042-481-4162)

목 표

◇ 산림공간 데이터 기반의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가. 정책여건

- (국정과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통한 선진국형 산림관리
 - 산림행정(공간) 데이터, 위성영상, 산림주제도와와의 융복합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산림관리와 과학적인 의사결정 지원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공간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림관리 전환
 -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이력을 공간정보(GIS) 데이터로 관리 필요
 - * (IPCC Tier 3 & LULUCF Approach 3) 국가온실가스(NDC) 활동자료 시·공간정보(GIS) 요구

나. 기본방향

-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추진기반 마련
 - (계획수립) 드론, 위성, 라이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3차원(3D) 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플랫폼 구축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디지털트윈) 산림재난, 산림경영 등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분석·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기술적 검증

다. 세부추진계획

- 1) (ISP)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5월)
 - 디지털트윈 기반의 3차원(3D) 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예산 확보

- (표준화) GIS 엔진·GIS DB 통합관리 및 공간정보 표준화 전략 마련
- (목표모델)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개체목 단위 산림관리를 위한 서비스모델 설계
- (이행계획) 산림관리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간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과 운영 거버넌스 마련을 위한 상세 이행계획('25~'27) 수립
 - * 국가산림자원조사, 선도산림경영단지, 국유림 경영계획 등 산림사업을 통한 3차원 공간정보 획득을 위한 로드맵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2) (트윈 실증) 디지털트윈 기반의 산림관리 시뮬레이션 개발 및 실증(11월)

- LX 디지털트윈 국토 플랫폼 기반의 3차원 임도관리, 산림계곡 범람예측, '23년 시범사업 연계 및 활용 시뮬레이션 적용과 검증
 - (산림재난) 산림계곡범람(1개소) 사업과 연계한 산사태 예측강화 검증
 - * 산림수계지도 및 실시간 산림유량 관측망 정보를 활용한 산사태 예측 시뮬레이션 구현
 - (산림관리) 3차원 임도 관리(1개 관리소) 및 생산재 검척, 산지전용 타당성 등
 - * 2차원 임도노선 시설물에 대한 3차원 모델링 및 활용기능 개발 등

3) (제도개선) 정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림관리 전환 법적근거 마련(9월)

- 3차원 산림데이터 수집 및 활용 플랫폼 구축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산림기본법」 개정(의원입법) 추진

라. 추진일정

-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구축 ISP 및 실증사업 계획수립 : 1~2월
- 디지털트윈 기반 산림관리 실증사업 착수를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2월
- ISP 구축사업 완료 보고 및 전문기관(NIA) 검토 : 5월
- 산림관리 디지털전환을 위한 산림기본법 개정 추진 : 9월
- 디지털트윈 기반 산림관리 실증사업 최종보고 : 12월

15. 농림위성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으로 위성시대 준비

(산림디지털담당관실, 042-481-4162)

목 표

- ◇ 농림위성 개발 완료 및 활용기술, 인프라 구축에 차질 없는 추진
- ◇ 산림분야 활용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포럼, 경진대회 개최

가. 정책여건

- 전 국토의 63%인 산림의 변화를 3일 주기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산림재난 대응 등을 위한 농림위성 개발완료 및 발사준비('24년 27.9억원)
 - * 총 사업비 : 1,169억원(산림청 301.5억원), 총 사업기간 : '19~'25년, 총 7년차 사업 중 5차년도 완료('23.12월 기준: 개발 진도율 약 90%)
- '25년 발사와 동시에 산림분야 즉시활용을 위한 활용기술(19종)의 연구개발 및 위성운영 인프라* 구축 지속 추진('24년 55.95억원)
 - * 산림활용기술 개발(27종), 운영시스템(2식) 구축, 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준공('24.6)

나. 기본방향

- 농림위성 탑재체 개발 및 본체 조립 일정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본청)
 - 탑재체 개발(2월), 위성체 본체 조립(10월), 발사전 시험검증(12월)
- 위성정보를 산림분야 즉시 활용하기 위한 산출물의 정확도 및 품질 검증, 활용 인프라의 적기 준공과 사전 운영 착수(산림과학원)
 - 활용기술(19종) 개발 및 실증(27종)을 통한 산림분야 활용검증(12월)
 -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건축 완공(7월) 및 운영 인프라 도입(8월)

다. 세부추진계획

1) 농림위성 개발사항 점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위성체(본체 및 탑재체) 조립 전 검토회의(2월) 및 선적전 검토회의 추진(12월)
 - 실제 발사되는 위성모델에 대한 점검과 발사전(M-2) 상세일정 관리

- 농림위성 촬영 및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역할 및 협력체계 정립
 - 정책협의회(국장급, 상반기) 개최 및 실무협의회(과장급, 분기별) 운영을 통한 발사 前 각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업체계 마련
 - * 농림(4호)·국토(2호) 동반발사에 따른 초기운영수행 및 활용기술 공유방안 논의

2) 산림분야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속적 추진

- 현업 및 일반국민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제공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서비스(27종)*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산림과학원, 연중)
 - * 활용서비스 : 산림재난(6종), 산림건강성(9종), 산림자원(12종)
- 실제 발사되는 위성모델*에 대한 점검과 발사전(M-2) 상세일정 관리
 - * 비행모델(FM; Flight Model) : 실제 발사되어 우주공간에서 운영되는 모델

3) 농림위성 개발·운영 인프라 구축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

- 농림위성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위성센터) 직제 구성(6월)
 - 국립산림과학원 소속의 전담 운영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14명)
- 공감대 형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림위성 교육포럼 지속 운영(분기)
 - 권역별 산림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포럼(3회) 개최 및 공모전 추진

라. 추진일정

- 농림위성 위성체 조립전 검토회의(SYS-IRR) : 4월
- 위성발사장 현지점검 및 동반발사 기술협의 : 9월
- 농림위성 위성체 선적전 검토회의(PSR) : 12월
- 정책협의회(국장급, 6월), 실무협의회(과장급, 분기) 개최
- 산림위성 교육포럼 및 산림위성활용 경진대회 개최 : 분기별

16. 디지털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공간정보 확대 및 최신화

(산림디지털담당관실, 042-481-4162)

목 표

◇ 탄소중립과 과학적 산림관리를 위한 디지털 산림지도 확대 및 최신화

* (수계지도) 경북, 강원 신규 구축 (임상도) 2차현행화 완료 (산림물지도) 낙동강 유역(10개) 확대

가. 정책여건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와 산림재난 예방 및 탄소중립 대응 필요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공간데이터 기반의 산림관리 체계 강화 필요
- 산림현황 분석·예측 등 산림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 최신화를 통한 적시성 제고 필요

* (국정과제 70-4)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공간 주제도 구축

나. 기본방향

- 탄소중립 대응과 디지털 산림관리를 위한 디지털 산림지도 제작·갱신
 -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증진하고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난 예방, 산림 수자원 증진을 위한 산림공간 기초데이터 제공
 - 공간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공간 디지털플랫폼 구현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산림지도의 확대 제작 및 최신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상도 2차 현행화 제작 완료에 따른 AI 자동갱신 및 활용확대 방안 마련

- (임상도) 탄소흡수량 확보를 위한 2차 임상도 현행화 제작 완료
 - 접경지역(810천ha)을 포함 강원, 경북, 충남 일부 현행화 및 전국 완료
 - * 임상도 2차 현행화('20~'24년, 192억원) : '20년(전남, 경남, 제주), '21년(전북, 도서지역), '22년(경북, 충북), '23년(접경지, 서울, 경기), '24년(접경지, 강원, 경북, 충남)

- (자동갱신) 농림위성 발사('25) 및 산림경영자원 수집데이터를 활용한 제3차 임상도 현행화('25~'29) 대비 AI 자동화 기술개발·검증
 - 고품질의 임상도 현행화를 준실시간 갱신하고 AI 영상판독과 라이다 등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대체하는 자동화 계획 및 시범사업(11월)
- (활용확대) 산림경영이음을 통해 수집된 경영·자원데이터 등을 중첩을 통한 활용성 증진 및 관리소 등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임상도 융·복합 서비스 방안 마련

2) 산림수자원 관리를 위한 산림물지도(3차년도) 및 응용지도 제작

- (산림물지도) 낙동강 10개 유역** 산림 수원함양지도 제작(4~11월)
 - 산림유역별 표준지를 조사(2,576개소)하여 토양의 수분분포지도 제작
 - * 산림물지도 제작('22~조기 완료 추진, 278억원) : '24~25년(낙동강유역), '26년(남한강유역) 등
 - ** 임하댐, 안동댐하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낙동상주, 위천, 구미보, 감천, 강정고령보
- (응용지도) 과학적인 수원함양기능 평가에 기반한 기능별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물지도 7종 응용주제도* 제작(12월)
 - 수원함양 우수산림 분포, 투수계수분포, 토양수분포화취약성지도 등
 - * 건조특성, 투수계수, 수분포화 상태 등을 토대로 산불, 산사태 예방업무 지원

3) [신규]산사태 예측력 향상을 위한 산림수계 수치지도 제작 지원

- (산림수계지도) 산림 수계선형 및 분수구역 공간정보제작 및 속성 DB구축
 - 유역단위 3차원 산림수계수치지도 구축 및 정밀지형정보(DEM) 구축
 - * (사업대상) 경북 및 강원일부 1,109천ha(4,500도엽), DEM(산사태취약지역)
- (유량관측망) 돌발홍수,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계곡 유량관측망 구축
 - 산림계곡 내 산림유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망 구축(50개소)
 - * 산사태 취약지역 630km²(전체산림의 약 1%) 수치표고모형 및 영상지도 제작

라. 추진일정

- 산림수계지도 신규 제작 및 산림경관지도 연계 방안을 위한 전문가 검토 회의 : 1월
- 산림공간정보 주제도 개방 및 조사구축 사업 착수보고 : 2월
- 임상도 제작공정 자동화를 위한 전문가 검토 및 심포지엄 : 3월, 9월
- 임상도, 산림물지도 제작 및 신규 산림수계지도 초기 제작 지원 : 4~11월
- 임상도 3차 현행화 계획 및 자동화 검증결과 최종보고회 : 11월
- 산림공간정보 교육(2월, 11월) 및 디지털산림 컨퍼런스 개최(11월)

17.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

(산림디지털담당관실, 042-481-1232)

목 표

- ◇ 산림탄소 통계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 확보
- ◇ 산림경영활동에 대한 NDC 감축이행실적 관리체계 강화

가. 정책여건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산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통계정보관리체계 요구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개정('23.10.)에 따른 산림경영 활동정보 관리체계 강화

나. 기본방향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과 인위적인 산림활동으로 인한 NDC 이행·달성 점검체계 마련
- 국·공유림 NDC 이행실적 관리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산림사업량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활용성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구성

다. 세부 추진계획

1) 산림탄소 흡수량 산정 및 기초 통계서비스 개발

- 탄소저장고 중 연도별 기초데이터가 확보된 임목바이오매스를 대상으로 산림탄소 계정체계 프로토타입 개발·적용
 - * '24년 인벤토리 계정 기능 개발 및 산불피해강도 추정을 위한 HW·SW 도입 병행
- '23년 구축한 산림임업통계연보('68~'22)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산림변화에 대한 통계서비스 구축
 - * 임목축적, NDC 이행실적 등 산림탄소 통계 관련 시계열 통계결과 및 경향 도출

2) NDC 이행실적 관리를 위한 산림자원 순환경영활동 지원체계 개편

- 산림경영계획 중심의 산림경영활동정보 통합 재구성

기존 체계(AS-IS)	개선 체계(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사업 중심의 데이터 관리 · 차기별 임·소반 이력관리 미흡 · 경영-자원간 사업종/작업종 관리기능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C 산림활동 중심의 데이터 관리 · 공간정보 기반의 차기별 임·소반 이력관리 · 체계화된 사업종/작업종 관리

- 산림사업량 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쉽게 개선하고, 지자체 공무원, 산림기술자도 공동 활용하도록 개방된 정보체계 구축

기존 체계(AS-IS)	개선 체계(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 사업 등 신규 품셈 미반영 * 공익림가꾸기 시공사업비, 자재조사 용역 사업비 산출 기능 부재 · 운영환경이 분산되어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및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국유림 업무담당자 중심의 활용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성) 산림정책에 따라 새로 추가·반영된 사업의 원가산정 지원 · (정확성) 일관된 관리체계로 고도화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활용성) 국·공·사유림 사업 관련자가 공동 활용하는 체계 마련

* 조림·숲가꾸기 설계비 산정, 매각대금사정 등 18종

3) 공간정보 기반의 관리체계 및 사용자 교육체계 강화로 시스템 활용성 제고

- (공간정보) 경영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임·소반 공간정보 이력관리 개선
 - 사용자경험을 고려한 공간정보서비스를 구성하고 GIS엔진 운영환경 개선
- (시험 및 교육용) 운영환경과 동일한 시험환경 및 교육서비스 운영체계 마련

라.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유관부서 및 기관(산림정책과, 산림자원과, 국유림경영관, 국립산림과학원) 검토 요청 : '23. 11월~'24. 1월
- 착수보고회(3월), 중간보고회(설계검토 워크숍, 9월), 완료보고회(12월)
- 산림경영정보 실무협의회(TF) 구성 및 운영 : 2~12월
 - 산림자원과와 협업을 통해 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한 성과 도출
- 정보시스템 구축결과 운영 점검 : '24. 11월~'25. 1월

18. 디지털 기반 국가 산림경영활동 관리체계 강화

(산림디지털담당관실, 042-481-1232)

목 표

◇ 파편화된 산림경영활동 정보의 완전성 확보로 데이터 신뢰성 강화

가. 정책여건

- 기존 정보체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NDC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국가산림자원 관리체계의 전환 요구
- 국가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고려한 ‘산림경영자원 수집관리체계’ 구축(’22~’24)과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23~’26)으로 산림경영활동 관련 정보 수집체계 통합 전환 계기

나. 기본방향

- 국·공유림 정기보고체계 운영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NDC 이행실적 관리 효율화 및 수집창구 일원화를 통한 공간정보 실적관리 강화
- 정보시스템 통합·고도화로 파편화된 실적 정보의 완전성 확보 및 실사용자의 업무경감 및 편의성 증대

다. 세부 추진계획

- 1) ^[신규](NDC 실적관리체계)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에 대한 통계·실적 보고체계 운영 조기 정착
 - 국·공유림 통합 정기보고체계의 통합 운영으로 산림경영활동에 대한 NDC 이행실적 관리 효율화(3월)
 - 산림자원 분야(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정기보고 작성을 엑셀 취합 방식에서 DB 수집 방식으로 전환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 산림경영이음(산림경영자원 수집관리시스템) 본격 운영으로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사업 실적관리 강화(2월)

- 산림경영(8종), 산림자원(26종) 수집·관리체계 운영

사업 구분	대상 사업명
산림경영 (8종)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 사방, 치유의 숲, 산불방지 안전공간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자원조사 (26종)	국가산림자원조사, 도시국가산림자원조사, 미세먼지저감 산림자원조사, 산림입지토양도, 임상도, 산림물지도, 사유림매수예정지조사, 대부 사용허가 현장조사, 대부 사용허가 실태조사,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숲길 관리대장,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도시숲 현황조사,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민북지역 산지관리 실태조사, 토석채취 이용 실태조사, 토석채취 허가 현황, 훼손지(불법훼손의심지) 실태조사, 산불취약지 조사, 산불피해지 조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땅밀림 실태조사, 가리왕산 실태조사, 정맥 실태조사, 백두대간 실태조사, 시험림 현황조사

- 기존 다양한 접속 경로를 단일 운영환경으로 개편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국유림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	(통합) 산림경영자원 수집관리시스템 (별칭, 산림경영이음)
공·사유림	(공무원) 사유림업무지원포털, 서울행정정보시스템 (용역수행사)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	

2) [신규](공·사유림 정보관리) 사유림경영DB 수집체계 운영 전환(1월)

- (정보체계) 서울행정정보시스템 → 산림경영이음(산림경영자원수집관리시스템)
 - * 별채 인허가는 민원사무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정보체계에 의해 처리돼야 하므로 서울행정정보시스템의 입력정보를 산림경영이음으로 연계 처리
- (역할변화) 시·도 DB입력원은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를 중점 담당하고, 산림사업 결과는 각 사업담당자와 용역사가 직접 입력
 - (사업담당자) 용역사가 등록한 사업 결과를 확인 및 보완
 - (시·도 DB입력원) 사업담당자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사가 등록한 사업 결과를 확인 및 보완
 - * 소재지, 면적, 사업비, 공간정보 등 필수 데이터의 등록 여부 확인
- (품질평가) 산림자원과와 공동으로 산림경영이음에 등록된 조림·숲가꾸기 등 사업실적과 공간정보 등록률을 지표로 평가체계 운영

3) (디지털 숲가꾸기) 산림경영활동 및 산림조사 결과 DB구축(5~12월)

-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전국 지자체 산림경영활동(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자료 수집 및 공간 DB 구축
 - '23년 산림경영활동 메타정보 및 공간정보 수집·DB구축(약 24만건)
 - * 사유림경영DB 조립, 숲가꾸기 사업 중 관리 대행, 감리 공간정보 등록사업 제외
- 산림변화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산림조사 용역의 과거 사업 결과물(조사지 위치 좌표, 조사 야장 등) 데이터 수집 및 공간 DB 구축
 -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조사,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모니터링, 전통사찰 주변의 산림 실태조사 등에 대한 결과물 수집
 - * 현황조사, 매목조사, 수고조사, 산림소생물권조사야장 등의 원본DB와 조사지점 좌표 등 수집

4)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용지원 확대

- (교육) 시책교육, 상시·순회 교육을 통한 사용자 역량 강화
 - 산림교육원, 정보화교육장(대전),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 사용자 맞춤 교육 교재, 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응용시스템 관리교육, 시스템별 매뉴얼 최신화 및 데이터 정비(연중)
- (헬프데스크) 신규 운영하는 정보체계 운영 활성화 지원
 - 지방청, 시·도 담당 대상 자원분야 정기보고 MRV정보체계 등록 안내
 - 산림경영 및 자원조사 관련 사업 결과에 대한 산림경영이음 등록 안내

라. 추진일정

- 사유림경영DB 보조금 집행·현장점검 : 1월, 7월
- 산림경영이음(산림경영자원 수집관리체계 구축 3차) 사업 추진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사전협의 추진 : '23.12월
 - 착수보고회(4월), 중간보고회(설계검토 워크숍, 9월), 완료보고회(12월)
- 산림경영이음, 사유림경영 수집방법 변경 안내 교육 : 매 분기
- '24년 디지털 숲가꾸기 사업(5차) 추진 : 5~12월
- 스마트야장 등 운영을 위한 노후 모바일 장비 교체 보급 : 6~9월
- '24년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 : 연중

19. 디지털전환 뒷받침을 위한 안정적 전산자원 운영

(산림디지털담당관실, 042-481-4168)

목 표

-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지원
- ◇ 노후 전산자원 교체로 장애 예방 및 최신 업무환경 제공
- ◇ 정보시스템 장애 즉각 대응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안정적 운영

가. 정책여건

-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림관리 고도화 필요 증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해 전문성·효율성·안전성을 갖춘 업무환경 요구
- 대국민서비스의 장애는 국민의 국정신뢰도와 직결됨에 따라 전산 자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점검·정비를 통한 관리 중요성 증대

나. 기본방향

- 보안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립 서버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 서버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서비스
- 스마트한 업무환경 유지를 위한 노후PC 등 전산장비 교체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체계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고도화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G클라우드 이전 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요조사(2월) 및 '25년 교체·고도화 등 예산 확보 지원
- 노후 정보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장애 예방 및 보안 약점 해소(연중)
* (대상) 국가생물종정보시스템, 대국민포털시스템, 산림재난통합관리시스템 등
- 독립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 (대상) 산림항공지원포털시스템, 산림공간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API시스템 등

2)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 및 업무지원을 위한 행정망 장애 대응 관리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장애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 강화
 - 본청 및 소속기관 네트워크(전산장비) 등 정기 및 현장 점검 실시
- 장애발생 신속 대응을 위한 산림청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 교육(2월)
 - 문제상황 발생 시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 유관기관 신속 공유 및 장애 복구를 위한 '긴급대응반' 가동
- 장애예방을 위한 소속기관 등 노후 전산장비 관리 강화
 - 네트워크 장비(내용연수 등) 목록화 및 우선순위 정리를 통해 순차적 교체 추진

3) 데이터 기반 산림행정을 위한 최신 업무 환경 제공

- AI,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청·소속기관의 노후 전산장비(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를 교체·보급
- 산림청 전직원 최신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 본청·소속기관 MS 제품군(Win10, Office2022) 통합 라이선스 확보
- 문서 호환성 향상을 위한 문서 작성기(한컴오피스 2022) 보급

4) 국가융합망 전환으로 안정적 통신망 운영

- 행정안전부 국가융합망추진단과 상시 업무 협조체계 유지
- 안정적 통신망 운영을 위한 회선 및 보안관계 시스템 운영
- 신규 회선 개통 및 속도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업무 협조
- 산림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서비스수준협약(SLA)* 갱신(12월)
 - *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정보보호 관리, 백업 관리 등 서비스 품질 보장

5) 본청 및 소속기관의 산림행정 효율화 서비스 지원

- 체계적인 온-나라 문서시스템 및 G드라이브 사용자 교육 등 지원
-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으로 산림청 직원의 행정시스템 이용 불편 개선에 기여
- 지식포탈시스템(e-푸른샘)의 운영·관리를 통해 다양한 내부고객의 요구사항(게시판, 설문조사, 일정관리, 산림지식 관리 등)의 신속한 처리로 직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조직운영 지원

라. 추진일정

- 본청 및 소속기관 네트워크(전산장비) 등 정기(현장) 점검 및 교육 : 연중
- 노후 전산장비(PC, 노트북, 모니터 등) 교체 추진 : 연중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점검 및 훈련 지원 : 연중
- 헬프데스크(help desk) 및 지식포탈시스템 운영 : 연중
- '24년 산림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착수 : 1월
- '24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수요(2차) 제출 : 1~2월
- '24년 관리원 개별입주 대상 정보자원 수요조사 : 4~5월
- 업무용 소프트웨어(MS-GAS 2021, 한컴오피스 2022) 계약 추진 : 10월
- '25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수요 제출 : 10~11월
- '25년 산림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서비스 수준 협약(SLA) 갱신 : 12월
- 노후·독립 정보시스템의 G클라우드 전환 예산 확보 지원 : 연중

20.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활용기반 조성

(산림디지털담당관실, 042-481-4168)

목 표

- ◇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및 사전 차단을 위한 정기적이고 내실있는 정책 실현

가. 정책여건

- 산림정책 수요 증대 및 다양화에 따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늘어나는 데이터 활용 증대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의 중요성 부각
- ICT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최소화하고 선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정책 필요

나. 기본방향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기반 조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등 정비, 실태조사 실시
 -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 접근통제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취급자 사례교육 강화로 개인정보보호 전문성 및 역량 제고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상·하반기)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관리 및 점검으로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
 - 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기반 조성

- 변화하는 IT 신기술 환경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등 정비,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사 실시
 - *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고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패널티(과태료 등) 부과
 -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 접근통제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 * 역할별 계정관리, 네트워크 격리 및 접근통제, 가상 환경 보안 솔루션/패치 등
 - 영향평가 등 안전성 확보조치 대상 시스템을 확대 관리(11종→15종)(1월)
 - * (추가) 산림경영자원 수집관리체계, 국유림관리, 임업직불제통합관리, 산림재난통합관리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품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사고 예방 강화
 - * PbD(Privacy by Design) :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설계

2)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 및 보호 인식 제고

-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 교육 실시(연중)
 - 개인정보 관련 법규 등 최근 법 개정사항 및 법규 준수사항 교육
 - 침해·유출 등 피해사고 및 오·남용 사례, 필수 이행사항 등 교육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상·하반기)
 - 소속기관 등 관련 기관에 캠페인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배부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11.9.30.)을 기념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

3)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컨설팅 추진

- 본청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자체 진단(4~6월)
 - 관리체계, 기술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도출된 개선방안에 따라 각 시스템 별 기능개선 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와의 적합성 검토 등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내부 규정 정비(4~6월)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및 점검

- 월 1회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를 통한 관련법규 준수 및 유출 사고 대비
 - (점검항목) 사용자계정, 장소(IP), 시간, 수행업무, 정보 주체의 정보
 - (관리점검) 월 1회 개인정보 접속기록 분석 등 관리체계
 - (보관기간)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정책 수립 및 분기별 운영현황 점검
 - 각 시스템 별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현황 분기별 점검

라. 추진일정

-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내부규정 개정(안) 검토 및 심의 : 1월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및 각 시스템 반영 : 1월
- 개인정보 파일 신규등록·변경·파기 등 일제정비 추진 : 4월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및 관리 감독 : 반기별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현황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 4월
-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 상반기
- 전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추진 : 1~10월
-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순회교육 : 연중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 상·하반기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 10~12월
- '25년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작성 : 9월
- 개인정보 접근 권한자의 접속 이력 / 접근 권한 점검 : 매월 / 분기별

21. 정보보안 체계 강화로 침해사고 및 정보 유출 차단

(산림디지털담당관실, 042-481-4125)

목 표

- ◇ 산림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보호체계 확대·강화
- ◇ 산림행정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예방·대응활동 강화
- ◇ 보안관리 체계 전문성 강화 및 정보보안 인식·역량 제고

가. 정책여건

- 모든 데이터의 연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추진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공격의 지능화·다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체계 필요
-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를 시도하는 국가배후 해킹조직 활동 지속 증가

나. 기본방향

- 지능형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체계 개선 및 강화
- 침해사고 예방 기반 구축 및 대응 활동을 통한 사이버공격 대응력 확보
- 전직원 사이버보안 의식 내재화 및 정보보안 실천 생활화 분위기 조성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체계화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빈틈없는 보안관제 및 취약요소 점검활동 강화

- 산림사이버안전센터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2월)
 - 분청↔소속·산하기관 간 관제 연동 강화로 사이버보안 공백 최소화
 - * 보안관제망 연동 누수 상시 점검 및 국가정보원 연계 강화

-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체계적 관리로 보안 사각지대 발생 차단
- 사이버 위협 징후 및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대응 및 전파
- 민간 클라우드 활용 서비스(도서관리서비스) 대상 ‘클라우드 보안관제’ 시범 추진
-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대상 보안점검 및 사이버위협 예방활동 실시
 - 정보보안 지도활동 및 감사·이행점검 등 취약요소 발굴 및 개선
 - 장비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및 복합기 보안관리 상시 점검

2) 사이버보안 경계 개선 및 정보보호 기반 강화

- 제로트러스트 시범 도입 등 정보시스템 보안 경계 재설계(7월)
 - 기존 보안 경계를 분석하여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시스템 보안 설정 (접근통제, 통합인증 등) 변경을 통한 안전성 강화
 - 보안장비 및 솔루션 운영환경 업데이트 및 노후장비 교체
 - * 통합로그분석시스템 운영체제·DB, 방화벽 등
- 소속기관 망분리 환경 구축 확대로 데이터 안전성 확보(5~10월)
 -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로 해킹 및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사전 차단
 - 2차 소속기관에 대한 망분리 사업 지속 추진
 - * 서부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및 산림항공관리소 대상
- 소속기관 무선침입방지체계 구축으로 비인가 무선 접근 차단 경계 확대(7월)

3) 전 직원 정보보안 역량 제고 및 실천 생활화

- 전직원이 사이버보안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보안교육 강화
 - 전 직원 대상 보안교육 확대(1회→2회, 반기별)
 - 소속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림청 정보보안 교육자료 작성 제공(1월)
 - 산림교육원 시책교육(산림정보보안과정) 교과목 개편 등 교육 내실화(4월)
- 일반 직원 및 보안담당자용 정보보안 가이드 신규 제작·배포(1~2월)
- 사이버보안에 대한 직원 참여도 제고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마련·실행
 - 매월 정보보안 카드뉴스 제공(e-푸른샘 게시판)
 - 분기별 정보보안 퀴즈풀기 이벤트 진행 및 상품 제공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참여 및 취약점 조치 현황 점검 및 조치 독려(매월)

4)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체계 전문화를 위한 업무 개선

- 용역사업 담당자 대상 보안관리 교육 및 매뉴얼 제작·배포(1~2월)
 - 용역사업 추진 시 보안관리 절차 및 체크리스트 제공
- 정보화 용역·위탁사업자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사전·사후 점검 강화
 - 용역사업의 주요 보안 취약점 사전 도출을 통해 보안사고 예방
 - 사업 담당자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점검
 - 기관망과 용역업체 간 망 점점 집중 점검 및 조치
- 사전 보안성 검토 누락 사례 없도록 대상 사업 목록 관리

5) 전방위 예방체계 운영 및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 제고

- 산립정보시스템의 선제적 예방점검으로 보안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 기관 운영 웹·앱 서비스 자체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연2회)
 - * 대국민서비스 모바일 앱(2종) 취약점 점검 대상 범위 확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연계하여 입주 시스템 취약점 점검(연1회)
 - 웹서비스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점검 운영 실시(상시)
- 지능화·고도화되는 위협 대비 사이버 위기 대응훈련 전문화
 - 전직원 대상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모의해킹메일 훈련 실시(5월)
 - * 훈련 결과 정보보안감사 가점 부여로 직원 관심도 제고
 - 침해사고 및 정보유출 대비 모의훈련(DDoS·도상·침투훈련) 강화(5월)
 - *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보안관제 정책 및 침해사고 대응에 활용
- 긴급상황에서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위기대응 매뉴얼 명료화(4월)
 - 상황 및 주체별 조치사항 및 비상연락망 등 쉽게 찾고 이행할 수 있도록 명료화
- 보안담당자 및 사이버안전센터 인력의 정보보안 세미나, 국정원 실무 교육 참여 등 최신 기술 및 동향 습득으로 보안역량 제고

라. 추진일정

- '24년 산림청 정보보안 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 1월
- 정보화 용역사업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배포 : 1~2월
- 산림교육원 정보보안 교육과정 운영 : 4월
- 백신프로그램 라이선스 등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갱신 : 3월
-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 정보보안 감사 실시 : 3~5월
-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 실시 : 5월, 10월
- 자체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 5월
- 2차 소속기관 망분리 환경 구축 : 5~10월
- 소속기관 비인가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신규 구축 : 7월
- 정보화용역사업장 정보보안 지도점검 : 8~9월
- 상반기 웹해킹 대응훈련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 5~7월
- 을지훈련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도상훈련 실시 : 8월
- 하반기 웹해킹 대응훈련 및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 8~10월
-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현장 실사 : 10월
- 본청 주요공간의 도청기기 탐지를 위한 대도청 측정 실시 : 연 4회 이상
- 전 직원 대상 보안퀴즈 이벤트 운영 : 연 4회(분기별)
-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 및 위협 대응 : 상시
- 소속·산하기관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 상시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적합성 등 자체 검증 실시 : 상시

22. 데이터로 소통하는 대국민 포털시스템 운영

(산림디지털담당관실, 042-481-4125)

목 표

- ◇ 국민의 관심 및 활용도를 고려한 정보 제공 및 데이터 현행화
- ◇ 사용자 접근 편의성 제고 및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가. 정책여건

- 정보 개방과 공유, 정부와 국민의 소통과 협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확대
- 이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변화

나. 기본방향

- 산림 정책 홍보 및 유용 정보 제공을 위한 대국민 포털 적시성 강화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한 대국민 포털 개인정보 보호
- 웹사이트 정기 점검 및 품질관리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한 메뉴 개편

- 데이터 현행화 정기 점검 및 현행화 미흡 메뉴의 폐지 검토(분기)
 - * 현행화 실적 통보 및 부서 의견 수렴(1차) → 폐지 또는 개편 검토(2차)
- 메뉴별 방문자 수 분석으로 관심도 낮은 메뉴 폐지 또는 개편 추진(1분기)
- 월별 검색 키워드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콘텐츠 노출·운영의 유연성 제고
- 지도 표기, 자생식물 영문명 표기 오류 등 정기 점검(분기)
 - * 일본, 중국 관련 용어 사용 여부 점검

2) 사용자 이용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대국민 웹 서비스 제공

- 산불 및 산사태 등 시기별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콘텐츠를 메인 화면 상단 표출, 데이터 현행화로 신속한 정보 제공
- 웹 접근성 인증 갱신으로 누구나 차별 없는 홈페이지 콘텐츠 접근 및 웹서비스 이용환경 제공
- 사용자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별 접속 오류 상시 점검 및 웹사이트 응답시간 최적 상태 제공

3) 대국민 포털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유·노출 방지

- 대국민 포털 콘텐츠 개인정보 유·노출 여부 점검(1분기)
- 개인정보보호 접근 권한 및 접속 이력 점검
 - * 접근 권한 정기 점검표를 통한 접근 권한 정책 등 주기적인 점검(분기)
 - * 관리자 페이지에서 접근 권한자의 ID, IP, 작업 이력 등에 대한 점검(매월)
-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우수 웹사이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증」 유지*
 - * 개인정보보호인증(ePRIVACY PLUS) : 인증 유효기간('23.10~'26.9) 중 인증수준 유지 여부 심사(매년, 개인정보보호협회)

라. 추진일정

- 데이터 현행화 및 방문기록 분석을 통한 메뉴 개편 : 1분기
- 개인정보 접근 권한자의 접속 이력 및 접근 권한 점검 : 매월, 매분기
- 웹사이트 콘텐츠 현행화 점검 및 정책정보 확인주간 운영 : 2월, 5월, 8월, 11월
-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 5월 * 인증기간 : '23.5.28.~'24.5.27.
- 웹 호환성, 최적화, UI·UX 점검 : 7~9월
- 산림청 등록단체 홈페이지 지도 표기 등 오기재정보 점검 : 3월, 6월, 9월, 12월
- 개인정보보호인증 마크(ePRIVACY PLUS) 유지 인증 : 10월
 - * 인증기간 : '23.10.1.~'26.9.30.

23.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기반 강화

(산림빅데이터팀, 042-481-1204)

목 표

- ◇ 데이터 통합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유 전면 확대
-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일 잘하는 산림청' 구현

가. 정책여건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플랫폼 구현을 통해 '똑똑하게 일하는 정부'로 행정 패러다임 변화
- 데이터기반행정의 안정적 정착 및 내재화를 위한 범정부 「제2차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4~'26)」 수립

나. 기본방향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우리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공유
- 업무담당자의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적극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1)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기반 구축

- **[신규]**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가칭 '산림데이터포털') 구축
 -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58개 시스템 연계)
 - * 1년차 사업비 : 1,798백만원, 사업기간 : '24.4~12월

- **[신규]**법정부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 구축 지원
 - 선도사업 형태로 재난 안전분야 데이터 보유 기관인 산림청 우선 구축
 - * 기관의 원천데이터를 기관 간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 ** (사업비)46억, (사업기간)'23.11월 ~ '24.5월, (참여기관)행안부, 산림청, 국토부, 소방청, 환경부 등, (공유 시스템) 공간정보, 산불상황관제, 산사태정보 시스템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공유·활용 대상 확대
- 기관 내 공동활용데이터 발굴 및 시스템 등록
 - 기관간 공동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발굴하여 공동활용 데이터등록관리 시스템(행정안전부) 등록
 - 데이터 실무협의회를 통해 산림분야 공동활용데이터 지정 검토

2)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활용 환류 강화

- 국민체감형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분석
 - 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분야별 정책활용 가능성, 효과성 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체감형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 발굴된 분석과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기관의 의사결정, 정책 수립 및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 **[신규]**분석기획, 분석 결과 검증 등 자체 분석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행안부 주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컨설팅 서비스 지원사업' 활용

3)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조성

- 데이터 분석·활용 수준 진단 및 역량 개선계획 수립
 - 역량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여 역량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이행
 - * 시책교육(상반기), 빅데이터 전문가 특강(연 2회),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등
- 각 기관 및 부서에서 추진한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강화
 - 자체평가 시 데이터 분석·활용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관심도 제고 및 데이터 활용 문화 조성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우수 유공자 선정 및 포상

4) 산림빅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융합 및 개방 혁신

- 산림과 타분야 간 데이터 융합 등 산림빅데이터(민간) 플랫폼의 데이터 생산·유통 촉진
 - 3개 분야(산림재난, 산림복지, 산림자원) 산림데이터 생산기업(15개) 활동 지원
 - * 데이터 이용건수 : ('22년) 14,667건 → ('23년) 18,800건 → ('24년) 22,560건 목표
-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추가 발굴
 - 산림분야 신산업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중견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스타트업과의 매칭 및 지원으로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 * ('23년 사례) 산림청-LG-스타트업(자생식물 키트 개발 진행중), 기간 : '23.11월~'24.4월

라. 추진일정

-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 : 3~12월
- 공동활용 지정등록 데이터 수요조사 및 등록 : 2~5월
- 국민체감·현장중심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분석 : 1~11월
- 산림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사업 : 1~12월
- 산림분야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추가 발굴 : 1~6월
- 데이터 역량진단 및 역량개선계획 수립 : 1~4월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 실시 : 9월
- 빅데이터 전문가 특강(연2회) 및 시책교육(1회) 추진

24. 과학적 산림행정 지원을 위한 통계 개발·개선

(산림빅데이터팀, 042-481-4166)

목 표

◇ 다양한 산림정책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통계 개발·개선

가. 정책여건

-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 개발 및 정확성·신뢰성 요구
- 산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제3차 산림통계 기본계획('23~'27) 시행

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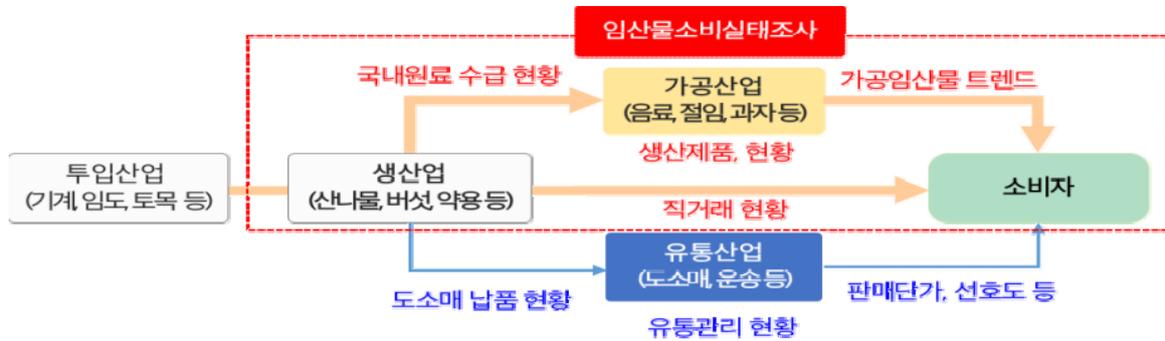
- 과학적 산림정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 생산체계 구축
- 통계조사의 시의성·신뢰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통계조사 추진
- 산림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조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과학적 산림행정을 위한 신규 통계 개발·조사 추진

- **[신규](온실가스통계)**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및 통계 개발
 - 시군구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표본점 확대
 - * 시군구 단위 최소 표본점 배치를 위한 국가산림자원조사 표본점 확대(증 221개)
 - '25년부터 온실가스통계 매년 산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신규](열환경조사)** 도시숲의 다양한 효과성 파악을 위한 조사 및 통계 개발
 - 도시숲이 주변에 미치는 열환경 저감 효과 기초정보 확보
 - 도시숲의 유형·크기·조성시기에 따른 효과 분석 시행
 - * 지역·대상지별 5년 주기 순환조사를 통한 도시숲의 효과성 분석
 - 중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숲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신규(임산물소비실태조사)** 임산물 생산·가공·소비자 간 흐름을 조사하여 임업소득 구조 개선 등 임가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예산확보필요



2) 통계 시의성·정확도·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사체계 개편

- **(임산물생산조사)**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당해연도 공표 잠정치 추진
 - 주요 품목* 대상 당해연도 상·하반기 잠정치 공표(기존 전년도 수치 공표)
 - * (상반기) 취나물, 고사리, 두릅, 표고 (하반기) 밤, 대추, 호두, 뽕은감, 오미자
 - 조사 정확도 제고를 위한 조사방식 변경* 및 통계 관리 강화
 - * 소속기관-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조사 →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조사
- **(임가명부통합)** 임가명부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조사 추진
 - 임가 조사(5종*)에 대한 중복 조사 방지 및 조사 효율성** 도모
 - * 임산물생산조사,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임산물재배실태조사
 - ** 조사별 공통조사문항(거주지, 재배품목, 생산실적 등) 설계 및 활용
 - 각 조사 결과 통합관리 및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지원
- **(국가산림자원조사)** 제8차 국가산림자원조사('21~'25) 4차년도 조사 추진
 - 기존 900개 표본점(4차년도 조사지역) 외 87개 시군구 조사 확대
 - * 서울 영등포구 등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통계 산출을 위해 추가된 표본점(221개) 조사
 - 추가 표본점 조사 결과 분석('24년) 및 산림기본통계 반영('25년)

시도	추가표본점	시도	추가표본점	시도	추가표본점
서울	54	울산	8	전북	5
부산	32	세종	-	전남	9
대구	6	경기	61	경북	1
인천	18	강원	5	경남	1
광주	4	충북	5	제주	-
대전	5	충남	7	합계	221

3) 산림정책 통계 활용성 향상을 위한 지수 작성 및 통계 개선

- 임업경영 주요 지표 관련 사용자 이해도 향상을 위한 지수 개발
 - 임가소득·지출·자산·부채, 임업경영전망, 임산물생산비 등
 - * (참고) 지수(index) : 기준이 되는 시점(특정 제도 시행)을 100으로 하여 상대적 비율(103, 98 등)로 표현하는 방법(물가지수 등)
- 산림기본통계 작성 대상 확대 및 산림면적 산출 방법 개선
 - 산림과 도시숲 등의 산림면적, 임목축적을 통합한 통계 작성
 - * 산림자원조사와 도시산림자원조사 조사 결과 통합 작성
 - 행정자료 기반 산림면적을 공간정보(임상도)를 활용해 산출^{시범}
 - * 임상도 현행화에 따른 산림면적 시범 분석 및 통계변경 추진

라. 추진일정

- 산림 및 임업통계조사 추진 : 연중
 - 국가산림자원조사,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조사 등
- '23년 기준 임산물 소득조사 결과 공표 : 1월
- '23년 기준 산림산업조사,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표 : 5월
- '23년 산림통계담당자 워크숍 실시 : 6월
- '23년 기준 전국산주현황 공표 : 7월
- '24년 임산물생산조사 잠정치(상반기) 공표 : 7월
- '23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공표 : 10월
- '23년 임업통계조사 임가 간담회 : 5~11월
- '24년 임산물생산조사 잠정치(하반기) 공표 : 12월

25. 고품질 통계 생산 및 정책활용성 향상

(산림빅데이터팀, 042-481-4166)

목 표

- ◇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품질진단 등 사업관리 강화
- ◇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산림임업통계플랫폼 운영

가. 정책여건

- 통계 기반 정책 활용 요구 증가에 따른 고품질 통계 생산 요구
- 통계자료 대내외 활용도 증가에 따른 통계 분석 자료 제공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림청 국가승인통계(13종)에 대한 지속적 품질관리
- 이용자 중심의 통계 활용 지원을 위한 원자료 관리 및 개방 확대
- 산림임업통계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통계 제공 서비스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승인통계(13종)에 대한 지속적 품질관리 및 확대 노력

- 우리 청 국가승인통계 13종에 대한 체계적 사업추진 및 관리
 - 정기·자체 통계품질진단 기준에 맞는 철저한 사업 관리 실시
 - 정기통계 품질진단 대상 통계 집중관리
 - * 대상통계 : 산림기본통계,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생산조사
 - 산불통계 등 사업부서 통계 4종에 대해서도 품질진단 교육·지원
 - * 품질진단보고서 작성 및 품질관리 방안 등
- 통계품질진단(통계청) 체계에 따른 통계품질 관리 매뉴얼 작성·교육
 - 정기/자체 통계품질진단 관련 실무 매뉴얼 작성
 - 국가승인통계 대상('23년 13종) 통계품질진단 대상자 교육(2월)

- 통계(실무)협의회를 통해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품질 제고
 - 통계 변경 승인, 통계 공표 등 통계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통계 품질 제고
 - 자체통계 품질관리 대상 통계에 대한 계획·진단 결과 검토를 통한 품질 제고
- 임가간담회, 현장모니터링 등 임업통계조사 현장방문 및 소통 강화
 - 밤, 뚝은감 등 주요 품목 재배임가 현장방문 및 정책 간담회 개최
 - *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임산물생산조사 등
 - 당해연도 임산물 생산 전망 등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장방문 시 유관기관(국립산림과학원 등) 참여 확대
 - * 임산물 재배 관련 애로사항(피해현황 등), 작황 등 산림산업 경제동향 분석 시 활용

2) 통계수요자의 통계자료 이용·활용 등을 위한 지원 및 홍보

- 산림임업통계플랫폼을 통한 통계자료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국가산림통계, 임업통계 등 조사별 인포그래픽 및 통계자료 제공
 - * 통계 설명 인포그래픽을 담은 통계 노트 제작·배부(임가 5천개, 유관기관 1천개)
 -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통계자료 시각화 등 서비스 개선
 - * 통계설명 인포 제공, 지역·통계별 분석 그래프·차트 등 타 기관 모니터링
 - ** 국가승인통계, 통계연보 등 주요 통계 통계표 제공방법 개선을 통한 접근성 제고
 - 원자료 개방 대상 통계* 확대, 통계 활용 목적 등 이용자 분석**
 - * 임산물생산조사, 산림기본통계, 산림산업조사(3종) 등 국가승인통계 원자료 모두 개방
 - ** 원자료 다운로드 시 간단 설문(사용자 정보, 활용 목적 등)을 통한 통계 활용성 분석
-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를 통해 산림자원조사에 대한 관심 확대
 - 학생부(산림관련학과 재학생), 일반부(산림조사 관계자)로 대회(5월)
 - * 국가산림자원조사 방법 조사, 전자조사표를 활용한 조사방법 소개 등
 - 경진대회 참여도 제고를 위해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상장·상금 지급
- 국제기구 대응 산림자원 통계항목 분석 및 산림자원보고서 작성(10월)
 -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의 산림자원 통계 대응을 위한 통계항목 분석
 - * 국제협약 :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 ** 국제기구 : FAO, OECD, 몬트리올 프로세스(SFM), 지속가능한 발전(SDG) 등

- 산림 관련 통계조사의 국제적 관심 증가에 따른 교류 확대
 -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림의 역할 등 국제모니터링 추진
 - * FAO 주관 FRA(세계산림자원평가) 워크숍 참석 및 기후변화 대응 사례 현장 견학
- 산림·임업통계 분석·활용 경진대회 개최(6월)
 -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 및 임업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경진대회 개최
 - * 대학교-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연계하여 참여도 제고 및 상장·상금 지급
- 산림통계 50년 역사와 미래에 대한 주제로 백서 발간
 - 일제강점기 시절 산림통계 작성 사항과 개청 후 정책과의 관계 등 정리
 - * 우리 청 최초 국가승인통계 지정('75 산림기본통계) 이후 50주년('25년) 기념
 - 통계백서 발간 계획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2월)
 - * 통계백서 자문단(내·외부) 구성(3월) 및 자문회의 추진(2회)

라. 추진일정

- 통계품질진단 대상자 교육 : 2월
- 산림통계 백서 발간 계획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 : 2월
- 산림통계담당자 교육 : 4월
- '24년 국가산림자원조사 경진대회 : 5월
- '24년 산림·임업 통계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 6월
- 국가통계 관련 국제교류 추진 : 4~7월
 - 국가별 방문기관 선정 및 사전준비 : 2~3월
- 산림임업통계조사 현장방문(세부 사업별 2회 이상) : 연중

26. 수요자 중심의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산림빅데이터팀, 042-481-8809)

목 표

- ◇ 공공데이터 양적개방에서 국민·기업이 원하는 질적개방 확대
- ◇ 산림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및 고도화

가. 정책여건

- 공공데이터 양적 개방에서 국민·기업이 원하는 질적 개방으로, ‘창업 중심’에서 ‘융합산업 중심’으로, ‘수직적 제공·관리 기반’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공유 플랫폼’으로 패러다임 변화
- 데이터 3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경제 활성화 촉진 및 데이터 유통·거래 등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나. 기본방향

- 제4차(’23~’25)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산림 데이터 전면 개방
-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산림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확대
- 산림공공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표준관리로 데이터 신뢰성 확보와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공공데이터 네거티브방식으로 전면 개방 추진

-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3~’25)개방계획에 따른 개방 외 추가개방 확대
 - 대국민 수요조사 및 이용실태 설문조사(11월)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신규 데이터 추가개방

- * 휴양복지분야(숲가꾸기, 산림교육프로그램), 산림일자리 정보,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등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개방

개방대상 데이터	증장기개방(행안부)	추가개방(자체)	누적 건수	누적 개방율
2,961(테이블)	141	237	2,497	84.3%

* ('23년 누적 개방율, 71.6%) → ('24년 목표, 84.3%) → ('25년 목표, 100%)

○ 수요자 중심의 개방 형태와 방식으로 지원 확대

- 이용자의 데이터 활용 편의성(앱개발) 제공을 위해 오픈포맷 형태(API)로 변환하여 개방 확대
- * ('23년 실적, 92개) → ('24년 목표, 100개) API 확대
- 분산되어있는 개별정보를 융·복합하여 분석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표준화하여 통합된 정보로 제공
- 공공데이터 포털에 기 개방된 데이터를 점검하고, 활용 저조 데이터 및 오류 신고 건에 대해서 품질 개선

2) 산림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소통 강화

○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 대회 개최(5~9월)

- 산림분야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서비스와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산림 및 타분야 융합 데이터 분석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 참여기관 :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수목원정원관리원, 등산트래킹지원센터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방문을 통해 지원강화(2회)

- 반기별 산림데이터 활용 기업체 방문을 통해 민간기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데이터 품질이슈, 추가개방 수요 발굴, 활용 및 융복합 기회 모색
- * 대상 : 등산로 정보를 활용한 네비게이션 개발을 추진하는 현대오트에버 등 산림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API를 활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체

3) 산림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및 고도화

○ 고품질 데이터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

-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및 보유 DB 전반의 품질 평가 대응
- * 41개 정보시스템 대상 : '23년 21개 품질평가 완료 , '24년 20개 품질평가 추가 추진

- 사전 품질관리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품질 제고
 -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데이터 기획·설계 단계부터 표준 및 품질점검으로 사전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 * 사전협의(개방, 품징검토) → 사업발주단계(품질관리요구사항 포함) → 구축이행 점검 단계(DB산출물 품질점검)
- 산림공공데이터 현행화 및 표준화 지속적 추진
 -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 데이터 목록 정비 및 데이터 현행화
 - 데이터 품질 및 데이터 표준화 분기별 점검 및 개선 활동 실시
 - 개별 업무정보시스템 데이터 와 기관메타시스템 간 현행화
-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교육 실시(2회)
 -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무협력 강화(2회)

라. 추진일정

- '24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 계획 수립 : 1월
- '24년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른 데이터 개방 및 신규데이터 발굴 : 연중
-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인증기관 행안부) 추진 : 8~12월
- 산림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 대회 추진 : 5~9월
- 공공데이터담당자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4~9월
-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및 품질관리 개선점 도출 및 정비 : 연중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수행 : 6~11월
 - 평가지표 :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 대국민 수요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 11월

27. 산림정책 소통강화

(대변인실, 042-481-4078)

목 표

- ◇ 정부 3년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정책 적극 홍보
- ◇ 주요 정책 및 현안이슈에 대한 맞춤형 홍보 추진

가. 정책여건

- 정부 3년차 국정과제 이행과 긍정 이미지 확산
- 산림르네상스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나. 기본방향

- 정부 3년차 맞는 산림분야 핵심정책 홍보
 - 목재이용 활성화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 임산업 활성화, 임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규제개선 성과 홍보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홍보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국민 안전 확보

2024년 산림청 홍보방향 및 목표

“맞춤형” 홍보, “시의성” 있는 홍보로 산림청 이미지 제고

홍보목표	추진전략
▶ 정부 3년차 정책과제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3년차 정책기조에 맞는 핵심 정책 홍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속 목재이용 촉진■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합리한 규제개선 성과 확산■ 임산업 활성화,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홍보 지원■ 임업인 등 정책 이해관계자 현장소통 강화
▶ 산림재해 대비 신속한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상황,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국민 전파■ 산불영상 등 언론 실시간 서비스 체계 구축■ 산림재난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메시지 관리

다. 세부추진계획

1) 정부 3년차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핵심정책 중점 홍보

- 임업인 민생안정 정책지원성과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
 - 임업·산림공익직접직불제, 임산물재해보험 등 임업인 소득안정 도모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 홍보
 - 도시숲·정원·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산림복지서비스
- 정부혁신, 규제혁신, 적극행정 등의 국정 성과 홍보
 - 조직문화 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국민불편 해소, 기관장 소통 등

2) '산림르네상스' 정책 국민 공감대 형성

- 불필요한 규제개선, 산림재난분야 강화 등 제도개선 성과 홍보
- 목재이용 캠페인으로 목재수확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속 개선
 - 베고 심고 가꾸는 산림순환경영영의 필요성, 목재이용 생활화 등

3) 방송 다큐, 공익 광고 등으로 중장기 산림정책 비전 홍보

- 목재이용, 산림생태보전 등 중장기 홍보과제에 대한 긍정 이미지 확산
- 100대 명품숲, 민간정원 등 SB(Station Break) 제작
- 부서 및 소속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제작 활용
 - 산림복지서비스, 산림일자리, 임도, 산불, 임업기계화 등
- 산림정책 홍보를 위한 방송연예·다큐프로그램 촬영 지원

4) 산림정책 부정이슈 능동적 대응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임도 등에 대한 선제적 이슈 관리
 - 산불진화임도 필요성, 임도의 산사태 연관성 이슈 등 사전 홍보
 -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부정 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 가로수 등 도시숲 관련 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기획보도 확대
 - 미세먼지·열섬 저감효과 등 정책효과에 대한 중앙언론 기획보도 및 전문가 기고를 통해 부정 이슈 사전 차단

5) 일상화,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강화

- KBS, YTN, KTV 등 방송사와 재난방송 연계 시스템 구축
 - 재난주관방송사(KBS), 24시간 뉴스(YTN) 및 정책방송(KTV)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한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
 - 전문가 인터뷰·관련 영상 실시간 지원 등 협조 체계 구축
- 신문, 방송, TV 등을 활용 산림재난 발생 시 상황전파 체계 구축
 - 재해발생 정보, 진행 상황, 대피 안내 등 신속한 보도
 - * 현장 브리핑, 디지털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대응
 - 5개 지방청별 방송사 홍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6) 소속기관·공공기관 산림정책 홍보역량 강화 지원

- 공공기관 홍보팀 기자간담회 정례화 등 언론 접촉면 확대
 - 대전청사 기자간담회 활용, 공공기관 정책 소개, 기획연재 기고 등
-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교육원 전문교육과정 지속 운영
 - 본청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대상(상반기, 2일 과정)
 - * 문체부 전문 인력과 현직 기자단 특강으로 홍보담당자 전문성 강화

7) 출입기자단 및 유관기관과의 정책소통 강화

- 매주 수요일 청사기자단 간담회 추진으로 소통 기회 확대
 - 주·월간 홍보계획 공유, 산림정책 주요사항 홍보 등
- 문체부 주관 대변인 협의회, 온라인 대변인 회의 등 홍보협의회 참여로 유관기관 홍보 우수사례 공유 및 산림정책 중점사항 홍보

라. 추진일정

- 온·오프라인 일일이슈 대응 및 언론보도 스크랩 : 매일
- 청사기자단 정례 간담회 : 매주 수요일(이슈발생 시 수시 개최)
- 주·월간 홍보계획 취합 및 수립 : 매주
- 본청·소속기관 정책소통 역량강화 전문교육 : 상반기
- 정책소통 우수사례 작성 : 상·하반기
- '25년 산림정책 종합홍보계획 수립 : 12월

28. 숏폼 중심 디지털 소통 확대

(대변인실, 042-481-8850)

목 표

- ◇ 더 빠르고, 더 짧게!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한 숏폼 콘텐츠 확대
- ◇ 세부 타깃별 SNS 채널 운영으로 트렌디한 양방향 소통 추진

가. 정책여건

- 비대면의 일상화! 개인의 다양성이 추구되는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소통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고객 스펙트럼 확장 필요
- 숏폼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며 읽는 SNS에서 보는 SNS로 정보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 영향력이 높은 개인 미디어와 협력기반 구축 필요

나. 기본방향

- 정부 3년차, 국정과제 및 월별 주요 이슈에 따라 공격적인 타깃 맞춤형 산림정책소통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완성도 높은 콘텐츠(쇼츠, 한컷뉴스 등)를 제작하여 알파세대까지 정책 타깃을 확장하는 등 폭넓은 산림정책 체감도 강화
- 차별화된 주요 정책 홍보 극대화를 위해 시즌형 디지털 소통 캠페인을 추진하여 양방향 국민소통 대폭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소셜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운영으로 SNS 채널 활성화

- MZ세대의 요즘 뜨는 밈(Meme) 등 최신 소셜 트렌드와 타깃별 관심 콘텐츠를 정책과 연결하는 디지털 숏폼 콘텐츠 제작으로 SNS 채널 운영 활성화
 - SNS 채널 운영 확장 → 텍스트 기반의 ‘스레드(Threads)’ 신규 채널 운영(10대 타깃)
 - * 밈(Meme) : SNS 등에서 유행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복제되는 짤방 혹은 패러디물을 이르는 말

2) ‘목재이용 인식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시리즈, 공익 광고 제작·송출

- 나무의 따뜻함과 일상 속 목재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캠페인 광고 제작·송출
 - Key copy : ‘나무, 나무랄데 없다!’ / 1편 40초 / 온·오프 공중과 송출

3) 시즌형 ‘민·관 협업 캠페인’ 추진 및 ‘정책 잇템(Item)’ 개발

- 단순 1회성 정책 캠페인에서 벗어나 매년 운영하는 시즌형 캠페인 추진을 통해 정책 홍보 스펙트럼을 넓히는 한편, 어렵고 딱딱한 정책을 정책스럽지 않게 녹여낸 잇템을 발굴하여 정책 메시지의 지능적인 확산 추진
 - (상반기)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 ‘컬러링 북 키트’ 개발
 - (하반기) 국산목재이용활성화 홍보를 위한 ‘목재 보드게임’ 개발

4) 온·오프 실시간 방송 ‘디지털 스튜디오’ 확대·운영

-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상황 시 실시간 생중계 등 라이브 방송 확대
 - KBS, YTN 등 업무협약을 통한 재난상황 실시간 송출 및 인터뷰 추진
 - 축사, 브리핑 외 기관 홍보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촬영 지원

5) 트렌드가 없는 것이 트렌드! 개인적 지향성을 반영한 비주얼 콘텐츠 제작

- (카드·한컷뉴스) MZ세대 등 정체성이 뚜렷한 개인화 트렌드에 따라 정책을 주제별로 다양화하는 등 시리즈 콘텐츠 제작·지원

- 기존 정책 소개에서 탈피, 주요 정책을 세분화하여 콘텐츠 심층기획
 - * (예) '비건 with 임산물' 시리즈 - 사찰음식으로 만나는 임산물 레시피
- 설문조사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의견수렴 확대, QnA 콘텐츠 제작
- (웹툰협업) 일상 속에 녹여낸 정책주제를 짧고 간결한 웹툰으로 제작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스낵형 콘텐츠 개발
- (인스타그램) 현장감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로우(Raw) 숏폼 콘텐츠 제작·확산
 - * 로우(Raw) 콘텐츠 : 편집과 연출을 덜어낸 부담없는 콘텐츠를 이르는 말

6) 기사 중심 → 현장 중심으로 '산림청 SNS 디지털 기자단' 운영

- 매월 주요 이슈 등 중심 키워드를 주제로 산림정책 현장 취재 확대·운영
 - 분야 : 영상, 그래픽, 전문필진, 포토, 숏폼 / 각 5~10명씩 총 40명 구성·운영
 - 산림재난 현장 및 산림 관련 행사 등 월 1회 이상 현장 취재 필수

7) 모바일 뉴스레터(e-숲이야기) 서비스 개편

- 주 타겟(오피니언리더 등) 맞춤형 레이아웃 전면 개편을 통한 유입률 및 개봉률 증대
 - (디자인) 간결하고 깔끔하게! 이미지 중심 → 텍스트 중심
 - (콘텐츠) 숏폼 영상, 카드뉴스, 언론보도 등 기존 콘텐츠 형식 유지
 - * 디지털 취약계층 및 임업인, 희망 국민 등 발송 대상 점진적 확대

8) 창간 10주년 계기, 산림청 격월간지 '매거진 숲' 독자층 확장

- (변화) 휴대가 간편한 판형의 변화(국배판 → 16절), 전국 독립서점 1천권 비치
 - 주요 독립서점에 매거진을 비치하여 독자층의 세대 확장 추진(MZ세대 등)
- (유지) 매거진의 여행, 임산물 섹션을 영상 콘텐츠 발행하여 디지털 소통 유지
 - 한정적인 발행부수(1만권)의 단점 보완하고, 지속적인 영상섹션 확장 추진

9)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유지관리로 홍보력 향상

- 산림행정미디어센터 내·외부 사용자 대상 산림정책 사진·영상 자료 활용성 강화
 - 산림사업, 산림재해 등 사진, 영상, 카드뉴스 실시간 제공

라. 추진일정

- 디지털 숏폼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한컷뉴스 등) 제작·게재 : 수시
- 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진행 : 수시
- 모바일 뉴스레터(e-숲이야기) 발송 : 월 1회, 수시
- SNS 디지털 기자단 운영 : 매월
- 민·관 협업 디지털 캠페인 추진 : 상·하반기
- 산림청 격월간지 매거진 숲 : 상·하반기
-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유지관리 : 연중

2024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국제산림협력관실

1. 국제사회로의 한국형 산림정책 모델 전파

(국제산림협력관실, 042-481-4277)

목 표

- ◇ 우리나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산림협력 증진
- ◇ 한국형 국토녹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 및 저변 확대

가. 정책여건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 구축 등 글로벌 현안의 해결을 위해 산림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
 - 글래스고 정상 선언^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②, 토지황폐화중립^③ 등 산림이 주요 국제 의제로 부각
 - * ①2030년까지 산림손실과 토지황폐화 방지(UNFCCC), ②산림을 통한 자연기반 해법의 중요성 강조(CBD), ③산림복원 등을 통해 토지황폐화 상쇄(UNCCD)
- 한국 국토녹화 경험 및 산림정책 공유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증대
 -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산림 선도국가 역할 및 책임 이행을 요청
 -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23.1) : CBD, UNCCD, FAO 등 국제기구는 한국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
 -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22.5월, 서울) 계기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형 국토녹화 경험 전수를 희망

나. 기본방향

- 지역협의체(아세안) 활동과 중남미·아프리카 국가 등 신규 협력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사회 산림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
- 전략적 산림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의 산림관계자를 대상으로 초청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확산 채널 확대
- 해외공관, 주한대사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지속적·정기적 소통 확대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제산림협력 증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참여 및 협력사업 추진

- 아시아지역 협의체 정상회의를 위한 산림 의제 발굴 및 협력수요 대응
 - '24년 개최 예정인 한국 참여 아세안 관련 3개 정상회의*(10월 예정, 라오스)에 대비한 성과사업 발굴 및 산림 관련 의제 채택 추진
 - * ①한-아세안 정상회의 : 아세안 10개국 + 한국
 - ②아세안+3 정상회의 : 아세안 10개국 + 한·중·일
 - ③동아시아정상회의(EAS) : 아세안 10개국 + 한·중·일 + 미·호·뉴·인·러
 - 제4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에 참석(8월, 화상 예상)하여 아세안국가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활동에 대한 홍보 및 협력 강화*
 - * 주요 내용(안) : 한국 산림 ODA와 REDD+ 및 AFoCO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아세안국가들의 중앙정부부터 현장을 아우르는 적극적 지원 및 관심 요청
- **[신규]**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연계 중남미·아프리카 산림협력사업 추진
 - 에티오피아 산림복원 혼농임업 사업 완료 및 최종 성과검토
 - * 사업내용 : ①커피 혼농임업을 위한 산림복원 추진, ②복원지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증진, ③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
 - 중남미국가(가이아나)와 아프리카국가(토고) 산림복원 신규협력사업 착수
 - * ①(가이아나)맹그로브 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 ②(토고)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복원력 강화
- '25년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제기구분담금 관련 제도개선 및 심의위원회(5월) 심사 대응*
 - * '25년은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 '22.1.1)」의 시행 3년차로 제도운영 초기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개도국 산림관계자 대상 한국형 산림정책 교육프로그램 운영

-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기술·사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상반기)
 - 협력 증진 필요성을 감안하여 초청 대상국을 전략적*으로 선정
 - * 정상외교·국제협약 등 국가 외교 및 양자산림협력 구축·활성화 필요성 등 검토

- 초청 대상 국가의 협력 수요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홍보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 * 검토 분야 : 한국산림정책개요, 산림녹화(종자·양묘·조림·사방), 산림재해(산불·산사태·병해충), 산림자원조성(산림경영·목재수확·임산물), 산림복지·ICT 등
- 전년도 교육생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 * 주요 개선사항 : 일부 교과과정 내용조정, 교육생 이동거리 단축 등
- 전략적 협력 추진 대상국의 교육생 초청 및 프로그램 운영(하반기)
 - 해외공관 연계 등을 통해 초청 대상국 내에서 정책과급 효과가 높은 핵심 산림관계자를 선발 → 서면 인터뷰 및 사전교육 실시
 - 시설견학 및 시범훈련 참관 등 현장 중심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 * '2024년 산불합동진화 시범훈련 견학(안)' 등 주요 산림정책 현장 답사를 연계

3) 국제산림협력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대회 개최 및 정보 공유

- '세계 산림의 날(3.21)'을 활용한 주한공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추진
 - 세계 산림의 날 주제*와 부합되는 분야의 협력 대상국 주한대사관과 국제기구 한국주재 사무소를 초청하여 산림협력 정책을 공유
 - * '24년 세계 산림의 날 주제 : 산림과 혁신(Forest and Innovation)
- 국제산림협력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산림논문공모전” 개최
 - 대학생의 국제산림협력 분야 관심 증진과 참여 유도를 위한 논문공모전 개최 → 우수작 대표 저자의 해외 논문대회 참가를 지원
 - 공모전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 나이 제한을 폐지
 - * (기존) 만 22세 이하 대학생 → ('24년부터 개선) 대학생
- 국제산림협력 인식 제고를 위한 포레스트 뉴스·타임즈 발간(연중)
 - 국제산림협력관실과 국립산림과학원이 협력하여 ^{주간}Forest Times(국문)을 발간하여 국제동향 및 시사점을 정책수요자(학계·관련 기관 등)에게 전파
 - ^{계간}Forest Newsletter(국문판·영문판)을 발간하여 우리청 국제산림협력 활동 내용을 해외공관 및 주한대사관과 주기적으로 공유

라. 추진일정

- '24년 한국형 산림정책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 2월
- 제11차 세계 산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3월
-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대응 : 5월
- 산림국제협력을 위한 대학생 논문공모전 개최 : 8월
-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참석 : 8월
-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응 : 9월
- 개도국 산림관계자 초청 한국형 산림정책 교육 : 하반기
- 포레스트 뉴스레터 발간 : 분기별
- 포레스트 타임즈 발간 : 매주

2. AFoCO를 활용한 한-아시아 산림협력 증진

(국제산림협력관실, 042-481-4277)

목 표

- ◇ AFoCO를 활용하여 아시아 역내 한국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
- ◇ 한국 산림정책·기술을 모델화한 AFoCO 협력사업의 활성화

가. 정책여건

- AFoCO는 '18년 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 역내 산림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의 국토녹화 정책을 모델화한 협력사업을 추진
 - * 회원국 : 우리나라 포함 아시아 17개국 참여(당사국 14 + 옵서버 3)
 - 유엔참여 등 다양한 국제사회 활동^①과 우리나라와의 본부협정 체결^② 등을 통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 * ①UN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20.12) 및 OECD DAC 적격기구 등재('21.4)
 - ②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발효('21.7)
- '24년 AFoCO는 「제2차 전략계획(2024~2030)」을 채택하며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사업 효과성 향상 및 외부 재원 확보 등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설립 주도국으로서 AFoCO를 한-아시아 산림협력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기구 발전 지원 필요

나. 기본방향

- 우리나라 산림정책을 모델화한 AFoCO 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여 아시아 역내에서의 우리나라 그린 리더십을 강화
- AFoCO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기구의 산림협력사업 확대 유도
 - 국외 재원을 활용하여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성과의 효율적 확산 추진
- AFoCO 설립 주도국으로서 기구의 활동 성과 및 네트워크를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및 외교 자산으로 최대한 활용

다. 세부추진계획

1) AFoCO를 한-아시아 산림협력 플랫폼으로 지속 육성

- 최근 제9차 AFoCO 총회('23.10월)를 통해 채택된 기구의 '30년까지 장기계획인 「제2차 전략계획(2024~2030)」*의 추진을 지원

* '제2차 전략계획'의 주요 협력사업(프로그램 우선 분야)이 우리나라 강점 분야(산림복원, 산불 등)로 구성되어 한국의 對 아시아 산림협력 추진에 유리

【AFoCO 「제2차 전략계획(2024~2030)」 주요 내용】

- **비전** : 기후 탄력적인 산림, 경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더 푸른 아시아
- **변화전략** : 기후 위기와 관련 산림파괴, 빈곤 및 거버넌스 문제를 지속가능 산림 경영과 파리협약 1.5°C 목표 및 UN SDG 달성을 통해 대응
- **프로그램 우선 분야** : ①산림복원 및 보전, ②공동체와 순환생태경제, ③기후-산림 재해위험관리

- AFoCO의 재정자생력 형성을 위해 사무국의 다양한 외부재원(유럽 선진국, 국제기구, 민간 등) 유치 추진을 촉구하고 필요시 활동 연계

2) AFoCO 협력사업을 통한 우리나라 산림정책 및 기술 확산

- 한국 기여 AFoCO 협력사업의 관리 체계 확립 및 운영 효율성 증진
 - 상향식 의견수렴(수혜국^{현장+중앙정부}→AFoCO^{사무국}→산림청)이 가능한 관리 일정 운영, 국제기구분담금(외교부) 체제와 호환되는 사업관리카드 도입
 - * (기존) 사무국 중심 총괄 검토로 협력사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성과 파악에 어려움 → (개선) 개별사업별 진척·성과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적용
- 한국이 지원한 완료 사업의 성과와 신규 추진 사업의 착수 현황 파악을 위해 산림청-AFoCO 공동현장 점검을 실시(6월, 12월)
 - * 주요 점검 대상 : 완료 사업('23년)과 신규 사업('24년)

3) AFoCO 행사·활동과 연계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추진

- [신규]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AFoCO를 활용
 - AFoCO 회원국 공무원의 사무국 연수*, 회원국 학생 대상 산림 분야 한국 대학원 장학 지원, 과학기술인 교류(시드볼트 등 연수) 추진
 - * '24년 참여국 :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 회원국 브루나이(양자협력 미체결국)가 개최하는 생물다양성 국제심포지엄('24.6)에 참여하여 양국 간 산림협력 증진의 기회로 활용
 - * 브루나이는 AFoCO 제9차 총회(10.24~25, 서울)를 통해 한국의 전문가 참여를 요청
- AFoCO 협력사업 관리와 연계한 미래木 프로그램 운영
 - 현지점검 대상 협력사업 분야의 우리청 직무담당자 현장 동행 추진
 - * 우리청 참여 직원의 현장 컨설팅으로 한-아시아 산림협력사업의 성과를 증진하는 동시에 우리청 직원의 국제산림협력 경험 축적과 역량 강화를 도모
- [신규] AFoCO 협력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모범사례 홍보물 제작
 - 한국의 산림정책이 AFoCO를 통해 회원국으로 전파되어 법령 제·개정 및 산림관리 시스템 구축·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
 - 한-아시아 산림협력과 AFoCO 기구 홍보 등에 활용

라. 추진일정

- AFoCO 제10차 특별총회 참석 : 5월
- AFoCO 협력사업 상반기 점검 : 6월
- AFoCO 연례 기술워크숍 참석 : 9월
- AFoCO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 10월
- AFoCO 협력사업 하반기 점검 : 12월

3. 글로벌 산림선진국으로서 다자간 산림협력 논의 주도

(국제산림협력관실, 042-481-4292)

목 표

◇ 산림복원·산불·토지황폐화 관련 한국의 우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

가. 정책여건

- (대외) 기후변화 위기 및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황폐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통합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유엔 3대 협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
- (대내)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그린 ODA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
 - 우리의 선진적 산림정책·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기후변화 및 산불재난 대응 등 산림 분야의 글로벌 현안 해결을 주도해야 함

나. 기본방향

- 국제사회 산림협력 활동 연대로 산림 분야의 주류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녹색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
 - 우리나라 산림정책·기술 강점 분야의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주요 글로벌 산림목표 달성에 기여
 -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참여와 협력사업 이행으로 국제사회의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선도
- * '22.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27)에서 우리나라 포함 27개국의 참여로 출범한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관급 회의체
- 유엔 3대 국제협약 및 신흥 산림 분야 다자협의체의 의제를 개발하여 국익에 기여하는 국제산림협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내 산림정책과 국제협력사업의 글로벌 목표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

- 산림복원·산불·사막화 방지 등 우리나라의 강점 산림정책·기술을 모델화한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글로벌 산림목표 달성에 기여
 - 산불재난 대응(AFFIRM^①), 생물다양성 보전(FERI^②, SAFE^③), 산림복원(FLRM^④, PFI^⑤) 등 우리나라 주도 유엔기구 산림협력사업 이행
- * ①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FAO), ②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CBD), ③취약 산림생태계복원(UNEP), ④산림경관복원메커니즘(FAO), ⑤평화산림이니셔티브(UNCCD)

2) 적극적 FCLP 참여 및 협력사업 이행으로 개도국 산림협력을 선도

- **[신규]**산림녹화 성공국 및 우수 정책보유국으로서 FCLP 사무국운영비를 기여하고 라오스* 대상 ‘산림·자연·기후 국가패키지**’ 사업 개발
 - * 양자산림협력 체결국이자 메콩지역 국가인 라오스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 ** 산림·자연·기후 국가패키지(Country Packages for Forests, Nature and Climate) :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개도국의 기후목표 이행을 위해 산림 분야 통합지원을 추진
- 라오스와 추진 중인 REDD+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 재원·기술개발·역량배양 등을 종합 지원
- * '24년 연내 사업홍보(7월, FCLP 워크숍), 계약체결(12월, UNFCCC COP29) 추진

3) UNFCCC 등 국제협약 참여와 유엔기구 협력사업 추진 및 다자협의체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강화

- 주요 국제협약 당사국총회의 정책논의 및 협상 과정에 참여하고 유엔기구 협력사업 및 다자협의체 연계 활동을 주도
 - (UNFCCC, 11월) 파리협정 이행지침 협상 타결에 따른 산림 분야 후속 세부 지침 논의 참여,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략적으로 대응
 - (CBD, 10월) KM-GBF* 이행을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의 산림 관련 주요 지표(보호지역, OECM, 산림복원 등) 제정 협상
-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 2050년까지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
- ** 시드볼트, 종자협력 등 생물다양성 보호 사업 연계

- (UNCCD, 12월) LDN* 이행 기반 마련, 황사·미세먼지 대응 및 개도국 황폐지 복원 성과 검토, 창원 및 평화산림(PFI) 이니셔티브 지원
 - * 토지황폐화 중립 : 토지황폐화를 산림복원 등을 통해 상쇄시키는 개념
- (신규 다자협약체 참여) GFFP^①와 CBFP^② 및 LEAF^③ 등 신흥 산림 다자협약체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확산 및 입지 강화를 도모
 - * ①글로벌 산림자원 서약, ②콩고분지산림파트너십, ③리프연합

라. 추진일정

- 제19차 유엔산림포럼(UNFF) : 5월
- 제5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 6월
- 산림과 기후리더 파트너십(FCLP) 전체회의 : 6월(잠정)
- 제27차 FAO 산림위원회(COFO27) : 7월
- 통합산림위험관리(AFFIRM) 워크숍 주최 : 8월(잠정)
-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6) : 10월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9) : 11월
- 제60차 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ITTC60) : 12월

4. 전략적 양자 협력으로 국익과 산림정책 발전에 기여

(국제산림협력관실, 042-481-4081)

목 표

- ◇ 국익에 부합하고 산림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양자협력 추진
- ◇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의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 양자관계 구축

가. 정책여건

- 대한민국 산림정책 발전에 따라 양자협력 수요가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 아프리카, 태평양도서국 및 유럽 등 선진국까지 확대
 - * 신규 MOU 요청·협약 : 피지, 솔로몬제도, 그리스, 콜롬비아, 수리남, 파나마, 오만 등
- 양자협력국의 비약적인 확대에 따라 협력과제가 다양화*되고,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무대에서 양자 산림협력이 주요의제로 부각**
 - * (기존) 산림복원, 조림투자 → (확대) 재해대응, 생물다양성, ICT, 산림복지 등
 - ** '23년 G20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베트남 정상회의 등 선언문 반영
- 국제산림협력 범위 확대에 따라 글로벌 인재 육성 필요성 증가
 - * '22~'23년 미래木 운영성과를 토대로,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개선 필요

나.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외교 유연성 확대 전략에 발맞춰 다양한 대륙·국가와의 양자 관계를 구축해 국익에 기여하고 산림협력의 외연 확대
- 기존 협력국과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내실 있는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최신 이슈와 상호 수요를 반영한 협력과제 추진
- 정상회의·국제협약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양자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양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협력 인재 발굴·육성

다. 세부추진계획

1) 미개척 지역 · 국가와의 양자 산림협력 확대

- **[신규(아프리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월, 한국)를 계기로 사막화 방지, 혼농임업 등을 주제로 신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주요 협력국 초청 → UNCCD, GGGI 등 국제기구와 합동 워크숍 및 MOU 체결
- **(태평양도서국)** 피지('24.1월 MOU)를 시작으로 솔로몬제도 등과 양자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맹그로브숲 복원 등 협력과제 발굴
- **(중남미)** 콜롬비아, 수리남 등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신규 MOU를 체결하고, 중미협력 교두보 확보를 위한 사업* 본격 추진
*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산림복원 · 혼농임업('23~'27년, 국가별 26.2억)
- **[신규(선진국)]** ^(그리스)신규 양자관계 구축, ^(독일)한-독 임업협력 50주년 계기 양국 협력과제* 발굴, ^(캐나다)산불협력 계기 임무관 확보 추진 등
* 한국과 독일이 제3국의 산림 보전·복원 등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협력사업 등

2) 기존 양자 MOU 체결국과의 협력 내실화

- **(공통)** 산림복원, 조림투자 등 기존 협력과제 외에 산불 등 재해 대응, 산림복지, 농림위성, 종자보전 등 신규과제를 반영해 MOU 갱신
- **(아세안)** 한-아세안 정상회의(10월, 라오스)를 계기로 개최국인 라오스*를 비롯한 메콩지역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추진
* 한-라오스 양자 MOU 갱신('13년 체결), 라오스 컨트리 패키지 협약 등 추진
- **(선진국)**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등과 정책 · 기술 · 인력 교류 및 산불 · 기후변화 등 이슈 공동대응 협력
* 한-오스트리아 협력위(한국), 한-호주 협력위(한국), 한일중 산림국장급 회의(중국) 등
- **(운영 효율)** UNFF(5월, 미국), AFoCO(10월, 한국), UNFCCC(11월 예상) 등 국제협약과 연계한 양자 MOU 갱신 및 산림협력위 운영

3) 미래木 프로그램 운영 및 소통·협업 활성화

- [신규(임업선진국) 산림 현장 교육·훈련 미래木 프로그램 운영
 - (대상) 6~8급 공무원 15명, (시기/기간) 하반기/2주, (국가) 오스트리아, (내용) 임업훈련원 2주 과정(임업기계, 임도 등 현장 위주 교육)
- (개도국) AFoCO 사업 현장 점검과 연계하여 개선과제 발굴 추진
 - (대상) 해당사업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국가) AFoCO 회원국
 - (내용) ODA 사업 현장 방문, 현지 네트워킹, 사업 발전방향 논의 등
- (재원) 미래木 정규사업 추진을 위한 '25년 예산 확보 추진
- (협업) 본청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의 국제 협업 지원
 - (내부) 산림교육원 해외연수과정 운영, 시드볼트 양자협력 등 지원
 - (외부) MOU 체결 국가 뿐만 아니라 잠재 협력국 주한 대사관과 소통을 통해 양자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라. 추진일정

- 신규·갱신 MOU 체결 : 연중 (한-피지 MOU : 1월)
- 양자협력국과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 연중
- 주한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 연중
- 중미 3국 신규사업 현장 방문 및 산림협력위원회 : 4월(잠정)
- UNFF 계기 산림협력위원회 : 5월(잠정)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양자협력 확대 : 6월
-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자협력 확대 : 10월
- 오스트리아 미래木 프로그램 운영 : 9~10월(잠정)
- AFoCO 총회 계기 산림협력위원회 : 10월(잠정)
- UNFCCC 계기 MOU 체결 및 산림협력위원회 : 11월(잠정)

5. 민간부문의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지원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8863)

목 표

- ◇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범위 및 수단 확대
- ◇ 기업의 해외투자 여건 조성 및 새로운 정책 수요 창출

가. 정책여건

-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금리, 환율 리스크, 목재 수출입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의 해외산림투자 여건 악화
 -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중국 경기 부진 지속
 - 목재자원국의 수출규제와 선진국의 합법목재 인증제도 확대
 - * 러시아, 아프리카 등 원목 수출금지 및 수출세 부과
 - ** EU Deforestation Regulation 발효('23.6)로 산림전용·황폐화 지역 생산된 목재 및 파생상품 시장출시 금지 등
- 국내 목재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조립 정책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목재수급 안정화 정책 마련 필요
 - * 목재자급률(%) : ('18) 15.2 → ('19) 16.6 → ('20) 15.9 → ('21) 15.9 → ('22) 15.0
- 담보제공 곤란, 환경 이슈 등으로 해외산림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산림펀드 및 산림탄소배출권 시장은 확대 추세
 - * 국제산림펀드 규모 확대 : 최근 10년간 연 8.1% 성장
 - ** 자발적 탄소시장 산림배출권 거래 급증 : 최근 5년간 연 47%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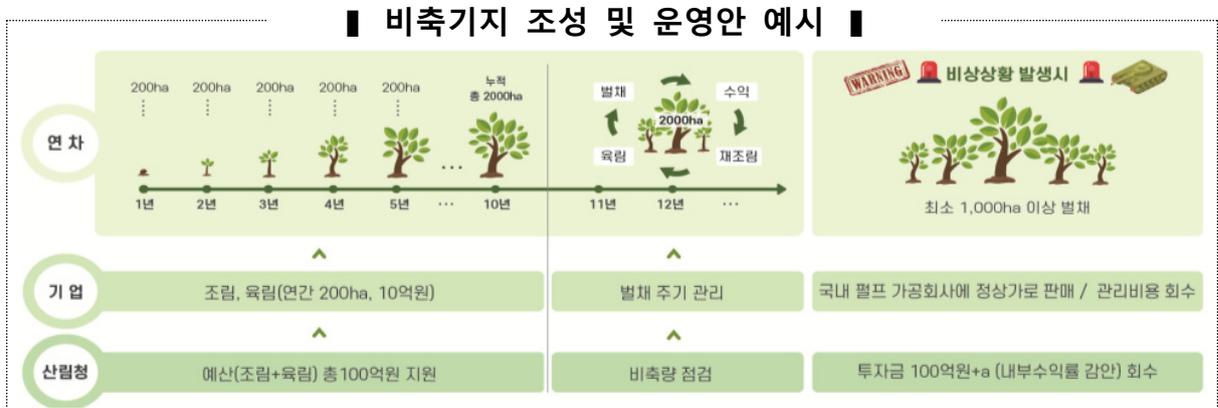
나. 기본방향

- 해외산림투자 정책을 경제안보 강화 및 시장기능 보완으로 전환
- 해외산림투자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국제산림정책 분야간 연계 및 새로운 산림투자 수요 적극 모색

다. 세부추진계획

1) 해외산림투자 정책을 경제안보 강화 및 시장기능 보완으로 전환

- **[신규]**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외산림자원 비축제도 도입
 - 해외조림 기업*을 통해 해외산림자원(임지·조림목)을 확보하고 비축 시설을 조성하는 민관협력 정책협의 추진('24. 상반기)
 - * 이견산업-솔로몬, 한국임업진흥원-파라과이, 무림피앤피-인도네시아 등
 - 비축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지원 기준 및 손실보상제도 마련('24. 하반기)
 - 안정적 공급망 관리 및 비축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 비축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10억원/연, 200ha) 및 설계비, 손실보상금 등



- **[신규]** 정책자금 용자 중심에서 투자 개념의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
 -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산림계정을 신설하고 예산편성 및 출자와 관련 근거 마련 및 홍보 추진
 - * 모태펀드(Fund of Funds) :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조성하는 펀드로 정부 재정을 민간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정책 수단의 일환
 -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분야 자펀드 결성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 연간 소요 예산 100억원, 결성 총액 200억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산림계정 운용지침 마련('24. 하반기)
 - * 농식품모태펀드 : 2010년 설립, '23 출자규모 400억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펀드 모집 및 심사·선정('24. 12월)
-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타 분야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마련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 등 타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과 관련된 제도와 협력하여 기업애로 해소 추진
 -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환변동보험’, 세계은행그룹 MIGA ‘해외투자 보험’ 등

2)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범위 및 수단 확대

- 해외산림자원 정책 대상 범위를 비목재 임산물까지 범위 확대
 - (현행) 목재 중심 → (개선) 목재 + 비목재 임산물
 - * 비목재임산물 : 바이오산업 소재, 단기소득 임산물(주요 수출품목이 아닌 국내 수입시 영향을 덜 미치는 품목), 국외산림탄소
- 산림사업 종합자금(정책융자) 대출 취급 기관을 확대
 - (현행) 산림조합중앙회 → (개선) 산림조합중앙회 + 은행
- **[신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해외 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25~'29) 수립
 - 모태펀드 신설, 해외산림자원 비축제도 등 신규 제도 반영과 국외산림 탄소 포함 등 변화된 대내외 여건 반영

3)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지원

-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 기반의 맞춤형 정책 지원
 - 기업의 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전환경조사, 현장기술 자문, 금융지원, 기업연수 등 정보제공 등 단계별 기업 맞춤형 지원
 - * 사전환경조사(3개사), 현장기술자문(3개사), 기업연수, 심포지엄, 세미나, 융자지원 등



- 기업간담회, 세미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 개선 필요사항이 양자산림협력국인 경우 산림협력위원회 의제로 상정하여 개선되도록 상대국과 협의
 - 융자지원 사업지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 시 지원기관 역할 강화
 - * 현지점검 : (현행) 산림청 주관+임진원 협조 → (개선) 임진원 주관

- 해외산림정보서비스 시스템 환경개선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급망 위기 대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등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스템 개발 등 대국민서비스 제공
- 산림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기업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지원
 - (사업방향) 해외산림 청년인재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대 등 개선 추진
 - * (현행) 직무연계형+현장체험형 → (개선) 직무연계형
 - (참여영역) 업종·규모 제한없이 산림분야 인재 채용을 검토하는 모든 기업으로 참여대상을 확대
 - * (현행) 해외조림 등 우리나라 투자기업 → (개선) 산림인재가 필요한 모든 기업
 - (파견기간) 참여자 조기 선발로 8개월 이상 파견기관 확보
 - * (현행) 당년도 공고/선발 → (개선) 전년도 공고 및 선발
 - * '25년부터 본격 적용하고, '24년의 경우 6~8개월로 유동적으로 적용
 - (관리강화) 참여자 및 참여기관 만족도 조사, 현장학습 및 경험담 등 신규 교과목 편성 및 사전교육 기간 확대 등
 - (정책연계) 해외산림투자 기업이 정책지원 신청시 가점 부여로 해외산림 청년인재 양성과 기업의 산림투자를 연계

4) 국제산림협력 분야간 연계와 새로운 정책수요 창출

- 국제산림협력 ODA 사업에 기업참여 기회 제공
 - 사업기획 단계부터 해외산림투자 기업과 대학교·공공기관간 컨소시엄 구성으로 사업관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 국제산림협력 ODA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단 구성 예정('25년 이후 신규 사업)
- ESG 협약기업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등 연계 가능한 해외산림투자 안내
- 정상회의 계기, 기업의 산림투자 진출 기회 모색
 -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하는 맹그로브숲 기술센터 협력사업 추진시 세미나 참여기회 제공 등 기업 참여방안 모색
 - '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지역의 산림투자 기회 모색

라. 추진일정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행상황 점검 : 2월, 8월
- 해외산림자원개발 용자사업지 점검 : 4월, 11월
- 해외산림 청년인재 발대식 : 3월
-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용자심의회 개최 : 3월, 9월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 7월
- 해외산림자원개발 현장기술자문 : 10월
-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25~'29) 수립 : 10월
- 해외산림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세미나 : 12월
- 해외산림 청년인재 수료식 : 12월

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EDD+ 이행 본격화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088)

목 표

- ◇ NDC 달성을 위한 REDD+ 국제감축사업 이행 및 확대 기반구축
-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시행에 따른 법정사무 이행

가. 정책여건

- (국외)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 REDD+를 통한 감축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예상되고, 일본* 등은 다수 국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실시 중
 - * '13년 이래 총 17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194건의 국제감축 시범사업 중
 - 동남아 위주에서 가봉, 페루 등 국외탄소감축량 확보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신규 협력을 확대 필요
- (국내) NDC 국제감축목표 상향('23.3) 및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제정('23.7.27, 시행 '24.2.17)으로 민간의 REDD+ 이행 환경 구축
 - 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목표가 3,750백만톤으로 재상향(3,350 → 3,750백만톤, '23.3.)되어,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확대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의 REDD+ 이행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나. 기본방향

- NDC 기여를 위한 REDD+ 국제감축사업 이행 및 신규사업 발굴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시행에 대비한 법령 체계 준비
- 소규모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자발적 시장 탄소배출권 확보
- 민간분야 REDD+ 참여 및 이행을 활성화 기반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한-라오스 REDD+ 국제감축사업 이행(연중)

- 한-라오스 REDD+ 국제감축사업* 양해각서(MOU) 및 업무계획(Work plan)에 따라 사업단 구성 및 1년차 사업 이행
 - (이행) 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한국인 PM 선발·배치) 및 한·라오스 공동사업단 구성 → 사업이행
 - (점검) 양국 대표를 수석으로 하는 공동위원회에서 분기별 사업계획 승인, 실적점검, 감축결과물 이전(ITMOs) 등 주요 의사결정
- * (대상) 라오스 풍살리깨 산림 / (기간) '23~계속 / (예산) 15억원/년

2) [신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시행 대응 및 법정사무 이행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시행('24.2.17)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절차 이행 및 종합계획, 사업자 신고제, 운영표준 등 법정 의무사무 추진
 -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한 하위법령 제정·시행('24.2월) → 종합계획, 사업자신고제, 운영표준 등 제반 규정 마련('24.12월)
 - (사업자 신고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 → 신고수리대장 운영
 - (운영표준)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에 적용하는 파리협정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운영표준 고시('24.6월)
- * '24년 법정사무 이행예산 : 종합계획 수립(1억원), 운영표준 고시(5억원)

■ 국가 REDD+ 사업 운영표준 개발 계획 ■

< 범위 및 기준 >

- (범위) 운영표준(고시), 운영규정, 작성지침 및 양식(표준) → 국가별 표준 개발 확대
- (기준) UN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WFR)

< 내용 및 일정 >

- WFR 기반 운영규정 검토(2월), 지침·양식 초안 및 원칙 개발(2~3월), 운영표준 고시(6월)
- * (용역) JCM·Verra·ART TREE 기반 운영규정 등 검토, 국가별 협력약정 및 운영규정안 마련, 운영표준 고시안 개발

3) [신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제정에 따른 신규 제도와 국제 감축 이행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예산 확보 추진

-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시행 및 2030 NDC 달성을 위한 한-라오스 준국가 사업 등 대규모 REDD+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 (법정사무) 법령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사업자 신고 등록·지원, 실태조사, 운영표준 고시, 전문인력 양성 등 신규사무(17건) 발생
- (국제감축) 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사업 발굴을 위한 정부간 협상인력, 감축실적 구매 등을 위한 전문인력(본청), 운영표준 마련과 운영을 위한 인력(과학원) 확보
- (민간지원) 사업자 신고검토·수리, 협회 및 지원센터 운영, 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기술의 지원,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등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4) REDD+ 소규모 시범사업 내실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 창출

- REDD+ 시범사업 VCS 등록, 탄소배출권 발행 등 성과 창출(연중)
 - (캄보디아) 신탁기금 2년차 운용 및 2차 이행기간('20~'23) 감축 결과물인 탄소배출권 발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인증 추진
 - * 1차 시범사업 결과 : 온실가스 65만톤 감축('20, 사업기간 '15~19)
 - (미얀마) 사업설계서 등록완료 및 탄소배출권 발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인증
 - * 한-메콩산림협력센터 미얀마 지역사무소 설치 협의
 - (라오스) 사업설계서 작성 완료 및 VCS 등록을 위한 검증 완료
 - * 한-메콩산림협력센터 라오스 지역사무소 설치 협의

5) 민간의 REDD+ 참여 및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소통을 강화

- 기업의 ESG 경영, 자발적 탄소중립에 활용 가능한 REDD+ 정책으로 직·간접 참여를 활성화 → 기후변대 대응, NDC 기여 등 유도
 - 중·소기업 등 민간의 REDD+ 사업 참여를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지속 추진
 - * 민간 REDD+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 (기간) '22~ 계속, (규모) 4개소, 35백만원/개소
 - 정부의 리프연합(LEAF Coalition) 가입을 계기로 기업의 자발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REDD+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을 구축
 - * 열대우림 보호 재정지원 사업(LEAF 연합) 지원 : '23~'26년, 14억원(3.5억원/년)

6)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REDD+ 역량 배양 강화

- NDC 달성을 위한 탄녹위, 외교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 참석을 통해 산림 분야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추진
- 전략적 국내·외 REDD+ 역량 배양 및 전문가 육성 지속
 - (국내) REDD+ 국내 일반인 과정(2회, 기본과정 5월·심화과정 10월)
 - (국외) REDD+ 시범사업 국가(3월, 동남아, 10명) 및 잠정 협력국가(9월 중남미·아프리카, 10명) 초청 역량강화 교육훈련
- UN-REDD 프로그램과 개발도상국 산림전용·황폐화방지 역량 배양 플랫폼 구축을 위해 2년차 협력(연중)
 -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복원 경험을 REDD+와 접목하여 커리큘럼 개발·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REDD+ 역량배양 거점으로 격상
 - *사업개요 : '23년~'27년(5년), 총 25억원(연 5억원) / 주요내용 : ① REDD+ 교육 커리큘럼 개발 ② 국내·외 REDD+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 등
- REDD+ 국제심포지엄 개최, 고위급 회의·협상 등을 통해 REDD+ 협력, 기후변화 동향 공유, 글로벌 기후리더들과 네트워킹

7)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REDD+ 신규 협력을 추진

- 시범사업 국가, 기후변화 협력협정 대상국가, REDD+ 기반구축 국가 등을 대상으로 준국가 수준 이상의 REDD+ 사업 신규 발굴(연중)
 -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 국가(4) : 베트남, 몽골, 가봉, 우즈베크
가서명 국가(3) : UAE, 페루, 모로코
추진중인 국가(20) : 라오스, 세네갈,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미얀마 등
 - REDD+ 4대 기반 구축 국가(13) : 가봉, 라오스,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칠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 계기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CAFI) 참여를 지속을 위해 공여기간 및 기여금을 증액하여 아프리카 지역 내 REDD+ 사업지역 다변화 기반 확보
 - * CAFI 개요 : REDD+ 등을 통한 콩고분지 보호 / '20~'24 / 총 25억원(연 5억원)
 - * (공여국) EU,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한국
 - * (수원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DR콩고, 카메룬,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라. 추진일정

- REDD+ 시범사업 자문위원회 개최 및 현지점검
 - 제8차 한-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자문위원회 및 제2차 한-캄보디아 REDD+ 신탁기금 운영위원회 : 1월
 - 제6차 한-미얀마 REDD+ 시범사업 자문위원회 : 5월
 - 제5차 한-라오스 REDD+ 시범사업 자문위원회 및 제1차 국제 감축사업 자문위원회 : 10월
- REDD+ 국제 심포지엄 및 고위급 회의 : 12월
- REDD+ 능력배양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REDD+ 시범사업 국가(동남아) 초청 역량강화 교육훈련 : 3월
 - REDD+ 잠정 협력국(중남미) 초청 능력배양 교육훈련 : 9월
 - REDD+ 국내 일반인과정 : (기본) 7월 / (심화) 10월
- CAFI 제24차·제25차 이사회 참석 : 5월(잠정), 11월(잠정)

7.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세계화를 위한 그린 ODA 추진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4236)

목 표

◇ 글로벌 가치 실현과 외교정책에 부응하는 그린 ODA 추진

◇ 계속·신규 ODA 사업의 견실한 추진으로 성과 제고

- 예산규모 : 26,857백만원 / ODA 사업 : 총 29개

- 신규사업 : 양자(2건) / 다자(2건)

가. 정책여건

- 자연재해 증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 중요
 -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21.11월)」 및 「산림기후 정상회의('22.11월)」에서 산림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강조
- 탄소중립 실현, ESG 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분야 협력 및 재정긴축 기조로 정부-민간, 부문간 연계 등 패키지화 수요 증가
-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Green ODA 확대 의지를 대내외에 발표(다보스포럼, '23.3)하여 산림부문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
- 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증가로 국제협력 수요 증가와 한국의 산림복원 경험과 재난관리에 대한 협력 요구 증대

나. 기본방향

- 그린 ODA를 선도하는 대표사업으로 정상외교 의제화 및 양자 산림협력의 실질적 협력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 발굴
- 글로벌 가치 선도와 한국의 우수 산림정책을 국제사회로 확산
- 미세먼지·황사 등 토지황폐화·사막화 방지관련 국제협력 강화
- 산림협력 사업의 체계적 이행 및 내실화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외교정책과 양자산림협력을 지원하는 맞춤형 ODA 사업 발굴

- 외교전략 및 정상외교에 부응한 산림분야 그린 ODA 확대
 - 인-태 전략,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등 외교전략 이행 지원사업 개발
 - * 인-태 국가, 아프리카, 중남미 등 대상 산림복원을 위한 양자·다자 협력사업
- 정상급 외교 성과사업으로 산림분야 프로젝트 기획·제안
 - * '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사업 개발
 - ** 한-태도국 정상회의('23.5), 한-베 정상회담('23.6) 후속사업 추진
- 산림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활용하여 수원국 맞춤형 ODA 기획
 - * 양자협력국, REDD+ 잠재협력국 대상 현지조사 완료('23, 동티모르·라오스·솔로몬·수리남)

2) 한국의 우수 산림정책을 적극 확산하는 한국형 산림 ODA 추진

- 산림복원, 산불, 산림휴양 등 한국의 산림복원 기술과 경험을 전파하는 한국형 산림 ODA 추진
 - 산림복원, 휴양, 산불, 산림 ICT 등 정책영역을 점진적 확대
 - * 산불(몽골, 인니), 산림휴양(캄보디아), 산림복원(베트남, 타지 등) 영역 확대
- 산불장비, 산림휴양 시설, 프로그램 등 우리 기업 장비와 기술이 개도국에 보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원국과 협의·편성 추진(연중)
 - 몽골 산불진화장비 및 진화시스템 구축 등 사업 반영

3) 기업·국제기구와 파트너십 확대 및 융합 ODA 지속 모색

- UNCCD 사무국과 협력하여 우리가 제안한 B4L(Business for Land) 사업에 글로벌 및 우리나라 기업 참여의 확대되도록 지원
 - * 우리은행,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기업 참여하는 리더스포럼 추진('24.1분기)
-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협업사업 발굴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 확보 및 이미지 제고
 - * 정부는 초기 ODA사업을 통한 기반 조성을 담당하고 기업은 소득사업 지원 등 담당
- 몽골 민간사막화방지 조림사업과 산불피해지 복원·예방,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3단계) 사업에 기업 참여 방안 협의
 - * 민관협력 숲 조성사업(15ha)에 민간 기업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협력 논의

- 신규 ODA사업 기획 단계부터 타 부문과의 융합사업 가능성 모색
 - 수산·농업분야 등 타분야 융합사업 추진하여 ODA 효과성 증대
 - *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융합사업(산림+수산), 토고 시어나무 산림복원 융합사업(산림+농업)
 - 수원국과 사업제안서 협의 단계부터 타 부문과 협력방안 모색

4)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창원 이니셔티브의 이행체계 구축

-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창원이니셔티브 성과 확산과 정책 개발을 위해 UNCCD 사무국과 사업방향 지속 협의
 - UNCCD COP16('24.12, 사우디)에서 창원이니셔티브의 결정문 반영을 위한 후속사업 발굴 및 기존 이행사업(LDN, 황사 등)의 성과 홍보
- 창원이니셔티브 핵심성과인 LDN(토지황폐화중립)⁵⁾ 이행을 강화하고 정상외교 등 지원하는 신규 GDP사업(건조지녹화사업) 기획·추진
 - 태평양도서국 및 아프리카 대상 신규 GDP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 * 태평양도서국 대상 GDP 사업('24~'27, 20억원) : 한-태도국 정상회의 성과사업
 - ** 아프리카 녹색장성 프로그램('24~'27, 52억원) :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이행 지원사업
- UNCCD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황사, 산림복원 시범사업 발굴

5) 해외 산림협력센터 운영 내실화 및 신규사업의 체계적 이행

-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사업단의 주기적 운영실태 점검으로 사업의 내실화 및 후속 사업 발굴 추진
 - (몽골사업단) 산불피해지 조림과 예방숲 조성, 산불진화·예방시설 설치 등 3단계 사업의 적기 추진 및 공동운영위원회 운영
 - * 몽골 산불 피해지복원·예방,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22~'26, 100억원)
 - (인니센터) 산불센터 착공, ICT시스템 시범운영, 인니형 산불대응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산불시스템 구축사업 본격 추진
 - *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주 산불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2~'26, '23년 10억원)

5) LDN(Land Degradation Neutrality, 토지황폐화 중립) :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및 식량안보 유지에 필요한 토지자원의 양과 질이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상태

- (메콩센터) 한국형 자연휴양림 시설, 건축 등 본격 설립, 한-메콩 산림협력위원회 운영, 라오스 산림휴양 신규사업 발굴
 - *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 사업('21~'24, 43억원)
- (베트남사업단) 맹그로브숲 복원 적기 추진 및 신규 반영된 맹그로브풀 활용 주민소득증대 기반시설 구축사업 세부계획 수립
 - *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20~'26, 58억원)
- (타직사업단) 사막화 방지 및 주민소득 개선을 위한 싹사울, 피스 타치오 조림 등 2단계 산림협력사업 본격 추진
 - * 타지키스탄 사막화 방지와 주민 소득 개선을 위한 조림 및 혼농임업 사업('23~'27, 48억원)
- (중남미 3국)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각각 산림협력위원회 운영 및 산림복원, 혼농임업 등 2차년도 사업 본격 착수
 - * 산림복원, 양묘장 조성, 혼농임업 시스템 구축, 재해대응 역량배양('23~'27)
- **[신규]** 신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그린 ODA 확대 기조 동참
 - 중남미(과테말라)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수원국과 협의하여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이행 여건 조성
 - * 과테말라 산림복원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24~'27, 26억원)
 - GGGI 협업하여 중남미(가이아나) 및 아프리카(토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체계적 관리 및 이행여건 조성
 - * 가이아나 맹그로브숲 복원 등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사업 추진('24~'27, 39억원)
 - ** 토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복원력 강화 사업 추진('24~'26, 30억원)
 - 기후변화 대응 맹그로브숲 조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도-태평양 맹그로브숲 기술센터 조성 추진 여건 마련
 - * 인도-태평양 맹그로브숲 기술센터 추진여건 조성('24, 3.3억원)

6) 미세먼지·황사 등 사막화방지와 산림복원 관련 국제협력 강화

- UNCCD COP16('24.12, 사우디아라비아) 참석하여 사막화방지 관련 주요 의제 대응 및 협약·국제기구·개도국 등과 파트너십 확대
 - UNCCD 의제분야 국내 CST⁶⁾ 전문가 추천을 통해 의제의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
 - * 토지황폐화 중립 관련 회의 참여 및 관련 동향 수집 등의 역할 부여

6) CST(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위원회) : 사막화 방지 및 가뭄피해 완화와 관련된 과학기술적 정보 및 자문 제공 역할

- 제11차 DLDD-NEAN⁷⁾ 회의 개최(한국)로 회원국간 협력 강화
 - 전문가포럼,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별 토지황폐화·황사 방지 정책 및 우수사례, 황사발원지 지도작성 기술 소개 등 추진
- 매년 6.17일 개최하는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 행사를 유관기관 및 NGO와 협업 추진하여 나무심기와 가뭄에 대한 인식 제고
 -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국민참여 활성화
 - * 23년에는 청소년 대상 포스터그리기, 영어말하기 대회 개최하여 홍보 진행

7) 국제산림협력 사업 평가 및 사업관리자 역량 강화

- 산림청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지침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
 - ODA사업 평가를 통해 교훈 및 개선사항 도출, ODA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하여 후속사업 발굴 등에 반영
 - * '24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 실시(3건)
- 양자협력 사업에 파견된 PM 업무평가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 * PM 업무평가 기준 수정을 통해 공동사업단 운영의 성과 계량화 추진

8)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법 개정 후속조치 등

-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제도 도입('23.10)에 따른 지정요건 마련
 - * 역할 : 조사, 연구, 관리·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 등
 - ** 지정 기관에 대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라. 추진일정

- '25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 대응 : 1분기
- 한-몽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 2분기
- 한-메콩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 5월, 10월
- 제11차 DLDD-NEAN 운영위원회(한국) : 6월
-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 행사 개최 : 6월
- 한-베트남 및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 점검 : 3분기
- UNCCD COP16 참석 : 12월

7) DLDD-NEAN(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Northeast Asia Network, 동북아시아 사막화 방지 네트워크) : 한국·중국·몽골·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 황사피해저감 및 사막화방지 협력 네트워크

8. 임산물 수출 촉진

(임업수출교역팀, 042-481-4086)

목 표

- ◇ 임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 수출 유망품목 마케팅 강화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역 다변화

가. 정책여건

-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어 수출 동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
- WTO 농업협정에 따라 '24년부터 수출물류비 보조 금지로 수출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는 지원정책 필요
 - *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시, 단기임산물 수출액 20.7%에 해당하는 215억원 감소 예상('21, 영남대)
- 해외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및 비관세장벽(위생·검역 등) 강화로 수출 비용 증가 및 통관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
 -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의무화*('23년 시행), 미국의 수입 감에 대한 잔류농약 불검출 기준 적용 등 규제 강화
 - *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수출기업 정보 등록, 라벨에 등록번호 표기 등

나. 기본방향

- 수출 조직 육성 및 생산·가공 인프라 조성을 통한 수출 기반 강화
- 신흥시장 개척 및 신규 거래선 발굴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 한류 확산 등 트렌드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한국 임산물 인지도 제고
- 수요자 맞춤형 지원 및 수출유망업체 육성으로 수출 동력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수출 조직·인프라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기반 강화

- 임산물 주산지 중심으로 수출특화시설을 확충하여 수출 거점화
 - 수출품 가공 주요시설·장비 설치를 통해 생산능력 확대
 - * 수출특화시설 : ('23년까지) 12개소(충청 6, 경상 5, 전라 1) → ('24년) 함양(산양삼)
- **[신규]** 생산자와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수출통합조직'을 시범 육성(밤, 감)하여 수출조직의 규모화 및 민간 주도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 안정적인 원물 공급, 공동마케팅 수행 등 수출조직의 역량 강화
 - * 수출통합조직 기반육성 및 조직화·운영관리를 위한 신규예산 3.6억원 지원
- 품목별 수출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임산물 수출 활성화 견인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업체에 품질개선·연구개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대표 조직으로 규모화(신청 품목 국가 수출액의 3% 이상 차지하는 업체)
 - * 지원 품목 : 8개(밤, 감, 표고, 대추, 산나물, 오미자) → ('24년) 1~2개 품목 추가

2) 해외마케팅 강화 및 신규 판로개척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한류·청정 이미지를 부각한 마케팅을 통해 한국 임산물의 인지도 제고(연중)
 - 중동, 유럽 등 신흥시장 개척 확대를 위해 한류와 연계한 해외 판촉, 홍보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참여 유도 및 홍보 효과 제고
 - * 한류 콘셉트의 홍보이벤트,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청정임산물 해외판촉 등
-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및 임산물 종합홍보관 운영으로 해외판로 확대
 -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유망제품을 홍보하고, 현지 수출 상담회를 운영하여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판로 확대
 - * 도쿄(3월)·홍콩(9월) 식품 박람회, 도하 목재 박람회(5월) 참가 등
- **[신규]** 대규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여 신규 거래선 개척
 - 농식품부의 BKF(Buy Korean Food)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유력 바이어와 수출업체간의 상담 기회 제공, 사후 샘플발송 등 지원

3)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수출 스타상품·유망기업 육성

- **[신규]**임산물 수출업체의 성장 단계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으로 육성(2월, 10개사)
 - 상품 개발, 바이어초청, 해외홍보 등 수출과정에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단발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성장기반 제고
 - * 수출성장 : 4개업체/ 연 8천만원(3년간), 수출고도화 : 6개업체/ 연 1억원(5년간)
- 수출 상품화 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규 수출제품 개발
 - 목표국가 맞춤형 제품 개발 및 패키지 개선 등 제품 현지화 지원
 - * 산양삼 농축액(미국, 중국), 표고버섯 라떼(미주), 복분자 음료(인도네시아) 등
- 수출 유망업체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부터 정착까지 밀착 지원
 - 컨설팅, 마켓테스트, 시장개척비 지원으로 해외진출 활성화
 - * 연 5개 유망업체 발굴('16~'23년 : 단기임산물 및 목재분야 총 50개 업체 선정)

4) 수출 임산물 신선도 유지 및 안전성 확보

- 해외 콜드체인(냉장유통) 지원을 통해 수출 임산물의 신선도 유지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현지 냉장·냉동고 임차 지원을 통해 밤, 감 등 콜드체인이 필요한 품목의 수출 확대 지원
- 해외의 식품안전 요구·비관세장벽(검역·위생 등) 강화에 대응하여 수출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지원으로 품질 경쟁력 제고
 - 이력관리, 위생검사, 인증, 수출보험 등 지원으로 안전성 입증

5) 전문가 컨설팅 및 실무교육을 통한 수출업체 역량 강화

- 임산물 ‘수출 원스톱 현장코칭’ 운영으로 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멘토링
 - 컨설팅 대상 범위를 단기임산물에서 목재, 임업기계 분야까지 확대
 - 경쟁력 분석, 수출 가이드, 바이어 확보 등 지원으로 수출 첫 걸음 지원
 - * 해외진출 가이드, 수출 관련 정부 지원 사업·전문가 소개 등 수출애로 해소
- 임산물 수출 실무교육 운영을 통해 수출업체의 실무역량 강화
 - 관세사를 활용하여 FTA 활용, 수출 실무의 이해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신규]**수출 초보기업에 수출 안내를 위한 임산물 「수출절차 매뉴얼」 제작(12월)
 - 수출 절차, 구비서류, 라벨링 규정 등 제공으로 수출 시행착오 방지

라. 추진일정

-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임업진흥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 사업계획 승인 : 1월
 - 임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 2월
 - 수출 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 2월~12월
 - 세부사업별 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3월~6월
 -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 공모전 개최 : 6월
 - 수출특화시설 '25년 사업자 선정 : 8월
- 임산물 수출 실무역량 강화교육 : 5월, 10월
- 임산물 수출 컨설팅 : 연중
- 수출현안 점검회의 : 연중
- 임산물 수출확대 워크숍 : 12월
- 임산물 수출절차 매뉴얼 발간 : 12월

9. 임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임업수출교역팀, 042-481-4085)

목 표

- ◇ 통상협상에서 국내 임산물 보호 및 수출·투자 여건 개선 노력
- ◇ 다자간 통상회의를 활용하여 공급망·기후 위기 협력체계 확보
- ◇ 관세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내 임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가. 정책여건

- 美, EU, 中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했으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수출여건 악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필요
- 신규 FTA가 필요하나, 신흥국은 통상협정 체결 경험이 적고 높은 수준 개방에 민감한 경우가 많아 기존 FTA 방식 접근 일부 한계
-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탄력관세 제도의 장기간 운영 및 국내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업계별 이해관계 상충부분 대두

나. 기본방향

- 중장기 관점에서 공급망 등 협력을 포함한 EPA⁸⁾式 FTA 추진
 - 임업분야는 신규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 유망품목을 비롯하여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상대국 관세 철폐에 노력
-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및 IPEF⁹⁾ 임업분야 의제 대응을 통해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기후위기 공동 대응방안 모색
- 탄력관세 대상품목의 국내산업 보호 등 관세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관세, 관세할당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

8)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와 같이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9)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14개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다. 세부추진계획

1) 통상협상에서 임산물 보호 및 수출·투자 여건 개선 노력

- EPA 협상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 국가별 대응 전략 마련
 - 임산물 민감품목 관세 방어, 수출·투자 여건 개선, 협력방안 마련 등
 - * 신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대응 방안 연구용역 추진(2~11월)

지역	국가	비고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3개국
아시아	몽골,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4개국
동유럽	조지아, 세르비아	2개국
중미	도미니카공화국	1개국

- FTA별 협상 적극 대응 및 타결 후 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 국내 임산물 보호,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국 관세 철폐 등

구분	협상 대상
신규	몽골, 조지아, GCC ¹⁰⁾ , 메르코수르 ¹¹⁾ , 우즈베키스탄, 한중일, 말련
개선	칠레, 인도, 아세안
서비스·투자	중국, 러시아
검토중	멕시코, 이집트, PA(준회원국 가입) ¹²⁾ , 영국(개선) 등

2) 임산물 공급망 관리 및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대응

- 제2의 요소수 사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참여
 - 임산물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등
- 산림 관련 신 통상이슈 공동 대응을 위한 IPEF 의제 대응
 - 무역·공급망·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위기 대응 협력 논의 참여
 - * 미타결된 필라1(무역)의 산림 관련 주요 의제에 적극 대응

구분	산림 관련 주요 의제	비고
필라1 (무역)	불법 벌채, 산림 전용 및 황폐화, 관련 무역 제한	미타결
필라2 (공급망)	해외 목재 수급	타결
필라3 (청정경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탄소시장	타결

10)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11)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4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12) PA(태평양동맹, 4개국) :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3) 탄력관세 해당 품목의 합리적 운영

- 조정관세 부과 품목인 합판류에 대하여 업계 이견 조정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유관부서 등 의견 수렴하여 반영
 - * 「합판보드류 관세제도 개선방안 연구」('23.12.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요 단기임산물인 밤, 잣, 대추에 대한 관세할당제도(TRQ) 운영
 - 대추 TRQ 운영방식 개선('24년, 선착순→혼합)에 따른 운영결과 분석·환류
 - * '24 대추 혼합방식(259.5톤) : 공매 70%(181톤) + 선착순 30%(78.5톤)

라. 추진일정

- FTA 등 통상협상 대응 : 연중
- 임산물 공급망 관리 및 IPEF 협상 대응 : 연중
- 관세할당제도(TRQ) 운영 : 연중
- '25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제출 : 10월

10.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운영

(임업수출교역팀, 042-481-4085)

목 표

-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운영 고도화로 수입 목재투명성 향상
- ◇ EU 산림전용방지법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 강화 지원
- ◇ 신규 녹색의제에 선제 대응하여 탄소중립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가. 정책여건

- (국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검사품목 확대('23.5, 4→9개)* 및 신규업체 적응지원 제도기간(1년) 종료에 따른 운영 본격화
 - 제도기간 중에는 입증서류 미비 시에도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24.5월 부터는 정상 운영으로 입증서류 미비 시 부적합 처리 및 통관 불가
- * (기존) 원목, 제재목, 합판, 펄릿 → (추가)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
- (국외) 목재교역 시 합법벌채 관리 강화 및 녹색 무역장벽 확산 추세
 - 미국, 일본 등 합법벌채 관리품목 추가 및 수입·유통 시 입증 의무화
 - EU 등은 목재의 합법벌채뿐 아니라 산림전용·황폐화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교역 시 입증하도록 통상논의 주도 및 신규규제 도입 추세

나. 기본방향

- 신규품목(펄프·보드류) 산업계의 제도적응 지원 및 조기 안정화
 - 합법벌채 입증부담 경감 및 효율적인 현장실무를 위한 정보접근성 개선
- 국제통상표준에 상응하도록 수입목재의 투명성·추적성 확보
 - 서류검사를 보완하는 현지 공급망 실사 및 과학적 목재식별 고도화
- 산림전용·황폐화 방지 新통상의제 대응 및 산업계 역량강화 지원
 - 신규장벽 모니터링 및 원활한 통상여건 조성을 위한 양자협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합법목재 확대품목 검사 본격화(5월)에 따른 차질 없는 운영

- 합법벌채 추가검사 및 민원급증에 대비한 검사기관 전담인력 확충 및 보도자료, 현장설명회 등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1분기)
- 신규업체의 원활한 입증서류 구비를 위한 법령 및 지침 정비
 - 행정규칙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개정(6월)
 - 펄프·보드류 수입국의 법령·서류 정보를 담은 지침 개선(9월~12월)
- 체계적인 수입목재 관리를 위한 신규 시스템의 본격운영 및 안정화
 - * 연간 계약물량에 대한 일괄신고, 수입국과의 소통지원을 위한 영문페이지 도입 등

2)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강화를 뒷받침하는 법적기반 강화

- **[신규]**수입목재 관리 고도화, 산림손실과 토지황폐화 방지 등 강화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법률 「(가칭) 수입목재 합법성 관리·증진 법률」 제정 추진(9월)
- 수입 시 산림전용·황폐화 위험관리를 위한 한국형 실사모델 연구
 - * EU, 미국, 호주 등 유사 실사체계별 선진사례 조사 및 수입 시 필요한 정보 분석
- 서류와 현물의 일치 확인을 위한 수입국 공인 목재식별 DB 구축
 - * 수입수종 공인재감 및 해부데이터 수집 : ('23) 인니 130종 → ('24) 말린 55종 목표

3) EU 산림전용방지법상 저위험국 지위 획득을 위한 대응 강화

- EU 평가요소별 국내 현황점검* 및 한-EU 실무 네트워크 구축
 - 유관부서·산림과학원과 평가요소별 협력대응 및 범부처 협력 강화
 - * 「산림자원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등 국내 유관제도의 SWOT 분석 등
- 국제기구 등의 불법벌채 및 산림전용·황폐화 위험평가 모델과 EU 역내의 대응선례를 조사하여 국내영향 분석 및 필요사항 대응
- **[신규]**산림전용·황폐화 방지 관련 對EU 교역가이드 개발 및 산업계 안내

4) 목재교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내외 협력 강화

- 신규품목 통관 시 세관장이 합법벌채를 확인토록 관세청과 협업(5월)
 - *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의 연계 구축으로 통관정보 실시간 공유
- APEC EGILAT* 등 국제회의에서 각국 합법벌채 관리 동향 파악 및 중소기업 지원, 다국적 공급망 관리 등 협력 및 의제 대응(2회)
 - * 불법벌채·무역 전문가회의(Experts Group on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d Trade)
- [신규]목재식별 기술 고도화* 및 국제표준 수립을 위한 국내외 연구협력
 - * 국내 : (과학원) DNA 및 화학적 지문 분석, (서울대) AI 해부학 자동식별
 - ** 국외 : (인니) 현장식별 및 전기분광 분석, (미국) 위스콘신大 AI 자동식별 등

라. 추진일정

- APEC EGILAT 회의 참석 및 의제 대응 : 2월·8월(연 2회)
 - 역내 목재통합정보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 3월
- 신규품목(펄프·보드류) 계도기간 종료 및 세관장확인물품 지정 : 5월
-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개정 : 6월
- 「(가칭) 수입목재 합법성 관리·증진 법률」 제정 추진 : 9월
- 신규품목(펄프·보드류) 수입국의 합법벌채 세부지침 개선 : 9~12월
- EU 아세안지역 목재합법성 인증 워크숍 : 11~12월
- 한국형 실사모델 및 산림전용·황폐화 방지 가이드 개발 : 12월
- 국내 목재식별 전문가 회의체 운영 : 분기별 1회(연 4회)
- 수입목재 합법벌채검사 및 민원 상담채널 운영 : 연중
- 수입수종 공인재감 및 해부데이터 DB 구축 : 연중

11.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

(임업수출교역팀, 042-481-1861)

목 표

- ◇ 접경지역 산림재난 공동 대응 협력으로 남북협력 기능 유지
- ◇ 센터 시설을 산림사업 활성화 및 국민 산림교육 기능 강화에 활용

가. 정책여건

-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군사 도발로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 변화
 - 남북 간 재해재난 공동 대응을 위한 ‘그린데탕트 추진’ 과제 수행 중
 - 탈북민 자립 기반 확충 및 탈북청소년 미래인재 육성에 노력
- 북한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산림은 황폐화 심각
 - 북한은 10년간(15~24년) 산림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복구 이행 중
 - * 산림면적 939만ha 중 28%인 262만ha가 황폐화('18년 기준)
 - 기후변화 대응에 일관된 관심을 표명하고 국제사회 협력 의지를 피력
- 남북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협력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남북협력의 필수 기능은 지속적인 유지 필요

나. 기본방향

- 접경지역 산림재해재난 공동 대응을 통한 ‘남북 그린데탕트’ 지속 이행
- 既 구축된 시설과 자원을 국내 산림사업 활성화에 활용하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산림협력 기능 유지
- 북한 이탈 주민·청소년 조기 정착 및 산림치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민간협력 및 국민소통으로 남북 간 산림협력의 지지를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센터 운영) 남북관계를 고려한 묘목생산 규모 및 운영 방식 개선

- 밀원수 등 공익조림 수요를 고려한 활엽수 위주 생산·공급
 - 특수조림용 묘목 공급 및 센터 유지를 위한 적정규모의 묘목 생산
 - * (파주) 200만 → 140만그루, (철원) 70만 → 40만그루, (고성) 100만 → 70만그루
- 묘목은 국유림 조림, 산불피해지 복구 등 긴급 수요에 활용
- 고산 침엽수 묘목의 본격 출하에 대비한 수요·공급 방안 마련
 - * 구상·분비·종비나무 약 100만본 규모, '27년 출하 예정
- 남북 간 산림협력과 양묘 교육·체험활동 등의 공간으로 활용
-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요에 활용하도록 전시실 등 개선
 - * (파주) 국제 산림협력, (철원) 접경지 복원, (고성) 고산수종 복원

2) (자원 활용) 남북산림협력 비축자원 효율적 운용

- 센터 특성화 사업 및 활엽수 증점 육성에 필요한 종자 확보
 - 인건비 등 운용 예산 활용한 채취·구입, 저온저장고 보관
- 종자는 센터 양묘에 우선 활용, 일부는 연구용 등 기타 수요 발생 시 지원
- 활력이 떨어져 갱신된 종자는 교육 및 체험용 기자재로 활용

3) (시범·연구) 북한 정보 활용 및 시범·연구사업 추진

- 既 수집된 북한 산림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북한 산림현황' 분석
 - 최근 3년간 수집된 토타보기 자료에서 북한 산림사업 정책 동향을 파악
 - * ('21년) 1,070건 → ('22년) 1,190건 → ('23년) 1,294건, 산림재해 현황 및 복구 수종 등

- 기능성 미생물 친환경 농약 활용으로 건전한 묘목 생산
 - 병해충방제, 묘목 초기생장 및 뿌리발달 촉진을 위한 미생물 농약 시비
 - 고성 양묘장에서 실시한 시범연구를 토대로 파주·철원센터까지 확대
 - * ('23) 고성 고산침엽수 → ('24) 파주 유실수, 철원 식·약용 식물
- 접경지역 솔잎혹파리 친환경 방제 효과 모니터링 실시
 - 먹좀벌 방사 연구 및 시험 차원에서 철원(2ha)지역 대상으로 실시
 - * 국립산림과학원 합동으로 토양 내 솔잎혹파리 기생물 및 먹좀벌(천적) 형성률 조사
- 북한 REDD+ 시행을 위한 역량 파악 및 기술지원 방안 모색 연구

4) (인권 개선) 북한 이탈주민 국내 조기 정착 및 산림치유 실시

- 센터·양묘장 근로자로 우선 취업하도록 홍보 및 알선
- **[신규]**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숲케어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7~8월)
 - 산림체험을 통한 새터민 청소년의 정서 함양 및 심리적 안정 유도
 - * 새터민 청소년이 재학 중인 특성화 학교를 대상으로 산림체험 캠프 추진
- **[신규]**국내 거주 북한 출신 산림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6월)
 - 북한 산림실태 파악 및 정보 공유, 산림 협력과제 발굴 토의
- 임농복합경영 임지를 활용한 이탈주민·단체 활동 지원(9~10월)
 - 농작물 수확 체험 및 생산 농작물을 '이웃사랑 나눔'에 활용

5) (협력·참여) 민간협력 및 국민참여로 남북 그린데탕트 지지 확보

- 정부·국제기구 협업으로 접경지역 산림재난 공동대응(연중)
- 국민 소통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워크숍 추진(9월)
- MOU 단체(15개) 간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및 활동 지원(연중)
 - 탄소중립 평화의 숲 조성, 남북산림협력 교육 및 체험 등
- 청년(대학생) 참여 남북산림협력 공감 아카데미 운영(5~6월)
 - 국내 산림전공 대학 및 통일 동아리 대상

라. 추진일정

- 접경지역 솔잎혹파리 친환경 방제 효과 모니터링 : 3월
- 고산 침엽수 등 장기 양묘 수종 수요처 파악 : 4월
- 청년 참여 남북산림협력 공감 아카데미 운영 : 5~6월
- 국내 거주 북한 출신 산림전문가 참여 세미나 : 6월
-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숲케어 산림치유프로그램' : 7~8월
- 남북 그린데탕트 국민소통 워크숍 : 9월
- 임농복합경영 임지 활용한 이탈주민·단체 활동 : 9~10월
- 센터 및 양묘장 묘목생산 및 공급 : 연중
- 정부 부처 및 국제기구, 민간단체 협력 및 소통 : 연중

2024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산림산업정책국

1.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산림정책과, 042-481-4135)

목 표

- ◇ 경제·환경·사회적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림기본계획의 실효성·정합성 제고
- ◇ 국가 NDC 달성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 산림계획 수립·이행

가. 정책여건

- 산림기본계획은 20년간의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이 수립·운영
- 수립 이후, 기후위기, 산림재난, 생물다양성,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등 산림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이 가시화
- 글로벌 이슈와 메가트렌드에 따른 산림의 역할 확대에 부응하고, 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점

나. 기본방향

- 지난 5년간 산림기본계획의 부문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중요한 여건 등을 반영한 발전적 보완 및 시행을 통해 산림기본계획의 역할을 견고화
- 산림기본계획과 부합·연계하여 수립되는 지역산림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실성 반영한 계획의 변경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대내·외 여건 반영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 제6차 산림기본계획 전반부('18~'23)의 부문별 성과 및 한계를 확인하고,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

2)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산림계획 및 시·군 산림계획 수립

- 산림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변경 방향 검토
 - 적절한 산림경영은 환경, 사회적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 산림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19년부터 수립되고 있는 시·군 산림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점검
 - 소속기관, 시·도 담당자와 소통·협의를 통해 시·군 산림계획 방향 정비

3) [신규] '산림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정책 실효성 강화

- 「산림기본법」 개정('23년)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 신규 구성(~'24.6월)
 - (역할) 산림기본계획 수립·변경,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라. 추진일정

- 제6차 산림기본계획(변경) 시행 : 상반기
- 「산림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마련 : 1월
- 산림정책협의회 구성 : 6월
- 지역산림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변경 방향 수립 : 3분기
- 시·군 산림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보완 및 배포 : 하반기

2.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건립 추진

(산림정책과, 042-481-4135)

목 표

- ◇ 녹화의 역사와 산림의 가치, 산림정책을 전시와 체험을 통해 홍보
- ◇ 국산목재를 활용한 건축으로 목조건축의 기술력과 우수성 알림

가. 정책여건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산림 국가로 녹화 성공사례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정책 추진
- 최근 산림과 목재는 국가 NDC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감축 수단으로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치가 증가

나. 기본방향

- 산림녹화에 관한 역사적 가치 및 산림정책의 성과를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공하여 대국민 공감대 형성
-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상징성 있는 목구조 건축물을 건립하여 국산 목재와 목조건축 기술의 발전 모습과 우수성 홍보 및 확장 가능성 제시

다. 세부추진계획

-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건립(4년차 : 2차년도 시설공사)
 - 주기적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공정관리 및 사업품질 확보
 - * 사업규모 : 연면적 3,841㎡(지하 1층, 지상 2층), 하이브리드 구조(목구조+철근콘크리트)
 - * 산림청(기념관 건립 총괄)-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운영 관련 조직·예산 수립)-국립세종수목원(개관, 건축·전시 등 실질적 운영)
- 전시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시구상 및 설계 지원
 - * 국토녹화 기여자, 역대 산림청장인터뷰 등 국토녹화 기록물 아카이브 전시 지원

라. 추진일정

-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 시공(2차년도) : 5월 ~ '25. 1월(21개월)

3. 기후위기 대응 산림분야 역할 강화

(산림정책과, 042-481-4199)

목 표

- ◇ 산림부문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이행점검 대응
- ◇ 통계, 기후대응기금, 국민인식 등 탄소정책 추진기반 강화

가. 정책여건

- (국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9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월) 등 본격적인 탄소중립 이행 시기 도래
 - (국외) 지구온난화를 1.5℃ 또는 2℃로 제한하기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요구 증가
- *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나. 기본방향

- 연도별 산림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이행력 확보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산림탄소 MRV* 체계 고도화
- * MRV(측정·보고·검증,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 기후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홍보·대외협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부문 NDC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이행 강화**
 - (산림청) 연도별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한 관계부서 공감대 형성
 - 관계부서, 기관 대상 산림부문 NDC 개념·목표 및 부서별 필요 정책·사업물량 알림(설명회 등), '25년 필요예산 편성 지원

- (지자체)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산림분야 이해도 제고
 - 산림청 ↔ 지자체 간 소통협의회 운영 정례화(반기별 1회), 시군구 2030 NDC 목표 설정 및 이행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 등
 - * 시도 기본계획 : '23. 10월까지 수립, 시·군·구 기본계획 : 시도계획 수립부터 6개월 내
- (탄녹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NDC 이행점검 대응
 - 산림부문 감축실적 및 주요 정책지표 현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

2) 기후대응기금 운용 총괄 및 산림탄소 MRV 체계 고도화

- '24년 기후대응기금 집행 관리 및 '25년 기금 확보
 - '24년 기금 집행 현황 점검 및 결산 업무 이행
 - * '24년 정부안 1,626억 : (도시숲) 1,407억, (복원) 67억, (REDD+) 31억, (MRV) 54억 등
 -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5년 기금 확보
 - * 기재부(기후대응전략과, 기후환경예산과), 국회(기재위, 예결위) 검토 적극 대응
- 산림부문 감축량 산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체계 신뢰도 향상
 - (대내) 산림탄소 MRV 정보체계 구축방향 설정으로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자동화 및 주요 정책지표에 대한 일원화된 시공간 정보플랫폼 마련
 - (대외)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구축 대응(산림부문 정확한 통계 반영 등)

3)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외협력 및 법령 정비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전문가 양성
 - (온라인) 공무원·국민들의 이해의 폭 확대를 위한 사이버교육
 - * 총 4차시 : ①탄소중립과 산림(과학적 근거), ②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③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④국내외 산림탄소시장의 이해
 - (오프라인) 산림교육원 시책교육(5월), 특강 등을 통한 전문가 육성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업
 - 계획 수립·이행, 흡수원 분야 정책·사업 추진 등 협력체계 구축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24.5월)
 - * 탄소흡수원특성화학교 지정기준 보완, 산림탄소흡수량 제출시기 변경 등

라. 추진일정

- 산림부문 MRV 정보체계 방향 설정(2년차) : 1월
- 산림부문 NDC 달성을 위한 관계부서 물량공유·회의 : 1 ~ 2월
- 산림청-지자체 탄소중립 소통협의회 개최 : 2월, 8월
- '22년 기준 국가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 4월
- 기후변화와 산림탄소 과정 시책교육 : 5월
- 탄소흡수원법 시행령 개정 완료 : 5월
- 기후대응기금 중기운용계획 및 '25년 예산 정부안 마련 : 5월, 8월

4.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산림정책과, 042-481-4037)

목 표

- ◇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추진
- ◇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과 ESG 실천에 기업과 협업 강화

가. 정책여건

- 탄소중립에 대응하여 자발적탄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 대한상의는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탄소감축인증센터’ 운영(’23년 출범)
 - * 대한상의-환경부,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정착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23.7)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한 흡수인증량이 증가(’22년 21,345tCO₂ → ’23년 47,318tCO₂) 추세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 ESG* 항목 확대, 기후공시 대응 기업의 ESG 관심 확산
 -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기업에 대한 비재무적 평가 기준이 되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관련 요소)

나. 기본방향

- 국내·외 협력사업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
 - 민간 거래플랫폼, 국외 자발적 시장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업의 ESG 대응, 산림분야 민관협력을 위한 소통 강화, 사업발굴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국외 협업기반 강화

- 산림탄소흡수 인증량 거래에 민간거래 플랫폼과 협력 추진
 - 대한상의가 구축한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인 ‘탄소감축인증센터’를 통해 산림탄소 흡수인증량 연계를 통해 거래 활성화 도모
 - * 산림청-대한상의 산림탄소상쇄제도 연계를 위한 기술적 논의(상반기), 거래 연계(하반기)

-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의 국제 자발적 시장 표준 등록 추진 연구
 - VERRA¹⁾와 상호호환을 위한 연구('23)를 통해 산림탄소상쇄사업 방법론을 VERRA 등록부에 하나의 방법론으로 등록하는 방안 도출
 - * '24년말 VERRA의 VCS²⁾ 등록부에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 등록 목표
 - * 참고사례 : 브리티시 컬럼비아(캐나다) 산림탄소 상쇄 프로그램이 VERRA 방법론 등록

1) Verification and Terra :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2007년 설립한 비영리법인
 2) Verified Carbon Standard : 국가, 기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실적을 모니터링·검증하여 크레딧을 발행,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

2) 기업의 ESG 수요에 매칭한 산림분야 협력사업 활성화 노력

- ESG 협약기업의 산림분야 관심사항, 신규 협업사업을 위한 의견수렴 추진
 - ESG 협약을 체결한 11개 기업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추진한 산림분야 사업 경과 확인 및 추가 관심 갖는 산림분야 수요 파악
 - * 신규 관심분야와 연관있는 각 과, 지방청, 국유림관리소와 소통창구 마련을 지원
- 산림청 지방청, 국유림관리소에 민간참여 가능한 사업 발굴 요청
 - 기업 문의에 대응하고 산림분야 관심 촉진을 위해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개발, 기업설명회 등 각 기관의 능동적인 활동 필요

3)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제정에 맞춰 글로벌 인재육성 집중·강화

-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생의 국제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기구 업무경험,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해외공동연구 등 추진
 - * 고려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개발도상국의 원조계획을 조정·통일하는 기구)등 기관에 단기연수 파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부대행사 개최 등
 - * 국민대: CIFOR(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국제산림연구센터)와 인니 맹그로브숲·이탄지 보전·복원 연구 등

라. 추진일정

- VCS 등록부에 산림탄소상쇄제도 방법론 등록 연구 : 2~12월
- 민간 기업과 ESG 업무협약 추진 및 설명회 : 5월, 9월
- 산림탄소상쇄제도 교육 추진 : 5월(일반), 11월(심화)
-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운영 : 1~12월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산림탄소상쇄사업 흡수량 인증 : 11월
- 산림탄소상쇄제도와 민간 플랫폼 연계 추진 : 하반기

5.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활성화

(산림정책과, 042-481-4037)

목 표

◇ 한국산림인증제도 확산 노력(산림인증면적, 인지도)

* 한국산림인증제도 : Korea Forest Certification Council

가. 정책여건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즉, 산림의 경제, 환경, 사회적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16년부터 한국산림인증제도 도입·운영
- 국제산림인증기구(PEFC*)와 상호인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인증제도로 성장
 - *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지자체 최초 피산이 한국산림인증 획득. 그러나 제도 활성화 및 사유림으로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산림경영인증림 확대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 주요 지표

나. 기본방향

- 산림인증림(FM*) 및 인증제품(CoC**)에 대한 공급 기반 강화
 - * FM(Forest Management) / ** CoC(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국민·기업 대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한국산림인증제도 홍보강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
-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 평가·실효성 검토’ 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다. 세부추진계획

1) 지속가능한 산림인증면적 확대를 통한 인증원료 공급 확대

- 실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는 산림 중심으로 인증림 확대 추진
- 산림인증제도에 관심 있는 지자체에 산림경영 모델 개발 지원 (잠재성 있는 지자체 발굴 및 컨설팅)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면적 확대

2) 한국산림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 공공부문의 인증제품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추진
- 산림인증기관 발굴 및 지정 확대를 인증비 경감 및 참여 확대
- FM(산주)-CoC(목재기업) 간 연계 지원으로 공급망 확대

3) 산림인증제도의 인지도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접점 확대

- 산림청과 ESG 협약을 체결한 기업, 기업과의 ESG 행사 등을 통해 산림인증림 제도 홍보, 인증제품 활용 협조 추진

4)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 평가·실효성 검토' 결과 후속조치 추진

- 단계별(1·2단계) 심사내용 구체적인 명시, 심사 비용에 대한 지침 마련(~'246월)
- 인증품목 분류코드·내용 공개 등 개선 추진

라. 추진일정

- 한국산림인증제도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 기반 마련: 연중
- 산림인증 공급망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기업 컨설팅 : 연중
-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 추진 : 반기별 1회
- KFCC 산림인증(FM·CoC) 추진 : 연중

6. 한국임업진흥원의 역할 강화 및 경영효율 개선

(산림정책과, 042-481-4037)

목 표

- ◇ 임업인 요구 및 산림정책 현장이행 역할 강화
- ◇ 정부정책 및 대·내외 지적사항 개선 조치를 통한 기관 경영효율 개선

가. 정책여건

-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한국임업진흥원의 현장 지원 방안 이행 필요
- 기관 운영 및 사업 대내·외 지적에 따른 업무개선 필요
 - * 감사원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9.11) 및 산림청 종합감사 결과통보(8.18)
- 주무부처의 재무관리·경영평가 감독범위·범위 확대에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현장 지원 추진과제 이행 강화
- 정부정책 이행 강화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 증대 및 기관 발전방안 마련
 - * 탄소중립 정책지원, 지방이전 정책, 공공기관 혁신계획 지속 이행 등
- 대내·외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이행을 통한 업무개선 실시
- 한국임업진흥원의 고유사업 내실화를 위해 사업비(자체수입 증대 등) 확보 방안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한국임업진흥원의 현장 이행 역할 강화 지원
 - (경제임업)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를 통한 임가소득 달성

- (사회·환경임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및 산림분야 탄소중립 지원
- (산림과학·디지털플랫폼) 4차산업 기술, 신규 R&D 사업·과제 확대를 통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 및 기술 사업화 촉진

2) 한국임업진흥원의 경영효율 증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정부정책 이행 현황 점검
 - 탄소중립 정책지원, 공공기관 혁신계획 지속 이행 등
 - 효율적인 지방이전 이행을 위한 신청사 설립 등 추진현황 점검
- 임원추천위원회, 인사, 사업운영 등 기관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 * 감사원 및 산림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현황 지도·감독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간 소통 강화를 통한 상호발전방안 모색

3) 고유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체수입 확대 방안 마련 지원

- 1차 지방이전 완료에 따른 시험·분석 서비스 홍보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 타 시험기관과 비교·분석을 통한 자체수입 확대 방안 검토
- 재정당국 협의를 통한 현실적인 세입예산 반영 노력

라. 추진일정

- 한국임업진흥원 기관 운영 관련 검사·감독 : 연중
- 한국임업진흥원 지원 예산 부정수급 모니터링 : 매월
-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분석서비스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 연중
- 2차 지방이전 위한 신사옥 건립 추진현황 점검 : 연중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간 소통간담회 : 반기

7.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구조물·목재수확 기술 개발

(산림정책과, 042-481-4137)

목 표

- ◇ 국산 목재를 활용한 중고층 목조건축물 요소기술 개발
- ◇ 험준한 임지에서 목재 수확이 가능한 대형·소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가. 정책여건

-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 하도록 의무화 및 신규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
- 글로벌 목조건축 시장은 ‘22년 912.8백만 달러로 ’21년 857.1백만 달러 대비 6.5% 성장하였으며, 2031년까지 연평균 6.0% 성장할 전망
- 국내 산림작업 근로자 수는 지속 감소하나 고령 노동자(61세 이상) 비율은 증가 추세로 향후 산림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 국내 전체 임목생산 장비 7,396대(’21년 기준) 중 국내 절협지 산림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임업기계는 전무

나. 기본방향

- (목구조물) 중고층 목조건축 기반구축을 통해 국내 목조건축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설계·성능 기준 적합성 인증을 통한 시공 능력 확보
- (탄소중립) 국내 생산 목재 이용률 제고를 통한 HWP 요구 조건 충족 및 ‘2050 탄소중립’ 조기 달성에 기여
- (목재수확) 국내 험준지를 극복하는 장비 개발로 산림작업의 위험성을 낮추고 목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국내기업의 기술력 확보
- (작업안전) 산림사업 현장의 작업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임업 장비 新일자리 창출 가능하며, 임업재해율의 감소

다. 세부추진계획

- 1) **신규**중고층 목구조물 건축을 위한 요소기술(구조, 부재, 내화, 에너지) 개발 및 BIM 기반 설계 추진
 - 既개발 요소기술을 종합·활용한 중고층 목조건축물의 요소기술 개발과 실증 전 단계 기술을 확보 추진
 - * 시뮬레이션 기반 중고층 목구조물 기술, BIM / OSC 기반 부재개발
 -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한 내화 및 외부마감 시스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고층 ZEB¹³⁾ 3등급 이상 핵심기술 개발
- 2) **신규**35°이상 절험지 환경 극복이 가능한 대형 벌목작업용 지능형 하베스터 개발 및 실증 추진
 - 절험지 환경 극복 가능한 4지 바퀴형 이동체 플랫폼 및 자세안정, 전복·충돌방지 이동 제어기술 개발
 - 벌목·조재를 위한 하베스팅 툴, 집재를 위한 유압식 그립퍼 및 잔목 파쇄를 위한 파쇄툴·툴체인징 기술 개발

라. 추진일정

- '24년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 : 1월
- '24년 출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협약 체결 : 1분기
- '24년 국가 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 수립 : 2분기
- '26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 3분기
- 연구 성과에 대한 고객 유형별 성과 보고회 개최 : 4분기
- '25년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 4분기

13) ZEB(Zero Energy Building, 제로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이 최종적으로 영(Zero)이 되는 건축물로서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은 인증을 받아야 함.

8. 경제림 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영 체계 구축

(산림자원과, 042-481-4181)

목 표

- ◇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선도 산림경영단지 중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가. 정책여건

- 산림자원 조성·관리에서 경제임업 실현을 위한 산림경영으로 산림 자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 가꾸고 → 수확 → 이용하는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촉진할 필요
- 산림경영에 대한 산주 관심 증가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등 경영·관리계획 수립
 - 경제림육성단지 경영계획 수립 및 선도 산림경영단지 기본계획 정비
 - 단지별 지역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한 경영·관리모델 정립
-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체계 전환 및 과학적 경영·관리 추진
 - 지속가능한 사유림 경영을 위한 산주 주도 협업경영 도입
 - 첨단기술, 임업기계 활용 확대를 통한 기술임업 선도
- 임업진흥권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정·해제 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 지정·해제 기준 및 실태조사 방법 정립, 업무매뉴얼 등 정비
- 「산림자원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산주,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으로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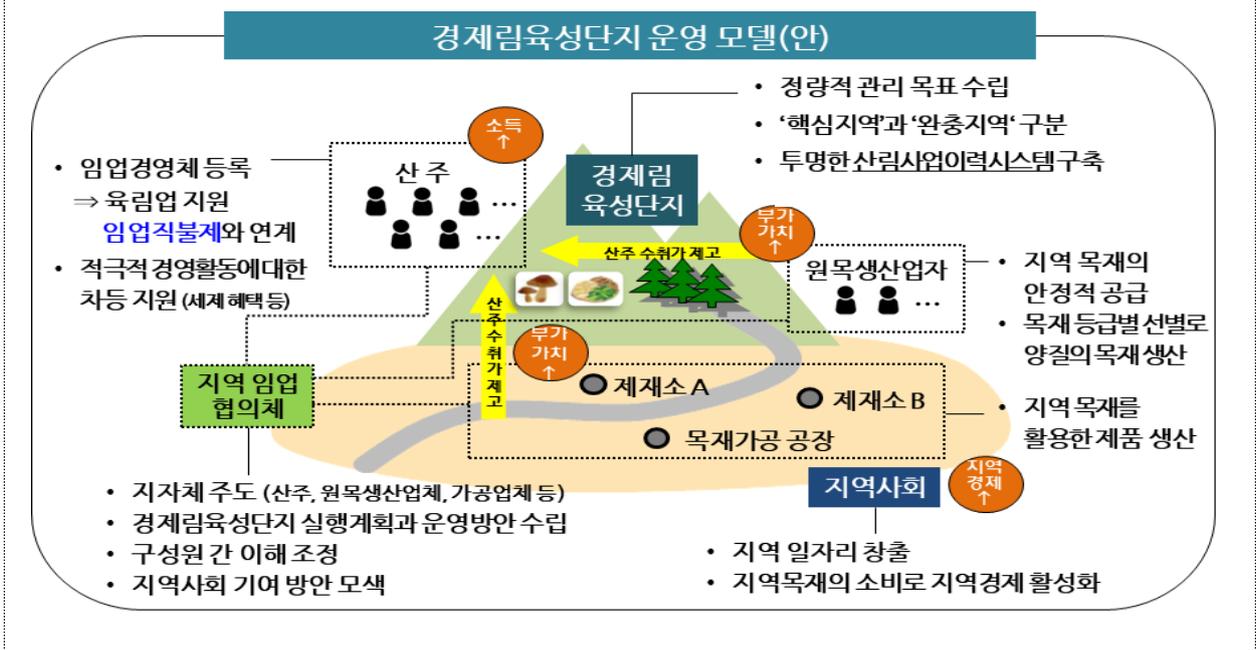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경영체계 개선

-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산림사업 강화를 위한 경영·관리계획 수립
 - 경영 여건이 우수한 중점구역에 대한 산림사업 집중 강화
 - *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지역산림계획 및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3~'27)등 주요 전략계획 내 경제림육성단지 추진과제 이행
 - 단지별 산림자원량*, 지역별 수요와 전망 등을 반영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공급(소비)계획을 포함한 순환경영 실행계획** 마련
 - * 단지별 산림자원량을 산출(산림과학원 협조)하여 기초자료 제공
 - ** 계획 대상 : 394개단지, 202만ha('23.1월 재편 기준)
 - ① 국유림(119개, 52만ha) : 경제림육성단지 경영·관리계획('20~'37) 변경 추진
 - ② 사유림(275개, 150만ha) : ('24년) 경영·관리계획 수립 시범사업(3개 시·군)
 - ('25년) 전체 사유림 단지 확대

< 경제림육성단지(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순환구조(안) >

- 지역산업과 연계 강화
 - 제재소, 임산물 가공·유통 및 시장 분석으로 수요를 파악, 단지를 원자재 공급처로서 산업과 연계 강화
- 국비지원 산림SOC 집중 유도
 -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목재가공, 소득지원, 임도 등 지역밀착형 산림SOC 집중
- 입목매각 공개입찰제 확대
 - 목재수확을 통한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 온비드시스템을 활용한 입목매각 확대(산림조합 서비스 확대)



- 목재생산·공급을 기본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 기본(경영)계획 정비
 - 단지별 공급 가능한 산림자원량*을 기초로 목재수급 계획**의 정합성 확보
 - * 단지별 산림자원량을 산출(산림과학원 협조)하여 기초자료 제공
 - ** 지역 목재산업, 공공건축 등 수요를 파악하여 목재수급 계획 마련(시·군 주관)
 - 선도 산림경영단지 기본(경영)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 장기 경영목표, 목재수급 계획, 산림사업 실행계획 등 적절성 검토
- 단지별 산림자원에 대한 생산·유통·소비의 지역 선순환 경영모델 확산
 - 지역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한 각 단지별 선순환 경영·관리 모델 구축
 - 목재·부산물 이용 기반, 산림복지서비스 등 정책사업 연계 확대
 - * ① 기반형 : 목재생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기반형으로 목재와 그 부산물 기반
 - * ② 파생형 : 기반형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등 연계

[모델 사례①] 목재생산 기반형 운영모델 춘천 사북 선도 산림경영단지

◆ 선도 산림경영단지 생산 목재를 춘천목재협동조합(목재산업단지, '23.1월 준공)에 판매, 목재친화 도시('22년 춘천 선정) 등을 통한 지역 소비 체계 구축



[모델 사례②] 목재생산-산림서비스 연계형 운영모델 의령 응봉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 목재생산단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득원* 확보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입
 * 청미래당굴 식재(의령 망개떡 잎 공급), 숲가꾸기 임지 내 산림텃밭 분양(임대수익), 숲길.숲체험공간(경남 미래 교육원 숲체험 유치, 교육비 수익) 등



2)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체계 전환 및 과학적 경영·관리 추진

가) 지속가능한 사유림 경영을 위한 산주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

- 경영주체로서 참여 산주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한 협업경영 도입
 - * (기존) 대리경영, 전문경영인 관리 → (변경) 산주 직접경영, 전문가 경영 지원
- 선도 산림경영단지(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 산주 역할 강화에 따라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협업경영계획구로 구분
 - * (기존) 기본계획 → (변경) 기본계획 + 산림경영계획(협업경영계획구, 인가)
 -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2항제2호 “협업경영계획구”
- 산주협의체를 산림경영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 강화
 - 계획수립·이행에 대한 기본 의사결정을 산주협의체를 통해 실시
 - 운영협의회는 산주협의체 의사결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 제고
 - * 운영협의회 : 산주대표2, 지역주민2, 경영지도2, 지자체2, 전문가2 등 참여
 - 산주협의체 기금 조성으로 경영 재투자 재원 등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 구축

나)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 내실화 및 품질관리 강화

- 지자체 산림사업을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집중하여 경영성과를 창출
 - 해당 시·군의 산림사업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집중하여 경영모델 창출
 - * 특히 임도, 사방시설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선도 단지 우선 실행
 - 특히, **지원완료 단지는** 경영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성과를 유지·확산
 -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 절차 이행, 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 적극 추진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 연속성 확보
 - * (지원완료) 강원 흥천, 전북 진안, 전남 보성
 - 사업추진 및 성과 모니터링 실시(분기별 실적 제출), 담당자 교육 참여
-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운영 시기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문제해결형 컨설팅으로 단지별 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성과 제고
 - * 사업초기 단계 또는 신규사업 추진 시,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 발생

- (운영 중기 4~6년차) 단지 성과 진단·분석으로 경영전략 재정비
 - * 단지 운영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으로 목표달성 및 성과창출 방안 모색
- (지원완료 10년차) 단지의 산주 자율경영 이행을 위한 운영방안 제시
 - * 기 구축된 경영기반의 지속적 활용 및 성과 유지·발전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상황 점검 의무화로 관리 감독 강화
 - * 시·도 및 지방청별 상·하반기 점검
 -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 기능 강화로 전문성 제고
 - * 설계·감리는 시·군에서 선정(직접수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산주협의체·운영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공개 경쟁으로 추진
-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역량강화 등을 위한 토론회 및 경영관리 교육 운영
 - 성과토론회, 권역별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경영성과 점검 및 정보 공유
 - * 국·사유림 성과토론회(5월): 현안 진단, 개선안 마련, 결과 및 성과 발표
 - * 권역별 현장토론회(7~8월): 경영목표·성과 점검 및 정비,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경영전문관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관리 심화교육 과정 운영
 - * 산림교육원(2회, '24.2월), 산림조합중앙회(2회, 상하반기 예정)
- 선도 산림경영단지 한국형산림인증(KFCC)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 * 한국형산림인증 취득 현황 : 6개소(국유 5, 사유 1)

다) 선진 기술임업을 이끄는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역할 강화

- 심고-가꾸고-수확하는 단계별 新산림자원관리 현장 실현 및 모니터링
 - 국유림 선도단지 중심으로 단계별 산림자원관리 기술 실현지 조성
 - 新 산림자원관리 실현지에 대한 지속적·장기적 모니터링(5개 지역)으로 산림자원관리 모델을 개발·발전 및 확산
 - 실효성 있고 현장적용 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실현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 첨단기술,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범사업으로 산림 자원 기술 분야 발전모델 개발·확산
 - 드론·지상 라이다(Lidar)를 숲가꾸기 등 선도 단지내 산림사업에 적극 도입
 - * 산림(농림)위성,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신기술 우선 도입(산림디지털담당관실 협조)

- 하베스터, 포워더 등 고성능 임업기계 운용·활용 사례 축적
 - * 개발된 시범모델 등은 제도화 전이라도 선도단지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전파
- 기존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연구기관과의 연계로 지속성 유지
 - * 단지별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사업성과 제고(국립산림과학원 협조)

라)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산주,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단지 운영 내실화 도모
 - 산주협의체, 운영협의회 운영 정례화를 통한 산주,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사업이해도 제고
- 선도 산림경영단지(경제림육성단지) 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
 - 사업참여 주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사유림 경영 인식 제고
 - * 산주, 지자체 담당자, 경영전문가 등 사업 참여자를 홍보 주체로 릴레이 인터뷰, 유튜브 영상 등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추진
 - * 사유림 경영 10년차 단지 성과 홍보를 위한 자료집 제작 추진(단지별 공동)

3) 임업진흥권역 관리 강화

- 임업진흥권역 시범사업을 통한 현행화 방법론 정립
 - 시범사업 추진으로 임업진흥권역 정비 기준 등 현행화 방법론 확립
 - * 시범 정비 사업 추진 및 향후 일제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등
- 임업진흥권역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등 업무매뉴얼 및 관리요령 개선
 - *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등 현행에 맞는 종합적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4) 「산림자원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산림자원법」 전부개정 및 하위법령 제때 마련
 - 법률개정 적극적 대응 및 하위법령 제때 마련으로 법률시행 적기 준비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로 입법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
 -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의견수렴, 제도개선 국민공모 등 추진

라. 추진일정

- 2023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평가 : 1~3월
- 선도 산림경영단지 토론회 개최 : 5월(성과), 7~8월(권역별)
-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실무교육 : 2월, 연중
-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실태 점검 : 6월, 11월
- 산림자원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 : 7~9월
-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성과 보고회 : 10월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추진 실적 제출(분기) : 분기별 말일까지
 - * 제출대상 : 29개 단지(지원중 26, 지원완료 3개 단지, 흥천, 진안, 보성)
- 경제림육성단지 경영·관리계획 세부 수립지침 마련 : 11월

9. 우수한 종자·묘목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산림자원과, 042-481-4185)

목 표

◇ 종자공급원 확대 및 결실환경 개선, 묘목생산체계의 고도화로 고품질 종자와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

- 사업량 : 종자 50톤 생산, 조림용 묘목 50백만 그루 생산

가. 정책여건

- (종자생산) 기후변화 적응성 및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에 대한 수요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종자공급원 확대·개선 필요
- (묘목생산)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양묘시스템 고도화로 노동력 의존형 묘목생산 구조개선 및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등 대응
- (이력관리) 국가 종묘정책의 근간인 이력관리가 사업별 연계성이 부족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안정화 시킬 필요

나. 기본방향

- (종자생산) 유전적으로 우수한 산림용 종묘 생산량 확대를 위해 채종원 등 종자공급원 신규 조성 및 결실환경 개선
 - 산림종자처리동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로 종자생산 효율성 향상
 - 결실불량 채종원 과감한 갱신 및 신규조성, 결실환경 개선사업 병행
- (묘목생산) 스마트양묘시스템, 양묘시설 현대화 등 양묘시설의 과학화·자동화로 묘목 생산성 향상 및 체계적인 생산기반 구축
- (이력관리) ‘종묘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자생산부터 묘목생산, 조림에 이르기까지의 사업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다. 세부추진계획

1) 종자생산

가) 종자공급원 확대

- 기후변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채종원 조성 확대**(50ha)
 - * ('23) 1,061ha → ('24) 1,101ha (신규 조성 40ha, 갱신 10ha)
- 종자공급원 **종자결실 환경개선사업** : 60ha(국유림 30, 민유림 30)
 - (작업요령)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 매뉴얼」 참고
 - (사전협의) 사업추진 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협조하고,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토론회 실시(2~11월)
 - (모니터링) 실행 후 센터 등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실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엽수 등 종자공급원(채종림, 채종임분 등) 확대

나) 종자채취

- **주요 경제수 및 활엽수에 대한 산림용 종자채취(50톤)**
 - 낙엽송 채종원 결실예찰을 통한 채종임분 추가지정 등 탄력적 대응
 - * 「채종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협의 실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산불피해지 복원, 기후변화 대응 수종 등 종자 채취·확보
 - * 신갈, 상수리 등 자생수종, 붉가시·종가시 등 기후 대응 수종
 -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종자채취 시 고소차 활용(임차비 배정)
 - * 기관별 고소차 임차비(4.5백만원/대) 배정(관리소 27대, 품종센터 1대)
 - 종자공급원 외에서 채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지도 강화
- **산림종자처리동(산씨움터) 운영 고도화 및 안정화**
 - 종자별로 마련한 자동화 처리방식 매뉴얼을 활용하여 효율성 향상
 - * 기반 확충 및 매뉴얼 마련 등 처리 가능 수종 확대를 통한 역할 강화(7종 → 10종)
 - 일시적 노동력이 집중되는 종자처리는 센터에 의뢰하여 종자생산
 - * 자동화 시설처리로 구과 병해충피해 방지와 종자의 건전성, 균일성 확보
- **종자공급원 이력관리 등**
 - 기관별 종자공급원에 대한 생산 이력관리 전산화 철저

다) 종자의 저장 및 공급

- (종자저장) 2개 등급(합격, 예비) 및 품질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
 - 기관별 잔여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위탁 저장
- (종자공급) 채종원산 종자 우선공급, 검증된 종자 이외 사용 제한
 - 산림용 종자는 반드시 「종묘사업실시요령」 제8조에 의거 종자품질 기준 등에 따라 검사·품질표시한 종자 사용
 -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 강화
- (종자가격)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문에 예비종자 가격 기준 마련
 - 예비종자 가격은 매각 당시 효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근거 명시
 - * ex. (헛개나무) 합격종자(효율 30% 이상) 166,700원/kg('22년 고시가) 매각,
예비종자(효율 15% 경우) 83,350원/kg(합격 대비 50%)에 매각

2) 묘목생산

가) 주요 경제수 묘목생산

-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대별 육성 수종, 산주 요구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소나무 등 침엽수 생산량은 축소하고, 활엽수 생산 확대
- 산불피해지 복원, 산림병해충 대체, 탄소흡수력·기후변화 적응성 등 미래수종 조립을 위한 신규 수종 양묘 확대
 - * (산불피해지 복원)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굴참나무 등 /
(소나무재선충병 대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테다소나무 등 /
(기후변화 적응성)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루브라참나무, 포플러류 등

나) 종묘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정착

- 종자생산부터 조림사업까지 이력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 (지방청)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시·도) 사유림업무지원포털 활용
 - (이력관리) 종자 원산지, 종자검사, 종자관리 및 수급, 양묘 시업관리, 묘목출고, 식재묘목정보 등 모든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
- 양묘 관련 정기보고(사업상황, 실태조사) 시스템으로 보고

3) 조직배양묘(낙엽송) 관리 및 조림지 모니터링 철저

가) 조직배양묘 생산·관리 체계

- 체세포배 보급('16~'23) 이후 이력관리(고사, 폐기, 조림 등)를 위한 생산·관리대장 작성 철저(국유·민유양묘장,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
- 조직배양묘 생산단계별 적정 배양방법 및 조건 등 개선한 표준 매뉴얼 활용으로 순화묘 등 생산효율 증진

나) 조직배양묘 폐기(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 및 기록유지

- 상품성이 없거나 추가 양묘를 하여도 실익이 없는 과년도 묘목
- 일반 용기묘에 비해 생장이 현저히 저조한 조직배양묘
- 기타 산지조림이 어려운 규격 미달묘
 -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하여 폐기하고 기록유지(자체판단 폐기 금지)

다) 조직배양묘 시범조림지(2017~2023년) 모니터링(계속)

- 조직배양묘·실생묘 생육특성 비교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모니터링 시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 조사 요령' 등 활용
- 2023년 생산된 조직배양묘는 2024년 기관별 자체 조림 및 사후관리하고 실적 및 활착 상황 등 모니터링 상황 보고(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4) 양묘시설 현대화

-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 추진(9개소 / 총사업비 20억 * 국비 6억)
 - 2023년 공모 심사 시 선정된 시설에 맞게 추진, 2025년 대상자는 묘목 생산성 향상(온도, 관수 자동제어 등) 등 사업 신청자 우선 선발 예정
 - * 대상 : 충북(청주), 충남(공주), 전남(진도, 화순), 경북(영주), 경남(진주, 하동)

5) 조림용 묘목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강화

가) 묘목 품질검사

- 조림용 묘목검사 강화
 - 묘목검사는 경력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철저히 이행
 -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출하금지 및 소독·폐기 등 조치
 - 간장의 범위기준, 적용 H/D율 등 개정된 기준 적용 검사 철저

○ 묘목생산자 실명제 정착

- 종자산지·종자공급원·생산자 실명제 실시(조림지관리대장에 명기)
- 양묘 포지에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번호가 표시된 표찰 설치
 - * 종자(산지증명) → 양묘장(산지표시) → 묘목수급(산지, 생산·검사자) → 조림(산지, 생산자)

나) 묘목 유통질서 확립

○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유통 시 품질표시 철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10호의 서식(종자 품질표시) 및 제10호의2의 서식(묘목 품질표시)에 의거 품질표시 확행

○ 민유양묘장에 대한 관리감독(지자체) 강화

- 대행자 자격기준 검증, 사업기준 준수여부, 사업상황 등 생산실태 점검
- 연약한 묘목(도장묘·세장묘·비경화묘) 생산 및 불량묘목 유통 근절

○ 소나무류는 반출금지 구역인지 여부 확인 후 유통

- 양묘장에서 묘목반출 시 확인 후 유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이행

6) 연구 및 개발사업

○ 유용활엽수, 난대상록활엽수 등 양묘 확대

- 피나무, 들메나무, 느릅나무, 가시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 시범 양묘

○ 안정적 노지양묘 생산을 위한 묘포지 토양조사 추진(용문, 화천)

- 토양조사 후 토양 물리성, 이화학성 등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7) 2024년 전국 내나무 갖기 캠페인 추진

- 식목일 전후 대국민 나무심기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기관별 나무 나누어 주기, 내나무 심기, 나무시장 운영 등 실시
 - (중앙) 기업 협업(메타버스) 등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 추진
 - (지자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캠페인 계획 수립·시행

라. 추진일정

- 2023년도 종자생산 및 파종용 종자 확보상황 파악·보고 : 1. 10.
- 채종립(임분)·수형목 지정·해제·선정현황 보고 : 1. 15.
- 2024년 내나무 갖기 캠페인 : 2. 1.~4. 30.
- 산림용 종묘 정책연구회(산림청·품종센터·과학원 등) : 반기별 1회
- 2024년 양묘사업 상황 파악·보고 : 5. 31.
- 2024년 종자결실 예찰 조사 보고 : 8. 20.
- 2025년 민유양묘장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 8월
- 2024년 묘목생산 실태조사·보고 : 10. 15.
- 2024년 제50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 개최 : 10월
- 2024년산 종묘가격결정 자문위원회 개최 및 가격 고시 : 11~12월
- 2024년 산림용 종자채취 결과보고 : 12. 31.

10.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나무심기

(산림자원과, 042-481-4185)

목 표

- ◇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 ◇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가 높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 탄소중립을 위한 생장이 우수한 수종의 경제림 집중육성 지속 추진
- 기후위기 및 재선충병 발생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대체 수종 관심 증가
- 도심 내·외곽 생활권 등 숲 조성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
- 밀원수림 조성 확대 및 수종 다양화에 대한 요구 증가

나. 기본방향

- 신규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하여 유휴토지 조림 등 신규조림지 확대
 - 협업을 통해 간척지, 유휴지에 나무심기를 통한 신규조림 확대
- 지역·기후를 고려한 경제성 높은 대표 수종으로 조림
 - 경영목적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기후대별 전략 수종을 확대
- 산림의 공익기능 회복 및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
 -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최적 발휘
 - 지역의 특색 있는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브랜드화
 -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림
- 천연하종갱신 등 조림방법 다양화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숲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2024년 조림계획 : 16,671ha, 960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24년 조림계획 (국비보조금)
① 경제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보조율 :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897ha, 484억원 . 국유림: 1,979ha, 99억원 . 민유림: 8,918ha, 38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조림 및 단기소득 조림 ■ 3,000본/ha(국 530만원/ha, 민 720만원/ha) 	
② 큰나무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보조율 : 50% (지방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64ha, 179억원 . 국유림: 400ha, 49억원 . 민유림: 2,164ha, 13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 경관조성을 위한 수종 식재(수고 1.5m 내외) ■ 350본/ha(1,205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6ha, 65억원 . 국유림: 145ha, 18억원 . 민유림: 781ha, 4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산불, 병해충 및 태풍 등의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전 예방을 위한 조림 ■ 1,500본/ha(1,205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38ha, 114억원 . 국유림: 255ha, 31억원 . 민유림: 1,383ha, 83억원
③ 지역특화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보조율 : 50% (지방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0ha, 110억원 . 민유림: 1,060ha, 1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한 해풍,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지역 산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ha, 9억원 . 민유림: 92ha, 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의 산림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조림지로 육성 ■ 지역특성에 맞는 본수/ha(2,082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8ha, 101억원 . 민유림: 968ha, 101억원
④ 밀원수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보조율 : 100% (국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ha, 20억원 . 국유림: 150ha, 2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채밀 공급을 위한 밀원수림 조성 ■ 3,000본/ha(1,100만원/ha) 	
⑤ 산불피해지복구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보조율 : 50% (지방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ha, 120억원 . 민유림: 1,600ha, 12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3 대형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나무심기 ■ 1,500본/ha(1,500만원/ha) 	
⑥ 내화수림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보조율 : 50% (지방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ha, 30억원 . 민유림: 400ha, 3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 1,500본/ha(1,500만원/ha) 	
⑦ 조림사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목일·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조림사업운영 등 	

1) 경제림 조성(10,897ha)

- 경제림육성단지(394개, 202만ha)를 중심으로 목재생산, 바이오매스공급, 단기소득 창출 등 산림의 경영목적에 맞도록 조림

* 목재생산조림(목재공급), 바이오순환림조성(원료제공), 특용자원조림(소득)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강원, 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류	낙엽송 소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항칠나무 가시나무류 삼나무

2) 큰나무조림(2,564ha)

- (공익조림)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경관수종 식재(1,382ha)
- (재난방지)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가뭄피해 등 산림재난지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으로 산림경관 회복(1,182ha)

구 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조림 권장수종
온대북부	낙엽송, 스트로브잣나무
온대중부	낙엽송, 스트로브잣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온대남부	편백, 삼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난 대	편백, 삼나무, 졸참나무, 가시나무류(불가시, 개가시, 종가시나무)
제 주	후박나무, 가시나무류, 편백, 비자나무, 벚나무류

3) 지역특화조림(1,060ha)

- (섬지역)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 지역 산림녹화로 산림경관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109ha)

* 섬지역산림가꾸기 : 인천(18ha), 전북(26ha) 전남(25ha), 경남(40ha)

- (지역특화) 숲의 다양한 기능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모델 제시 및 산업자원으로 육성(949ha)

* 지역특화림 조성 448ha, 민유림 밀원수 특화림 조성(50기관) 503ha

4) 국유림 밀원수림 조성(150ha)

- (조성)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국유림을 중심으로 밀원수림 조성
 - 목재수확, 수종갱신 시 아까시나무 등 다밀화 품종 식재(150ha)
- (R&D) 기후변화 적합 밀원수 개발 및 밀원단지 조성 모델개발('23~'30)
 - * (가치평가) 40수종 → 55수종, (실증단지) 3권역, 5수종, 6ha → 5권역, 9수종, 16ha

5) 산불피해지 조림복원 및 예방(2,000ha)

- (산불복원) '22~'23년 대형산불 피해지 복원을 위한 나무심기
 - * '22산불복구 : ('23) 3,441 → ('24) 953ha(2년차) / ** '23산불복구 : 647ha(1년차)
- (내화수림) 침엽수단순림, 주택·도로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등에 내화수종 식재로 산불에 강한 숲 조성(400ha)
 - * 내화수종 : 황백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등 기후대별 내화수종

6) 부처간 협력으로 유휴토지 나무심기를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 한계농지, 공한지, 타부처 소관 유휴지 등에 나무심기를 통하여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진(600ha)
 - * 캠프 소관 유휴지에 밀원수, 경관림 등 나무심기(영양군, 16ha)

7) 식재조림에서 벗어난 친환경·저비용·고효율 조림 확대

- 식재조림 방법 외 천연갱신(천연하종, 맹아갱신 등), 파종조림 등 친환경·저비용·고효율 조림 방법 적용 확대
 - '23년 천연갱신 우수 조림지 발굴 및 홍보(대관령 금강송 후계림) 후속조치로 '24년부터 기관별 천연갱신 등 확대
 - * 천연갱신(ha) : ('19) 6 → ('20) 12 → ('21) 0 → ('22) 7 → ('24계획) 50

8) 기후변화, 산림재해, 산주수요 등 여건변화에 따른 활엽수 조림 확대

- 대형산불, 소나무재선충병 확대, 조림수종 다변화, 산주소득 증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활엽수종 조림 확대

9) 미래 대비 수종개발 및 조림방법 개선 연구 추진

- 활엽수의 용재가치 제고를 위한 조림지 모니터링('15~'24)
 - * 물푸레나무·느티나무·졸참나무 대상 식재밀도 및 묘목 종류별 효과 시험
- 조림적지 기준 개발을 위한 조림지 모니터링('20~'24)
 - * 낙엽송, 편백, 상수리나무 초기 생육 영향인자 도출 및 예측모델 개발
- 해외 도입 유망수종의 국내 조림 확대를 위한 시범조림지 모니터링
 - * 루브라참나무('14·'16·'17), 헝가리아까시('13·'15·'16·'17) 시범조림지 적응성 검정 中

10)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 추진

-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대, 직군, 지역 등을 모두 통합하는 전국·전국민 나무심기 실시

11) 조림사업 이력 및 공간정보 DB 구축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운영

- “산림경영이음”(산림경영자원 수집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산림사업정보 및 공간정보 수집으로 산림사업의 이력관리체계 강화
 - 사업지 관리 및 탄소흡수원(NDC 감축이행실적) 인정을 위해 사업 완료 시 실행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DB 구축 및 유지
 - * (국유림)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민유림) 산림경영이음(舊 산림사업용역관리시스템)

라. 추진일정

- '24년 조림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 : 12월
- 지역별 조림계획수립 및 조림예정지정리 : '23. 12월~'24. 2월
- 봄철 나무심기 및 제78회 식목일 행사추진 : 3~4월
-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 : 6~9월
- 가을철 나무심기 추진 : 9~11월
- '25년 조림설계 및 조림예정지 정리 : 11~12월

11. 정책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

(산림자원과, 042-481-4218)

목 표

- ◇ 체계적인 숲가꾸기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
- ◇ 숲가꾸기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역량 강화로 사업품질 향상
 - 면적 : 200천ha(국유림 38천ha, 민유림 162천ha)
 - 예산 : 286,735백만원(국유림 86,018백만원, 민유림 200,717백만원)

가. 정책여건

- 편중된 나이 구조를 가진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지속적 감소 전망
-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기능별 숲 관리 강화 및 산림재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숲 관리 강화 필요
-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및 현장관리 강화로 사업품질 제고 필요

나. 기본방향

- 조림지 사후관리 품질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기반 마련
- 경제림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숲 관리 강화
- 현장 모니터링 강화하여 사업 품질을 제고하고, 산림기술자 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품질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산림순환경영 기반의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육성단지 내 우선 추진
 - 풀베기 후 조림목 피해율을 조사하고 피해율에 따라 피해목 손해 배상 조치 및 부정당업자 처리

- 조림지, 도로변 및 생활권 등 주요 가시권 덩굴류에 대한 집중 제거로 산림경관 제고 및 조림목 피해 예방

- ▶ 인공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 대상지로 경제림육성단지 내에 우선적으로 제거
- ▶ 친환경적·효율적 제거를 위해 소금처리 덩굴제거 집중 추진
- ▶ 조림지의 덩굴류 제거는 풀베기 사업 이후 시행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
- ▶ 덩굴류 집중 제거 기간(9~10월) 내 공공산림가꾸기 가용인력 최대 활용
- ▶ 도로공사, 국토관리 및 시·군 도로부서 등과 연 1회 이상 관계관 회의 등 협력강화

-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의 치수림과 유령림 단계별 표준 작업방식을 재점검하고, 치수림의 작업자 이동을 고려한 소작업로 설치 품 반영('24 상반기)

2) 정책숲가꾸기 추진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및 탄소흡수원 기반구축

- 경제림육성단지 및 목재생산림 위주 큰나무가꾸기 집중 추진
 - 임업기계장비 및 임도 등 산림경영 여건이 우수한 목재생산림의 인공림과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업을 집중하여 목재 생산성 증진
 -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목표생산재(대·중·소경제)에 적합한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횡수 등을 달리하여 지속적·효율적으로 산림관리
- 열식간벌 확대를 통해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효율 제고
 - '22~23년 열식간벌 작업방법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여 임업기계를 활용한 산물수집 효율성 제고
 - * 일률적인 열식간벌 적용은 지양, 2차 간벌 시기의 침엽수 인공림 대상 확대 등
- 큰나무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장의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 활용 확대 및 산림 내 연료물질 제거 등 산림재해 강화
 - 산물수집 확대를 위해 기계화작업로 개설 및 복구 품 기준 마련('24 상반기)
 - * ('23) 4.5천ha, 82억원 → ('24) 12.5천ha, 199억원(+8천ha, +117억)
-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확대
 - 도로변·주택가 등 생활권역은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반드시 실시
 - * ('23) 17천ha, 342억원 → ('24) 26.8천ha, 547억원(+9.8천ha, +205억)
 -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산림 내 송전선로, 도로 연접 전력선 포함) 및 문화재 일원을 산불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여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은 산물수집이 가능한 지역(핵심+일반)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수집 후 파쇄 등 조치
 - * 활엽수만 제거하는 방식의 산불예방 숲가꾸기 집중 점검 예정

- 설계부터 숲가꾸기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일원화하여 사업 추진
 - * (숲가꾸기 예산) 숙아베기, 감염목 벌채, 파쇄 + (병해충 예산) 훈증
- 산불예방숲가꾸기 효과성 검증 TF 구성·운영
 -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합동 TF(10명 내외) 논의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 및 산림정책 이행력 도모
 - * 주요 사업공정을 반영한 효과성 검증 체계 마련('24년 상반기)

3) 산림의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공익림가꾸기 추진

-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기능별 숲가꾸기
 - 공익림가꾸기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5대 공익기능별* 대상지 선정·관리 목표 설정, 작업방법 등 공간구분 및 구역별로 차별화된 숲가꾸기 실행
 - *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 산림의 기능을 고려하여 핵심구역의 구체적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산림기능구분('24~'33)에 따른 추가된 민북지역 및 섬지역 관리 강화
- 미세먼지 저감 등 숲가꾸기를 통해 생활권과 인접하고 있는 도시 내·외곽의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 최대한 발휘
 - * ('23) 29.4천ha, 445억원 → ('24) 23.2천ha, 351억원
- 국립공원 내 산림 건강성 유지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자연환경보전 기능 최적 발휘를 위해 국립공원 내 인공림 숲가꾸기 집중 실시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년 단위 산림 및 국유림 경영 계획 수립 시 협의된 벌채·숲가꾸기·조림 행위는 신고만으로 가능
 - 국립공원 협의(허가사항)는 반드시 구두 협의가 아닌 문서로 협의하고, 미 협의시 산림청-국립공원관리공단 협력협의체('12년 협약)를 통해 조정

[업무 처리절차]

- 사업 대상지 선정 → 국립공원 협의 → 사업 승인(국립공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착수 → 완료 및 준공

- 새로운 산림기능구분('24~'33)에 따른 추가된 민북지역 및 섬지역의 조림지와 과밀한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
 - 섬 지역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숲가꾸기로 생활환경 개선 및 훼손된 섬 지역의 산림녹화와 산림경관 회복
 - * 국내 섬 현황 : 37.3만ha, 4,158개 / 섬 지역 산림 현황 : 22만ha, 2,325개

- 전국 댐유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제1차 국가 물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32개 주요 댐유역 숲가꾸기 집중 추진

6) 숲가꾸기 사업 품질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 지속적인 일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 개선 및 보완
 - 시기·사업종별 현장점검으로 정책개선 및 위법사태는 엄정조치
 - * 점검대상 : 큰나무가꾸기(4~5월), 조림지가꾸기(7~9월), 큰나무가꾸기(11~12월)
 - 본청 현장점검 시 지방청(관리소), 시도(기초자치단체) 담당자와 교차 점검을 통해 타 기관별 사업 추진 방식 공유로 사업 역량강화
 - 행정처분 강화로 산림기술자 경각심 고취 및 재발방지
 - * 적발 위법에 따라 영업정지·취소 및 손해배상, 기술자 자격정지·취소 등 조치
 - 숲가꾸기 사업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예산 집행 관리 강화
 - * 예산집행 현장점검 시 예산 목적 외 사용시 보조금 환수 등의 패널티 부여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추진으로 의견수렴 등 소통강화
 - 민간단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분야 모니터링으로 사업 담당자 및 기술자, 기능인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문제점 개선
 - 현장 모니터링 결과 부실 사업장은 설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사업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원인분석 및 정책 환류
 - * 생명의숲(지침 준수 등 사업 모니터링) 및 한국기술사협회(모니터링+컨설팅 지원)
- 숲가꾸기 산림경영이력 공간정보 DB 구축 등 효율적 관리체계 운영
 - 대상지 선정 및 탄소흡수원(NDC 감축이행실적) 인정을 위해 사업 완료 시 실행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DB 구축 및 유지
 - * (국유림)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민유림) 산림경영이음
 - 시스템 이해와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산림경영이력 공간정보 DB 구축 매뉴얼 제작(2024년 상반기)
 - 철저한 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동일 사업지 내 큰나무가꾸기 중복실행 차단
- 민유림 사업장은 시도 자체 선정한 우수기관은 제외하고, 숲가꾸기 관련 부정언론 발생 및 민원발생 기초단체 등 집중 점검
 - * 특·광역시별 1개 구, 도별 1개 시·군 및 제주도 포함

- 숲가꾸기 품질제고 및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토론회 실시
 - 일선 관리기관(시·군 및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실시하고, 사례전파 및 기술 공유를 위해 연접 기관도 참석
 - * 기관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최 횟수 지속적 확대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성 보완을 위해 반드시 산림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기술자문 추진
- 산림기술자 설계·감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사례 전파
 - 설계·감리 및 수행 업체 소속 산림기술자 직무교육 실시(연 1회)
 - 산림기술자의 산림분야 법령 이해도 제고 및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 및 신규교육에 숲가꾸기 시책 교육 실시
 - * 산림기술자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내 추진
 - 산림기술자 대상 숲가꾸기 점검 및 모니터링 우수·지적 사례 지속 전파
- 숲가꾸기 사업 단계별 안전관리 이행 및 점검
 - 「산림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 *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Tool Box Meeting) 일지, 위험성 평가표, 구급 용품 등 현장 비치 여부 등 사업장 점검 시 확인
 - 산림사업지침 등 사업별 행정규칙에 안전보건 관련 내용 강화
 - 작업 전 위험예지 활동 절차 이행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확인 절차 이행
 -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의 안전관리 협업 강화
 -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림사업 안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실시
 - 미숙련 근로자 및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집중
 -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구급약품 비치,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립
 -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하여 즉시 보고 조치

7) 산림순환경영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

-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숲가꾸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홍보를 11월 숲가꾸기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중실시

[슬로건] '숲가꾸기는 숲을 숨쉬게 합니다.'

* 사업장 내 현수막 설치 및 산림문화 체험 시 연계 홍보

- 국민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뉴미디어 매체 및 온라인 매체 캠페인 전개
-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내·외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배포 및 확산 방안 마련 등
- 숲가꾸기 우수사업장 선정을 통한 산림자원 육성 분야의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산림기능에 따른 차별화된 숲 관리체계 국민 관심 증진
 - 숲가꾸기 사업 효과 등 홍보를 강화하여 산주의 자발적 신청 참여 유도
 - 공공산림가꾸기 우수사례 발굴로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 산림관리 서비스로 국민편익 증진 홍보 강화
 - * 사랑의 땀감 나누기는 11월 셋째주 금요일에 기관별 동시 추진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 숲가꾸기 기간(11월) 체험행사로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 마련
 - 숲가꾸기 체험 시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의 참여 확대
 - * 산림청, 지자체는 숲가꾸기 행사 참여를 원하는 국민에게 장소 및 장비 제공

라. 추진일정

- 숲가꾸기 사업 시책 설명회 및 산림기술자 교육 : 1월
- 숲가꾸기 신규자 및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상반기) : 2~3월
- 숲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1차) : 4~5월
- 숲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2차) : 6~8월
-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하반기) : 7~9월
- 숲가꾸기 기간행사 추진 : 11월
- 숲가꾸기 우수사업장 선정 : 10~11월
- 숲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3차) : 11~12월

12.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

(산림자원과, 042-481-4218)

목 표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안전 강화 및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

○ 고용인원 : 875명(국가 135명, 지자체 740명)

* 예산 : 15,081백만 원 (국가 4,165백만 원, 지자체 10,916백만 원)

가. 정책여건

- 인력 의존도가 높은 숲가꾸기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필요
-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 도로변 경관림 조성,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등 공공성이 높은 산림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
- 산림자원의 조사 및 숲가꾸기 이력 등 정보 관리를 통해 산림사업 실행 DB구축 등 산림사업 데이터 관리 필요

나. 기본방향

- 취약계층 적극 선발 및 반복 참여자를 최소화하여 참여가 종료된 이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청년 실업자 및 민간일자리 재진입이 어려운 장년층 퇴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
 - 산림 현장 민원의 전담 처리를 위한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 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사업 DB 구축을 위한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개요

- 숲가꾸기패트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운영인원 : 875명
 - 지방청 : 135명(숲가꾸기 패트롤 135명)
 - 지자체 : 740명(숲가꾸기 패트롤540명,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00명)
 - * 국유림 패트롤 차량교체(6대) : 홍천, 민북, 태백, 영덕, 충주, 무주
 - ** 패트롤은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인력 집중배치(기관별 분배 지양)
- 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사업추진 : 연중 고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되, 1월초 공고 후 2월 초부터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2) 주요 사업 내용

- (숲가꾸기패트롤) 산림에서 발생하는 위험목 피해 등 각종 산림재해 등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장 민원 처리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 조사 업무와 산림사업 DB 구축 등의 관리

3) 모집공고 등록 등

- 일모아시스템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모집공고 등록 의무화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수행기관은 의무적으로 일모아시스템에 모집공고를 등록하여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참여 정보 제공
 - * 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희망자는 모집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4) 참여 접수 및 참여 자격의 확인

- 사업 참여자 선정주체
 - (국유림) 지방청장·관리소장, (지자체)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령
 - 참여자 모집기관은 신청서류 수령 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수령·보관
 - *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시 자격·소득·재산 등의 서류는 별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미 제출시 해당 항목 최저점 부여 등 수행
- 일모아시스템에 사업신청자 정보 입력 의무화
 - 신청자의 중복·반복 참여제한 등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후 선발
 - * 참여 시작일 이전까지는 참여자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5) 중복·반복참여 제한 및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참여 제한

- 중복·반복 참여 제한
 - (중복참여)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은 중복참여를 제한
 - (반복참여)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 참여 제한
 - * 숲가꾸기패트롤은 반복 참여 허용
 - * 단, 최초공고 시 반복참여자 채용가능 비율 80%미만, 2차 공고 시 감점비율 30% 상향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참여 제한
 - (고소득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상
 - (고액자산가) 4억 원 이상의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 채무 포함 순자산이 4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참여 가능
 - * 취업취약계층은 소득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최초공고 시 감점하며 참여 가능

6) 임금지급 및 교육훈련

- 기준단가(원/일)
 - 숲가꾸기패트롤 : 86,880,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78,880
- 교육 훈련
 - 모집 공고문에 기술교육 참여가 의무사항임을 반드시 명시
 - 참여 근로자 전원 1회 이상의 기술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독려 및 조치
 - 교육훈련비는 목적 외 타용도 사용금지 및 집행 잔액은 반납
 - 참여 근로자의 교육 이수율이 낮은 기관은 차년도 계획인원 축소

7) 개인별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안전관리 점검강화·사후관리

-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시기별 맞춤형 점검·교육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도출
 -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초빙,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채용,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 * 최초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 안전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 감독공무원은 수시 안전관리 상황 확인·교육 후 자필서명 등 기록유지
 - 사업장에 10대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수칙 비치 및 낭독
- 사업 시행기관별로 작업자별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구입하여 지급
 - 독충 피해예방을 위해 참여자 알레르기 검사 실시 및 방충복 등을 지급
 -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및 그 밖에 관리 감독기관의 장이 사업여건상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개인보호구 등

8)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 점검단 운영 등

- 지자체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 점검 정례화(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인건비 지급 적정성, 안전사고예방 노력도, 사업추진 실적 등 중점 점검
- 참여자가 건강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민간일자리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참여자가 민간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참여 종료 30일 이전에 구직등록 안내서와 취업 지원프로그램 안내서를 제공하고, 구직등록을 하도록 권유
 - * 수행기관은 ‘구직등록 안내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서’를 비치·안내
- 숲가꾸기 패트rollers의 고용 확대를 위한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과 근로자 안전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 전환 시범운영(사전준비 철저)
 - * 청장님 지방청 소통간담회 건의사항,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시범기관)

라. 추진일정

- 근로자 신청·접수, 선발 : 1~2월
- 근로자 기술교육 : 3~7월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 : 상반기, 하반기
- 2024년 산림일자리 고용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매월)

13.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구축 및 목재자급률 제고

(산림자원과, 042-481-4189)

목 표

- ◇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 정착으로 목재수확 대국민 인식 개선
- ◇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한 국산목재의 원활한 생산·공급

가. 정책여건

- 국내 산림의 벌채 시기 도래로 목재수확 여건 조성 및 필요성 대두
 - 국내 산림 면적* 중 상당 부분이 벌기령(사유림 25~50년)에 도달
 - * ('20년 기준) I영급 257천ha(4.3%), II영급 199천ha(3.3%), III영급 672천ha(11.2%), IV영급 2,447천ha(40.9%), V영급 2,066천ha(34.5%), VI영급 344천ha(5.8%)
 - 증가하는 장령림·노령림 면적에 따른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로 목재생산 확대를 통한 영급구조 개선 필요
 - * 흡수량(Gg CO₂eq.) : ('03) 58,360 → ('08) 61,488 → ('13) 47,053 → ('20) 40,522
- 환율 급등 및 운송비 증가에 따른 수입 원목 및 목재제품 가격 상승으로 국내 목재산업체 원료 공급을 위한 목재생산 확대 필요
- 국민들의 목재수확 관심도 증가로 국내 목재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
 - 벌채에 대한 다수의 언론 보도로 수확벌채·수종갱신 물량 감소

나. 기본방향

- 친환경 목재생산 강화를 통한 생태·경관·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구축
- 목재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기반 마련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체 안정적인 원료 공급 및 국내 목재자급률 제고
- 목재생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로 목재수확 필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목재생산 활성화 유도

다. 세부추진계획

1) 목재수확 전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벌채 유도

-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한 친환경벌채 대상 여부 및 준수 사항 확인
 - (친환경벌채 대상지) 최대 벌채면적 30ha 이하, 존치면적 20% 이상, 벌채 연접지 30m 이상 이격, 국유림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준수*
 - * 존치면적 및 산림영향권 면적 합계가 벌채구역의 100분의 50이상 되도록 배치, 급경사지·계곡부·도로변·임연부는 가급적 군상 및 수림대 배치 등
 - (일반 벌채지) 벌채 연접지 20m 이상 이격 후 벌채
- 대규모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및 심의위원회 개최
 - (타당성조사) 10ha 이상 대상지 타당성조사 완료 후 벌채 허가(실시)
 - (심의위원회) 20ha 이상 대상지에 대해 심의위원회 구성 후 심의
 - * 필요시 20ha 미만 대상지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하며, 타당성조사와 별개로 실시

2) 목재수확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

- 전문가를 활용하여 벌채 허가 대상지에 대한 목재수확 점검·관리
 - (점검횟수) 3회(벌채 전, 벌채 중, 벌채 후)
 - * 5ha 미만 벌채지에 대해서는 2차 점검 생략 가능
 - (점검내용) 벌채구역 경계표시 적정성, 군상 및 수림대 적정 존치 여부, 작업로 적정 복구 여부, 계곡부 산물 적치 금지 준수 여부 등
- 현장 입간판 설치를 통해 목재수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인식 개선
 - (설치대상) 10ha 이상 목재수확 대상지
 - * 일반인 출입이 많은 지역, 가시권역, 보호구역 등 관심지역은 10ha 미만 설치 가능
 - (설치시기) 사업착수와 동시에 설치
 - (설치위치) 출입자에게 쉽게 노출되고 목재수확지 조망이 가능한 위치
 - (내용구성) 생태·경관·재해 영향을 고려한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 적용,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일부로서 목재수확 필요성 홍보 등

3) 산주 지원을 통한 친환경 목재생산 제도 조기 정착 유도

-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현지조사** → 지원금 지급
 - *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 지원신청서 상 잔존면적 및 잔존재적이 정확한지 여부 확인

- (지원금 산정) 잔존재적에 재적당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 1ha당 지원한도 200만원 이하,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20% 지원한도
 - * 산림청에서 최근 3년간 국유림 입목처분 원료재급 평균가격을 산정하여 알림
- (지원대상자 의무) 지원금 지급받은 산림에 대해 5년간 벌채·굴취 금지

4) 목재수확 방법 다양화를 통한 생태·경관·재해 영향 최소화

- (골라베기) 경사가 급하여 재해 우려가 있거나 도로·마을 등과 인접하여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두베기를 지양하고 골라베기 실시
- (슈아베기) 벌기령 도달 전 우량임지에 대해서는 수익간벌 실시하여 목재생산 확대하고, 무육간벌 대상 임지는 가급적 열식간벌* 실시
 - * 작업 효율성 향상을 통해 벌채·수집 비용 절감 및 목재 수집량 증대

5) 원활한 벌채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제도 정비

- 효율적인 긴급벌채 사업 추진을 위한 「산불·산사태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집행기준」 개정('24.2월)
 - 긴급벌채 사업 대상지 기준 변경(선정기준 : 생활권에서 150~300m 이내 → 생활권에서 60m 이내)
 - 긴급벌채사업 생산재 활용 기준 개정* 및 면적 변경 협의 기준 신설** 등
 - * 원료재급 목재는 표고자목, 펄프목, 보드용으로 최대한 활용 후 에너지용 등으로 활용
 - ** 10% 미만 자체변경, 10%~30%미만 시·도지사 변경협의, 30% 이상 산림청장 변경협의
- 국유임산물(목재) 매각 시 계약서 생략 기준 완화
 - (당초) 매각량 10m³ 이내 → (변경) 매각금액 100만원 이내
- 국유림 입목처분지 미벌채목 생장량 대금 산정 및 부과 기준 개정
 - (미벌채 재적 산정) 당초 반출 기간 종료 시점
 - (생장량 대금 적용 기간) 연장기간 시작일 ~ 연장기간 종료일

6) 규제 완화를 통한 원활한 목재생산 및 산림경영 지원

- 산림소유자 대상 임의벌채 규정 완화
 - (현행) 농업·임업·축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 연간 10m³ 이내 → (개정) 용도에 관계없이 자가소비를 위한 경우 연간 10m³ 이내
- 도로변 피해 위험목 제거 관련 규정 완화
 - (현행) 허가 후 벌채 가능 → (개정) 신고 후 벌채 가능

7) 산불 피해지 등에 대한 긴급벌채를 통해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 「산불·산사태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집행기준」에 따라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산주 동의 절차 진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12.21. 시행)

- ①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 갈음
- ②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 이용 가능
- ④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 가능

- 긴급벌채사업을 통해 생산된 목재는 수종 및 품등에 따른 활용 기준 준수

수종	품등	활용 용도
소나무, 낙엽송	특용재~3등급	제재용, 합판용
편백·삼나무류	1등급~2등급	제재용, 합판용
활엽수류	1등급~2등급	제재용, 합판용
희귀 수목류	1등급~2등급	공예용
기타		가급적 표고자목용, 펄프용, 보드용으로 활용 후 에너지용 등으로 활용

8) 목재수확 및 목재산업 관련 산업계·학계 등 정보 제공

- 분기별 벌채 허가(신고) 실적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공개
 - 지역별·사업종·수종별 벌채면적 및 벌채량, 용도별 목재생산량 등
 - 향후 ‘목재정보서비스’ 통합플랫폼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한 분기별 벌채 허가 실적 보고서 제출(입력) 시범 추진
- ‘원목 시장가격 동향 조사’를 통한 목재 시장가격 투명성 제고
 - 매분기 지역별·수종별 원목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매각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제 목재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해외목재산업 정보수집사업’ 추진
 - 주요 목재산업국(14개국)의 목재 수출입 및 임업정책 동향 조사·제공
- 현실임분의 생중량을 반영한 참나무류 입목수간 중량표 개발 및 보급, 벌채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참나무류 원목중량 변화율표 개발 및 보급
-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 벌채가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 분석

9) 철저하고 체계적인 입목벌채·굴취 제도 운영·관리

-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 대상지의 사전·사후 확인·점검 실시
 - 허가·신고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복구되었는지 확인·점검
 -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시 엄정 조치
- 국산목재에 대한 합법성 입증을 위해 벌채허가·신고 정보 시스템 입력 관리
 - 입목벌채 허가·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산림자원정보체계(새울행정시스템) 입력
- 벌채·굴취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배포한 ‘목재수확(벌채·굴취) 관련 민원 질의답변 및 판례 모음집’ 참조

10) 교육을 통한 벌채 담당 공무원 및 원목생산업자 역량강화

- 2024년 목재생산이용과정 집합교육(4월 예정) 실시
 - 목재생산정책 및 민원실무, 임산물 운반로 설치 및 운영, 벌채지 안전관리, 목재생산 기계 운영 시연, 목재생산 실무 등 교육 등
 - 지자체 및 지방청(관리소) 벌채 담당자 중 새롭게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공무원들은 가급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원목생산업자 교육을 통한 벌채사업 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 원목생산업협회와 협의를 통해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등 검토

라. 추진일정 및 보고사항

<추진일정>

- 2024년 친환경벌채 지원금 단가 산정 및 알림 : 1월
- 「산불·산사태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집행기준」 개정 : 2월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개정 : 2월
- 2024년 목재수급 전망 : 3월
- 목재생산 담당자 실무 교육(목재생산이용과정) : 4월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및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 : 6월
- 2023년 목재수급통계 공포 : 7월

- 2024년도 친환경별채 우수사례지 접수·선발 : 8~10월
- 해외 주요 목재산업국 목재산업 동향 정보 제공 : 매월
- 원목 시장가격 동향 정보 제공 : 분기별
- 2024년 긴급별채 지원사업 추진 : 연중

<보고사항>

- 2023년 국유림 목재 매각실적 보고 : 1. 10일까지
- 2023년 친환경 별채지원금 지급실적 보고 : 1월까지
- 목재수확 점검관리 및 입간판 설치 실적 보고 : 2월까지
- 2023년 수목굴취허가·신고 실적 보고 : 3월까지
- 입목별채허가(신고) 및 목재공급 실적 보고 : 분기 익월 15일까지
- 국유임산물 매각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 보고 : 분기 익월 5일까지

14. 임업기계화를 위한 장비 활용 다양성 제고

(산림자원과, 042-481-4189)

목 표

-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 ◇ 가선집재 등 다양한 장비 이용 확대로 전목생산 체제 확대

가. 정책여건

- 전체 기계장비 보유대수는 기계톱 등 노후장비 폐기로 감소 추세이며, 현장 기계 활용 대부분은 ‘기계톱+굴착기(우드그랩)’이 대부분
- 산림분야 노동인력 고령화 및 근로자 수 감소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위한 임업의 기계화 필요
- 향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장비 보급 등 기반을 구축하고, 필요시 가선장비 등도 활용 가능토록 제도 마련

나. 기본방향

- 국가 주도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육성사업으로 선진화된 기계화임업 추진
- 다양한 임업기계장비 활용도 제고 및 유동성 강화를 위한 관리 제도 정비
- 임업기계장비 대여체계 개선·노후장비 교체 및 면세유 지급 확대 등 임업인 지원 강화를 통한 국내 임업경쟁력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다양한 임업기계장비 활용여건 조성을 위한 기계화 지원 추진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상시운용인력 확보를 위한 장비 활용교육 활성화
 - 민·관 합동 장비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용인력 지속 양성
 - * 산기연·북부·동부·산림조합 협력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오퍼레이터 양성 강화

-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계획(예시)

기관명	역할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방법 초기 교육 및 관련 연구 실시
북부·동부지방산림청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 가능 사업지 제공 및 상시인력 운영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민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홍보 등

- 소속기관 고성능 임업기계 오퍼레이터 신규 채용(2명/기관)
 -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보유 기관에 일용임금 배정 / 추후 상용임금 상향 추진
 - * 예산 산출 : 인당 27.5백만원×2명×2개 기관=111백만원
- 사유림 임업의 기계화를 위한 임업기계장비 대여제도 강화
 - 협·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 사례 지속 제공
 - * 활용 의지는 있으나 장비·사업지·인력이 없는 경우를 발굴하여 활용기회 제공
 - 임업기계장비 장비고 현대화를 통해 소속기관을 장비 대여 거점화
 - * 인력 대여 여부, 장비별 수수료, 고장 및 사업 책임 등에 관련 규정 마련
- 급경사지 가선집재 활용도 제고를 통해 임업기계 활용 안전성 확립
 - 가선장비 활용 교육 및 품셈 개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활용도 제고
 - * 현행 규정상 사업지 경사 46% 이상일 경우 가선집재장비 활용을 권장
 - 가선장비 활용법 숙달 및 숙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장비활용 이점 마련
 - * 가선장비의 작업 속도 및 노동 강도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우드그랩+굴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
-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 조합 분석(과학원)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고성능 시스템의 생산성 및 비용 절감효과 구명('22~'24)

2) 보유 임업기계장비 관리 강화로 효율적인 목재생산 추진

- 내용연수 경과 임업기계장비 전면 교체를 통해 장비 유지·관리 강화
 - 「내용연수」 등 유사 규정 참고하여 장비 폐기·관리전환 등 근거 신설
 - * '23년 1월 기준 산림청 소속기관 보유 토목·생산용 임업기계장비 1,087대 중 11년 이상 경과 장비는 총 426대(39.1%)로, 노후장비에 대한 관리대책 강화 필요

- 임업기계장비 내용연수 적용 현황(조달청 고시)

연 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비고
1	21102204	벌목톱	8	타 산업 공용
2	22101525	차륜굴착기	9	
3	22101526	궤도굴착기	8	
4	27112709	전기톱	9	
5	20101711	록브레이커	7	
6	21101592	경운기	11	
7	21102299	임업용집재기	10	
10	25101503	승용자동차	8	주행거리 20만 km 초과시 1년, 30만km 초과시 2년 단축 가능
11	25101601	덤프트럭	8	
12	25101611	화물트럭	9	
13	25101901	농업용트랙터	12	

- 노후화된 임업기계장비 전면 교체를 통해 산림사업 안전성 강화

* 일반 임업기계장비 구매예산 : '23년 436백만원 → '24년 1,936백만원(+1,500)

○ 기 보유 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관간 장비 이동절차 간소화

- 타 기관 장비 위탁·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추진

* 산림청 소유 장비의 민간기관 위탁을 통해 민간에서는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임업기계 활용도 제고

- 장비대여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하여 사유림 임업경영 활성화

3) 임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지원제도 개선

○ 임업용 면세유 지급대상 장비 범위 확대를 위해 예산당국 지속 협의

- 목재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하베스터, 포워더 등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 임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필수 장비인 굴착기, 트랙터 등 공용 장비
- 광범위하게 쓰여 개정수요가 많은 예불기, 압축결속기 등의 소형 장비

○ 임업용 면세유류 지급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원목생산업 지원 노력

- 면세유 지급대상 '개인'에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면세유 지원 확대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 판단되어 '개인'에 포함되지 않아 면세유 미 지원

- 임업용 면세유류 부정수급 예방 강화를 위한 관리지침 개정
 - 사례 적발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후관리 강화
 - 면세유 부정 유출과 관련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안전한 임업기계장비 사용을 위한 품질인증 기준 확대·강화

- 장비별 품질인증 규격을 신설하여 국내 임업용 장비 제작기준 마련
 - 향후 품질인증 단계별 인증비용 면제·감면 등 제도 지원의 근거로 이용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품목 확대 및 검사 기준 현실화(진흥원)
 -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검사장비 구축 예산 증액 노력

라. 추진일정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세트화 구입 추진 : 상반기
- 임업기계장비 부착형 안전보조장비 보급 : 상반기
- 임업기계장비 대여 활성화 지침 개정 검토 : 상반기
- 고성능임업기계장비 정기교육과정 신설 추진 : 상반기
- 임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신청 : 3월
- 조세(국세) 감면 건의서 제출 : 4월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현장실연회 : 10월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 신규사업 추진 : 하반기
- 유동적인 장비 이동을 통해 기 보유 장비 활용도 제고 : 하반기
- 임업기계장비 운영실태 점검 : 연 1회, 하반기
-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관리실태 점검 : 연 1회, 수시(산림조합 합동)
-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 협의 : 연중
- 실수요자 대상 임업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거점 마련 : 연중
- 급경사지 가선집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 연중

15. 고부가가치 목재수요 창출 및 국내 목재소비 여건 강화

(목재산업과, 042-481-4204)

목 표

- ◇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목재 수요 확대
- ◇ 법·제도 개편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가. 정책여건

- NDC 달성을 위한 목재이용 중요성은 증가하나, 민간수요 확대 한계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목재의 고부가가치 소비처로서 목조건축의 활성화 필요성은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기술적 지원 기반 부족
- 국산목재제품의 품질·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생산성 향상 필요

나. 기본방향

- 목재친화도시,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공공주도형 정책사업 추진
- 시설·장비, 판로 확대, R&D 등 산업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목조건축 등 목재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조성사례 및 저변 확대

-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선도적인 공공부문 목조건축 사례를 대폭 확대 추진하여 향후 민간시장 자발적 참여 유도
- ‘목재친화도시 조성’으로 도시 내 거리·건물의 플라스틱·콘크리트를 국산 지역목재로 전환하고 권역별 목재산업 밸류 체인 구축
 - 연차사업(2년차 4개소, 3년차 5개소) 본격 시공 착수, 신규 1개소에 대해 현실을 고려한 연차별 예산 조정* 및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

- 목재친화도시 지원단 운영으로 최적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
 - * (기존) 총 50억원/개소, 국비 50% (연차별 계획) 1년차: 5억원, 2~4년차: 매년 15억원
 - * (신규) 총 50억원/개소, 국비 50% (연차별 계획) 1~2년차: 2.5억원, 3~4년차: 22.5억원
- 친환경 목조전망대 등 공공건축물을 국산목재로 조성하는 목조 건축 실연사업 추진으로 설계·시공 기술 실연 및 국민인식 전환
 - 목조건축 실연사업 : 총 6개소(2년차 4개소, 3년차 2개소) 본격 시공, 신규 5개소에 대한 공공기획용역 등 기본계획 수립
 - * 목조건축 실연사업 : 총 130억원/개소, 국비 50%, 4년간
 - 친환경 목조전망대 : 1개소(3년차) 조성 완료, 신규 1개소 기본계획·설계
 - * 친환경 목조전망대 : 총 130억원/개소, 국비 50%, 3년간
-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완공('24년) 및 임업진흥원 신청사 추진('24년~)
 - * 임업진흥원 신청사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목조건축 자문단, 기존 DB 등 협조
- 목조건축 표준품셈 2년차 제작 추진으로 중목구조까지 확대
 - 공공·민간분야 건축사례 조사로 설계·시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용도·규모 및 구조, 사업비용, 목조건축 자재별 종류·이용량, 설계·시공업체 등
 - 건축·목재분야 전문가 집단 구성으로 목조건축 조성에 대한 표준화된 사업단가 마련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내 반영·제도화 추진
- 목조건축 우수사례 선정, 공공 목조건축화 지원으로 목조건축 문화 확산
 -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개최로 설계·시공업체 및 학생층 진입 촉진
 -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 제2기 운영으로 목조건축 적용 기반 마련
-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의 규모 확대로 국산목재 우수성 홍보 및 고부가가치화
 - 사업 규모 총 4개소(개소당 5억원) 추진으로 국산목재 이용 과급효과 증진
 - * 지자체 공모를 통한 총 4개소 선정('23.12월)

2) 권역별 목재산업 집약화 및 국내 목재생산업체 경쟁력 제고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로 산업생산성 강화 및 국산목재제품 경쟁력 제고
 - 제재·건조·방부 등 가공시설 도입 및 국산목재 이용업체 지원 강화
 -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개소, 누계) : ('15) 30 → ('18) 183 → ('20) 245 → ('24) 275
 - 목재가공업체 가공시설 및 국산목재 구입에 대한 융자(이차보전) 지원
 - * 목재이용가공 부문 1,390백만원, 국산원자재구입 부문 2,288백만원 지원

- 권역별 클러스터화로 목재생산부터 가공, 소비까지 집약화하기 위한 ‘목재산업단지’ 조성 및 지자체·업계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제1·2호(제천, 춘천) 안정적 운영 및 제3호(화순) 3년차 조성 완료
 -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4호 목재산업단지 조성 추진('25~)
- 권역단위 목재이용 모델 마련을 위한 ‘산림·목재 클러스터’ 구축 추진
 - 고부가가치 목재 생산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목재 종합가공센터 조성, 제재·가공 기계·수집센터 등 목재공급 효율화
 - * 총 420억원, 국비 50%, 5년간 / ('23) 14 → ('24) 81 → ('25) 81 → ('26~) 244억원
-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으로 산업계 연구개발 촉진 및 공공부문 판로 지원
 -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절차 간소화로 업계애로 해소
 - * (적용제품 확인절차 간소화) 기술분석 → 확인서 발급(목재이용위원회 상정절차 삭제)
 - 목재제품 신기술 및 산림청 혁신제품 홍보물 제작·배포 지원
-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참여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건축, 가구 등 전방산업 관련 박람회 연계, 공공 대상 참여업체 홍보 등
- 인력수급이 열악한 제조업체에 산업기능인력 지원으로 필요인력 확보
 - '24년 신규 선정업체 추천, '25년 목재산업체 필요인원 접수 및 확정

3) 목조건축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협업 강화

-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강화로 공공부문 국산목재 수요 확보
 -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 신설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세부 운영체계 마련 및 ‘한목(韓木)’ 표시를 통한 국산목재제품 브랜드화
 -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산목재제품 증명서 발급 및 공공 목재이용 사업(친화도시, 실연사업 등) 내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추진
- 국토부와 공동제정 중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 및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 지속 추진
-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의 목조 바닥체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 완결
 - * 현재 국토부에서 「주택법」 개정 중(법사위)으로, 개정 이후 하위법령 개정의 일환으로 추진 예정

**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내용 : (현) 콘크리트 210mm 이상 → (개선) 충격음 기준 만족 시 목구조 등 허용

- 목조건축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국건위, 탄녹위) 등과 협업 추진
 -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대책’ 수립 및 탄녹위 상정
 -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의 필요성 관련 범정부 공감대 확대 및 목재산업 관련 생산-가공-유통-이용 전단계 대책 수립
 - 다양한 기관·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컨퍼런스, 간담회 등 지속 개최

4) 고품질 목조주택 확산 및 관련 규제 개선 추진

-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보급 확대로 고품질 목조주택 시공 지원
 - 표준설계도를 세움터와 연계하여 보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화
- 국산목재 활용 목조주택 건축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 진입장벽 완화
 -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이 국산목재인 경우,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 * 총 1억원, 5년 거치 10년 상환(연이율 2%), 수요 모니터링으로 융자 확대 검토
- 목구조기술자(시공·관리) 양성기관 실태 점검 및 자격증 발급 관리
 - * 시공자격 취득(누계, 명) : ('15) 42 → ('22) 160 / 관리자격 취득 : ('15) 10 → ('22) 164

라. 추진일정

- 목재산업분야 국고보조금 교부 : 상반기(2회)
- 목재산업분야 보조사업 현장점검 : 상/하반기
- 국산목재제품 우선구매 실적 보고(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월, 7월
- 목조건축 표준품셈 마련 및 DB 구축 연구(2차년도) : 연중
- 목재산업단지 수요조사 실시 : 3~4월
-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개최 및 포상 : 11월
- 목재산업박람회, 목재산업분야 워크숍 개최 : 하반기

16. 수요자 맞춤형 목재이용 활성화 체계 확립

(목재산업과, 042-481-8875)

목 표

- ◇ 목재유통체계 선진화로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 ◇ 목재 이용 긍정인식 확산, 생활 속 목재 이용 국민 행동으로 발전

가. 정책여건

- 목재이용 활성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국산목재 수급불안 해소 및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수확된 목재제품(HWP) 150만tCO₂ 달성을 위한 목재이용 국민인식 증진과 참여확대가 필요

나. 기본방향

- 목재정보서비스 운영 등 목재유통체계 선진화 및 목재산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통한 목재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 ‘목재이용=탄소중립’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I LOVE WOOD 캠페인 운영 및 목재의 가치소비 운동 전개

다. 세부추진계획

1) 목재유통체계 선진화로 산업계 경영부담 완화 및 시장경쟁력 제고

- 목재정보서비스 운영을 통한 국민체감 디지털서비스 제공
 - 국산목재 생산이력*, 벌채실적관리 등 업무체계를 전산화하고 국·사유림 목재데이터 연계를 통한 품질단속 등 현장업무 지원 강화
 - * 국·사유림 벌채 → (원목생산 확인) → 목재제품 가공 → (품질검사 확인) → 전자증명서 발급
 -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및 인증심사를 전산화하고* 목재문화·교육 정보들을 통합하여 보다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 대상업무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목재·제지 KS인증, 신기술 지정, 탄소저장량 표시 등

- 데이터 기반 목재자원 통합관리를 지원하는 목재이용 플랫폼 구축
 - 수확된 목재제품(HWP) 탄소저장량 측정·보고·검증(MRV) 관리체계, 목재데이터 통합관리(MDIS), 국산목재 수급관리 지원 등 전산화
 - 국산목재 제품 생애주기(LCA) 분석, 목재자원 조기경보체계 등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현하고 목재데이터의 농수산분야 공유를 확대
- 民·官협력 권역별 목재유통체계를 구조화하여 국산목재 소비 촉진
 - 사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규모 국산원목을 권역별로 모아서 MDF, 제재목 등 산업용재로 공급하는 집단공급체계를 권역별로 구조화
 - * 산업용재 집단공급실적 : ('21) 103천톤 → ('22) 164천톤 → ('23) 180천톤
 - 목공용으로 수요가 많은 느티나무 등 유용활엽수를 모아서 수종별로 공개 매각하는 국유림 목재저장센터의 기능별 운영체계 개선
 - * 목공용재 공개매각실적 : ('21) 165m³ → ('22) 200m³ → ('23) 210m³
 - 목재유통센터, 목재집하장, 목재자원화센터 등 국산목재 유통체계를 정비하고* 제품별·규격별 목재제품을 정비하여 소비자 불편 해소
 - *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24, 600백만원),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24, 2차, 5,000백만원)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및 제도를 정비하여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업무지침을 구조화하고 목재생산업 등록·변경 업무를 방문접수에서 정부24 등 온라인 기반으로 전산화
 -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전국 일제점검(상·하반기 1회)을 정례화하고 목재 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중·소업체 부담 완화
- 목재이용실태조사를 개선하여 통계자료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SBR), 목재생산업 등록현황 일제점검 등을 통해 목재생산업 조사모집단 정확성 및 조서결과 신뢰도 제고

2) '목재이용=탄소중립'의 국민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 I LOVE WOOD 캠페인 홍보체계 정비 및 국산목재 이용 공감대 확대
 - '목재이용=탄소중립' 홍보콘텐츠 다양화 및 SNS 운영매체 정비
 - * 알쓸신목 시리즈, 생활 속 목재 등 세대별 관심사와 연계한 홍보콘텐츠 운영
 - ** SNS 특성에 맞춘 콘텐츠 제작으로 국민관심 유발, 목재이용 이벤트 등 추진
 - 국민참여 수상작 전시(온·오프라인) 등 세대별 목재이용 공감대 확대
 - * 목재문화체험장 등 한목 디자인 공모전, 나무사랑 그림그리기 수상작 전시

- 국산목재의 국민 접근성 개선 및 객관적 효과 제시로 국민체감도 제고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및 목재체험교실 운영의 국민 체감도 제고
 - * 초·중·고교별 목재체험교실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로 맞춤형 목재교육 제공
 - 목재문화지수 측정체계를 개선하고 탄소중립과 연계하여 대표성 강화
 - * 3개 영역, 17개 하위지표의 대표성 재검증을 통해 조사·분석 체계 개선(과학원)
-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을 통한 국산목재 제품 소비 촉진
 - 탄소저장량 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하고*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도입하여 제도운영의 국민체감도 및 신뢰도 제고
 - *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 : (~'23) 15개 목재제품 → ('24) 국내수확 목재제품(연료용 제외)
 - 중·소업체의 가구 및 건축자재에 사용된 국산목재 탄소저장량을 산정하고 나라장터 등록 지원 등 국산목재 제품 판로개척을 지원
 - * 탄소저장량 표시 인증 국산목재 제품을 매년 1천개 씩 선정하여 지원('24~'30, 7천개)
- 공공·민간분야 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로 국산목재의 국민체감도 제고
 -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콘크리트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바꾸고,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 등을 알려 생활 속 목재이용 국민체감도 제고
 -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복지시설 실내나눔숲 등
 - 공공분야 국산목재 이력증명서 제출 의무화로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
 - * 목재누리센터('23~'26, 충북 충주), 목재교육센터('23~'26, 경기 광주), 목질화사업 등

3) 목재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기반 정비

- 목재교육전문가 수요를 반영한 양성기관의 계획적인 운영 추진
 -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인 평가시험에 맞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이상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상·하반기 정기 점검 추진
 - * 2024년도 양성기관별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계획을 목재정보서비스 등에 공개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및 목재문화진흥회의 목재정보서비스에 대한 권한 부여 등 운영체계 교육을 통한 업무 전산화
- 목재교육 전문과정 교수 강의 자료 제공으로 양성기관 강의 품질 평준화
 -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필수 교육내용에 대한 교수용 강의 교재 제공으로 강의 품질 높이고, 9개 양성기관의 평준화된 교육 제공
 - 목재문화체험장 등에 배치된 목재교육전문가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수 교육을 통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 표준교재에 대하여 양성기관이 교재의 일괄제작 요청 시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제작 보금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법제화 및 전문기관을 통한 시험출제 및 관리
 - 「목재이용법」에 개정에 따른 목재교육 관련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 * 행정규칙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목재문화진흥회 및 양성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목재정보서비스를 통한 목재교육전문가 관리업무 전산화 및 행정업무 간소화
- 목재문화체험장의 체계적인 조성·운영 및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지침 개정으로 조성시 단계별 검토사항과 운영시 재난·재해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화
 - 목재교육전문가 의무배치 준수로 목재문화체험장별 차별화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증 추진 및 프로그램 보급

라. 추진일정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평가지험 실시 : 6월, 12월
- 목재정보서비스 구축(3차년) 추진 : 1~12월
- 목재정보서비스(1년차) 유지관리 : 1~12월
- I LOVE WOOD 캠페인 사업수행자 선정 및 추진 : 1~12월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추진 : 1~12월
- 목재문화페스티벌 개최 : 6월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일제점검 : 5월, 11월
- 2023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 10월
- 목재문화지수 측정결과 발표 : 12월

17.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목재산업과, 042-481-4201)

목 표

- ◇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안정화 및 유통 시장 건전성 강화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체제 강화

가. 정책여건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하향('24년 17%→13.5%) 및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 발표 예정('24년 하반기)
- 개정된 EU 재생에너지법(RED III, '23.10월),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확보 움직임 대두
 - * 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
- 목재산업계 내 원재료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개편 및 제도의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한 요구 강화
-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전반적 보강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공급 안정화 및 시장 건전성 강화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제도 하위 법령 개정
- 국내 목재산업의 현실에 맞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기준 마련
- 수집·가공·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확대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모니터링을 통한 경제성·과급성 등 성과분석
- 목재펠릿보일러·난로 보급 사업 지속 지원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공급 안정화 및 시장 건전성 대책 강화(신규, 3~12월)

- (공급안정)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추진
 -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원재료 수집·운반 환경 개선 방안 검토
 - 광역단체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사례 공유
 - * 사례 : 2022년(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2023년(강원특별자치도, 경북도)
 -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기여를 위한 국내 에너지원 보호 정책 부처 협의
- (공급안정) 주택난방용 목재펠릿 하절기 판매제도 실시(계속, 6~8월)
 - 하절기 사전 구매제도를 통해 동절기 의존도 및 제조시설 재고 부담 완화
 - 겨울철 목재펠릿 수급 대책 수립 및 공급 모니터링 강화
 - 전국 목재펠릿 판매처 및 가격 공시를 통한 소비자 시장 접근성 강화
- (시장건전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계속, 연중)
 - 현장점검단(산림청·지자체·임진원·전문가 등) 구성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긴급 점검, 전문 컨설팅, 합동점검 수시 실시
 - 사전통보 없이 비예측적 형태의 모니터링을 최초 실시하여 제도의 거짓·부정 등 행위에 대한 조치·처벌 강화
 - * 대상 : 예정수량조사서 허위 작성, 활용가능한 원목 혼입, 증명량 부풀리기, 허위 증명서 발급신청, 폐기물 원재료 또는 과도한 벌채 여부
- (시장건전성) 목재자원관리시스템 활용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절차 이행 및 권역별 제도 교육 실시(계속, 2월, 10월)
 -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수집·증명절차 이행 의무화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제도 및 사례 중심의 권역별 교육 실시
 - * 대상 : 산림청 1·2차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구 담당 공무원, 제조시설

2) 「목재이용법」 과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등 제정 및 운영체계 강화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3.12.20. 본회의 통과)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절차 등 반영
 - 주요내용 : 수집·허가·증명절차, 사법경찰 부여, 벌칙조항 등 법제화

- 「사법경찰 직무법」('23.12.20. 본회의 통과)에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직무 추가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관련 하위법령 및 기존 고시 개정(3분기)
 - 관계부처, 협·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수집허가·취소 절차,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증명서 발급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등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내용 개편,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등 기타 내용 추가

3) 국내 목재산업의 현실에 맞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기준 마련(신규, 12월)

- 목재의 경제적·환경적 고부가가치를 적용한 단계적 이용원칙 이행
 - 산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원목의 정의·분류 구체화를 통해 원목과 미이용의 분리 및 미이용 제도에 반영
 - * 단계적 이용 원칙 : 목재제품→목재로의 수명 연장사용→재활용·사용→에너지용
- '23년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지속가능성 정책 연구 결과 반영
 -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기준(SBP)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부기준 개발
 - EU RED III 및 주요 국가 동향, 국내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기준 개발 모색
 - 수집·생산·유통단계별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체적 사례 제시 등

4) 수집·가공·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확대(계속, 9월)

- 산림부산물 자원화 기반 구축을 통한 산림형 그린뉴딜 모델 창출
 - 권역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 (지원현황) 5개소(전남 장흥, 경기 파주, 충남 예산, 전북 남원, 경남 김해)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중요재산 관리 현황 현장 모니터링 실시
- 기존 조성된 센터별 성과 공유 및 운영 개선 워크숍 개최

5)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완료에 따른 운영 성과 분석(신규, 12월)

-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운영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성과 분석
 - 발전방식별 이용자 만족도, 경제성, 사업효과성 등 종합 분석 실시
 - * 발전방식 : 전북 완주(ORC-열 공급 위주), 충북 괴산(가스화-전기공급 위주)

6)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 지원 지속(계속, 연중)

-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사업의 전년 수준 유지(848백만원)
 - 주택용 보일러 540대, 사회복지용 보일러 100대
-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위탁 내역사업 일부 개편(2월)
 - 신규·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개편하여 성과 제고

라. 추진일정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제도 교육 : 2월, 9월
- 목질계 바이오매스 기준 및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 : 2~10월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이용·제조시설 일제 점검 : 수시
-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공모 : 10~11월
- 연소기 지원사업 및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 연중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성과 모니터링 : 하반기
- 하위법령 및 고시 등 개정 : 하반기

18. 목재제품 품질관리 효율화로 국민안전 확보

(목재산업과, 042-481-1803)

목 표

- ◇ 목재제품 품질관리 체계 선진화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 ◇ 기업과 국민이 불편한 규격·품질표시 제도 발굴·개선
- ◇ 목재·제지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정비로 산업활성화 지원

가. 정책여건

- 「목재이용법」 제정 10년을 맞아 규격·품질 제도 고도화 필요
- 산업 육성 및 업계 자율성을 고려한 규격과 품질기준 체계 필요
- 목재제품 품질향상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 품질관리 주체별 역할 강화를 통한 규격·품질표시 제도 확립
- 품질단속 업무 개선으로 단속효과 증대 및 품질 신뢰성 제고
- 불량제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체계 선진화
- 목재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품질관리 제도 개선
- 유망 목재산업 KS 개발과 품질기준 개선으로 산업계 활성화
- 품질관리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역량강화로 업무 효율성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 1) 품질관리 주체별 역할 강화를 통한 규격·품질표시 제도 확립
 - (산림청) 품질관리 제도 총괄, 부처간 협력 강화, 이해관계 조정
 - (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단속 계획수립·추진으로 유통질서 확립

- (산림과학원) 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능력 등 관리 강화
- (지자체) 목재생산업 등록 관리 및 현장 점검·지도 활동 강화
- (임업진흥원)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및 점검 등 사후관리

2) 품질단속 업무 개선으로 단속효과 증대 및 품질 신뢰성 제고

- 관세청·산림청 실무간담회 정기 개최로 협업단속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반기별)
 - 협업단속 시료 분석기간을 단축하여 업계 부담 경감
 - * 협업단속 시료를 우선 검사하고, 숯-5일, 성형숯·펠릿-10일 이내 결과 통보 원칙
 - 협업단속은 연중 상시 운영하되, 정보공유로 동일업체 중복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상습적발업체 위주 단속으로 효율화
- 연 2회 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및 시험결과 정합성 검토 추진으로 국민 신뢰 제고 및 품질기준 개선(반기별)
 - 검사기관 간 동일 수준의 검사 역량을 유지하도록 시험·분석·절차 공유 및 문제점 개선, 규격·품질검사 발전방안 지속 발굴·추진
- 국내 및 국외검사기관 확대 지정·운영 활성화(연중)
 - 목재제품 별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로 검사 신청자에게 편의 제공
 - 국외검사기관 지정 제도 홍보로 목재제품의 수입 전 단계 품질관리 강화

3) 불량제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체계 선진화

-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용도·유통단계별 품질신뢰도 제고(연중)
 - 국토부(건설), 산업부(발전소), 원안위(방사능), 지자체(업체) 등
- 불량제품 국내유입 원천차단을 위한 관세청 협업 강화
 - 협업검사 기간확대 및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통관 검사 효율화(연중)
 - * 연중상시 운영, 불량제품 유통·생산업체 정보 공유
- 정부 주도에서 기업 및 협·단체 자율적 관리체계의 정착 지원
 - 자체검사사업장 확대로 자율적 품질검사·표시 체계 구축
 - * 자체검사사업장 지정(개소) : ('18) 73개소 → ('22) 115개소 → ('25) 160 → ('27) 220
 - 목재등급평가사 및 협·단체의 품질관리 활동 참여 유도
 - * 목재등급평가사 및 협단체 임직원이 현장에서 품질관리 제도를 홍보하도록 협조 요청

- 지방산림청(관리소) 및 지역특성을 고려 합리적 품질단속 추진(연중)
 - * 항만지역, 생산 공장 또는 대형유통업체·발전시설·숫공장 집중 지역 등을 고려
 - 전국 및 관할지역 단속통계를 활용, 효율적인 단속 추진
 - * 상습 위반업체와 우수업체를 차별화 관리하여 품질관리 준수 동기 부여

4) 목재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품질관리 제도 개선

- 목재제품 품질표시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 완화
 - 품질표시 없이 ‘단순 보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
- 실효성이 저조한 안전성 평가 우수 목재제품 지정 제도 정비(상반기)
 - * 「목재이용법」 제정 이후 그동안 안전성 평가 우수목재제품 지정 사례가 없어 규제 개혁위 개선과제로 지정('19)하여 정비 진행 중
- 품질검사 없이 목재제품을 가공하여 생활용품으로 제작하여 판매·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개선(하반기)
 - * 현행 제도는 유통·판매 전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가공하여 다른 생활용품으로 제작 후 판매·유통하는 경우 처벌규정 적용이 불명확하여 개선 필요

5) 유망 목재산업 KS 개발과 품질기준 개선으로 산업계 활성화

- 변화하는 목재시장 수요와 신규 제품에 대한 선제적 KS 제·개정(연중)
 - 목조건축 및 목질재료 KS 발굴·제정으로 목재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 * '23년 KS 457건(목조·목재건축 68, 목질재료 89, 펄프제지 277, 고형바이오연료 23)
 - ISO와 KS의 부합화로 국내 목재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
 - KS 고도화로 품질 및 기술수준을 높이되, 현장여건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
- KS 인증공장·제품 점검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
 - 국내 유통되는 시판품에 대한 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KS제품 품질 수준 모니터링 실시
 - 외주가공 현지 점검을 통하여 자재 및 공정관리 실태 점검

6) 품질관리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역량강화로 업무 효율성 확보

- 산림청 및 지자체 목재품질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목재제품 품질관리 실무과정 단속 공무원 25명(산림교육원, 5월)
- 목재등급평가사 보수교육 및 자체검사사업장 방문 교육

라. 추진일정

- 각 지방산림청별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획 수립 : 1~2월
-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교육(산림교육원) : 5월
-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홍보·계도 및 단속 : 연중
- 목재·제지분야 기술심의회 운영 : 연중
- 수입 목재제품 통관 전 협업(관세청) 단속 : 연중
- 안전성 검사 합동 단속 : 연중
- 목재등급평가사 등 전문교육(한국임업진흥원) : 분기별
- 관세청·산림청 실무자 간담회 : 반기별
-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적(지방산림청)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검사기관) :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 목재등급평가사 교육 결과(한국임업진흥원) : 교육완료 후 15일 이내

19. 산림경영 및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확충

(목재산업과, 042-481-4275)

목 표

- ◇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
- ◇ 집중호우 임도 피해방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 사업량(km) : 신설 1,111(산불 409, 간선 650, 작업 52), 구조개량 98, 임도 위탁관리 1,750
 - 사업비(백만원) : 330,734(국비 285,728, 지방비 30,004, 자부담 15,002)

가. 정책여건

-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불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도 확충 요구 증가
-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강한 임도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단가 현실화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산주 동의 지연, 유지·관리 근거 미흡 등 계획적인 임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등 산림기반시설의 지속 확대
 - 증가하는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임도 배수구 통수단면 설계기준 등을 현재보다 강화하여 재해에 강한 임도 설치
 - 계곡부 하류에 보호해야 할 시설(주택 등) 있는 경우 옹벽·석축 시설, 계곡부 사방댐 설치 및 임도 점검·유지관리 철저
-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친환경적인 임도 조성을 위해 작업임도 단가 추가 인상('25) 및 기 조성된 임도의 전문적인 관리 등 예산 확대
-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임도 타당성평가 운영 내실화 및 현행 임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도 지속 확대

○ 2024년 임도 조성 사업량

(단위 : km)

구 분	계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
계	1,111	409	650	52
국가임도	553	300	201	52
지방임도	558	109	449	-

* '20년부터 지방임도 중 작업임도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편성·시행

○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대

- '22~'23년 대형산불 증가에 따른 진화과정에서 지자체장 등의 임도 필요성 인정에 따라 국·공·사유림 설치 거리 확대('22. 262km → '23. 409)

* 「균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산불진화임도를 추가하여 국비 지원 가능('22. 8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중('23. 1월 완료)

* ('20) 최초 시공 64km → ('21) 93 → ('22) 175 → ('23) 262 → ('24안) 409 → ('27) 3,332

○ 경제림육성단지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산림에 신설임도 70% 집중 설치

- 임도신설(km) : ('22까지) 13,987 → ('24) 15,485 → ('27목표) 22,372

- 임도밀도(m/ha) : ('22까지) 5.99 → ('24) 6.63 → ('27목표) 9.57

○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산림경영 활용 및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향후 4년('24~'27년)간 임도 신설 10,821km 조성

- 목표(km) : ('22까지) 24,929(3.97m/ha) → ('24) 27,352(4.36) → ('27) 36,907(5.83)

* '22년 기준 임도현황(km) : 24,929(지방임도 16,699, 국가임도 8,230)

** 임도밀도 적정기준(m/ha) : 기본 임도밀도 6.8, 경제림육성단지 25.3

2)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친환경적인 임도 조성을 위해 간선·작업 임도 단가인상 및 기초성 임도의 전문적인 관리 등 예산 확대

□ 간선·작업임도 등 단가 현실화로 친환경 임도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

○ '13년 이후 동결된 간선임도 단가의 재료비, 인건비 등을 반영한 단계적 인상

- 재난에 강하고 친환경 임도 조성 및 인건비·재료비 현실화를 통해 산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중추 기반시설인 간선임도 조성 여건 개선

- * 단가 인상(백만원/km) : ('04) 125 → ('08) 188 → ('13) 223 → ('23) 253 → ('24) 278
- '25년 작업임도 단가 추가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 * 단가 인상(백만원/km) : ('09) 80 → ('13) 135 → ('24) 156 → ('25계획) 176
- '19년 재료비, 인건비 등의 단가를 반영한 산불진화임도의 실제 공사비 조사를 통한 단가('24년 334백만원/km) 현실화 추진
 - 지방산림청 공사비 일제 조사를 통한 임도 조성에 투입된 비용 산출

□ 기 조성된 임도의 전문적인 관리 등 예산 확대

- 국가임도 관리 위탁(임도 안전예방 및 구조보강)사업('24년) 및 관련 예산 지속 확대('25년)
 - 기조성된 국가임도(8,230km)를 안전진단 후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배수로 정비, 구조물 개선 등을 통해 재난에 강하도록 임도의 안전성 강화('24.1월~)
 - * 임도 관리 위탁사업 도입(신규) : ('24) 1,750km(33억원) → ('25) +3,000km(56억원)
- 임도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임도망도 정비 추진
 - 기존 임도망도의 오류를 개선하고, 속성정보(시공연도, 관리기관, 시설 종류 등)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임도 이용·관리 기반 마련
 - * 전국 25천km의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임도분석 및 정보제공 가능
- [신규]산림 내 임산물 이동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운반로 구조개선
 - 임산물 운반로를 임도 설치기준 수준으로 안전하게 개선하여 예산 및 산림재해 저감, 임도밀도 제고 등에 기여
 - * 임산물 임시 운반로의 임도화 예산 확보(14km, +21억원)

□ 임도 노선 선정·설계

- 임도 노선 선정 방향
 - 국·사유림 전체 산림을 대상으로 지역 간 연결되어 활용성이 최대가 되도록 계획하되, 유역 내 산림면적이 많은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계획
 - * 노선 선정은 산림경영·산불대응 및 지역 완결 임지에 우선적으로 실시
 - ** 임도망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간(시·군), 기관간(국가·지방임도)
 - 임도 노선 선정은 가능한 공도(국도·지방도·농로)에서 진입하고 산복부 이하로 통과하도록 선정
 - * 산정부(7~9부)에 임도가 조성된 곳은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산복부에 임도 노선 추가 선정

○ 임도 설계 방향

- 임도 설계는 임도 설치 전년도에 실시하고 임도 예정지에 포함된 산주동의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 실시
- 「임도기술교본(’20.6월)」과 「임도 구조물표준도(’20.7월)」를 참조하여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통한 임도의 친환경성 제고
 - * 임도 설계도·서에는 반드시 기준틀 설치 공종 반영
- 임도 설계 시 기계화 작업공간을 확보,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도면, 임도 안내 표지석 등에 설계자 실명을 표기하여 실명제 준수
- 임도 시·종점부에 차돌림 곳 및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 대피소 설치
-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마을 외곽지역 등으로 노선 선정
- 특수성 인정 시 「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조달청)」에 따라 비용 반영, 단가상승 등 조달이 어려운 경우 현지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 * 2015년 산림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목재산업과-5938(2015. 11. 9.) 문서 시달 참조

○ 임도 설계

- 계곡부 임도 노선은 최대 홍수위보다 2배 이상 높은 지역으로 설계
- 임도 지장목은 임지의 비배 효과 및 성토면 토사유실 방지, 곤충 서식지, 홍수 등에 의한 유실 등이 방지되도록 설계에 반영·추진
- 임도 상단부 토석·유목이 배수구·암거 등을 막지 않도록 상단에 소형 사방시설(골막이, 소형 사방댐 등) 반영
- 연약 지반의 경우 임도 노면 지지력 강화를 위한 공정을 설계에 반영
- 과도한 산림 및 경관 훼손이 없도록 임도 노선 선정 및 설계
 - * 유용토운반작업장 확보 후 전량 운반 사토 등으로 설계
- 여러 계곡을 경유하는 임도 노선의 계곡 하단부는 사방댐 배치
- 라이다·드론을 이용한 임도 설계 시범사업 추진(북부, 동부, 남부 각 1개소)
 - * 전문기관 연구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방안, 지침, 품셈 마련
- 배수로 위치는 설계부터 검증을 철저히 하고, 시공 중이라도 위험요소 발견 및 시공·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설계 등 변경
 - * 배수로는 자연 계곡에 설치하여 절토사면 길이를 최소화하고, 수리계산과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새로운 물길을 만들면 하단부 피해 원인이 될 수 있음)

○ 임도 설계 심사

-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 원 이상인 임도사업(신설·구조개량·보수)은 설계 심사 실시

-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하는 경우 차상급 기관(시·도, 지방산림청)에서 설계 심사 추진
-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발주하는 설계의 경우는 발주청에서 심사
- 설계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1명,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하여 내실 있는 임도 설계 유도

□ 임도 시공

○ 임도시설 공사 계약·준공

- 3월 말까지 공사 계약, 동절기를 감안하여 11월 말까지 공사 완료
- '24년 임도시설 대상지 중 미 설계 지역은 예산배정 즉시 설계 계약 추진
 - * 설계 조기 발주 및 설계도·서 납품과 동시에 공사 계약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임도시설 시공 방향

- (목재생산) 조림지, 목재생산 예정지 등에 임도설치 기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견실하고 활용도 높게 시공(종단기울기 규정 준수 등)
- (환경성) 구조물 등은 야생동물 이동 등을 감안하여 시공하고, 지장목을 활용한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주변 경관 등을 고려, 친환경적으로 시공)
- (재난안전성) 산불예방·진화 및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 복구 차량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산림재난에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소형 사방댐, 골막이 등)
 - * 지방임도 국고조보금 집행 잔액은 재해위험지역 소형 사방댐, 골막이 추가 시공

○ 임도시설 공사 감리

- 임도사업(신설·구조개량·보수)비 2천 만원 이상은 반드시 감리 실시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림사업 설계·감리의 범위 등)

○ 현장대리인의 배치

- 임도 공사 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산림공학기술자) 배치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산림기술자 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 사유)

○ 임도 사업 추진 및 준공

- 임도 공정회의를 매주·매월 실시하고, 진도 부진 시 양방향 굴진 및 추가 장비 투입, 다 공정 동시 추진이 되도록 지도·감독 철저
 - * 착공계만 제출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도

- 사업이 완료된 개소에 대하여 준공 처리하고,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 *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 제출 및 준공 처리하는 사례 금지
- 불합격 공사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실행 또는 재시공 추진

□ 임도시설 유지·관리

가) 2024년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량

(단위 : km)

구 분	계	구조개량	안전예방·구조보강	타당성평가	임도관리단
국가임도	2,349	98	1,750	501	27개단, 108명

* '20년부터 지방임도 중 구조개량·유지보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편성 시행

나) 임도관리단 운영(27개단, 212명)

- GPS장비를 활용한 담당구역 임도노선을 측량하여 임도망도 구축 및 구조개량 대상지 사전 파악 및 응급복구 계획수립
- 임도변 낙석제거 및 절·성토면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사전 제거
- 세굴된 노면 응급복구, 재해우려지 피해 예방을 위한 비닐 피복
- 임도의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안전시설 설치 등)

* 임도관리단 운영 : 27개단(1개단 관리거리 128km)

구 분	합 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관리거리(km)	3,456	768	896	640	512	640
단수(개)	27	6	7	5	4	5
인원(명)	108	24	28	20	16	20

다) 임도시설 보수사업

- 임도시설 보수 대상지
 - 구조개량 사업은 하자보수 기간(3년)이 경과한 임도
 - *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임도 구조개량(98km)
 - 집중호우 등으로 임도 훼손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 임도시설 유지·관리
 - 안내입간판, 이정표 등 정비·보수 및 추가 설치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 국가임도의 시공·관리 주체는 1차 소속기관장으로 표기
 - 기관별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임도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능력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가) 임도사업 기술능력 향상 및 친환경·정보교류 확대

- 중앙기술자문단(산림청) 운영으로 임도설계·시공 역량 강화
 - (구성) 학·연·현장전문가로 구성
 - (운영) 설계 분야는 전년 12월, 시공 분야는 '24. 5~10월
 - (방법) 설계·감리·시공사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현장토론식 기술지도
- 지역기술자문단(기관별) 구성을 통한 수시로 임도설계·시공 기술자문 실시
 - 임도노선 선정에서부터 시공까지 수시로 자문 요청으로 기술력 향상
- 임도 개설이 야생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추진(5개 지방청 각 1개소)
 - 시범구를 선정하고 같은 지역을 매년 계절별 장기 모니터링 실시
 - * '25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 전국 임도 워크숍 행사 개최(11월)
 - 우수사례 발표·공유 및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기술 향상 유도

나) 임도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평가

- 임도사업 자체 성과평가 실시(지자체·지방청 등 연 1회 이상)
 - 시공능력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자체평가 실시
 -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규정에 따라 점검·평가
- 임도의 우수한 시공에 대한 정보 교류를 위해 우수사례 평가
 -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재해에 안전한 임도시공 유도
 - * 포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1점/대상), 산림청장상(5점/최우수·우수·장려) 등
-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임도 확대를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 임도 확충 및 경제림육성단지 집중 임도 조성을 위한 임도 실적률 평가
 - * 임도 실적률 40%, 경제림육성단지 60%, 가점(예산 외 임도, 산불진화임도 실적 각 1~5점)

임도신설 실적률(A)			경제림단지 내 임도신설 실적률(B)			가점(C)			합계
최근 3년간 임도신설 실적 평균(a)	'24년 임도신설 실적(b)	비율(A= b/a×100)	최근 3년간 임도신설 실적 평균(c)	'24년 임도신설 실적(d)	비율(B= d/c×100)	예산 외 임도실적(e)	산불진화 임도실적(f)	소계 (C=e+f)	(A×0.4)+ (B×0.6)+C

3)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한 임도 타당성평가 운영 내실화 및 현행 임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 임도 타당성평가의 전문기관 위탁사업 확대(국가임도, 501km)

○ 임도 타당성평가 추진

- '25년 신설 예정 임도의 타당성 평가는 '24. 12월말까지 완료
- 타당성 평가 시 사유림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확보와 병행 추진
 - * 설계 완료 후 산주 부동의로 인한 추진 지연 방지를 위해 사전 동의 완료 철저

○ 임도 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위탁사업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환경성, 재해안전성 분야를 강화한 타당성 평가체계 개선
 - * 현행 : 3개 항목(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 개선 : 5개(추가 : 재해안전성, 효율성)
- 개선된 임도 타당성평가 항목 적용한 사업 확대 추진(501km)
 - * 2025년 이후 임도 설치 계획지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평가 추진

구 분		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타당성 평가	사업량(km)	501	127	128	114	62	70
	예산(백만원)	2,655	673	678	604	329	371

* 국가임도 타당성평가(km) : ('22) 150 → ('23) 400 → ('24) 501

- 임도 타당성평가 수행 전문기관 위탁, 평가방법 등 법적 근거 마련
- 임도 타당성평가 시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 산림소유자와 사업계획의 사전 협의 및 지역주민 등 의견 반영
 - 임도 신설 타당성평가 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마을 대표 등을 평가위원으로 반드시 위촉

□ 현행 임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 「임도설치법」 제정 및 「산림자원법」 제·개정

- 현행 「산림자원법」에서 임도 분야를 개별 법령으로 제정 및 임도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사용 등 「산림자원법」 제·개정 추진
 - * 임도계획 수립 내실화, 토지 수용·보상, 임도 유지·관리 의무화 등 법적 근거 마련

4) 임도 재난예방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가) 기후위기 대응 임도 재난예방

- 임도 구간 재해예방 구조물 설치 의무화[『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23.10.11~)]
 - 신설 및 기설치 임도 계곡부 하류에 보호해야 할 시설(주택 등) 있는 경우 옹벽·석축 시설, 계곡부 사방담 설치
- 임도시설 재해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 집중호우 대비 임도 위험지 조사 및 피해예방 활동
 - 임도유역 민가, 주요시설물 등에 대한 DB구축 및 비상 연락체계 정비
 - * 임도시설 하단부 인명·재산피해 위험지 조사(3~5월) 및 재해위험 예방조치(5~6월)
 - ** '24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2024년 자연재난(임도시설) 예방·대응계획 수립」 운영
- 최근 3년('21~'23년)간 임도신설 사업지 자체점검
 - 집중호우 대비 국·민유임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인명·재산피해 사전 예방

나) 임도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임도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에 따른 안전확보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비를 이용한 사업 추진 시 안전거리 확보하여 안전한 사업장 조성
- 절토사면 안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최우선 실시
 - * 지반 사면붕괴·토석·암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등 위험요소 상시 점검
- 작업 공종별 안전한 작업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
 - * 위험성이 높은 토공사, 배수관공, 포장공, 사면녹화공 등 작업공종별 작업 전·중 안전 작업방법,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수시 확인
 - ** 매일 공사 시작전 안전교육, 체조실행 등 동영상·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의무화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 임도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험성평가 항목 개선·보완
 - * 지장목 제거, 중장비 등에 근로자 끼임, 부딪힘, 굴삭기 작업 등 사고 발생 사례가 많은 작업종에 대한 위험성평가 강화

- 절토사면이 길어서 토사붕괴, 암석 낙하 등 위험 예상 지역은 작업자 보호를 위한 구조물, H형강 등으로 활용한 흙막이 공사 우선 추진
 - * (현행) 배수관 보호공 설치 후 절토사면 붕괴 우려지에 흙막이 공사 추진
 - ** (개선) 토석 붕괴 우려지에 흙막이 공사 시공 후 배수관 보호공 설치
- 배수관 유입구 보호공 검측방법 개선
 - * 날개벽, 집수정 등 배수관 보호시설을 거푸집 설치 치수 측정은 스태프, 광파 거리계 등을 이용하여 측정, 터파기 장소에 작업자 투입 최소화
 - ** 불가피하게 작업자가 터파기 장소에 투입하는 경우에 절토사면 붕괴 예방조치 등을 충분히 하고, 임도 노면에서 탈출로 확보 후 치수 측정

5) 임도사업 회계 이관·예산 확대·집행 내실화 및 사후관리 철저 등

- 임업 선진국 수준의 임도 확충과 통합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자체 임도사업의 예산지원 방식 전환 추진
 - 체계적인 전국단위 계획에 따른 임도 확충을 위해 회계(계정) 이관 필요
 - * 지방임도 : (현행) 지특 자율계정 → (개선) 지특 지원계정 또는 일반회계
- 지방이양 관련 지방임도(작업임도, 구조개량, 유지보수) 예산 적극 확보
 - 지방임도의 지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따른 '25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지방임도) 평가 대비 철저
 - 제출한 평가 자료에 따라 평가되므로 자료 작성 철저
 - “예산삭감” 의견을 받지 않도록 평가에 전략적인 적극 대응
- 임도 사업 예산 적극 집행 및 불용액 최소화
 - 임도사업 조기 발주(상반기 전개소 착공) 및 공사기간 단축으로 조기 완공
 - 국가기관에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선금에 노임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선금지급액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계약 불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및 하도급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등 사업관리 철저
 -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임도사업 하자검사 이행 철저
 -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내 연 2회 검사 이행 철저('20회계연도 결산 지적)

- 계약체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임도사업의 공개경쟁 비율 확대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17.11.24)」
- 임도사업 실적 관리 철저
 - 정기적 임도사업 실적 및 임도전산관리대장, 임도망도 관리 등
 - 사유림 매수로 인한 증·감 관리(예, 사유림 매수 시 : 국가임도 + 지방임도)
 -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한 임도사업 실적 입력·관리 철저('24.2월)
 - * 국·공·사유림의 산림경영 및 자원조사 활동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
- 임도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철저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 준수 철저
 -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이행사항 철저
- 국립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임도시설 요청 시 적극 검토
 - 국립공원 특수성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으로 임도 시공('17년 국정감사)

라. 추진일정

- 임도 담당자 시책교육 : 1~2월
- 국가안전대진단(임도 분야) 실시 : 2~4월
- '23년 임도 피해 복구사업 점검 : 4~5월
- 임도의 집중호우 예방사업 및 점검
 - 임도 하단부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지 일제조사 : 1~5월
 - 집중호우 대비 임도노선 일제점검 및 재해위험지 사전 조사 및 예방 : 4~6월
- 집중호우 대비 중앙기술자문단 합동 현장점검 및 기술지도 : 5~6월
- 임도 우수사례 선정·전파 : 9~11월
- 전국 임도 워크숍 행사 추진 : 11~12월
- 중앙기술자문단 운영 : 연중

20. 경영지원 강화 및 산림경영주체 육성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목 표

- ◇ 법령 개정, 융자, 세제 지원을 통한 경영지원 강화
- ◇ 맞춤형 교육 등으로 건실한 산림경영주체 육성

가. 정책여건

- 임업은 투자의 장기성,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소득 보장이 어렵고 자연재해 증가, 국내·외 경제상황 등으로 여건 개선이 어려움
 - * 임가소득('22) : 38백만원 / 농가소득(46백만원)의 82%, 어가소득(53백만원)의 72%
- 임가 소득 증대 및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임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체계적인 임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및 지원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 임업분야 융자지원 및 세제혜택 확대 등을 통해 임업경영지원 강화
- 임업인·귀산촌인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경영주체 육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및 임업인 자긍심 고취 기회 제공

- (법령개정) 현행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개정 추진
 - (이관)목재비축람·임업기계장비, (신설) 산림경영계획특례, 사유림경영조정위원회 등
 - * 흥문표의원 발의('23.4월) → 상임위 상정('23.6월) → 법안심사 대응

- (자공심 고취) ‘임업인의 날(11.1)’ 행사 및 산림명문가 선정
 - 행사 시 산림산업 발전에 기여한 임업인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 * 산림사업유공 정부포상 규모(안) : 8점(훈장2, 포장3,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1)
 - 3대 이상 모범적으로 산림을 가꾸어 온 산림명문가 선정

2) 전문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자금(융자) 지원

- 임업 협·단체 등 건의사항을 반영한 '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시행
 - 산림사업종합자금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 * (전문임업인) 임업분야 국가자격증 소지 시 관련 교육 이수로 인정
 - * (귀산촌인) 타 산업 분야 단기근로자(월 60시간 미만)도 대출 신청 가능
 -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림조합 금융담당자 교육 실시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의 건전성 확보, 사후관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운영실태 점검(상·하반기 각 1회)

3) 농업 등 타분야와의 형평성 및 특수성을 감안한 세제 개선

- 소득세 비과세,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추진
- 전문가, 협·단체, 담당자가 함께 신규 세제 발굴 및 일몰 도래 조항 분석하여 감면건의서 제출(국세 4월, 지방세 10월)

4) 임업인·귀산촌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한 경영주체 육성

- 임업인·귀산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체계 구축
 -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유통 등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 전문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로 내실화
 - 교육 만족도, 교육 현황, 프로그램 운영, 교육 내용의 적확성 등 실태조사

라. 추진일정

- '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시행 : 1월
- 산림사업종합자금 담당자 교육 실시 : 2월
- 세제 관련 건의 수요조사 및 간담회 추진 : 3월

- 산림·임업분야 조세지출 건의·평가서 제출 : 4월, 10월
- 산림명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7~10월
- 제5회 '임업인의 날' 행사 개최 : 11월
- 산림사업유공 정부포상 실시 : 11월
- 임업정책자금 유공자 포상 : 12월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실태 점검 : 반기별
-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실태점검 : 연중

21.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4)

목 표

- ◇ 단기소득임산물의 전문적·안정적 생산을 위한 규모화 지원
- ◇ 임산물 생산지원 보조사업 개선 및 합리적 지원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 임업은 장기·저수익성, 생산규모 영세성으로 인해 임업소득이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임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 임가소득('22) : 38백만원 / 농가소득(46백만원)의 82%, 어가소득(53백만원)의 72%
- 산림소득 보조사업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이 임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 「임업분야 정부지원금이 임가 소득과 경영안정에 미친 영향, 한국농업경제학회('20.8월)」

나. 기본방향

-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보조
- 임산물 효율적 생산을 위한 지원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산림소득사업 임업인·지자체 역량·소통 강화 및 우수 임업인 홍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규모화·현대화 지원

-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품목별 생산단지 조성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4월 공모) : ('23까지) 898개소 → ('24) +32개소

2)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관리 지원(21억원)

- 연작으로 지력이 약화되고 산성화된 임산물 재배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유도
 - *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목재제품),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

3) 스마트 장비 및 재해예방 시설 지원으로 생산 효율성 증대(61억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로 시설(보수), 임산물의 재해 예방시설 및 병해충 방제장비,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지원
 - * 생산장비 :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임산물 수확기, 방상팬, 스마트 제어시스템 등
- 대추비가림시설 등 주요 생산시설의 표준모델 마련·제공

4)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제도개선 및 단계별 지원체계 정착
 - 임업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임산물 생산분야 현장 지원제도 개선
 - * 작업로 위험구간 포장 기준 마련, 산림경영관리사 지원 등
 - 산림버섯재배시설 신축 지원 대상자를 토지 임차인까지 확대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임산물 재배 중인 임업인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해 전문임업인 육성체계 정립

5) 산림소득 보조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산림소득사업 신청-계획-성과 단계별 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 * 사업신청요건 점검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로 중복·편중 방지
- 산림소득 공모사업 산림청·지자체 합동 및 지자체별 현장지도를 통해 보조사업의 적정 운영실태 점검(상·하반기 각 1회)
- 보조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생산량 및 생산액 추이 분석·평가

6) 청정임산물 홍보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이달의 임업인’ 선정

-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에 성공한 임업인을 발굴하여 매월 선발·포상
- 정부포상 등 유공 선발 및 보조금(공모)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포스터 및 보도자료 제작·배부, 언론보도, SNS, 누리집 등 홍보

7) 산림소득사업 홍보 및 역량·소통 강화

- 산림소득 지원정보 홍보 및 컨설팅 지원
 - 임업을 처음 시작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제도 홍보 및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요령·사례 등 유용한 정보 제공
 - 산림조합 경영지도원 적극 활용하여 지원정보 및 컨설팅 제공
- 임업인·지자체 산림소득 담당 역량 교육 및 소통 강화(연중)
 - 산림소득사업 시행지침 및 산림시책 합동·권역별 교육, 사이버 교육
 - 담당자 및 임업인을 위한 소득사업 매뉴얼 등 개정 발간·보급
 - 산림소득분야 현안 해소를 위한 임업인·전문가 소통·자문회의 개최

라. 추진일정

- 산림청 및 지자체, 유관기관 산림소득 합동교육 : 2월
- '24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 공고 : 4월
- 이 달의 임업인 선정 및 상패 증정 : 매월
- 산림소득사업 관련 매뉴얼 개정·발간·배포 : 상반기
- 임산물 생산분야 공모사업 추진상황 점검 : 반기별
- 산림소득분야 임업인·전문가 소통·자문회의 : 반기별
-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현장지도 점검 : 반기별
- 산림소득사업 해설서 보완 및 교육·홍보 자료 제작 : 연중

참고

임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보조금 지원 체계도



22. 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및 품질관리 내실화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4)

목 표

- ◇ 산양삼 품질관리 및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통계조사 등 산업기반 확대
- ◇ 이해관계자의 정책논의 참여 확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정책여건

- 「임업진흥법」에 따라 제3차('24~'28) 산양삼 산업 육성대책 시행
- 산양삼 생산량과 생산액, 생산임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산양삼 가공율 저조, 수출실적 감소에 따라 가공산업 활성화 요구
 - * 생산량 : ('18) 130톤 → ('21) 186톤 → ('22) 247톤 (연평균 17.4% 증가)
 - * 생산액 : ('18) 409억원 → ('21) 542억원 → ('22) 601억원 (연평균 10.1% 증가)
- 산양삼 생산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종자·종묘 공급방안 마련 시급
- 수입 산양삼 등의 불법 유통단속 강화로 국내 생산자 보호 필요

나. 기본방향

- 산양삼 종자보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민간 채종단지 확대, 종자관리소 및 함양특화산업진흥 센터 등 본격 운영
- 유관기관 협업 및 산양삼 불법 유통단속 등 산양삼 품질관리 강화
- 통계조사, 협의체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발굴·개선하고, 재배기술·가공소재 연구성과 공유 등 산양삼 생산과 가공을 지원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양삼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 체계 마련

- 공공 채종단지 내 우량 종자 및 우수개체 수집·보존·증식

- 권역별 현장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하여 종자 생산성 확대 및 품질 제고
 - * 공공채종단지 운영(20.8ha) : 강원 평창(7.2ha), 충북 충주(8ha), 경남 함양(5.6ha)
- 민간 산양삼 채종단지 확대·지정으로 우량 종자 보급체계 마련
 - * 민간 채종포(누적) : ('20) 16.3ha → ('21) 35ha → ('22) 62.2ha → ('23) 76ha
-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24.12월까지)으로 산양삼 산업화 기반 마련

※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 총공사비 : 98억원(강원 평창 국비 50% / '22~'24년)
 · 주요시설 : 산양삼 기반 연구시설(분석, 가공 등), 귀산촌 교육 및 체험·재배 시설
 · 주요임무 : 산양삼 성분·효능 등 기반 연구 수행 및 귀산촌 교육·체험

2)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산양삼 품질관리 강화

-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강화 대책 마련
 - 산양삼 수입·관리 관계자 대상 교육·홍보로 품질관리제도 정립
 - 산림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임업진흥법 등 개정 추진(하반기)
- 불량 산양삼 생산·유통 근절을 위하여 특별·수시 유통단속 추진
 - 수입 산양삼 및 인삼이 산양삼으로 둔갑·유통에 대한 단속 실시
 - * 관계기관 : 산림청, 농관원,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지자체 등
- 산양삼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산양삼 효능·효과 적극 홍보
 - SNS, 블로그, 유튜브, 보도자료 등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홍보

3) 산양삼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 산양삼 제도개선 협의체 및 연구협의회와 소통 추진
 -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관계기관의 현장 목소리 청취 및 소통 강화
 - 법령 개정 필요사항 의견조회 및 법률검토 등을 거쳐 개선 추진
 - *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하반기)
- 산양삼 우수성 및 재배·가공소재 등 성과 공유로 생산·가공 간접 지원
 - 산양삼 대량생산을 위한 재배적지, 재배기술, 가공 소재 등 공유
 - 연구성과 및 연구방향 논의를 통해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 '24년 산양삼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마련
 - 지역별·연근별 생산량 및 생산액, 재배실태, 유통 및 소비 조사

라. 추진일정

- 산양삼 종자관리소 및 공공·민간 채종단지 운영 : 연중
-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완공 : 연중
- 산양삼 유관기관 합동 불법유통 단속 : 반기별
- 산양삼 유통관리를 위한 수시 현장계도·단속 실시 : 연중
- 산양삼 수입자(관세사 등) 대상 홍보·계도 실시 : 분기별
- 산양삼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추진 : 2~12월
-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 하반기

23. 임산물 가공·유통기반 지원 및 소비활성화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206)

목 표

- ◇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 및 자조금, 지리적표시제 관리 강화
- ◇ 비대면 중심의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및 국가통합브랜드 확대

가. 정책여건

- 대외 시장개방 확대 및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유통 여건 악화
- 환경변화 적응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 등 유통경쟁력 강화 필요성 확대
- 소비트렌드 맞춤 신제품 개발 및 신규 판로 개척
- 웰빙 등 청정임산물의 수요 증가 및 소비자 알권리 관심 증대

나. 기본방향

- 임산물 공동판매 등 유통활성화,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 수급조절 등 대외 환경변화 대응 및 민간기능 강화를 위한 자조금 확대
- 임산물 지리적표시제(PGI) 등록 확대 및 임산물 정보 지속 제공
- 주요 소비계층 선호도를 반영하여 신제품 개발, 경영컨설팅, 신규판로 확보
- 임산물국가통합브랜드(K FOREST FOOD) 사업 확대 및 홍보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기반 구축

- (유통망) 경북권역 물류터미널 조성('22~'24, 40억원), 산지유통센터 조성으로 공동수집, 포장, 유통, 저장 등 규모화·효율화(4개소, 20억원)
- (가공지원) 임산물 2차 가공품(음료, 정과 등) 고부가가치화 지원(3개소, 10억원)
- (유통장비) 화물차, 가공기계, 포장기 등(상품화지원 21억원, 유통기반조성 46억원)

2)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민간 주도 임산물 자조금제도 지원

- 생산자 중심으로 소비촉진, 교육 등 선진적 유통체계 실행
 - 자조금제도 설명회, 행정절차 지원, 설치계획서 작성 지원 등
 - 의무자조금 확대 : ('23까지) 뚝배기 → ('24) 밤 → ('25) 산림버섯
 - * (밤) '22.7월 임의자조금 설치 이후 의무자조금 전환 추진(가입률 24.5%)
 - * (표고) '18.11월 농산버섯과 통합하여 의무자조금 추진(가입률 33.3%)

3) 수요자 맞춤형 임업관측 및 임산물 유통가격정보 제공 확대

- (관측) 수요자 맞춤형 임업관측을 통한 임업인 의사결정 지원
 - 시장동향 정보제공으로 생산계획, 출하시기, 가격결정 등 지원
 - * 임업관측 품목(6품목) : 밤, 표고, 대추, 뚝배기, 산나물, 조경수(100개 수종)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임산물 주요 품목의 생산지, 소비지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제공
 - *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실시간 가격제공 품목 : 36품목 44종

4) 지리적표시 등록 확대로 우수임산물의 명품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

- 지역특화 우수임산물 대상 지리적표시 등록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 지자체·지리적표시 등록 분과위원회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구축
 - * 지리적표시 등록품 확대 : ('23까지) 58품목 → ('24 계획) 1품목 추가
- 지리적표시 등록품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 등록 임산물의 품질관리, 유통실태, 등록단체 운영 여부 등

5)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추진사항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가공·유통분야 보조사업의 실행 제고를 위해 연중 모니터링 실시
 - 시·군별 예산집행계획서 수립(1월말) 및 추진현황 점검(연중)
- 보조사업(가공·유통시설)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강화
 - 지자체별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확인(연 2회)
 - * 유통시설 운영실태, 미승인 근저당설정 여부 등 사후관리 강화
- 가공·유통사업 단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임업진흥원)
 - 공모사업 선정단체 또는 경영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단체 지원
 - * 운영 우수·부실 사업장 운영상황 분석 및 경영 개선 컨설팅, 애로·건의사항 발굴 등

6) 국내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

-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이해관계자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
 - 수입통밥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 국내산으로 둔갑, 현행 규정이 모호하여 단속이 어렵고, 소비자 불만 등 개정 필요('23년 국감지적)
- * (현행)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원산지 → (개정) 종균 접종국을 원산지로 표시

7)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임산물 소비촉진 지원 사업 추진

- 주요 임산물 출하시기 등에 맞춰 온라인기획전, 임산물대축제 등 지속 추진
 - (2월) 설 제수용품, (4월) 산나물, (10월) 청정임산물 대축제, 추석 제수용품 소비활성화를 위한 판매 기획전 개최(가격할인, 체험활동 등) 등
- 임업인이 직접 판로확보하기 어려운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1회 방송으로 많은 물량 판매와 임산물 홍보가 가능한 지원 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 발굴
 - 홈쇼핑 : 16개 품목, 품목별 2회 방송지원(456백만원)
 - 라이브커머스 등 : 소비트렌드에 맞춰 신규판로 지속 확보
- 시장친화형 임산물 가공품 개발 및 역량강화 마케팅지원(360백만원)
 - 1인 가구 맞춤형 밀키트, 편의식 등 개발 지원 및 경영 컨설팅
 - 상품개발 기획부터, 역량강화, 판로개척까지 전 주기 맞춤형 컨설팅 지원
 - ESG 경영 등 컨설팅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및 사업정착 뒷받침
- 임업단체 성장단계별 판로 매칭 및 대량소비처 확보 지원
 - 초기·성장·도약단계별 맞춤형 소비촉진 교육 추진
 - 국내 식품·외식기업 협업으로 임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 * 식품·외식기업 대상 공모사업 접수 → 임산물활용 신메뉴 개발 → 우수사례 발굴·확산

8)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사업 확대 및 홍보 강화(324백만원)

-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 환류·평가체계 구축
 - '23년 사업 결과 분석 및 환류, 평가 및 사업 운영 개선(안) 마련
- 한약재, 급식 등 고품질 상품 유통 확대를 위한 필수 인증 컨설팅* 확대
 - * (필수 인증) 의료용 한약재 → GMP/ 학교급식 → 친환경 등
- 브랜드 홍보·마케팅 확대 추진으로 임업인·소비자 인식 확산 노력
 - 홍보영상 제작·배포, 보도자료 배포, SNS 활용 홍보 적극 시행 등

9) 임산물 소비촉진 공모사업으로 임업인 역량강화 도모

-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단기소득 임산물 관련 협회 대상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공모 추진(265백만원)
 - 직거래 장터, 우수임산물 전시, 소비촉진 교육 분야로 나누어 공모
 - 심의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
- '23년 소비촉진 공모사업 결과(만족도 조사, 참여인원 등) 분석·환류

라. 추진일정

- 명절 성수기 임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 1월, 9월
- '24년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 1월
-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개정 간담회, 공청회 추진 : 3월
- 임산물 소비촉진 공모사업 공모 : 2월
- 명절 제수용품 소비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2월, 9월
- 임산물 소비촉진 공모사업 공모 심의회 개최 및 교부결정 : 3월
-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개정을 위한 농식품부 협의 : 2분기
-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점검 확인 : 3월, 9월
- 산나물 생산시기 산나물 소비촉진 지원 사업 : 4월
- '25년도 임산물 유통분야 공모사업 추진 : 4월
-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개정 : 상반기
- '23년도 청정임산물 대축제 개최 : 8~10월
-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현장점검 : 연중
-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실태 점검 : 연중

24. 임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피해복구 지원 강화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208)

목 표

- ◇ 현장 의견중심 재해보험 상품개선 및 홍보확대로 가입률 제고
- ◇ 재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 및 복구지원 신속화
- ◇ 농약안전사용 교육·홍보로 생산자·국민 안전먹거리 인식 제고

가. 정책여건

-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매년 증가되어 임업경영 환경 악화
- 보험 품목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 등으로 품목확대 제한적
- PLS제도 대응 임산물 농약등록 및 임업인 교육·홍보 확대 요구 지속 발생

나. 기본방향

- 산불, 자연재해 등에 의한 임목피해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임목재해보험 시나리오 작성 및 '두릅' 신규판매 실시
- 임업인 요구를 반영하여 기 운영 중인 재해보험 상품 개선 및 홍보·교육 강화로 보험가입률을 제고 등 안정적인 영농수행 지원
- 마, 산양삼 등 재해가 잦은 임산물 보험 품목 확대 요구 및 기초자료 수집
- 시범사업 품목(오미자, 호두, 복분자). 사과대추의 판매지역 확대 요구
- PLS 제도운영 현황 파악 및 홍보·교육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임목재해피해 보상을 위한 임목재해보험 제도 시나리오 작성

- '23년 산불·산사태 피해지를 대상으로 임목가치, 피해율, 보험비, 보상비, 손해사정 등 임목재해보험 운영 시나리오
 - '23년 추진한 연구용역 시범사업 기반으로 정책연구용역 추진

- 작성된 시나리오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험가입 수요조사 실시
 - 독립가, 임업후계자, 일반 산주 등을 구분하여 수요조사
- '25년 임목재해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 예산 확보
 - 시스템 고도화 등 사업 준비를 통해 '28년 본사업 착수 목표

2) 현장의견 중심으로 재해보험 상품 개선 추진

- 시범사업 중인 오미자, 호두 복분자 및 사과대추 보험 판매지역 확대 요구

품목	현재지역	확대 요구지역
오미자	(경북) 문경·상주·예천, (충북) 단양/ (전북) 장수, (강원) 인제/ (경남) 거창	(경북) 안동·봉화 (강원) 태백·홍천 (경남) 함양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장성	(전남) 광양·나주
호 두	(경북) 김천, 봉화, 의성, 문경	(경북) 예천, 안동, 영주 (충북) 영동, (전북) 무주
사과대추	(충남) 부여·청양/ (전남) 영광	전국

- 현장의견 중심으로 상품개선(안) 도출 및 반영 요구

- 대추 표준가격 산출기준 개선 : (현행) 보은권과 보은외권으로 구분 → (개선) 재배방식에 따라 표준가격 산출('23년 연구, '24년 적용)
- 밤 표준수확량 기준 개선 : (현행) '09~'10년 연구결과 적용* → (개선) '23년 표준수확량 재산정· '24년 상품적용
 - * (현재 기준) 357본 생육/ha, 8kg 생산/본
- 밤, 호두, 대추 보험 가입 기간 조정 요구(현재 4월 → 개선 2월)
 -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봄동상해 피해에 대해 보상 가능토록 가입기간을 조정
- 지자체 설명회(품목별 1회 이상), 현장교육 등을 통하여 가입률 제고 및 임업인 현장의견 수렴 지속 추진

- 마, 더덕 등 재해보험 품목에 임산물 확대 지속 요구

- 재해피해 현황 및 현장 수요에 따라 두릅 등 임산물이 재해보험 판매 품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요구
-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통계, 수요도 등 자료 준비 철저
 - *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대상품목을 심의하여 연도별 도입품목을 확정

3)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 품목별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또는 순회 교육

- 지역별, 임업단체·협회* 정기총회·연찬회 및 소비촉진행사, 대상품목의 주요 생산 시·군의 영농교육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 한국임업후계자협회·조경수협회·밤재배자협회 등 산림소득 관련 등록단체

○ 교육기관의 임업분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해보험 교육 협의 등

-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기관, 임업진흥원 등 기관별 재해보험 교육시간 편성 및 안내자료 배포 등 교육수단 다양화

* 지자체 담당자 및 산림조합 산림경영·특화품목전문지도원 등과 협업 추진

- 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교육 교재 등에 재해보험 안내 및 리플렛 게시

* 보상방법 및 보험금 혜택, 국가·지자체 보험료 지원, 가입방법, 청구 절차 등

4) 자연재해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및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임가의 경영복귀율 제고 및 재해안전망 구축

- '24년 기준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수집 철저 및 행안부, 기재부,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

- 작업로 등 복구단가 현실화로 내실있는 재해복구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산림작물 등 피해의 신속한 복구 지원체계 강화

* 조사요령, 우수사례, Q&A 등 매뉴얼 제작·배포(3월)

5) PLS 제도운영 현황 파악 및 홍보·교육 확대

- 리플렛 제작·배포, 현장 설명회, SNS 활용 등 홍보·교육 확대

라. 추진일정

- 임산물재해보험 상품개선 및 시범사업 확대 요구 : 연중(수요조사 시)

- 임산물 생산분야 자연재해 피해조사 매뉴얼 작성·배포 : 3월

- 임산물 저온피해 대응 회의 및 현장점검, 복구계획 수립 등 : 4~6월

- 뚝은감·밤·대추·호두재해보험 홍보 및 판매 : 2~4월
- 표고버섯 재해보험 홍보 및 판매 : 2~11월
- 임업재해보험 홍보·교육 추진 : 연중
- '24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조정 산출 자료 제출 : 1월
- 복분자·오미자재해보험 홍보 및 판매 : 11월
- PLS제도 농약등록 현황 파악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홍보 : 연중

25.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 및 산주·임업인 서비스 확대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목 표

- ◇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산주·임업인 서비스 확대

가. 정책여건

- 산주의 탄소경영 등 변화적응을 위한 산림조합 공익적 기능·경쟁력 강화 필요
- 사유림경영의 중심역할을 하는 산림조합 역할강화 필요성 확대
- 자치분권 확대로 지역산림경영에 대한 산림조합 선도적 역할 요구

나. 기본방향

- 산림조합 책임경영 및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 산주·임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디지털화 등 서비스 기반 마련
- 산림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의 핵심적 역할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조합 책임경영 및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 외부 인사추천위원장 등 산림조합법 개정(국회 논의중) 후속조치
 -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내부통제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 * 자금이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 처벌대상 확대 등 입법 미비 사항 지속 발굴
 - *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산림조합법 개정 현황 : 국회 계류 6건
- 산림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기준 보완 등 협의 추진
 - 공유지분 산림조합원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사항 발굴·의견수렴

2) 지역산림 육성을 위한 산림조합의 공익적 기능 및 경쟁력 강화

- 산주·임업인 산림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기반 마련
 - 산주의 산림탄소경영 확대를 위한 조합공동법인 제도개선 입법 지원
 - * 산림조합중앙회(조합공동법인) 상호금융 진출로 사유림 산주의 금융지원 확대
- 디지털임업금융시스템 안정화로 산주·임업인 정책지원 강화
 - 금융-비금융을 통합한 종합임업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화 촉진
 - * '23년 전국 169개 산림조합 금융점포에 디지털금융 창구 처음 설치
 - * 금융창구를 기반으로 산림경영지도, 임산물유통시스템 등 비금융서비스 연계
- 지역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등 지역에서 공익적 역할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유림 산림사업 품질향상과 자치분권에 따른 지역산림 육성을 위해 관리업무 대행 사업에 적극 참여
 - * 산림조합은 '19년부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의 모태가 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에 지속 참여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1.1.1)에 따른 산림조합 역할 강화 지원
 - * 시군 산림계획 수립, 산촌활성화, 선도산림경영단지등 지역, 산림자원 이용 및 산업화를 위한 정책참여 지원
 - * 지역조합 경영구조 분석 등 지자체 공유를 통해 지역조합 관리감독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지속 추진

3) 현장밀착형 산림경영지도 운영 확대로 산주·임업인 서비스 강화

- 산주·임업인 소득향상 중심의 실질적 경영지도 및 현장소통(권역별)
 - 9개 권역별 민관협 소통협의회 추진(지역본부별 연2회)
 - 고령임업인을 위한 행정 관리 대행 서비스 강화
 - 청년 임업인을 위한 특화소득사업에 대한 정보전달 및 경영기술 지원 강화하여 선도 산림경영인으로 육성
 - 산림경영지도사업의 대국민 홍보강화로 산주·임업인 지원체계 확산
 - 산림경영이음(산림경영자원 수집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산림사업 정보 및 공간정보 수집으로 산림사업의 이력관리체계 강화

- 산주·임업인의 현장 디지털화 지원 및 기술지도·지원 수요대응을 위한 맞춤형 산림경영지도 역할 확대(연중)
- 산림경영지도의 사업방식 전환 지원
 - 보조사업에서 위탁사업 변경으로 전환 준비를 위한 입법지원
- 산주·임업인 소득향상 중심의 실질적 경영지도 및 현장소통(분기별)
 - 보조사업 관리 행정 능력 함양 및 고령 임업인을 위한 행정 관리

라. 추진일정

- '24년 산림경영지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1월
- 산림경영지도사업 점검 : 연중
- 산림조합의 민관협 소통협의회 추진 : 상·하반기
- 산림조합 관계법령 및 정관정비 : 연중

26. 국유림 경영계획 강화 및 지역과의 협력 강화

(국유림경영과, 042-481-4091)

목 표

- ◇ ICT 활용한 산림조사 정확도 향상 및 국유림경영계획 정보화 강화
* ('24년) 산림조사 158천ha, 국유림 경영계획 153천ha
- ◇ 공동산림사업 및 국유임산물 양여 등 국유림 활용제도 활성화

가. 정책여건

- ICT 기반 산림조사 및 국유림 경영계획 제도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국유림 경영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
- 영세하고 고령화된 산촌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연계한 국유림의 역할 확대 요구 증가
-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산림사업으로 국유림 활용 제고

나. 기본방향

- ICT 활용한 효율적인 산림조사 및 정확하고 정밀한 데이터 관리
- 적극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로 탄소흡수증진을 위한 산림경영률 제고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임산물 양여 등으로 산촌지역의 소득 증대 기여

다. 세부추진계획

1) ^[신규] LiDAR기반 디지털 산림조사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15개 경영계획구 중 1개 경영계획구를 일반 산림조사와 라이다 산림 조사를 병행하여 정확도 등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24.3~11월)
* 시범사업지 : 강릉국유림관리소 주문진 경영계획구(14천ha)

- 과학원과 협력하여 LiDAR기반 산림조사 현장적용 시범사업 추진
 - 수고, 흉고직경, 수관폭, 지하고, 임목생장 및 입지환경 등 수집 분석
- 현장적용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LiDAR기반 국내 산림수준에 적합한 산림조사기준 지침 마련('24)
 - * (과학원) '라이다 기반 디지털 산림자원정보 현장 적용 기술개발' 연구과제('24~'26)
- 모바일 현장업무시스템, 스마트펜, 항공사진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조사 효율성 제고
 - 생산재 검척시 스마트 야장, 스마트 펜을 적극 활용하여 정밀도 제고

< '24년 국유림 산림조사 계획 >

(단위 : ha)

구분	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계	157,902	54,157	14,531	28,655	17,586	42,973
용역조사	94,176	32,300	8,667	17,090	10,489	25,630
직영조사	63,726	21,857	5,864	11,565	7,097	17,343

* 용역산림조사 예산(2,199백만원), '24년 산림조사 단가 25,685원/ha(안) 적용

* '24년 단가 : 최근 3년 단가인상 평균 5% 인상(25,685원/ha)의 면세단가 23,350원/ha 적용

2) 집약적 경영과 체계적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운영

- 현장여건을 반영한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으로 실행력 강화
 - 목재수확, 조림, 임도 등 사업대상지에 대해 현장의견 적극 반영
 - 경영계획 수립 시 개별 법령 등에 따라 별채가 제한될 수 있는 법정 제한림에 대해 목재수확 적합성 사전 검토 강화
- 사업시행전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신규 또는 추가 사업대상지는 '국유림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경영계획 변경 후 사업 추진
- '23년도 사유림매수, 관리전환 등 신규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산림조사 및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 철저

< '24년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 >

(단위 : ha)

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신규취득
152,941	16,792	70,302	16,617	21,627	22,979	4,624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ESG 경영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등 민·관 공동산림사업 확대
 - 산림탄소상쇄사업 등 ESG 경영 참여 회사법인 : 7개('23년 기준)
 - * ESG 경영 기업현황 : (사) 생명의숲, (주) 유한킴벌리, (주) 평화의숲, SK임업 등
 - 산림탄소상쇄, 탄소배출권관련 공동산림사업 대행자에 「상법」에 따른 회사법인을 추가하여 ESG경영 확대 관련 법령 개정 추진('24.6월)
 - * (기존) 산림탄소상쇄사업 적절성 인정단체, 청정개발체제(CDM) 적절성 인정단체
 - * (개정) 기존 인정단체(산림탄소상쇄, CDM) + 「상법」에 따른 회사법인
- 등산로·탐방로 등 공동산림사업으로 국가숲길 조성 시 행정절차 간소화
 - * 산지일시사용신고를 공동산림사업 협약서로 갈음토록 「국유림경영관리 규정(훈령)」 개정
ex) 임산물 운반로 산지일시사용신고 → 매각계약서 내용 표기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갈음

4)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운영 내실화

-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확대
 - 신규취득재산(사유림매수 등), 분수림 반환지에 지역주민 중심 자율적 보호가 필요한 국유림은 보호협약 체결 및 임산물 무상양여 적극 검토
 - *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일부개정('23.8.1.)으로 국유림보호협약체결 후 1년 경과 없이 양여신청 가능(연간 60일 이상의 보호활동 실적 충족 시)
- 합리적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24.6월)
 - 양여 신청 대표자 선임 근거 마련, 무상양여 신청 대상 '해당지역 주민들' 범위 명확화, 양여 관련 민원사례집 발간 등

5) 지방청별로 '국유림위원회' 설치하여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국유림법 개정에 따라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 정책, 경영·관리를 위한 '국유림위원회' 구성 운영
 - 국유림법 개정에 따라 「국유림법 시행령」 시행 추진('24.6월)
 - 국유림 종합계획, 산림보호구역 지정·지정해제, 국유림 매각 또는 교환 등 대부 등 심의
- 지방산림청-광역지자체간의 권역별 '산림협의회' 운영으로 지역의 통합적 산림경영관리 방향 등 현안 논의 활성화

6)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산림경영대행 활성화

-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산림경영대행으로 국토자원의 건강성 확보 및 국가 차원의 산림경영 활성화(연중)
 - 중앙부처 소관 대면적 국유림에 대해 산림경영대행 수요조사 대상지에 대한 현지 타당성조사 후 연차별 사업협의 추진
 - *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217건 162,966ha(숲가꾸기, 병해충 방제사업, 사방사업)
- 경영대행 실무기관 간 계약 및 '24년 경영대행 사업 시행
 - 숲 가꾸기 등 개별사업 예산 활용, '24년 연차사업 계획지를 우선 실행

라. 추진 일정

- '23년도 국유림경영계획 작성현황 보고(총괄) : 1월
- '24년 국유림 산림조사(경영계획수립) 추진계획 시행 : 2월
-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담당자 교육 : 2월
- 국유림 주요수종의 간벌효과 모니터링 연구용역 계약 : 3월
- LiDAR기반 디지털 산림조사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 3월
- '24년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산림경영대행 추진계획 시행 : 4월
- '24년 타부처 국유림 경영대행 추진 관계기관 회의 : 4월
- '24년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11월
- '24년 국유림 경영관리 워크숍 개최 : 11월
- 국유림경영계획 연간 실행실적 분석, 중간평가 보고 : 12월
- 국유림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 현장 점검 : 상·하반기
- 국유림 경영분야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장 점검 : 상·하반기

27. 국유림의 효율적인 확대 및 관리

(국유림경영과, 042-481-4095)

목 표

-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한 국유림 확대
- ◇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처분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가. 정책여건

- 국유림은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 역할 수행
 - 영세한 사유림 경영구조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의 국유림 확대 필요 증대
-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유림 확대를 추진 중
 - 202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28.3%까지 확대 계획이나, 국민은 국유림 적정비율은 30~34% 정도 되어야 한다고 인식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활성화 및 교환 등 비예산적 국유림 확대 필요
-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이행
 - 산림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대부지(경작용, 주택용 등) 및 준보전 국유림(일반재산) 대한 총괄청 사용승인 또는 매각재원으로 활용

나. 기본방향

- 사유림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대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임지 확보
 - 산림관련 법정제한림(보호구역, 사방지 등) 우선 매수로 공익성 증진
 - 공익임지 확대를 위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 * 업무위탁, 원리금 균등지급, 종도인출 및 채권자 변경, 지급기간 다양화 등 추진
 - 매수단가 인상 등 산주에게 도움 주는 사유림매수 제도 운영
-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부처간 사용승인 및 처분으로 합리적인 재산관리
 - 타부처 소관 국유림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협의로 경영임지 확대
 - 대부지 또는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 대한 처분으로 국가재정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 및 반기별 국유재산 종합계획 수립
- 전년도 국유재산 관리운영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 승인지라도 환경부가 요청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저촉되거나, 해당 연도 ‘국유재산종합 계획’ 및 ‘국유재산처분지침’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금지
- 당해 연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추진

2) 유희·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

- 일반재산 중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에 대하여 공개매각 등 적극 처분
 - 소규모 분산 국유림 등 보전 부적합한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적극 지원
 - ‘종교용지’ 등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 가능하도록 「국유림법」 개정 추진
- 산업단지 편입, 공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교환 원칙을 지양하고 일시적 매각(손실보상 포함) 처리
- 유희·저활용 국유재산 총괄청 인계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대부지 등 산림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국유재산 총괄청 인계 협의
 - * 대부지 등 974필지, 5,595,039㎡(대장가액 2,436억원) 총괄청 인계 후 매각
 - 국유재산 총조사(토지, 건물) 결과에 따라 유희·저활용 재산으로 통보되는 행정재산(보전국유림 등)에 대하여 용도폐지 후 총괄청 인계 또는 처분
 - * 총조사 대상 : (토지) 110,497필지, 218,276억원, (건물) 2,039동, 10,209억원
- 산림사업에 따라 건물, 공작물 등 신규취득 및 재산인계시 회계별, 재산종목별 등재 철저(산불대응센터, 임도 등 사업부서 유의사항 통지)

3)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사유림매수

□ 공통사항

-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투명·합리적인 사유림 매수 추진
 - (매수대상지) 산림 관련 법정제한림 및 국유림 확대집단화 가능지
 - *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전용 제한지역 등 공익임지 우선 매수
 -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지구’는 환경부의 매수정책과 중복사업으로 매수 지양
 - (매수제한지)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매수 금지 대상, 기준 단가 초과 산림(단,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 사항 미적용)
 - * 특히, 최근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이 있는 임야는 취득 제한사항 여부 등 엄격한 심사
- 매수절차 : 산림청 누리집에 공사유림등의 매수계획 공고('24.1월)
- 다양한 방법으로 사유림 매수 정책 홍보
 - 본청과 소속기관 각 여건에 맞는 홍보 분담 및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 * (중앙) 누리집, 언론매체(보도자료, 기고, 인터뷰), 카드뉴스, 리플렛 등 정책 홍보
 - ** (지방) 지자체 누리집, 언론매체(지역방송·신문),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 타깃 홍보
 - *** 행정안전부 ‘반상회보’, 지방자치단체 ‘소식지’,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 교육/소식지 등 활용

□ 공익임지 매수(연중)

- 산림관련 법률 등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 매수
 - 산림경영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익 산지 위주로 매수하되, 지방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추진(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제6호)
- 제주 곳자왈 보전림 매수
 -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 후 시험림 지정 관리 가능지 매수
 - * 우선 매수 대상지 : 조천(산흘)·한경곳자왈 지역(국립공원 확대 편입예정지는 제외)
 - ** 매수 대상지 외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 가능한 임지는 매수 가능
 - *** 시험림 지정 가능 여부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사전 협의 추진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8월말까지 승인된 토지에 한하여 매수 추진하며, 승인시 예산 재배정 방식으로 추진

- 광릉 숲 생물보전지역내 완충구역 토지 매수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 숲을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수목원정원법」 따라 완충구역 내 토지 매수
 - * 완충구역 지정현황 : 2,009필지 575ha (남양주 218ha , 포천시 357ha)
 - 중·장기 매수계획에 따른 광릉숲 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1차 매수 지역을 우선 매수 (* 1차 지역 : 진접 부평리(42필, 9.2ha))
- 임도부지 매수
 -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임도예정지는 개설 이전 매수

□ 경영임지 매수(연중)

-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필요한 산림 매수
 - 국유림의 확대 집단화를 통한 경영임지 매수
 - * 국유림에 개재 또는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임지 매수
 - 경제림육성단지 집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로 단지 경영 효율성 제고
- 그 밖에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매수
 - 각종 산림사업 편입 등 국유림의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공유림 등은 매수계획(활용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예산범위에서 매수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연중)

- 산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활성화
 - (매수대상지)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임야 등
 - *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공익임지
 - (매수제한지)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매수 금지 대상 산림 (단,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 사항 미적용)
 - * 특히, 최근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이 있는 임야는 취득 제한사항 여부 등 엄격한 심사
 - ** 산림관련 법률 외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다만, 허가·협의·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 가능,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구역 등)
- '22년 전문가 자문, 관계자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 지속 추진
 - * ❶ 홍보명칭 ‘산지연금형’ 사용, ❷ 매수기준단가 폐지, ❸ 선지급 비율 확대 (40%까지), ❹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30ha 이상 공유지분은 지방청장 재량 매수), ❺ 지적 전 면적 소유권 이전 전제로 연금형과 일시형 병합 일괄 매수 가능 등

- '23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개선 추진
 - ❶ 공원 등 대상지 완화, ❷ 원리금 균등지급, ❸ 채권자 변경, ❹ 지급기간의 다양화, ❺ 중도인출, ❻ 업무위탁 등 협의 추진
 - * 산지연금형(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23.4월 ~ '23.11월,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매수
 - 소양강 상류인 양구군(해안지구), 홍천군(자운지구), 인제군(가아지구) 지역의 산림과 연결한 고랭지밭 등 매수(* 강원도 협의 추진)

4) 비예산 제도를 활용한 국유림 확대

- 타 부처 협의 사용승인(관리전환)을 통해 국유림 확대에 기여
- 대부지(임시특례) 및 공익사업 등에 편입된 국유재산을 교환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유림 확대
 - 임시특례로 대부된 대부지는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개선 지침 (국유림경영과-3169(2016.11.28.))에 따라 교환으로 추진
 -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이상의 면적이 공익사업 등에 편입된 경우 교환을 우선적으로 검토
- 「토지보상법」 개정(정원 포함)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에 편입된 국유림에 대한 처분(교환) 가능하도록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대부지 등의 교환시에는 목적달성 등 검증 철저

라. 추진일정

- '24년도 공·사유림매수 단가 및 사업량 조정 : 1월
- '24년도 공·사유림매수 계획 공고 : 1월
- '23년도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제출 : 2월
-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재정집행 점검 : 5월
- '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제출(기획재정부) : 7월
- 국유재산 관리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안) 마련 : 연중
- '24년도 주요사업(사유림매수, 교환 등)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28.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개선 및 재산관리 강화

(국유림경영과, 042-481-4098)

목 표

-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규제완화를 통한 제도의 합리성 제고
- ◇ 무단점유지 관리강화를 통한 국유림 내 위법행위 근절

가. 정책여건

-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소득 창출 및 귀산촌 희망자 등 국유림 이용 수요 지속 증가
- 국유림 내 무단점유에 대한 불법사항 인식부족 및 과거부터 점유 중인 무단점유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전체 무단점유지 증가 추세

나. 기본방향

- 국유림이 국가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유림 이용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지속 개선
- 국유림 사용허가·대부지가 합법적으로 이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무단점유지가 증가 추세에 있어 예방 및 정리 활동 강화로 무단점유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처

다. 세부추진계획

- 1) 국유림 보전을 고려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국유림 이용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추진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12월)
 - 종교용 시설은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가능함에도 「국유림법」에서 국유림 사용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국가행정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국유재산법」 적용시 대부등이 가능하나 「국유림법」

적용 시 불법 무단점유지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보전국유림 내 종교용 용도 허용가능토록 사용허가 범위 확대

- 국유림 내 있는 공·사유림 외에 '일반토지'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등의 운반시에도 임시로 사용허가 가능하도록 개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6월)
 - 허가권자 승인없이 대부등의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 시 벌칙조항 신설 및 권리양도 금지 조항 신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4.6월)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시 실측도 대신 임야도 사본 또는 임도 설계도서를 대신 제출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 「산림청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24.6월)
 -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훈령에 규정된 세부사항 대치되는 경우 법령개정 및 훈령 전부개정 추진

2) 합리적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국유림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대부·사용허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 대부·사용허가 적극 검토
 - 지자체 공립자연휴양림 등 대부료 전부 감면 추진
- 산림의 훼손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사업에 우선 지원
 - 양봉농가가 벌통을 적치하려는 경우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가능
 - * 산림훼손이 없고,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한정
-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대부지에 대해 총괄청 반환 추진
- **[신규]** 대부지(사용허가지 제외) 내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전기 판매용 태양광 설비 조건부 허용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점검 강화
 - 대부·사용허가지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 시 시정여부 확인, 반환조치의 엄정 집행
 - * 산양삼 대부지 실태조사 시 생산신고 확인증 미제출로 확인되면 타용도 사용으로 간주하여 경고 조치

- 목축용, 광업용 대부지 실태조사시 사업실적 확인 등 철저
- 대부지등 실태조사 시 자체측량 장비 지참하여 도면자료 전산화 추진 및 국유림관리시스템 정비
- 부실 대부지가 아닌 경미한 시정조치를 한 대부지 경우에도 내년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사후관리 철저
- 공익사업 추진,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허가·대부 취소 가능 안내 철저
 - 장기 대부·사용허가로 인한 국유림의 사유지화 방지를 위해 기간 갱신 결정 신중히 판단

3)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정리 및 적발활동 강화

□ 예방활동 강화

- 무단점유지 및 국·사 경계 등 무단점유 취약지에 국유재산 점유금지 입간판·현수막, 경계표주 등 제작 및 설치
- 지역별 무단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AI)을 통한 무단점유 조기 적발 체계 구축
 - * 추출된 무단점유 의심지 확정 후 현장확인 시 자체 측량장비를 통한 위치정보 전산화 등
- 무단점유지 확대 방지 및 원상복구지 지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 * '24년 3~11월까지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및 적발·정리

□ 적극적 정리

- 강제 철거 조치 필요 대상지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 대처 추진
- 무단점유지 정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국립공원 구역 내 국유림 관계기관 간불법행위 합동조사 추진(연중)
 - 국유림관리소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병행하여 지방 자치단체에도 강제이행금 부과토록 협조요청

4) 조립대부·분수림 내 사유입목 매수 적극 추진

- '23년 기간 만료지 경북 영양군 소재 분수림(10,995ha) 내 사유입목 2차년도 매수 추진(대면적 분수림으로 5년간('23~'27) 분할 매수 추진)
 - '24년 예산액 : 6,801백만원(입목매수 6,201, 입목조사 및 감정평가 등 600)
 - * 5년 분할 매수 계획(ha) ('23) 2,064ha, ('24) 2,721, ('25) 2,305, ('26) 2,081, ('27) 1,824
- '24년 기간 만료지 5개소 63ha 내 사유입목 매수 추진
 - '24년 예산액 : 183백만원(입목매수 171, 입목조사 및 감정평가 등 12)

라. 추진일정

- 국유림 대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월
- 국유림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실적점검 : 반기별
- 사유입목매수지 추진사항 지도·점검 : 반기별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실태조사지 지도·점검 : 반기별
- 국유림법 개정 및 국유림 분야 제도개선 수요조사 : 연중
- 무단점유 금지 및 연중 단속실시 매체홍보 및 통보 : 연중

29. 임업직불제 운영 관리

(임업직불제팀, 042-481-1241)

목 표

- ◇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한 임업인 소득안정과 공익 증진 기여
- ◇ 직불금의 체계적 지급·관리와 홍보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 ◇ 직불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의 완성

가. 정책여건

- '22년 처음 시행된 임업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 기여
- 임업직불금 수혜자 확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 증가

나. 기본방향

-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편의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 임업직불금의 차질없는 지급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방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임업직불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2년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업직불금의 조기 지급과 지급대상 면적 확대에 따른 예산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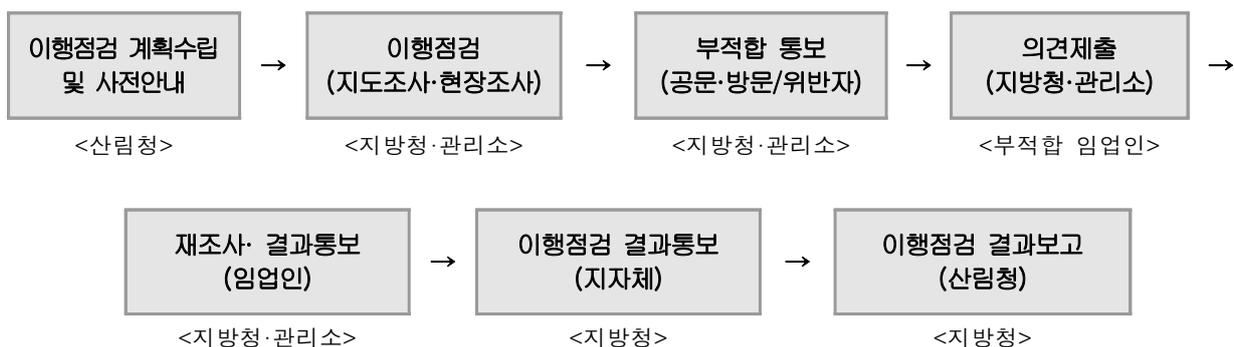
- 지자체·지방청 관계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신청·심사 등 절차를 앞당겨 10월 직불금 지급
 - * 일정 : (1~3월) 직무교육·경영체 정보 현행화 → (4월) 신청·접수 → (4~9월) 요건검증 → (9월) 대상자 확정 → (10월) 예산배정/지급 → (계속) 사후관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의 증가에 따른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면적 확대 등 신규 수요를 대비한 예산 확충

2) 임업직불금 수혜자 확대와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 타직불제와 형평성 제고, 임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격요건 개선 추진(4월)
 - 임산물생산업의 주업기준을 농업직불제와 유사수준으로 개선
 - 파종(식재)부터 수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임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간 임산물 120만원 판매 대체 증명방안 마련
 -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 증명서류 및 이행증명 간소화 등으로 임업인 편의증진 추진
 - ‘체크박스형 영림일지’ 신규 도입 등 증명서류 간소화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등 의무준수사항 이행증명 방법 개선

3)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검증개선 및 부정수급 근절

- 임업직불금 신청자 자격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 지원 확대
 - 읍·면·동 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확대(3→6억원)로 자격심사 강화
 - * 실경영 및 임업종사 여부 확인, 사망 등 승계자 심사, 신규대상자 심사 등 심의
- 임업직불금을 통한 임업·산림 공익기능증진 효과 제고를 위하여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
 - 이행점검 대상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20% 이상으로 선정하고 임산물 생산 시기별 현장 점검으로 전환하여 연중 분산 점검 실시
 - 미이행한 경우 항목별 임업직불금 지급액의 10% 감액 등 행정 조치



-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점검 방법 확보
 - 위성영상 사진 등을 사전 분석하여 미준수 우려지, 불부합지 선정
 - GPS 장비, 드론 등을 활용하여 현장 조사 자료 수집
 - * '24년 현장 조사용 드론 추가 구입 : 15대 150백만원

- 추진기관(지방산림청, 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점검 내실화
 - 점검 시기, 절차, 내용, 사전 협의 및 결과 공유
 - 산림청·지방청·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교차점검 추진(상·하반기)

4)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개시 및 2년차사업 안정적 추진

- 온라인신청, 사전 자격검증,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신청 접수 전 단계별 기능 先오픈하여 대민서비스 제공
 - 임업직불금의 간편 접수 및 심사를 위한 직불업무서비스
 - 내/외부 정보 연계 확대를 통한 종이Zero화 무서류 검증서비스
 - 임업인을 위한 모바일 기반 산림경영 종합관리 지원 서비스
- 지능형 대량검증, 드론·모바일 이행점검, 정밀 통계분석 기능 지원 등 2차년도 신규기능 구축 추진
 - 가족관계, 농업외소득, 의무교육이수 여부 자동 식별 시스템
 - 드론 영상 분석 및 태블릿을 활용한 실시간 이행점검 서비스 구축
 - 임업 마이데이터 기반의 통계분석 자동화 부정수급 예방체계
 -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접수·인가관리 서비스

5) 임업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임업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 확대
 -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및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과정 신규 개설
 - * (2월) 권역별 순회교육, (5월) 자격심사 교육 (연중)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
 - 임업인을 위해 교육기관 추가 지정 및 온라인 교육과정 자체 운영 병행 추진
 - * 대면 교육기관 확대, (기존) '농업교육포털' → (개선) '임업-in시스템' 온라인교육 병행
- 임업인이 고령자가 많음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및 소통 추진
 - 임업직불금 신청, 지급, 의무준수사항 등 단계별 집중 홍보
 - '알기 쉬운 임업직불제 매뉴얼' 등을 활용한 제도 안내 확대
 - 임업 협·단체와 SNS채널(네이버 밴드) 운영으로 실시간 소통 강화
 - * 언론(임업·농업신문), SNS, 반상회보,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문자서비스 등

6)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용역 추진

- 임업직불제 운영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민원(유선, 서면) 분석, 임업경영 현장여건 확인 및 임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과제 발굴

- 선택형 직불제 도입 및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선택형 직불제 도입 타당성 및 필요성, 도입 가능한 유형 검토
 - 선택형 직불제별 신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등

라. 추진일정

-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배포 : 1월
-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2차년도) : 1월
- 임업직불제 담당자 권역별 교육 : 2~3월
- 임업분야 선택형 직불제 연구 용역 착수 : 3월
-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 3월
- 2024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 4월
- 2024년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 3~9월
- 임업인 산림경영 종합 지원 ‘e임업비서’ 앱 서비스 제공 : 3월
- 임업직불금 온라인 의무교육 서비스 제공 : 4월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자격심사 담당자 교육 : 5월
- 2024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자격심사 : 5~6월
-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 워크숍 : 9월
-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 : 10월~11월
- 임업분야 선택형 직불제 연구 용역 완료 : 11월
-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2차년도) : 11월
-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계획 확정 : 12월
- 산림청·지방청·지자체 1차 합동·교차점검 : 상·하반기
-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등 사후관리 : 연중
- 임업직불담당자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 연중
- 임업인 임업·산림공익증진 교육과정(집합·온라인) 운영 : 연중

30. 임업경영체 등록·관리

(임업직불제팀, 042-481-1245)

목 표

◇ 임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맞춤형 산림정책 추진

가. 정책여건

- 다양한 정책 지원의 기반인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정확도 및 운영 관리 효율성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전문임업인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업경영체의 체계적 등록·관리 및 업무지원 강화

- 「농업경영체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고시) 제정·시행(3월)
 - 임업경영체 등록기준, 증명서류·확인방법 등 산림청장 위임사항에 대한 행정규칙 마련 시행
 - * 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24.1월) → 영향평가('24.2월) → 행정예고 및 공포('24.3월)
- 임업경영체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관리자 업무지원 강화
 - 등록관리 담당자 직무교육, 업무편람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 등 제공
 - 현장조사시 독충피해 예방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2) 임업직불금 지급과 연계한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산지에 대한 등록 경영정보·면적 지속 조사

- 실제 경영자, 등록 대상 품목, 경영·휴경 면적 등 지속 조사하여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에 반영
- 임업경영체 유효기간(3년) 만료 예정자 주기적 점검 및 사전 안내로 임업직불금 지원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기 등록 정보 변경 처리
- 직불금 신청·수령 면적 대비 실제 경영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여 직불금 환수 등 될 수 있도록 조치

3)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임업-in) 운영 및 품질 유지·관리

- 임업인 및 업무관리자의 경영정보 등록·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용환경 유지·관리
 - 임업인교육·전문임업인 관리, 통계분석, 모바일 현장조사 서비스 등 제공
 - 시스템 운영·관리 모니터링, 헬프 데스크 운영 등 시스템 운영 지원

구 분	추진 계획
임업경영체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운영·관리 모니터링, 신속한 장애 대응 등 서비스 지원 강화 ○ 사용자 교육, 만족도 조사, 사용현황 분석 등을 통한 이용환경 개선 ○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Help-Desk 전담 인력 운영

4) 임업경영체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임업경영체 관련 정책 및 현장조사 등 사례를 공유하고,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위한 권역별 순회 직무교육 및 워크숍(상반기, 권역별 1회)
- 임업경영체·직불제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의견수렴 및 기관간 협력 등을 위한 워크숍(하반기, 경영체·직불제 각 1회)

라. 추진일정

- 「농업경영체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고시) 시행 : 3월
- 임업경영체 담당자 및 등록 조사원 워크숍 : 상반기(권역별), 하반기(전체)
- 임업경영체 등록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 : 연중
-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연중

31.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제도 운영

(임업직불제팀, 042-481-1241)

목 표

◇ 공·사유림 경영계획 수립률 제고와 산주의 작성편의 증진, 지원 강화를 위해 산림경영계획 제도의 개선 및 내실있는 운영

가. 정책여건

-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률 제고 요구
- 수익성이 낮고 장기 경영이 요구되는 임업 현실을 고려하여 사유림 경영지원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제도 개선과 현장 소통 강화가 필요

나. 기본방향

- 임업인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률 제고
-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혜택 및 지원 강화
-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업인 경영지원을 위한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제도 개선

- **[신규]**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첨부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편의성 제고(6월)
 - 산림경영계획서와 산림조사 첨부서류 등을 경영주체인 산주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소화 추진
 -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보급
- **[신규]**사업내용에 따른 인가 절차 차등화 및 변경인가 기준 완화(6월)
 - 산림경영계획 내 벌채·굴취, 산지형질 변경 등을 요하는 사업미포함 시 인가 등 절차 간소화 추진

- 임업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업연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인가 기준 완화
 - * 「산림자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산림경영계획 신청 주체 및 작성 범위 확대로 산림경영 활성화

- **[신규]**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 확대(12월)
 - 기존 산주(입목등기자) 외에 장기임차인도 수립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 * 「산림자원법·시행령」 개정 추진
- **[신규]**육림 위주의 산림경영계획을 대상 산림 면적 등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사업 범위 확대(6월)
 - 소면적일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생산만으로도 수립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
 - *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추진

3)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혜택 강화

- 산주 대상으로 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 예산 재확보 추진
 - * '22년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으로 작성비용 지원 중단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경영하는 산지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추진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있어 농업과의 형평성 고려

4)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률 제고를 위한 소통 및 역량 강화

- 법적 의무사항인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지도·감독 실시
 - 수립 부진 지자체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여 수립률 제고
-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업무편람 개정
 - 주요민원 및 법령해석 사례 등 반영하여 개정·보급

라. 추진일정

- 2024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고시 : 1월
-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개정 : 3월
- 산림경영계획 제도개선을 위한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개정 : 6월
-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제도 운영 현황 점검 : 상·하반기

2024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산림복지국

1.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기반 구축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39)

목 표

- ◇ 산림복지 통계품질 제고를 통해 맞춤형 산림정책개발 기반 마련
- ◇ 예·결제 통합시스템(숲e랑)의 서비스 확대로 이용편의 제고
- ◇ 산불·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고객 및 직원 안전 확보

가. 정책여건

- 산림복지 정책개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산림복지전문업의 창업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산림복지통계의 중요성 증가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현황(누계) : ('18) 407개소 → ('23.10월) 1,233개소
-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일환으로 공공 웹(앱)으로만 가능하던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민관융합 원사이트 토털서비스 구현' 추진
- 고온건조로 인한 산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형화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나. 기본방향

-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체계 확립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로 이용편의 제고
- 철저한 재난대비를 통한 산림복지시설 고객 및 직원 안전 확보

다. 세부 추진계획

1) 산림복지서비스 정책개발을 위한 산림복지통계조사 실시

- 국민 산림휴양·복지활동 실태조사 추진(산림복지진흥원 위탁)
 - (대상 및 범위) '24년 기준 만 15세 이상의 전국 5,000가구(1만명 이상) 대상으로 산림휴양·복지활동의 목적, 빈도, 만족도, 향후 수요 등 조사

- (추진일정) 계획수립(1월), 계약(2월), 사업완료 및 통계공표(10월)
 - *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 공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조사결과 제공
- 산림복지시설·공간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 추진(산림복지진흥원 위탁)
 - (대상 및 범위) 산림복지시설·공간 수급현황,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인지도·효과 등 조사
 - (추진일정) 조사계획 수립(1월), 계약체결(2월), 사업완료(11월)

2) 위탁운영 중인 산림복지시설 예약·결제 편의성 제고 및 서비스 확대

- **[신규]**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공공 웹(숲e랑)에서만 가능하던 산림복지시설 예·결제를 민간 앱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5월)
 - *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국정과제 11-3. 민간협업 기반 법정부 공공서비스 개방
- **[신규]**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시설 예약 편의를 위해 고객지원센터를 통한 유선 예약 서비스 도입(6월)
 - * 산림교육·산림치유 등 고객의 관심사항에 따른 맞춤형 전문 상담서비스 역량 강화
- **[신규]**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숲e랑에 관련 민간 산림복지시설 및 서비스 상품 등 소개 코너 시범 운영(6월)
-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시스템 운영 안정화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유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강화

- **[신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위탁 운영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필로티 구조물 정밀 안전점검을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
 -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 안전점검(6억원)
- 사면정비, 안전사고 위험 시설물 정비 및 산불대응장비 확충
 - * 산림복지시설 안전정비(13억원), 대형소화기·이동식 소화전 등 산불진화장비 확충(1억원)
- 재난 유형 및 계절별 재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실전 대비 훈련을 비롯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 * 산림복지시설 휴관일(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안전일터 조성의 날'로 하여 고객 및 직원의 안전 위해요소 발굴·개선
- 급변하는 기후변화 현황을 반영한 자연재난·사회재난 발생 시 단계별 행동 절차, 제반 조치사항 등 현장 중심으로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보완

라. 추진일정

- 산림복지통계 관계기관 협의회 및 통계조사계획수립 : 1월
- 산림복지통계 조사 위탁계약(산림복지진흥원) : 2월
- 산림복지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 안전점검 : 3~12월
- 전문가 합동 산림복지시설 순회 안전점검 : 4~6월
- 민간 앱과 연계한 숲e랑 예약 서비스 개방 : 5월
- 산림복지시설 장애인 등 유선 예약 서비스 도입 : 6월
- 숲e랑 민간 산림복지시설·프로그램 소개 시범운영 : 6월
- 산림복지통계 조사 결과공표 및 누리집 게시 : 10월

2.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운영 내실화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41)

목 표

- ◇ 산림복지소외자 등에 대한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및 숲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 녹색자금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운영 내실화

가. 정책여건

- '21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645천명으로 이중 지체 장애인은 1,191천명으로 45%를 차지하며 사회복지시설 8,914개소에 250천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21년 보건복지통계연보, 복지부)
 - 생활권내 녹지나 목재로 조성된 환경이 많을수록 삶의 질 향상에 유익하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시설의 녹지율이 낮아 계층 간 녹지환경 불평등 격차 발생 문제 해소 필요
 - 녹색자금의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가치증진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취약계층에 특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
- * 운용 규모 : ('20) 498 → ('21) 575 → ('22) 691 → ('23) 726 → ('24) 729억원

나. 기본방향

- 산림복지 확산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지원으로 녹색자금의 사회적 가치 증진
- 녹색자금의 지속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다. 세부추진계획

1)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기능 보강

- 산림복지소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산림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국립산림교육센터 신규 조성대상지 2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 및 재해·안전사고 위험 예상 요인 사전 제거
 - 국립산림치유원 및 국립산림교육센터(4개소)에 대한 노후 시설물 보강 및 교체, 동절기 재해예방을 위한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2) 취약계층의 숲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 산림복지소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권 녹색 인프라 조성
 - 취약계층 숲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63개소 조성
 - * (실외나눔숲) 27개소 74,707㎡, (실내나눔숲) 36개소 8,003㎡
 - ** 물가인상 및 사업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지원액 확대(복지시설나눔숲 개소당 최대 2억원 → 3억원)
 - 보행약자 등의 생활권 숲 접근성 확보를 위한 무장애 이용환경 조성
 - * 무장애나눔길 조성 16개소 27.6km / 무장애도시숲 조성 7개소
- 민간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민간시설 이용 활성화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시설 내 객실, 위생·편의시설, 체험시설 등 보완
 - *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편의개선 지원사업 ('24년, 8개소 13억원)
- 나눔숲, 나눔길 조성지 사후관리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도모
 - 조성완료지 유지관리 의무 이행 조사를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
 - * (의무대상) '19~'23년(조성후 5년)내 대상지의 형질, 이용목적 등 변경금지
 - ** (정기컨설팅) 조성후 5년, 6년, 10년 대상지 / (상시컨설팅) 정기 외 희망 대상지

3) 숲체험·교육 지원 사업 개편 운영을 통한 사업효과 증진

- 녹색자금 공모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숲체험·교육지원사업 개편 운영
 - ('23) 산림체험·교육, 숲치유·헬스케어, 임업·산촌지역 체험관광 → ('24) 효과증진형*, 체험확산형으로 개편하여 효과증진형 사업의 서비스 이용 효과 분석 의무화로 사업 실효성 검증
 - * (대학) 사업비 5% 이내 효과검증 분석 자체 학술용역 실시, (전문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서비스유형별 효과검증 후 전문업에게 피드백
 - ** 1인에게 10회 이상 프로그램 제공하여 사전·사후 효과성을 조사
- 취약계층, 보행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숲체험·교육 기회 확대제공 및 수혜계층 다양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 지원사업비(억원) : ('21) 247 → ('22) 262 → ('23) 277 → ('24) 318
- 숲체험·교육 지원 사업의 산림복지서비스 사업 품질 향상 지원
 - (서비스 품질 진단) 산림복지서비스의 품질 진단을 위한 현장점검단 구성 운영
 - * 점검단 구성(4월), 현장점검 실시(5~10월) / 현장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안전관리 등 점검
 - (민간 역량강화) 사업 선정 민간 사업시행자 역량 강화 교육 운영
 - * '25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10월) 기관 전체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정추진(11월)
- 녹색자금 지원이 필요한 산림시책사업 발굴
 - 산림환경기능증진 등 녹색자금 사용용도에 적합한 시책사업 발굴
 - * 산촌, 산림문화, 산림보호, 임업인 교육 등

4) 복권기금사업 평가 대응 및 추진사업 모니터링 강화

- '23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대응 철저
 - 실적보고서 작성·제출('24년 1월) → 복권위 심사(2월) → 결과발표(4월)
 - * '22년 '복권기금 성과평가 종합 1위'로 '24년 성과배분액 121억원 추가 확보
- '24년 녹색자금 운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홍보 강화
 -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이월·불용 방지
 -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411억원),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318억원) 집행
 - 녹색자금 지원사업 홍보 강화로 대외 인식 향상
 - * SNS 활용 국민참여 영상 및 홍보 챌린지 운영(가상·랜선여행, 영상공유 캠페인 운영)
 - ** 나눔숲·나눔길 화보집 제작 및 온·오프라인 전시회 개최

라. 추진일정

- 녹색자금 결산서 작성 제출 : 1월(복권위원회), 2월(국회 상임위)
- '24년도 녹색자금사업 시행자 업무매뉴얼 작성·보급 : 1월
- '23년도 녹색자금 결산 심의(운영심의회) : 2월
- 녹색자금 사용계획 수립 제출 : 3월
- '23년도 성과평가 결과 확정 및 '25년도 복권기금 사용계획 제출 : 4월
- '25년도 녹색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추진 계획 심의(운용심의회) : 5월
- '25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공모 및 심사 : 7~9월
- '25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사업자 확정(운용심의회) : 10월
-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 사업 및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운영 : 연중

3. 종합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활성화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41)

목 표

- ◇ 산림복지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 종합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확대

가. 정책여건

- 숲을 이용한 산림휴양·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에 따른 산림복지정책 마련
 - 산림복지 제공 기반 확대 및 종합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활성화 계획(국정과제, 산림복지진흥계획 등)

나. 기본방향

- 종합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확대
 - 산림휴양·교육·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패키지화한 산림복지 단지를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로 조성
 -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관리 및 지원
 - * 산림복지단지 추진현황(개소) : 10(완료 1, 조성 중 4, 인·허가절차 진행 중 5)
- 산림복지단지의 체계적·효율적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산림복지단지 조성절차 축소,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산림복지단지 조성절차 간소화를 위한 「산림복지법」 개정

다.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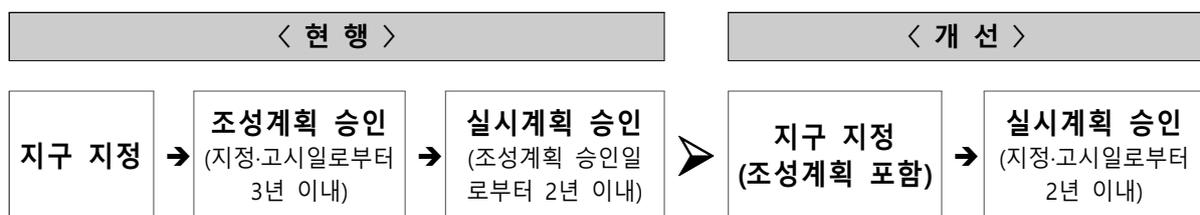
1) 산림복지단지 조성절차별 추진상황 관리 강화

- 산림복지활동의 수요·공급량을 반영한 권역별 산림복지단지 조성
 - * 산림복지지구 지정현황 : 수도권(1), 영남권(3), 호남권(3), 강원권(2), 충청권(1)

- 산림복지단지 사업계획 수립, 승인절차 이행 및 조성 이행사항 점검 등 모니터링·관리
 - (조성계획) 산림복지지구 지정 이후 3년 이내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대상 조성계획 수립여부 확인 및 후속조치
 - * 대상사업(지구지정) : 인제('18.4), 괴산('19.12), 포항('23.11)
 - (실시계획)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이후 2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대상 실시계획 수립여부 확인 등
 - * 대상사업(조성계획 승인) : 동해('21.4월, 실시계획 승인 검토 중), 무주('23.9.)
 - (실시계획 이행여부) 산림복지단지 착공에 따라 조성공사에 대해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준수, 재해위험성 여부 등 조사 및 검토
 - * 대상사업(착공) : 봉화('22.3), 지덕권('22.5), 광양('24.1월 착공 예정)
-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안전심의 지원
 -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절차별 법적 검토사항 협의·조정 등
 - 산림복지단지 관련 안전*심의 시 조성대상지 현황을 반영한 심의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의 사전 현장확인 추진
 - *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지역,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실시계획 승인 신청지역

2) 산림복지단지 조성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화

- 산림복지단지 조성절차를 간소화(3단계→2단계)하고,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5년→2년)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복지단지의 체계적·효율적 조성 지원(「산림복지법」 개정)
 - * (현행) 산림복지지구 지정 → 조성계획 승인(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계획 승인(조성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 착공 및 준공
 - * (개선) 산림복지지구 지정(조성계획 포함) → 실시계획 승인(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라. 추진일정

-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 연중
- 산림복지단지 심의위원회 개최 및 현장검토 : 연중
 - 산림복지지구 지정·지정해제, 산림복지단지 조성·실시계획 승인 등
- 인제, 괴산 산림복지지구 이후 추진현황 검토 : 1월
- 봉화, 지덕권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이행여부 검토 : 1월
- 광양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 이행여부 검토 : 6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연중

4.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41)

목 표

- ◇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및 민간 시장 확대 유도
- ◇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및 역량 강화 등 활성화 지원

가. 정책여건

-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지원 등으로 등록 확대 및 전문 일자리 창출
* 전문업 등록업체(전문인력) : ('23.10월) 1,233개 업체(6,483명)

나. 기본방향

- 도시숲 등 생활밀착형 산림자원을 이용한 전문업 사업 모델 발굴·지원
- 산림복지전문업 민간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복지전문업 성장지원 강화

- 전문업에 특화된 신규서비스 모델 발굴 및 성공적 사업화 지원(3~11월)
 - 이용자 소비 패턴을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의 발굴, 교보재 제작 지원 등 산림복지 효과 제고를 위한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방식 개선
* 지원방식 : (기존) 콘텐츠 개발 → (개선) 콘텐츠, 교보재, 다회기 서비스 제공 방식 개발
 - 유망전문업 발굴·선정(15개소) 및 생활밀착형 산림복지서비스 집중 개발
* (서비스) 구독형 산림복지, 플립러닝 산림복지, (제품) 산림복지 교구·재 시제품 제작
- 전문업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3~11월)
 -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및 산림복지 온라인 팝업 스토어 운영
 - 산림복지전문업 디렉토리북 제작 및 교육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 배포
* '23년 말 기준 등록된 전문업 전체에 대한 기업정보, 대표 상품 소개

- 산림복지분야 신기술·신제품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3~11월)
 -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영 지속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중심의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 이해, 기술보호 및 분쟁사례 등 교육
 - * 특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출원을 위한 진단 지도, 출원비용 지원 등

2)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지원 및 운영관리 내실화

- **[신규]**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으로 지도·감독 강화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영업의 재개,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제도 도입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3, 제66조 개정 추진중
- 신규 전문업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 매뉴얼 제작 보급(1월)
 - 전문업 현황 및 제도, 운영사례, 인력관리 등 전문업 운영 필요 정보 제공
- 전문업 운영실태 점검·평가 및 평가 우수 전문업 지원(4~12월)
 - 평가 대상 전문업(315개소) 전수조사를 통한 차년도 개선과제 도출
 - 우수 사례 발굴 및 10선 사례집 발간·배포, 우수 마크 부여 등 홍보 기회 제공

3) 전문업 상생협력 확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고도화 선도

- **[신규]**산림복지서비스 운영 장소 확보가 어려운 전문업을 대상으로 숲체원 등 산림복지시설을 개방하여 전문업 역량 강화 기회 제공(상반기)
 - 국립산림복지시설(숲체원) 전문업 개방 시범운영 사례 등을 자료집으로 제작·배포하여 개발 활성화 도모

라. 추진일정

- 산림복지전문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 2~12월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 : 「산림복지법」 시행일
- 산림복지전문업 매칭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연중
- 산림복지전문업 실태조사 및 평가 : 2024. 4~12월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 편의성 제공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41)

목 표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확대 및 사용자 편의 개선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유형 확대 및 서비스 품질 고도화

가. 정책여건

- 「산림복지법」 제9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 운영
 - 발급대상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수혜자를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신청기능 개발 요구

나. 기본방향

- 예산 범위 내 폭 넓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위한 계획 수립
- 발급대상 자격별로 형평성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 발급대상 자격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선정 및 발급 운영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이용권 운영방식 개선
 - 모바일 신청기능 제공, 교통약자, 장애인 등을 배려한 이용권 발급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신규(신청) 신청 일정 변경 및 자동 재신청 방식으로 전환

- 이용권 규모확대(65억, 65천명)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제고
 - 봄철 이용을 위해 신청을 앞당겨 이용권 사용기간 1개월 추가 확보
 - '23년 기신청자 신청서 당겨오기 기능으로 자동 신청·접수하여 신규 신청서 작성의 번거러움 감소(자동 재신청 안내문자 발송)
 - 사회보장시스템 자격검증을 활용하여 신분증 미제출(서류간소화)

2) (발급) 본인 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 도입으로 사용자 편의 증대

- (발급유형) 본인 KB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신규 카드 발급
 - 본인 소유의 KB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 이용권 발급 카드사 : KB국민카드 업무협약 체결(2024.1.1.~2028.12.31.)
 -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또는 제3자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 가능
 - 단체 기관 대표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 금액 합산 후 사용
- (카드사용) 제공시설 결제 시 포인트 선 차감 방식으로 복합결제 가능
 - * 예시) 휴양림(13만원) 예약 시 이용권 포인트 10만원+자부담 3만원 자동 결제
- (사용편의) 매년 신규카드 발급에 대한 번거로움 감소 및 신청·발급·등록 기간 대폭 단축하여 사용편의 제공

3) (사용) 제공자 지속 확대 및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개선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 후 ~ 11월 30일(목)
-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자 등록 지속 확대
 - '23.6.28부터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
 - *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에게 도시숲 등 도시 근접 장소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대

<2023년 10월말 기준 제공자 등록 현황>

전체	자연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국립산림치유원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복지전문업
286	164	3	21	28	14	1	22	19	3	1	10

- (비대면) 교통약자를 위하여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지속 운영
 - 비대면 매출 금액 제한 및 상품검증 강화 등 상반기 추진 검토
 - * 비대면 서비스 : '22년 21개 업체 → '23년 10개 업체 운영

4) (기타) 이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콜센터운영) 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고객대응
 - 콜센터 전용 통신장비 및 전문상담인력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보호) 이용권 신청 및 사용 관련 개인정보보호 철저
 -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 외에 타용도 사용불가
- (만족도조사)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5~11월)
 - 연내 이용권 사용한 대상자에 대하여 만족도 점수 및 개선사항 도출

5) (품질관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강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1~11월)
 - 입문자, 신규 등록자, 기 운영자 대상 수준별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 * 등록 지원 컨설팅,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우수 프로그램 보급 등
 -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상품 고도화 컨설팅 추진
 -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공자 대상 집중 교육으로 상품 및 품질 고도화 지원

6) (운영관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운영관리 내실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운영실태 점검·평가 및 평가 우수기관 지원(4~11월)
 - 평가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대상 전수조사를 통한 차년도 개선과제 도출
 - 우수 사례 발굴 및 10선 사례집 발간·배포, 우수 마크 부여 등 홍보 기회 제공

라. 추진일정

-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23. 12월 ~ 2024. 1월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선정 : 1월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 2월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 발급~11월
- 산림복지전문업 연계 사업 추진 : 3~11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관리 : 연중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만족도 조사 : 5~11월
- 차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공표 : 11월

참고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사업예산	• 60억원	• 65억원
발급인원	• 60,000명	• 65,000명
이용권 사용처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복지법」에 등록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286개소, 2023.10월말 기준) -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전문업 	• 좌동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수급자격 서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신분증 제출 생략
사업기간	<p>정기(1차) : 기존 대상자(54,0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 1.2. 9시 ~ 1.31. 14시 선정 : 2.21. 14시 사용 : 발급 후 ~ 11.30. <p>※ 사용기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p> <p>추가(2차) : 한부모가족 대상(6,0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 6.28. 9시 ~ 7.11 18시 선정 : 7.20. 14시 사용 : 발급 후 ~ 11.30. 	<p>2024년 이용권 발급대상자(65,0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간 : '23.12.18. ~ '24.1.19. ※ 사용기간 확보를 위해 신청 1개월 앞당김 선정발표 : '24.1.31. 포인트충전 : '24.2.1. 신규카드발급 : '24.2.1. ~ 2.29. 사용기간 : 발급후 ~ 11.30. ※ 사용기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이용권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우편 신청 모바일 신청(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23년 기신청자 자동 재신청 - 신청서 당겨오기 기능으로 매년 재신청 X
이용권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권 전용 앱(신한플레이) 설치·사용 실물 선불카드 신청·사용 ※ 개인은 기명식 실물 선불카드만 가능 ※ 미성년자, 스마트폰 미소지자, 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 충전(KB국민카드 회원) - 비회원의 경우 KB카드(신용, 체크) 또는 KB페이 설치·사용 ※ 재난지원금 지원방식과 동일(이용권 가맹점 사용시 이용권 포인트 선차감)
이용권 잔액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권 사용 즉시 차감액과 사용 잔액 문자발송 	• 좌동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원 초과 결제 가능(개인별 충전 사용) ※ 초과금액은 개인부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 (www.forestcard.or.kr)에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원 초과 결제 가능(복합 결제 가능 / 포인트 선차감 방식) ※ 초과금액은 개인부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 (www.forestcard.or.kr)에 공지

6.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속가능경영 체계 강화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39)

목 표

- ◇ 생산·효율 중심의 경영혁신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 ◇ ESG 기반의 산림복지 환경조성 및 운영 내실화

가. 정책여건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흥원 설립('16.4) 이후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운영·관리 지속
-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혁신과제 추진에 따라 기관의 자율·책임 역량 강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델 마련 요구
 - * '조직·인력, 자산, 복리후생' 등 가이드 제시('22.7.) 및 혁신계획 이행 실적 점검('23.)

나. 기본방향

- 생산성·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 이행 추진
 - 경영전략 이행 강화, 예산체계 고도화, 직무 중심 보수체계 운영 등
-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고유사업 기능 강화
 - 교육 및 치유서비스 확대, 산림자원 활용 문화 확산, 민간 성장지원 등
- ESG 기반 자율·책임경영 확대 및 업무 지도·감독
 - 친환경 경영 실천, 재해·안전관리 철저, 국민 소통 및 투명경영 등

다. 세부 추진계획

1) 생산성·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 이행 추진 관리

- 중장기 경영전략('24~'28) 이행 및 운영 내실화

- 경영목표, 전략과제, ESG과제 등 실행과제 이행을 위한 성과지표 발굴 연계하여 목표 달성 및 실행력 강화
- 기관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방향 등 직원 대상 전략체계 내재화
-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
 -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재무·예산 운용체계 기반 마련
 - 공공기관 혁신계획과 연계한 경상경비 집행 및 방만경영 요소 정비
-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보수체계 고도화 및 조직·인력 운용
 - 직무급 운영현황 분석 및 미비점 보완 등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 직무급 제도 : 직무분석 및 평가를 통해 마련된 등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제도
 - 신규시설 수탁, 핵심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중기인력 운용계획 수립 ('24~'26)을 통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운영
-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관리체계 도입
 - 경영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에 따른 운영 및 기능 유지관리
 - 인사, 예산, 회계, 복무, 급여 등 데이터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정립

2)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고유사업 기능 강화 지원

- 핵심사업 고도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 탄소중립 실천 연계 활동 및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품질 개선
 - 국민 건강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일상 속 산림치유 확산
-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산림자원 활용 산림복지 콘텐츠 개발
 - 산림문화·레포츠, 문화자산 연계 숲 여행 등 신사업 활성화 도모
- 민간 주도의 전문업 성장지원 및 지역 동반성장 사업 활성화
 - 전문업 성장단계별 육성 계획 마련, 산림복지시설 민간 개방 등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
 - 민·관·공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지역 연대 사업 기반 구축 및 민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숲 연계 특화상품 개발·운영

3) ESG 기반 자율·책임경영 및 주요 업무 지도·감독

- 친환경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운영 모델 정립
 -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구조 건축(7층) 준공 및 운영
 - *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내 교육동, 숲속 도서관(북카페) 등 시민 활용 공간 제공
 - * 목재사용 1,363m³(국산 목재 71% 적용), 탄소 저장 341ton(1m³당 탄소 0.25ton 저장)
 - 탄소발자국 저감 캠페인, 녹색 제품 구매, 친환경 사무환경 조성 등 친환경 중심의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산림복지진흥원 주요 업무 지도·감독
 - 시설 운영 및 사업관리, 이사회 관련 승인사항, 사무 점검, 합리적 인사 운영 등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 지도·감독

라. 추진일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경영전략 이행지원 : 연중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관운영 지도·감독 : 연중
- 산림복지 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 점검 : 2~11월

참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운영관리 대상시설 현황

시설 유형	명 칭	위 치	관리면적 (ha)	사업비 (억원)	조성 기간	운영관리 시작년도
계		17개소	2626.3	3,277		
치유원(1)	국립산림치유원	경북 영주·예천	142	1,474	'10~'16	'16
숲체원(7)	횡성 (청태산치유의숲)	강원 횡성 (청태산치유의숲 관리면적 포함)	95 (위탁 16.4)	249	'05~'06	'07
	칠곡	경북 칠곡	30	153	'12~'14	'15
	장성 (장성치유의숲)	전남 장성 (장성치유의숲 관리면적 별도)	246 (위탁 0.4) 257 (위탁 1.9)	89	'13~'15	'16
	청도	경북 청도	10	156	'14~'17	'18
	대전	대전 유성	33	200	'17~'19	'19
	춘천	춘천 신북	(조성 면적) 335	200	'17~'20	'21
	나주	전남 나주	(조성 면적) 58	200	'17~'20	'21
치유의숲(8)	양평	경기 양평	623	50	'13~'16	'17
	대관령	강원 강릉	224	98	'11~'16	'17
	대운산	울산 울주	25	50	'13~'17	'18
	김천	경북 김천	52	53	'16~'19	'20
	제천	충북 제천	61.3	61	'16~'19	'20
	예산	충남 예산	134	54	'16~'19	'20
	곡성	전남 곡성	246 (위탁 2.3)	49	'16~'19	'20
	화순	전남 화순	17 (위탁 0.47)	75	'19~'22	'23
수목장림(1)	하늘숲추모원	경기 양평	55	66	'07~'09	'17

※ 1. 면 적 : 관리면적을 의미(위탁계약사항에 따라 위탁면적과 다를 수 있음.)

2. 조성기간 : 공사개시 시점부터 준공 완료까지 기간(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기간 등 미포함)

7. 공공수목장림의 활성화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41)

목 표

- ◇ 공공수목장림의 조성 및 운영·관리지원과 매뉴얼 개발
- ◇ 장례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수목장림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가. 정책여건

- 수목장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제2 국립수목장림의 안정적 운영과 친자연적 수목장림 조성·운영에 대한 공공법인의 관심 및 참여 증가 추세
- 자연장지 확대를 위한 장례전문기관·단체 등의 협의체운영 활성화와 장사 주무기관(보건복지부)의 장사정책 제도개선 참여

나. 기본방향

- 지자체·공공법인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수목장림 조성 확대
- 장사 및 산림기관 간 협업으로 수목장림 조성·운영 등에 관한 제도정비
- 수목장림 조성 확대를 위한 장사방법 인식개선 캠페인 지속 실시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립수목장림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신규]** 전문가 자문 및 ‘수목장림 조성 활성화를 위한 TF’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장림의 지속가능한 정책적 방향성 재정립(사후 숲으로 돌아간다)

구분	현재	정책 방향	사유
추모목	가족목 중심	공동목 중심	공공재를 특정인이 장기간 독점 방지 가능
사용료	가족목 (평균 1.5기)	가족목 사용료 상향	가족목은 공동목의 약 30% 사용료로 저렴
방식	추모목 중심	산림장(시범)으로 확장	숲의 자원(바위, 관목 등) 활용, 공동제례단 활성화
골분 반환	가능	허용 불허	계약서에 골분 반출 금지 규정 도입

- 국립하늘숲추모원 추모목 최초 사용계약 기간(15년) 만기에 따른 추모목 관리

< 추모목 연장계약 관련 현황 >

- 추모목 계약 만기도래 대상자(378건)

구분	재연장	재연장 의사 없음	보류
응답(254건/67%)	218건(86%)	6건(2%)	30건(12%)

- 「장사법」에 따라 개장이 불가하며, 표지만 제거하고 숲으로 회귀
 - * 연장 미계약에 대한 권리 소멸 문구 고시(홈페이지, 리플릿, 현수막 등)
- 향후 수목장림은 단일계약(30년), 연장계약(최대 60년) 등으로 유족의 편의성 증진
 - * 「장사법」상 30년은 1세대의 기간을 의미
- 수목장림의 지속가능한 정책적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국유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하반기)
 - 추모목 안정기간(3년~5년) 이후 재분양(국민소통 및 인식개선 홍보 필수) 등
 - * 기존 매장지 사이공간 및 깊이에 따른 2차 안장 검토
-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시설유지 관리 강화를 통한 고객 서비스 개선
 - 국립하늘숲추모원 이용고객의 서비스 제공 품질 고도화(상반기)
 - * (고도화 주요내용) '재계약 관련 운영 매뉴얼 수립' 및 '고객 상담 전문 직원 지정' 등
 -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추모목 생육상태를 고려한 추모목 관리 강화
 - *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협조체계 활용
- 국립기억의숲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 및 추모목 생육환경 개선
 - 신규 국립수목장림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국민대상의 홍보 강화(상반기)
 - * 수목장림 소식지, 누리집 운영, 언론보도, 리플릿, 포스터, 홍보영상 등 배포
 - 계류보전사업 통한 배수체계 개선 및 추모목 생육환경 증진
 -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협조체계 활용

2)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인 사설수목장림 실태조사 및 컨설팅 실시

- 산림분야 유관기관의 '수목장림 활성화 T/F' 운영 및 실태조사 추진(5~6월)
 - 수목장림 정기 실태조사 실시로 활성화 과제 발굴 등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 지자체 참여 공동조사로 수목장림 실태파악 및 정보공유
 - * 수목장림 유관기관 및 재단법인(협회), 수목장림 운영 기관·법인 등

- 수목장립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설립 허가 법인의 지도 감독 강화
 - 설립 목적 달성 및 운영 정보공유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7월)
 - * 재단법인 2(나남, 수목장문화진흥재단), 사단법인 2(수목장실천회, 한국수목장협회)

3) 수목장 활성화 및 수목장립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신규]** 문체부 정책홍보 컨설팅을 바탕으로 ‘수목장립 인식개선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1월)
 - 수목장립 인식개선을 위한 메시지 개발 및 중·장기 홍보 전략 마련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수목장립 소개 등 방송 프로그램 기획 홍보
 - * TV, SNS, 유관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등 활용한 영상 등 제작 배포
 - 유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공동 기획·캠페인, 공모사업 실시
 - * 기관별 홍보 일정 및 프로그램 사전 공유 등 협력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
- 장년층 대상의 수목장(립) 실천서약 맞춤형 캠페인 실시(온·오프라인)
 - 시니어대상 박람회 등 공동참여를 통한 수목장립 컨설팅 부스 운영
 - * 귀산촌박람회, 상조·장례박람회, 시니어복지박람회 등 부스운영 및 서명운동
- 녹색자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수목장립 사용지원 확대
 - 취약계층 수혜범위 확대: (현재) 기초수급자 등 4 → (24년) 국가유공자 등 5
 - * 지역, 사용료 수요를 고려한 국립 및 산림조합 합동 연계 지원 및 언론보도 등

라. 추진일정

- 수목장립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전략 수립 : 1월
- 산림재해 대비 수목장립 유관기관 합동실태조사 : . 5~6월
- 설립 허가된 법인의 지도·점검 실시 : 7월
- 「국유 수목장립 조성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 : 하반기
- 공공수목장립 활성화 유관기관 TF팀 운영 : 분기별 1회
- 수목장립 인식개선 홍보 실시(상조·장례 박람회 등) : 연중

8. 탄소중립 산림교육 강화

(산림복지교육과, 042-481-8869)

목 표

- ◇ 숲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산림교육 강화
- ◇ 학교교육과 산림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생태전환교육 지원

가. 정책여건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능동적 탄소중립 교육 강조(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교육)
 -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국가 기본계획 수립('23.4, 관계부처 합동)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 시행)
- 학교의 생태전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생태전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과과정 편성·운영
 - *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2021.9.24. 시행,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책무 등) 환경교육 의무화: 2023.3.1. 시행
-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산림교육 참여인원 저조 및 학교 내 탄소중립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한 숲교육 동아리 육성 필요(한국숲사랑청소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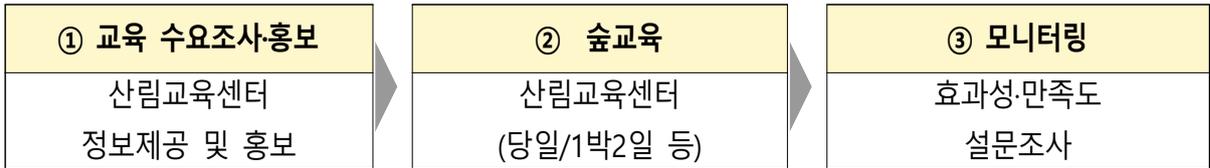
나. 기본방향

-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산림(숲)교육 확대
- 산림교육과 학교 내 생태전환교육의 연계성 강화
-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숲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소년 숲리더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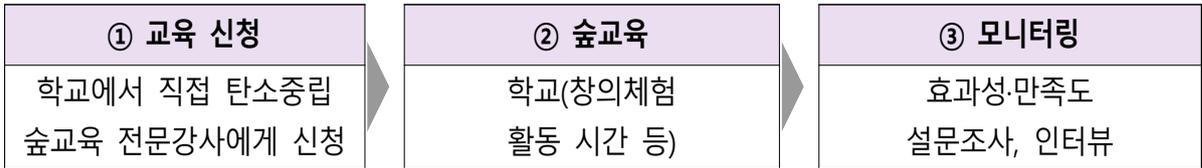
다. 세부추진계획

1) 탄소중립 산림(숲)교육 모델 확산 및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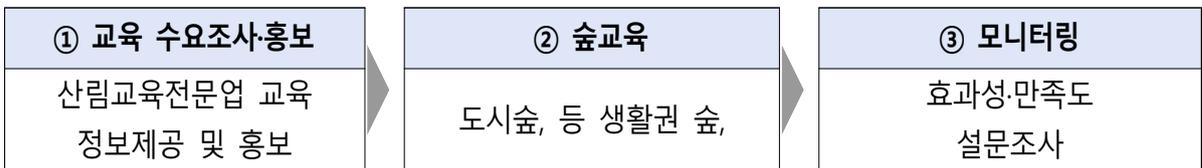
- (모델1) 청소년 숲교육 전문기관인 산림교육센터(23개소)로 ‘찾아오는 탄소중립 숲교육’(학교 → 산림교육센터)



- (모델2) 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전문강사 → 학교)



- (모델3) 산림교육전문업(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을 활용한 ‘생활권 내 탄소중립 숲교육’(전문업 → 생활권 숲)



* '24년 상시 운영 산림교육 정보 제공 및 탄소중립 숲교육 모니터링

2) 탄소중립 숲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

-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한 탄소중립 숲교육프로그램 교육 확대 및 콘텐츠 보급(3차시 → 초저·초고·중등으로 세분화 총9차시)

* ('22년) 3차시 개발 → ('23년) 고도화 → ('24년) 활성화

- 산림교육전문가 역량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가’ 육성(150명)
 - 산림교육 위탁사업 시 산림부문 탄소중립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한 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가 육성

- 실감기술 기반 탄소중립 숲교육 콘텐츠 활용 강화로 산림교육의 효과성 증대
 - 학교 등 탄소중립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 및 홍보 강화
 - 교육부 디지털 교과서 내 산림교육 콘텐츠 탑재로 교육과정 연계 활용성 증대
 - * 국립산림과학원: ('22년) 나무, 탄소잡는 슈퍼히어로 → ('23년) 더하기 숲, 빼기 탄소

3) 학교교육과 산림교육의 연계성 강화 등 생태전환교육 지원 체계 구축

- **[신규]** 정부·지자체·교육청 등 상호협력을 통한 광역단위 산림교육 모델 마련으로 학교 생태전환교육 지원('24.6월)
 - (산림청·지자체)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 시설 확대, 운영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
 - * '지자체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원
 - (교육부·교육청) 학교 교과과정 연계 산림교육 추진, 학교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등
 - *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산림청-교육부 등, '21.4.)
 - (민간단체) 산림교육전문가 역량강화 등 학교 눈높이에 맞는 강사 육성으로 산림교육전문업의 경쟁력 강화 등
- **[신규]** 산림교육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 '숲교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24.6월)
 - 산림청(지방산림청)·시·도(시·군)·교육청(학교) 실무자 및 전문가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운영
- 교원의 산림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교원 대상 산림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23개 산림교육센터)
 - 대상별(교장·교감, 교사 등) 차별화된 직무연수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으로 만족도 제고
 - * 지역 교육청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받아 추진

4) 학교 내·외 산림동아리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숲리더 육성

-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숲사랑 정신 함양으로 미래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청소년 숲리더 육성
 - 산림청(지방산림청)·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별 한국숲사랑 청소년단 대원 육성 및 지원 강화
 - 17개 시·도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활동 기반 강화를 통해 연대성 강화 (리더십 트레이닝 전국대회 등)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숲교육·체험·탐방 등 숲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산림청·지자체)
 - 식목일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림보호 활동, 목재수확 체험 등
 -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산불방지 사진 공모전 등 각종 산림정책 관련 공모전 정보제공 등 참여 기회 확대
- 지도교사 직무연수를 통해 산림교육 역량 강화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육성 우수사례 발굴 등 사기진작 도모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우수 지도교사 발굴·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라. 추진일정

- 탄소중립 숲교육 계획수립 : 1월
- 탄소중립 숲교육 위탁사업 추진 : 2월~12월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 모집 및 육성 : 2월~11월
- 탄소중립 숲교육 효과 등 모니터링 : 4월~11월
- 학교교육 연계 산림교육 협력 모델 마련 : 6월(상반기)
- 학교 연계 숲교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7월(하반기)
- 탄소중립 숲교육 홍보 : 연중

9. 사람을 키우는 산림교육

(산림복지교육과, 042-481-8869)

목 표

-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산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 ◇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사람을 키우는 산림교육

가. 정책여건

- (국정과제)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 제공 추진
 - * 제6차 산림교육기본계획 ↔ 제2차 산림복지 종합계획('23~'27) ↔ 제3차 산림교육 종합계획('23~'27), 산림르네상스 전략('22~'27)
- 산림교육이 유아·청소년의 창의성·인성함양 및 학습능력 향상 등에 긍정적인 효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지속적인 증가
 - * 유아 산림교육 참여인원 : ('21) 2,640 → ('22) 2,947 → ('23.10) 2,348천명
 - * 청소년 산림교육 참여인원 : ('21) 637 → ('22) 831 → ('23.10) 782천명
- 지속적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산림교육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부족한 실정
 - * 유아숲체험원(누계) : 457개소(수도권190, 강원권 42, 충청권 66, 전라권 60, 경상권 92, 제주권 7)
 - * 산림교육센터(누계) : 23개소(수도권 3, 강원권 3, 충청권 6, 전라권 3, 경상권 7, 제주권 1)

나. 기본방향

- 도시숲 등 생활권 숲을 활용해 산림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지원체계 구축
- 숲교육 환경의 시설 보완·개선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정부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협업을 강화하여 사람을 키우는 산림교육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민 모두가 산림교육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한 산림교육 시설 기반 확충 및 관리 강화(연중)

- 도시공원, 도시숲, 정원 등 생활권 내 숲을 활용한 유아숲체험원 신규 조성 확대(41개소: 국립 6, 공립 등 35)
 - 250개 시·군·구 중 유아숲체험원이 없는 56개 시·군·구 및 유아 인구 수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조성
 - *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수요 및 인구를 고려하여 산림교육 사각지대 해소
 - 정부·지자체·교육청 등 협력을 강화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신규 조성한 사례 발굴 등 홍보 강화
- 청소년, 일반 국민을 위한 산림교육의 역할 확대에 따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산림교육센터 지정 및 조성 확대(2개소)
 - 17개 시·도 중 산림교육센터가 없는 시·도(서울, 인천, 대구, 울산, 광주)를 중심으로 1시간의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신규 지정
 - 김해숲체험원(경남 김해),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전북 진안) 조성 완료에 따른 국립 산림교육센터 신규 지정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산림교육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 산림교육센터의 산림교육 및 교원 직무연수 운영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 강화
 - * 산림교육 시설 중심 산림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

2) 산림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 유아숲체험원 대상 3년 주기 일제 점검을 통한 안전 점검 및 정비 강화(국립 32개소)
 - '23년 유아숲체험원 일제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정비 추진
 - 연차별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정비 계획 수립·추진 및 단계별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유아숲체험원 등록 단계 → 산림교육 운영단계(상시) → 특별점검(담당기관)

-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철저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일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이상으로 보험 가입
- 산림교육 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매뉴얼 마련 등 체계 정비('24.12월)
 - [신규]안전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안내서 제작·보급
 - * 주요 시설별 안전 점검 항목, 주기, 이용자 주의사항 및 응급상황 조치요령 등

3)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 협업을 강화하여 사람을 키우는 산림교육 추진

- 정부 부처 협업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운영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 (교육부) 지적·자폐·발달 장애 학생, 가족 대상 정서함양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 * 교육과 산림복지분야 정책 협약(산림청-교육부 등, '21.11.)
 -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성찰 기회 제공 및 건전한 사회복지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산림교육 제공
 - * 보호관찰 청소년 숲체험프로그램 제공 협약(산림청-법무부, '15.8월)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폭력피해 여성,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등의 자존감 향상,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교육 지원
 - * 청소년 등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협약(산림청-여성가족부, '16.9월)
- 지자체·민간단체 협력을 통해 유아·청소년의 숲체험·교육 강화 등 산림교육 활성화 도모
 - (지자체) 유아숲교육,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및 협력 체계 마련
 - (한국숲유치원협회 등)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 숲유치원·유아숲 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및 '한국유아숲사랑단' 육성 협력 강화
 - * 한국유아숲사랑단 현황('23년말 기준): 413기관, 20,152명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한국유아숲사랑단(취학전 아동)과 한국숲사랑 청소년단(초등1~고등 3학년)의 연계성 강화 협력 등

- 산림교육 콘텐츠 보급 및 산림교육 효과 모니터링('24.12월)
 - 산림정책에 대한 산림교육 콘텐츠 보급으로 활용성 증대
 - * '우리는 왜 나무를 베는 걸까요?' 책자·영상 보급(전국 초등학교 등 3만부)
 - 산림교육 효과 측정(국립산림과학원)
 -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생태감수성 척도 활용

4) 새로운 산림교육 추진 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

- [신규]산림교육센터의 역할 구분으로 국가 산림교육센터 지정 및 설치 근거 등 새로운 산림교육 체계 마련('24.6월)
 - 국가 산림교육센터 ↔ 광역 산림교육센터 ↔ 기초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 추가(법 제10조), 유아숲체험원의 지목 변경 제한(법 제12조) 등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3.12.)

라. 추진일정

- 국립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안전정비 대상지 확정 : '23. 12월
- 부처협업 산림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 2월
- 국립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안전정비 : 2월~10월
- 산림교육시설 안전점검 : 1회 이상(특별점검)
- 대한민국 유아숲교육 대회 : 6월
- 산림교육 모니터링: 6월, 11월(반기)
- 산림교육센터 신규 지정 : 12월
- 산림교육 홍보 : 연중

10. 체계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으로 교육 품질제고

(산림복지교육과, 042-481-1813)

목 표

- ◇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역량 강화로 산림교육 서비스 품질제고
-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대와 온라인 산림교육 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 코로나19 일상화 이후 산림교육 참여 인원은 전년 동기 수준 회복 및 증가 예상, 대상별로 다양하고 맞춤형 고품질 산림교육 필요
 - * 숲교육 참여 현황 ('22.12월) 560만명 → ('23.12월) 567만명
- '23.11월 기준 33,181명의 산림교육전문가가 양성되었으나, 현장 경험 및 일자리 부족으로 실제 활동 인력은 부족한 상황
 - 양성기관 관리 강화 및 전문가 역량 강화로 민간 전문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지원이 필요
 - * 산림교육전문가 전문업 등록 현황('23.11월) : 20%(6,498/33,181명)

나. 기본방향

-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 역량 강화
- 숲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산림교육의 접근성 및 행정업무 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대상 맞춤형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교육) 운영사업 추진

- 산림교육 일자리 사업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 운영
 -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대상별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 사회취약계층 대상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등 공적기능 확대
 -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산림교육으로 국민행복 증진
 - * (국가/지자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민간시장) 교육서비스 고급화
- 누리과정 연계 지역학습장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 확대
 - 놀이중심 유아교육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숲체험 활동
- 고교학점제, 생태전환교육 등 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탄소중립 중점학교 등과 연계를 통한 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강화
- 도시숲·공원, 정원 등 생활밀착형 산림교육 활성화로 숲 접근성 개선
 - 최소 이동, 최대 만족을 통한 국민편의 확대 및 교육서비스 강화

2) 산림교육전문가 수익모델 다변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신규]**산림교육시설 민간개방 및 유료프로그램 운영 등 수익모델 개발 지원
 - 국유 유아숲체험원 등 민간개방으로 특화된 유료 숲교육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업 수익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 산림교육 전문업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공동산림사업(산림교육과 연계한 산림소득개발), 공모전으로 추진
 - * 지방청별 1개소씩 5개소 시범운영
- **[신규]**산림교육프로그램 비즈니스 모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 산림교육프로그램 기반 운영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성과를 통한 산림교육전문가들의 신규 수익모델 아이디어 제공

3)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개편

- 민간의 창의성 발현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인증제도의 개편
 - 현행 복잡하고 경직된 기준의 인증제에서 민간의 교육 창의성이 보장되도록 기준 완화와 등록제, 지정제로의 개편 추진
 - * (상반기) 제도개편을 위한 제반사항 연구 추진, (하반기) 법령 등 제도 정비
- 아동·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
 - 아동·청소년 산림교육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산림교육 표준지침을 토대로 개발

- 성인, 가족 단위 등 일반인 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대
 - 지역특화 문화자산 휴양지 등이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지속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 제고
- 인증 산림교육프로그램 활용 제고를 위한 체계적 보급
 - 산림교육프로그램 자료집 제작, 현장 워크숍 추진, 온라인 개발 병행으로 활용도 및 보급 경로 다양화

4)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양성기관 관리

- 양성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모든 양성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현행 제도상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 양성기관(61개 기관) : 숲해설(33), 유아숲지도사(19), 숲길등산지도사(9)
 - 개발된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고, 우수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 우수기관은 익년도 현장 실태조사 제외, 미흡기관은 현장점검 대상 포함 등

5) 산림교육전문가 숙련제도 운영을 통한 역량 배양 추진

- 자원봉사 사업과 연계한 전문가 배치로 현장 적응력 강화 확대
 - 자격 신규 취득자나 기 취득자 중 활동 경력이 없는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장 체험 기회 제공
 - * '23년 사업 현황(9개 기관) : 수도권(3), 강원권(1), 충청권(3), 경상권(2)
 - 교육수요가 가장 많은 숲해설가를 우선 활용하되 지역별 장소 등 여건을 감안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전 분야로 탄력적 운영
 - * 유아의 활동이 많은 산림공원 등은 예비 유아숲지도사를 모집 활용

6) 숲교육포털 구축(1차)으로 산림교육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산림교육 행정업무의 디지털 전환 및 프로세스 개선
 - (전문 산림교육) 양성기관과 산림교육전문가에 대한 전방위 관리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 * 양성기관(86기관) 지정·관리, 전문교육과정 운영관리, 전문가(32,802명) 보수교육 지원 등

- (일반 산림교육) 체계적인 산림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시설·사업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 * 유아숲체험원(455개소) 관리, 산림교육 위탁사업(456건) 관리, 산림교육센터(23개소) 지정·관리 등
- 산림교육 접근성 향상으로 대국민 산림교육 확산
 - (콘텐츠 서비스)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수요자 관심 정보 기반의 맞춤형 통합정보로 제공
 - * 산림교육 프로그램(412건) 등 콘텐츠 관리 및 홍보, 산림교육 공개강좌 제공 등

7)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

- 산림교육 정책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 등 중점 기능 강화
 - 산림교육 정책 및 관계부처 협업 필요 사항 등 중요 심의 기능 강화
 - 관련 협·단체 사회관계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교육정책 및 협업 사업 발굴
- 프로그램 인증 등 전문성이 필요한 심의·의결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

라. 추진일정

- 산림교육(숲해설·유아숲교육)위탁 운영 추진 : 1~12월
- 숲교육포털 구축(1차년도) : 1~10월
- 산림교육·치유전문가 직무교육 : 4~10월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 4~10월
- 우수 인증프로그램 사례 발굴 대회 개최 : 10월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워크숍 : 11월
- 산림교육심의위원회(소위원회) 개최 : 분기별

11. 산림문화 가치 제고 및 산림문화진흥기반 마련

(산림복지교육과, 042-481-4215)

목 표

- ◇ 지정 산림문화자산 가치 재조명 및 무형 산림자산 발굴을 통한 옛 가치 확산
- ◇ 국민과 상생하는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구현

가. 정책여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23.12) 이후 산림문화 분야의 다양한 정책 개발, 산림문화서비스 제공 등 산림 속 문화 향유 및 전통 가치를 고려한 산림문화의 가치 정립, 활용 토대 마련
 - * 개정사항 : 산림문화·휴양 정의 구체화, 산림문화의 확산, 국내외 교류,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 지정, 산림문화 전문가 양성 등
- 산림이 지닌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발굴, 재창조하고자 「산림문화 진흥방안('22~'26)」을 수립, 산림문화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 ①산림문화가치 정립, ②산림문화콘텐츠 개발, ③산림문화서비스 확대, ④산림문화지원기반 구축의 4대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로 구성
- 비대면 소통·원격 문화활동 확산과 가상공간, 메타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문화유산 향유 방식의 전환
 - * 인공지능, 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산림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 기후 변화로 인해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 멸실 위협 증대
 - * 이상고온으로 금강소나무 집단 고사, 외래 산림 병해충 확산 등

나. 기본방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산림문화진흥방안('22~'26)」을 통한 미래 지속가능한 산림문화 체계 구축
 - 가치있는 산림문화자산을 발굴·보존·활용하고, 산림문화정책의 외연 확장과 이를 뒷받침 할 규정을 통해 지원 기반 마련

- 지정산림문화자산 가치 재확산 및 무형문화자산 지정 전략 구상
 - 기 지정된 산림문화자산 활용을 위한 콘텐츠 발굴, 타 분야와 다각적으로 융·복합된 산림문화 프로그램 마련, 홍보 등 연계
- 연령별, 대상별 다각적인 산림문화 서비스 향유 기회 확대
 - 프로그램 종류, 대상 확대 및 장소 다변화된 고품격 산림문화 서비스로 국민 점점 확대
- 산림문화자산의 데이터 통합 축적, 보존 체계 마련
 - 활용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 1) 체계적인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문화 분야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추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산림문화의 자산 발굴, 수집 등 활용과 산림문화 양성을 위한 “산림문화 협력센터” 등 예산 확보 추진
 - 산림문화협력센터를 통한 산림문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인문, 공연 등과 연계하여 산림문화전문가 양성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마련
 - 다양한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 산림 빅데이터 및 산림행정 데이터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신규 정보화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대 추진
- 2)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산림문화 서비스 확대
 - 기존 유형문화 뿐만아니라, 사라져가는 무형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발굴로 기록으로 남김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문화 확대
 - 지역 놀이, 문학, 예술, 요리 등 타 분야와 융·복합된 산림문화 프로그램의 발굴을 통해 옛 산림문화의 가치 확산
 -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 보급

3) 다 함께 즐기고 누리는 산림문화 향유 증진

- 산림생태·역사·경관·지역문화 등을 주제로 차별화된 산림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호기심과 만족감 충족
 - 100대 명품 숲, 국가 숲길, 수요가 높은 산림교육 시설 등을 이용하여 문화·역사 및 볼거리 연계 산림문화프로그램 운영
 - * '대관령 특수조림지' 명품 숲, 대관령 옛길 등 이용 국가산림문화자산 탐방 문화여행 등
- 한·독 임업기술협력 50주년 기념 등 연계 산림문화 행사 추진(4월~11월)
 - 산의 날, 산림박람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지자체 행사* 등과 '74년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 발족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한국의 국제협력 성공사례와 문학, 예술, 인문학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 * 경북산림박람회, 충북산림문화행사, 울주군 산악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등
- 국가 산림문화자산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롱폼, 숏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3월)
 - 매체협업, 기관 SNS 등 활용으로 홍보 극대화

4) 국가 산림문화자산 안정적인 보존, 관리 활용도 제고

- 국가산림문화자산의 공간 기반 DB를 구축하여 데이터 개방 등 관리 개선(연중)
 - 국가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08~'11, 2,092건)를 토대로 가치 우선 순위로 추가·보완 조사하여 DB를 통한 체계적, 종합적 관리
-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을 통한 국가 산림문화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
 - 위치정보, 스토리텔링 개발,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숲길,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서비스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 숲길 구간별 산림문화프로그램 개발('23년), 숲길을 통한 새로운 걷기 문화형성('24년~)
-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구축 사업('22~'24)과 연계한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 조성(연중)
 - 산불, 병해충 등 멸실 훼손 우려가 있는 중요 국가산림문화자산 3D 스캐닝 DB 보존 및 산림문화자산 지자체 협력, 공조 관리

- 지정 국가산림문화자산 중 활용도가 높은 자산을 대상으로 명소화 사업 기본 계획 마련
 - 국가 산림문화자산 명소화 사업지(5개소)*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성공적인 명소화 방향 설정 및 전략 마련
 - * ('22) 화천 동촌 황장금표, 강릉 노추산 삼천 모정탑, 울릉 관음도(깍새섬) 일원
 - ('23) 양양 상월천리 한독산림경영실습림, 김천 단지봉 낙엽송 보존림
 - ** 국가 산림문화자산 명소화 전략 기본계획 용역('23. 12.)
 - 명소화 대상지 선정에 위한 정량적, 객관적 지표 마련
 - * 국가 산림문화자산 명소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기준 활용 시책 건의('24, 과학원)

5) 「국민의 숲」 활성화를 위한 ESG 사업 도입·교육 확대

- 국민의 숲 유형별* 특성 및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ESG사업 도입으로 국민의 숲 이용 기반 시설 정비 등 활성화 기반 마련
 - 유형별 ESG 접목이 가능 산림사업 조사 및 교육(안) 마련
 - 국민의 숲 자체 평가 및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미비점 발굴·개선
 - * 단체의 숲, 체험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

라. 추진일정

- 산림문화 활용 사업 발굴,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 확보 : 1~12월
- 국민의 숲 ESG도입(안) 마련 : 3~7월
- 국민의 숲 운영관리 실태 점검 : 4월
-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신청 접수 및 사전 타당성 조사 : 5~10월
- 제24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 6~10월
- 산림문화박람회 및 제23회 산의 날 기념식 : 10월
- 녹색문학상 시상, 산림문화작품 전시회, 산림문화 달력 제작 : 10~12월
- 국가 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 11월
-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국가 산림문화자산 관리실태 모니터링 및 디지털콘텐츠 구축 : 연중

12. 산촌진흥정책 기틀 마련을 위한 산촌기초조사

(산림휴양치유과, 042-481-1815)

목 표

◇ 산촌진흥기본계획에 시대 여건 반영 등 실효성 있는 기초조사

가. 정책여건

- 「임업진흥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산촌진흥기본계획(3차)」의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촌기초조사 기간 도래
- 산촌은 전국 대비 국·공유림 비율*과 영급 성숙도*가 높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최적지로 평가되는 등 시대 흐름의 변화와 함께 산촌자원의 가치가 급부상

* 국유림의 75.4%, 공유림의 63.7%가 산촌에 분포, III 영급 이상 산림면적이 88.9% 차지

나. 기본방향

- 「산촌진흥기본계획」에 산촌 관계인구, 탄소중립 등 시대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 항목 설정으로 실효성 있는 기초조사 실시
- 산촌만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회요인 등을 파악하는 등 면밀한 산촌기초조사 추진으로 산촌진흥정책 기틀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제3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촌기초조사 추진

- 「산촌진흥기본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산림자원, 인구, 소득, 문화, 도시 교류 및 관광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 산촌진흥기본계획 : (제1차) 2008~2017년, (제2차) 2018~2027년

< 산촌기초조사 법적근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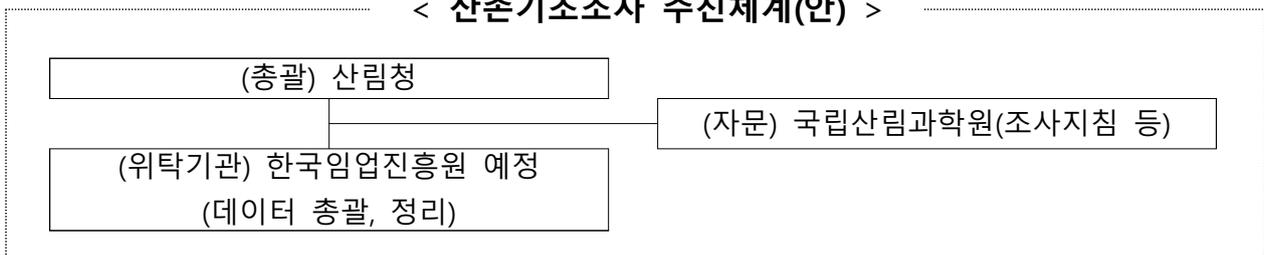
- 법적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제24조(산촌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8개 항목*에 대해 기초조사
 - * ① 산림자원 분포·이용, ② 산촌 인구변동 추이, ③ 산촌소득 등 산촌경제, ④ 산촌의 문화·전통, ⑤ 산촌인력, ⑥ 산촌과 도시 교류, ⑦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 ⑧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산촌진흥기본계획」에 산촌 이슈 및 사회 트렌드 변화 등 달라지는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 항목 설정으로 내실 강화
 - 실효성이 있고 산촌정책 추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조사를 위하여 현실성 있는 세부조사 항목*에 대하여 기초조사
 - * 8개 항목에 대한 세부항목에 대해 산촌자원조사(20개, 통계자료 기반 조사), 산촌실태조사(25개, 현지 조사)로 구분하여 조사

2) 산촌기초조사 추진경과

- '03년 : 제1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촌기초조사
 - (수행기관) 임업연구원, (조사대상) 산촌지역 119개 시·군, 507개 읍·면
- '14년 :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촌기초조사
 - (수행기관) 임업진흥원, (조사대상) 산촌지역 109개 시·군, 466개 읍·면
- '24년 : 제3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촌기초조사 예정
 - (수행기관) 임업진흥원, (조사대상) 산촌지역 110개 시·군, 471개 읍·면
 -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산촌기초조사 추진체계(안) >



3) 산촌기초조사 대상 산촌 현황

○ ('14) 109개 시·군, 466개 읍·면 → ('24) 110개 시·군, 471개 읍·면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광역시·도	12	1	1	1	1	1	1	1	1	1	1	1	1
기초지자체	110	1	1	1	1	8	15	9	8	10	16	23	17
산촌 읍·면	471	1	1	3	4	19	94	41	19	47	53	119	70

라. 추진일정

- '24년 산촌기초조사 위탁계약 추진 : 2월
- '24년 산촌기초조사 위탁사업 착수보고 : 3월
- '24년 산촌기초조사 추진상황 점검 : 6~9월
- '24년 산촌기초조사 위탁사업 중간보고 : 7월
- '24년 산촌기초조사 위탁사업 완료 : 12월

13. 산촌자원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산림휴양치유과, 042-481-1815)

목 표

- ◇ 우수한 산촌 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으로 생활인구 유입 확대
- ◇ 임업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임업인 수익구조 개선

가. 정책여건

- 산촌 내 산림자원과 유·무형의 지역 자산은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 잠재력 풍부
 - 국·공유림의 약 70%가 산촌에 위치하고 있어 산촌 주민의 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배후 산림자원 활용 기회 확대
-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농산촌지역 접근성 개선에 따른 체험·체류형 여행 증가 등 방문하는 휴가에서 머무르는 여가생활로 여행 트렌드 변화

나. 기본방향

- 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을 관광 상품화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숲경영과 산림복지를 융합하여 임업인 소득창출 및 도시민의 산촌 방문 확대 등 활성화 플랫폼으로 육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지역자원과 연계한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 사업 추진

- (목적) 산촌지역의 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모델 개발로 방문객 유도를 통해 지역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경관이 우수한 국유림을 산림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산촌활성화
 - 국유림과 산촌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소득증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유림 활용 사업 추진
- 경북 영양(남부지방산림청), '24년 국유림활용 산촌활성화 사업
 - 영양 자작나무숲 연계 숲길 조성 및 체류형 프로그램 도입
 - '23년도 사전설계를 통한 내실 있는 조성사업 등 추진
 - 체류형 프로그램 마련 및 숲길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는 경제활성화 기반 및 국민에게는 다양한 산림복지혜택 제공에 중점
 - 남부지방산림청(영덕국유림관리소)-영양군-지역주민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

2) 숲경영체험림의 안정적인 정착 추진

- 임업인,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성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입지규제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 발간 및 제도 교육(계속)
 - * 숲경영체험림 조성·운영 가이드북 발간·배포('23.12) → 수요증가 시 추가 배포('24)
- 숲경영체험림 관련 임업인 등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조성계획의 어려움이 있는 규제 등에 대하여 적극 발굴·개선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협의(사업면적 → 개발행위 면적)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환경부 협의)
 -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가능한 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국토부 협의)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자체 위생관리 규정 검토(문체부 사전 협의 사항)
 -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어야 가능함 (문체부 협의)
- 숲경영체험림 조성 및 시설보완에 대하여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 따라 융자지원 가능
 - * 융자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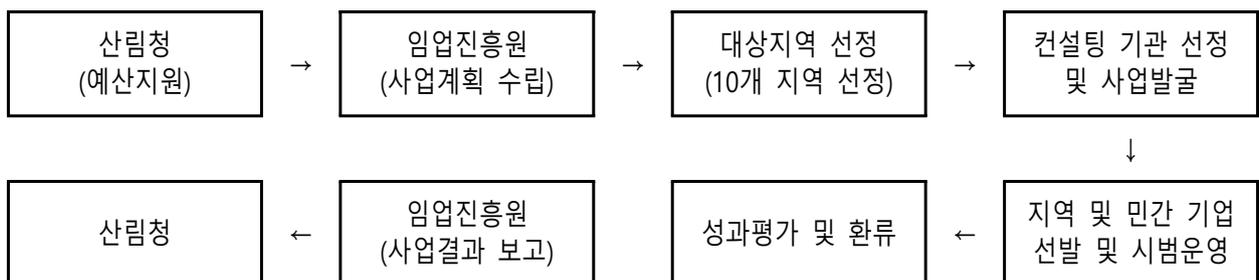
- 사립휴양시설조성 및 전문임업인기반조성 분야로 용자지원
 - * (지원자격) 「산림휴양법」 제21조의3에 따른 해당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 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분야는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포함)에서 임업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의 요건도 충족해야 함

사업명	금리(%)	용자기간(년)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상환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사립휴양시설조성 (숲경영체험림)	1.0	35	20	15	당해연도 사업자당 3억원 이내	사업비의 100%
사립휴양시설조성 - 숲경영체험림	고정(3.0) 또는 변동금리	20	10	10	1개소당 8억원 이내	(신규)설계금액 또는 (보완)소요자금의 80% 이내

* 전문임업인기반조성은 최근 3년동안 동일목적사업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규]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촌활력 특화 사업 추진

- 자연환경(산림관광), 임산물(가공·유통업) 등 산촌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 발굴 및 지역 기업과 연계한 사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사업을 지원하고, 산촌지도 등을 활용하여 산촌활력 특화 사업 추진 적정 대상지 선정(10개 시·군)
- 산촌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산촌자원 활용 특화사업 모델 발굴 및 지역 기업과 연계한 산촌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촌활력 추진
-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 숲경영체험림 조성·운영 가이드북 발간·배포 : 2023. 12월
-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 사업 예산 배정 : 1월
- 산촌활력 특화 사업 위탁계약 추진 : 2월
- 임업인 등 대상 숲경영체험림 제도 설명 : 연중
-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 현장 점검 : 8월
-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 조성사업 완료 : 12월
- 산촌활력 특화 사업 완료 : 12월

14. 산림휴양서비스 품질 제고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1)

목 표

- ◇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 국·공·사자연휴양림 협업체제 구성으로 상생 협력 도모

가. 정책여건

- 최근 기후변화로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3. 7월 기상특보로 예약취소 건수 8,312건
-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인해 휴양수요가 다양화되고 분산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산림휴양 복지활동 경험률*은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
 - * ('20) 81.4% → ('21) 79.2% → ('22) 75.8% (2022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나. 기본방향

- 이용객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운영기반 구축
 - 노후 객실의 지속적인 개량으로 쾌적한 숙박공간 제공
 - 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정비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고
 - * 장애인수(인구대비 약 5.1%) : ('20) 2,633천명→ ('22) 2,653천명(20천명 증)
- 숲나들e 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내실화
 - 하드웨어 증설 및 시스템 기능개선사업('23.5.22~'24.1.17)

- 국립자연휴양림 경영수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등 방안 마련
 - 휴양림별 특화 콘텐츠 개발·운영 확대 및 시설사용료 인상 검토
 - * '23년 국정감사 시 지적(정희용 의원)
- 국·공·사자연휴양림 협업체계 구축으로 민간활성화 도모
 - 주체별 다양한 정보 공유 및 지역협력 사업 발굴
 - * 사립휴양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23.8월) 결과 반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한 시설 확충 및 개선

- 자연휴양림 확충·보완으로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신규조성 : ('23) 17개소 313억원 → ('24) 21개소 310억원
 - * '23년 사업 : 국립 4개소(금산·파주·고성, 부산), 공립 17개소(8개 광역 시·도)
 - ** 신규조성 기본계획·설계·시공에 따라 연차사업(4~5년)으로 추진
 - *** MZ세대 등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한 휴양서비스 개발
 - 시설개선 : ('23) 115개소 822억원 → ('24) 115개소 687억원
 - * 국립 46개소(사업대상지 별도 선정 예정), 공립 65개소(11개 광역 시·도)

※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신규 객실 확대를 위해 20년 도래된 노후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체계적 정비 추진
 * ('23년) 10개 휴양림 중 회문산 → ('24년) 9개 휴양림 중 청옥산

-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 * 장애인 객실 현황 : ('23) 110객실 → ('24) 117객실
- 숲속야영장 조성으로 다양한 세대의 여가 수요 충족
 - 신규조성 : ('23) 9개소 80억원 → ('24) 10개소 93억원
 - * '24년 사업 : 공립 10개소(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2)
 - ** 신규조성 기본계획·설계·시공에 따라 연차사업(2~3년)으로 추진
 - **[신규]**반려견 동반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 추가 운영
 - * 반려견 동반 숲속야영장 현황 : 국립 화천('21.7월 개장, 데크 4면 배정)
- 생활권 주변 산림욕장 기반 확충 및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신규조성 : ('23) 3개소 29억원 → ('24) 5개소 50억원
 - * '24년 사업 : 공립 5개소(강원2, 충남2, 전북1)
 - ** 신규조성 기본계획·설계·시공에 따라 연차사업(2~3년)으로 추진

- 시설개선 : ('23) 17개소 52.8억원 → ('24) 11개소 67억원
- * 공립 11개소(대전1, 경기3, 충북2, 전북2, 전남3)

2) 산림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숲속야영장·산림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제정
 - 캠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필요
 - * 제정안 마련('24.2월) → 의견수렴 및 훈령 개정 절차 이행('24.3~5월) → 시행(6월이후)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조성·운영 매뉴얼 개정
 -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매뉴얼 현행화
 - * 매뉴얼 : 자연휴양림(2015), 숲속야영장, 산림욕장(2017년)
-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 사업 시행
 - 공·사립자연휴양림 내 안전성 강화 목적으로 정밀안전 진단 실시
 - * 공립 4개소(인천 석모도, 강원 동강전망, 충북 속리산 숲체험, 충남 칠갑산) 사립 1개소(충남 대둔산)
 - ** 개소당 76.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산림휴양시설 안전 점검 추진
 - 성수기 대비 안전 점검(6월),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11월)
- 국립신불산자연휴양림 모노레일 철거공사 추진
 - 모노레일 및 유사 시설(철도 등)에 대한 설치·철거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철거 시행(상반기)
 - * 「궤도운송법」에 따라 철거공사 후 지자체에 궤도 폐지 신고
- 산림 내 설치된 모노레일 실태조사
 -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현황 파악('23. 국정감사 지적-이원택의원)
 - * 「궤도운송법」 등에 따라 궤도사업의 인·허가, 안전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임

3) 숲나들e 기능개선에 따른 예약 서비스 제공

- 예약간소화 서비스 구축으로 예약 시간 단축
 - 예약과 관련된 정책 및 객실 정보 등은 생략하고 단순 예약기능만 제공하는 빠른예약 서비스 실시

- 휴양림 주변 관광 정보를 연계한 서비스 제공
 - 한국관광공사 API를 연계하여 휴양림 주변 볼거리 제공
- 실버고객 대상으로 전화 예약과 온라인 예약 병행 서비스 실시
 - * (기존) 실버우선예약 전화 예약 → (변경) 전화예약 및 온라인 예약 병행
- 산림복지 바우처의 결제 편의성 강화를 위한 복합 결제서비스 제공
 - 경제적·사회적 소외자가 자연휴양림 예약 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도록 개선
 - * (기존) 단일결제 → (변경) 산림복지바우처카드·신용카드 + 계좌이체 등
-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우선예약 범위 확대 적용
 - 국립자연휴양림의 지역주민 우선예약 정책을 기존 1개에서 복수의 정책으로 운영하도록 기능 적용
 - * (예시) 동두천자연휴양림 예약 시 지역주민 우선 예약정책(동두천시 거주자)외 추가적인 지역주민 우선 예약 정책(경기도민) 운영 가능
- 숲나들e 결제 가능 수단 다양화를 통한 편의성 향상
 - 숲나들e 결제 가능 신용카드를 국내 발급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해외 발급 신용카드도 결제할 수 있게 기능 추가
 - * (기존) 국내 신용카드 → (변경) 국내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등
- 민간(KB은행)을 통해 제공되는 숲나들e 예약서비스의 개방 범위 확대
 - 숲나들e 추첨제 API를 도입하여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범위 추가 적용
 - * (기존) 선착순 예약 → (변경) 선착순 예약 + 추첨제 예약으로 확대

4) 법제도 및 규제개선

- 공·사립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검토 (「산림휴양법」 제13조, 제19조, '24년 4분기)
 - 자연휴양림은 지역주민에게 휴양·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부분 권한 위임 필요
 - * 국토부 토지이용규제개선 과제와 연계(국토부 도시정책과-6393, '23.8.25 / 산지정책과-5924, '23.9.8)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시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한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권자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산림휴양법」 제16조, 제21조, '24.4분기)
 - 조성계획 승인권자와 원상복구 명령권자를 일치시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국립 숲속야영장·산림욕장 타당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에게 위임(「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5조) 검토('24.2분기)
 - 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위해 국립숲속야영장, 산림욕장의 조성·운영자의 일원화 필요
 - * 일반회계(지방산림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성한 국립숲속야영장 등을 특별회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로 재산 이관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은 부적절

5) [산림]국·공·사립 자연휴양림 협업체계 구축

- 국·공·사립 휴양림과 관련 학회 간 소통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축하여 상생협력 도모, 다양한 정보 공유 및 지역협력 사업 발굴
 - 자연휴양림 지역연계 사업 발굴 경진대회 개최



※ 여건에 따라 유사 성격의 협·단체 포함 가능

- 국·공·사립 휴양림 통합 워크숍 개최(하반기)
 - 우수 운영사례 정보 공유 및 전파

6) 국립자연휴양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지역자원 등과 연계한 지역 상생모델 개발·운영
 -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자 유치 확대
 - * 성주 참외 축제, 고령 대가야 축제, 빙어낚시, 갯벌체험 등 지역행사와 연계
- 외부 협력사업 발굴·확대 추진
 - 외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주중 이용 활성화
 - * 국제학교 및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대상 아웃도어 숙박 프로그램 운영
 - 문화·체험 프로그램 공동 개최를 통해 운영예산 절감
 - * 숲속음악회(지역문화진흥원), 체험키트(경기도교육청), 전시 및 공연(지역 커뮤니티)

- 휴양림별 차별화 운영 추진으로 수익 다변화 추진
 - 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 등 운영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
 - * 현재(3개소) : 산음(양평), 검마산(영양), 화천숲속야영장 → 권역별로 확대(8개소)
-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인상 기재부 협의
 - * 시설사용료 인상 이력(%) : ('16) 11.83 → ('19) 10.65 → ('22) 12.3

7) 자연휴양림 근무자 교육

- 자연휴양림 실무역량 기본과정 및 관리자 교육과정 실시
 - 현장 여건에 맞게 인원, 기간 및 시기를 조정 운영
 - * 교육일정(안) : 실무자과정 2.15~2.16 (당초 3일 → 변경 2일)
 - 관리자과정 6.17~6.18 (당초 11월, 3일 → 변경 6월, 2일)

라. 추진일정

- 산림휴양시설 계속 및 보완사업 추진 : 1월~12월
-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추진 : 2월~12월
- 산림휴양시설 등 성수기,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 : 6월, 11월
- 산림휴양시설 조성 이월 예산집행 점검 : 상·하반기 각 1회
- 국·공·사립휴양림 협의체 구성 : 상반기
- 자연휴양림 근무자 교육 : 3월, 6월

15.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접목 확대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124)

목 표

-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건강정책에 산림치유 연계
- ◇ 사회보장성 제도에 산림치유가 연결되도록 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 저출산 고령화 인구추계 변화는 사회적 부담 비용을 증가시켜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지속적 다부처 협력 필요
 -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선제적 치매 예방 활동,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 시범사업, 재난피해 및 대응자 심리회복에 산림치유 추진 중
- 치유정책의 첫 주자로 의료연계, 관광산업, 타 분야의 치유사업과 연계하여 외연 확장에 선도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정책 변화 요구
 - * 치유산업포럼(10.11) 산림·해양·농업·정원·관광 분야 치유발전방안 논의

나. 기본방향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기존 협력 기관과는 지속적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림치유와 협력이 가능한 신규 대상집단 발굴 및 연계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산림치유지도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자격 기준 완화 방안 마련
- 산림치유를 사회보장제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하고 치유를 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공동 연구 과제 수행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유관 부처와 산림치유 연계 활성화

- (치매예방) 국가 치유의 숲은 ‘향노화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지자체는 치매안심센터와 산림치유 연계 적극 추진
 - 노인대상(독거노인 포함)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가족 대상 소진 회복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치매예방 활성화를 위해 중앙-광역-치매안심센터 대상 산림치유 효과 및 국립 치유의 숲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 * 치매예방 수혜 목표 : 6,683명('22년) → 15,363명('23년) → 15,000명 이상('24년)
-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 시범사업’ 대상자의 건강관리 활동으로 산림치유 체험이 정착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도록 협력 추진
 - 대상 제도의 기한 시점까지('24.6월) 산림치유 연계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 치유의 숲에서도 해당 사업이 이뤄지도록 제도 안내
 - '23.7월 제도 개정 시 중장기적으로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등 인센티브 제공 유사 사업과 통합을 목표하고 있어 치매예방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 산림치유인센티브 (현재) 예방형 만 20~64세 + 향후 치매예방 등을 노인건강마일리지 연계 추진
 - ** 노인이 운동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건강생활 실천시 마일리지부과 → 상품지급
- (저출산) '23년 기관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협력으로 만든 산림치유프로그램으로 난임부부의 우울증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
 - 심리회복이 필요한 대상으로 국가 시설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보완사항을 환류하여 최적화된 프로그램 마련
 - * '24년 : 규모 '23년 수준 유지 → 효과성 공동 분석 → 확대 가능성 검토
- **[신규]**(신규협력 확대-암센터)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과 산림치유를 연계하는 사업 방안 모색
 - 전문기관 자문 및 산림치유 연계 방안 논의 → 협력 방안 자문 실시 → 방안 도출 → 산림치유와 연계 협약 체결 → 협력 사업 추진
 - *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 사업. 국립암센터 외 13개 권역별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운영중

- (치유정책협의체) 범부처 치유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협의체 지속
 - 협의체는 '22.6월 구성되었고 농식품부(사회적농업), 산림청(산림치유), 농진청(치유농업), 해수부(해양치유) 참여 중
 - * 운영현황 : 4회차 운영('22.6월, '22.9월, '23.4월, '23.10월)
 - 부처별 치유정책 공유를 정례화하고 국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 정책 개발 등 모색

2)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신규]**(법령 제·개정) 산림치유가 독립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
 - 산림치유는 2010년 국내 부처 중 가장 먼저 시작하여 발전하였으나, 치유농업·해양치유 개별법('21년) 대비 법령체계가 부족
 - 주요내용 : 산림문화휴양치유의 정의 및 위계질서 명확화, '산림치유자원' 관리,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공간 확대, 재정적 지원, 건강정책과의 연계, 산림치유 산업 영역을 4차 산업 연계, 프로그램·시설의 지정·등록제도(민간) 신설 등
- **[신규]**(자격 완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기준 분야 확대 검토
 - 현행 등급별 자격 기준에는 '산림' '의료' '보건' '간호' 분야 전공만 인정하고 있어 연계성이 높은 학과도 별도 진입 과정 필요
 - 유관 학과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 향후 기존 4개 분야에 대한 개선안 마련
- **[신규]**(도심권 치유 이용 활성화) 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에 교통약자(노인, 임산부 등) 및 시민의 이용율이 높은 곳에 치유 공간 조성
 - 울산권 :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수 1차 협의 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대구권 : 치유 효과가 높은 위치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 녹지지역 조성면적 : (당초) 국·공립 50ha, 사립 30ha 이상,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국·공립 25ha, 사립 15ha → (완화) 구분 없이 5ha('23.4.11.)
 - * 기본계획 수립 → 부지선정 → 토지확보 → 기본설계, 실시설계 → 조성계획 고시 → 사업 추진
- (민간 지원) 산림치유 공간이 필요한 민간전문업의 지원 방안 마련
 - 산림치유 분야 전문업의 활동공간 공유 필요 논의에 따라 국립·공립 시설 중 제공 검토 가능한 시설 조사 및 운영 방안 마련
 - 공유 공간 협의 → 시범사업 계획 수립 → 실행 → 확장 가능성 검토

3) 산림치유 연구개발 사업 협력 추진

- (스마트 헬스케어)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 '21~'23년 수행된 연구용역('24.3월 최종성과보고)의 성과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제 검토
 - * 수행과제 : 치유물질·인자 활용기술개발 10개과제, 치유자원 응용·공유 기술개발 5개 과제, 지능형 헬스케어 기반 재활운동의 임상적 효과 규명 6개 과제
 - * 주요성과 : 논문 47건, 특허출원 29건, 기술료 11백만원, 사업매출 4억여원
 - * 우수성과 : 우수성과(논문, 지식재산권, 사업화 기준) : VR기반 우울증 치유 프로그램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도시숲 우울증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연계 DB 구축 등
 - '24~25년 농림해양기반 치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실증 및 상용화 방안 검토
 - * 총사업비 17.5억('24년 7.5억, '25년 10억), 3개 과제 추진
 - * '23.12월 사업 공고 → '24년 1월 과제 선정 → 과제 착수 '24년 4월
- (DB 구축) 산림활동 기반 인체 건강영향평가 및 DB 체계 마련 계속
 - 산림기반 대상 및 질환별 건강영향 평가 DB를 구축하고 산림치유의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방법 제시
 - * 산림환경노출·건강영향 계량화(건+보, '23.9월 시작), 산림치유원리 검증(서울대 등, 10월) 등
 - 맞춤형(환경, 활동, 건강) 산림치유 프로그램(안)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회보장성 제도와의 연계·제공 체계 마련

라. 추진일정

- 도심권 치유의 숲 조성 사업추진 간담회 : 1월
- 산림치유 운영 국·공립 위탁사업 실시 : 1월
- 산림치유지도사(1·2급) 평가시험 실시 : 1월
- 산림치유 법령 제·개정 자문회의 : 2월
- 치유정책 협의체 추진(산림청·농식품부·해수부·농진청) : 2월, 매분기별
- 도심권 치유의 숲 타당성 등 기본계획 용역 추진 : 3월

- 산림치유 국민서비스 실행 계획 수립 : 3월
- 암센터 신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회 개최 : 3월
- 전국 치매센터 산림치유 정책 설명회 개최 : 3월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 종료 모니터링 및 산림치유 연계 논의 : 4월
-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분야 확대 방안 전문가 자문회 : 4월
- 국립 익산 치유의 숲 개장 : 5월
- 산림치유 법령 제·개정 법령안 입안 마련 및 입법계획 등록 : 6월
- 지자체·국립 산림치유 활성화 소통 간담회 : 7월
- 산림치유 공간 민간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 8월
- 암센터 산림치유 협약 체결 : 9월
- 난임, 치매 분야 산림치유 현황 점검 및 협력기관 활성화 간담회 : 10월·11월

16.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추진

(산림휴양치유과, 042-481-1209)

목 표

-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본 공사(3년차) 완료
 - 복합 공정별 적기시공 및 준공, 하자 점검, 정산
- ◇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위탁 운영기관 시설물 인계
 - 지역자원 연계·활용방안 계획, 준공 후 사용승인 및 시범운영

가. 정책여건

- 최근 환경성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의 증가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 증가
- 산림치유 수요에 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 동남권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에 이어 서남권 장기체류형 산림치유 거점 구축

나. 기본방향

- 복합 공정별 적기 시공을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로 적기 사업 완료
- 위탁 운영기관과 지자체 및 지역주민 협업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 위탁 운영기관에 시설물 인계 및 유지·관리 교육 등 개원 준비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본 공사(3년차) 완료 및 시설물 인계

- 건축시설 공사 및 치유숲길 등 산림치유 공간 조경시설 공사 완료
 - 현장 직원상주와 월간, 주간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복합공정 관리
 - 목조건축·산림사업 등 특성화된 건설사업관리(CM)로 사업품질 확보
- 준공 이후 위탁 운영기관 시설물 인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교육
 - 시설물 인계를 위한 국유재산 목록(기자재 등 시설물 현황) 작성·인계
 - 유지 보수에 필요한 제반도서(설계도서, 시설물 운영 매뉴얼 등) 인계
 - 시설물 및 주요 장비류의 작동법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해 운영기관 대상 교육 실시
 - * 국립산림치유원과 같이 준공 후 산림복지진흥원이 위탁운영 예정(「산림복지법」 제53조)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협의체 운영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 시공추진에 따른 잠재적 민원발생 사전 공동대응·협의
 -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한 기관 간 협업체계 유지 및 추진상황 점검
 - * 정기 협의회 4회 개최(2월, 5월, 9월, 12월)

2) 연계 사업 지속추진 및 산림치유원 운영·관리계획 수립

- 지덕권산림치유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산림휴양 치유시설 연계
 - 시설 간 물리적 연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활성화 방안 공동 마련
 - * 데미샘자연휴양림, 그린장수 치유의숲, 성수산자연휴양림, 마이산헬스관광벨트 등
- 지역상생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지자체(전라북도, 진안군), 위탁 운영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협업 추진
 - (산림청) 치유원 부지 내 숲가꾸기, 임도정비 추진
 - (전북도) 임도 연결(데미샘휴양림↔지덕권, 신광재↔지덕권), 등산로 연결·정비
 - (진안군) 산림치유 연계 창업·성장지원사업 추진
 - (산림복지진흥원) 창업·성장지원사업 및 지역자원 DB 활용계획 수립
-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기 구성된 지역 거버넌스 상시 운영
 -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의견수렴

라. 추진일정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본공사(3년차) : 연중(10월 완료 예정)
- 운영·관리계획 수립 : 연중(10월 완료 예정)
- 준공 이후 잔여 사무 처리 : 연중(사업완료 이후)
 - 사용승인, 시범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시운전), 하자점검, 시설물 인계, 총사업비 정산 등
 - 국유재산 지정 요청, 자산대체 작업 등 : 11월
 - 기재부 총사업비 완료보고서 제출(사업완료 후 한 달 이내) : 11월
 - 백서 발부 : 12월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협의체 정기협의회 개최 : 분기별 개최

17. 합리적인 산지관리 제도개선 · 운영

(산지정책과, 042-481-4141, 4145)

목 표

- ◇ 보전산지 등 규제지역의 합리적 관리 등 현행 산지관리제도의 정비 및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대상 권한위임 확대
- ◇ 임업경영·산업입지 여건 개선 등을 규제완화와 산지재해관리·주민 수용성 강화 등을 위한 기준강화 병행으로 합리적 규제개선 추진

가. 정책여건

-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함께 집중호우, 산불 등으로 인한 산지재해 발생 증가로 산림의 보전 및 유지, 산지재해방지 요구 증대
- 국민 불편해소, 산업진흥 등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산림생태계 등 보전가치 기능 유지를 요구하는 상반된 수요가 산지 내 공존

나. 기본방향

- 국토·환경·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임업경영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적 산지관리 등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산지관리 추진
- 임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업무담당자 직무교육·홍보 등으로 개선된 과제의 현장 적용과 실효성을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지전용제한지역 일제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의 확대
 - 제한지역 중 여건 변화로 지정목적이 상실된 산지*는 해제하고 보전이 필요한 산지**는 신규 지정하여 제한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
 - 대상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중앙산지관리위원회(산림청) 심의를 거쳐 제한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 * 지정목적이 상실된 산지 해제: 3,623ha / ** 주요 산줄기 능선부 산지 지정: 32,423ha

- **산림청장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 일부의 시·도지사 위임 추진**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권고안,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ha* 미만 보전산지 지정해제 권한 위임 검토
 - *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에서 계획적 개발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최소 면적,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산지전용 허가 권한 최소 면적 기준인 3ha 적용
 - 산지관리법령 개정(법, 시행령) 및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훈선 최소화를 위한 고시* 정비 추진
 - * 현재 운영 중인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 방법, 보전산지 지정해제 기준 등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고시로 제정

2) 임업경영 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 및 재해관리강화

- **허가·신고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
 - 재해예방·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작업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인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
 - * 행위자에게 토사유출, 산사태, 인근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부여, 재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명령 및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 산지관리법 개정('23.7.28, 상임위 회부) → 법·영·규칙 개정* 추진('24하)
 - * 구체적 허용대상 시설 등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산지관리법 시행령·규칙으로 확정
-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조례로 20% 완화 허용**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의 인구감소지역은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표고, 평균경사도 등 일부 기준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완화 허용
 - 개정안 마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24상)
- **농업용관리사·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등 설치 제한지역 완화**
 - 농업용관리사·축산업용 관리사, 농막 등의 설치지역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공익용산지에서도 허용
 - 개정안 마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24상)
- **풍력발전시설 입지여건 개선 및 진입로 등 부대시설 재해검토 의무화**
 - 임도시설 기준으로 진입로 보강시 거리제한(10km)을 없애고, 산지 경관 모의실험을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하도록 완화

- 진입로 등 부대시설은 재해위험 검토를 통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을 배제하되,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 허용
- *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재해위험 판단
- 개정안 마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24상)

○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산지재해관리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은 농림어업인주택 설치를 제한하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신고 기준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하되 재해저감대책 마련,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하도록 강화
- 개정안 마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24상)

3)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및 개선과제의 현장적용 강화

- 국민공모제, 임업단체 의견수렴,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필요한 개선과제 발굴 및 규제개선 추진
- 산림교육원을 통한 산지관리 교육과정(기본·심화·활용) 운영으로 지자체 등 산지관리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개선과제의 현장 적용 강화
- 산지관리 워크숍 개최로 산지관리기관 간 업무공유 및 소통 기회 제공, 산지관리법령 편람 제작·배포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4)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적으로 산지관리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산지 재구분,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심의로 합리적인 산지관리 추진
 - 심의대상지의 현장상황을 종합적·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시 현장심의 운영 및 중산위 위원 워크숍 개최로 등으로 심의역량 강화
-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구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 시스템 및 관련 규정 교육* 실시
- *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협의를 통해 5~10월 순차적 순회 교육 추진

라. 추진일정

- 산지분야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 3월
- 산지규제개선 추진방안 수립 : 6월
-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 7월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워크숍 개최 : 8월
- 산지정보시스템 권역별 사용자 교육 : 5~10월
- 산지관리 워크숍 개최 : 11월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 : 상반기
-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지정해에 관한 규정」 고시 : 상반기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 : 연중

18. 산지전용지 등 복구 및 재해예방 철저

(산지정책과, 042-481-4123)

목 표

- ◇ 재해위험을 고려한 엄격한 허가과 취약시기 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제로화 달성
- ◇ 재해예방 및 산지경과 보호를 위한 산지복구 제도의 내실화

가. 정책여건

-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개발 행위가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회적 이슈 증가
- 재해예방 차원의 적정한 산지복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나. 기본방향

- 허가심사 시 재해우려 요인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허가하고, 재해 취약 시기 허가지 사전 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 차단
- 산지복구에 적용할 기술기준 마련 등 단계별 기초연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지개발사업 허가 심사 시 재해관련 허가기준 엄격 적용

-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도 내실화를 위한 운영상황 모니터링
 -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무작위 표본점검 실시
- 산지전용예정지 재해관련 허가기준 검토 철저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재해영향평가서 등을 통한 사업계획 상 개발 예정지 유역 내 산사태 발생 가능성과 재해예방 시설 반영 여부 등 재해저감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
 -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24년 6월): 산사태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산지개발 제한, 소규모 개발지(660㎡미만)의 경사도 검토 등

2) 우기 전 허가지 취약요인 점검으로 산사태 피해 예방

- 공사중인 산지태양광 허가지 안전점검 강화
 - 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위탁점검 실시(2~6월)
 - 허가권자는 1월 말까지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마 전까지 허가지 자체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
 - 허가권자 주관 전문기관 의무점검제도* 이행상황 자체 점검 실시
 - * 허가 신청 시 점검계획 수립여부, 수허가자의 점검결과 제출 이행 확인(미이행 시 산지관리법 상 사업중지 등 벌칙을 적용한 강력한 행정처분 검토)
- 여름철 허가지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청·지자체 합동점검 실시(3~6월)
 - 우기 전 현장점검 실시 후 도출된 취약요인은 즉시 보완 조치
 - 사업계획 및 허가 시 부여된 재해 저감방안의 이행 여부 점검

3) 복구지 모니터링 강화 및 복구기술 기준 마련 등 기초연구 추진

- 산지전용 복구지 사후 점검 및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철저
 - 허가권자는 복구지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산림청 보고
 - 산림청·시도 합동 점검반 구성 및 운영으로 부실 복구 방지
- 산지복구 제도개선을 위한 설계·감리 시방서 등 기술기준 마련
 - 토목·건설과 차별화하여 산지복구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별 산지복구 기술표준 및 시방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라. 추진일정

-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취합 : 2월
- 산지전용 복구지 점검계획 수립·시달 : 3월
- 산지전용 등 허가지 합동점검 및 산지태양광 전문기관 의무점검 이행상황 모니터링 : 3~6월
- 산지복구 기술표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추진 : 3~11월

19. 토석채취허가지·채석단지 관리 강화

(산지정책과, 042-481-4294)

목 표

◇ 합리적 산지이용을 위한 토석관련 제도개선 및 토석채취지 관리 강화

가. 정책여건

- 토석은 건설산업(토목·건축·조경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이며, 외부 요인에 따라 산지 내 토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 최근 3년간 산지 토석의 총 생산액은 연평균 1.5조원으로, 연간 전체 임산물 생산액의 약 20%를 차지('20년~'22년 임산물 생산조사)
 - * 국내 골재 공급중 산림골재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23년 골재수급계획, 국토부)
 - 산림골재 비중 : ('19) 38.7% → ('21) 38.9% → ('23 계획) 41.8%
-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단지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요구 강화
 - * 허가 내 외부토석반입, 채석단지 확대제한 폐지('20), 지하부 채취 허가기준 완화('21)
 - * 채석단지 변경시 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굴진채굴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확대('23)
- 토석채취사업장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부당한 수익창출을 위한 불법·편법행위 발생 우려 증대
 - * 광업(토석채취 포함 32.52%)은 타산업(전체평균 0.63%)에 비해 재해율이 높음
 - * 허가, 신고 없이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근거 신설('21)

나. 기본방향

- 규제완화를 통한 채석단지 활성화 지원으로 원활한 토석 수급에 기여
 - 산지관리법령 일부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안정적 토석공급 및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 채석단지 육성
- 토석채취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보전 도모
 - 토석채취 현장 모니터링 및 복구기준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적법한 현장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안정적 토석공급 기반마련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토석채취제한지역 정비 및 제한 지역내 채석단지 입지규제 완화
 - 합리적인 산지관리 유도를 위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정비
 - * 정비대상 : 산지보전협회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필요지역(경기도 7개 시·군) 선정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 기존 토석채취지역에 한해 채석단지 지정(확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24상)
- 토석채취장 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복구·관리 기준 강화
 - 피해저감 및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
 - * 허가기준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피해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령 개정('24상)
 -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탈면 녹화, 재해저감 등 복구기준 강화
 - * 생육환경개선(복토기준, 복구수종), 경관영향저감(보조시설, 특수공법), 재해예방(배수시설, 토사적치 관리기준) 반영 시행규칙 개정('24상)

2) 토석채취허가지 현장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토석채취허가지·복구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보완 등 관리 강화
 - 전문기관이 드론, GPS 등 활용 경계, 경사도, 비탈면높이 등 측정·분석
 -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사항 및 복구지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 * 산지관리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지자체 통보 및 사법처리·행정처분 등 조치
- 토석 담당공무원 및 사업장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상·하반기)
 - 공무원 대상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토석채취 실무교육 실행
 - 사업장 현장관리업무담당자 대상 재해예방·안전관리 등 교육 실시

라. 추진일정

-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 추진 : 연중
- '24년 토석채취허가지·복구지 현장모니터링 추진 : 3~11월
- 토석채취업무 담당공무원 및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 : 반기별

20.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산지정책과, 042-481-4193)

목 표

- ◇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환경정비 등 기반 조성
- ◇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석재산업 지원정책 강화

가. 정책여건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석재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
 - * 「석재산업법」 시행('21.2.19), 석재산업 진흥 종합계획('22~'26), 시행계획(매년)
-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학계 등에서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 전반의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구축 중
 - * 석재산업 실태조사, 석재자원분포조사, 법률 개정 등 추진상황 공유
- 석재의 채취가 환경을 파괴하며 위험한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산업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인식 전환을 위한 다각적 노력 요구

나. 기본방향

- 석재산업 실태조사, 석재자원 분포도 조사·제작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공데이터화하여 정부, 업계, 학계에서 활용하는 산업화 기반 구축
- 환경피해 저감사업, 석재부산물·채석종료지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석재산업을 위한 지원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 석재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 전반의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자료로 활용

- 전국 석재산업 대상 경영·인력·장비보유·매출·생산 등 조사
- 지속적 법·제도 정비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기관 지정, 타당성조사 매뉴얼 제작 등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4.2월 시행계획)
 - 석재산업 인증제도를 지정 등으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 확보
 - * 석재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 전환('24 법령개정 계획)

2)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석재사업장 환경피해 저감사업으로 주변 생활환경 개선(25개소)
 -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석재부산물 및 채석종료지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환경피해 감소 및 산업 활성화 도모('23~'25)
 - 부산물(폐석재·폐석분) 재활용 기술개발 및 채석종료지 타용도이용 분석
- 우수 석재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석재자원조사 및 분포도 제작
 - 전국 10개 권역 구분, 연 1개 권역의 자원조사 및 분포도 제작
 - * 입지환경조사→개황조사→지표지질조사→시추·물리탐사→석재품질분석→자원평가
 - * ('24)서울경기, ('25)경남, ('26)전남, ('27)충남, ('28)경북, ('29)대구, ('30)강원, ('31)충북, ('32)전북 제주
- 우수한 석공예 작품 전시·홍보로 생활 속 석재문화 확산 추진(7월)
 - 박람회와 연계하는 등 '제4회 산림청 석공예 작품 전시회' 개최
- 석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제도 및 점검 추진(분기별)

라. 추진일정

- 석재산업법 관련 지자체 등 시책교육 : 반기별
- 석재산업 실태조사·석재자원 분포조사 추진 : 2~11월
- 석재의 원산지표시 단속 및 보조사업 점검 : 6월·9월·11월
- 제4회 산림청 석공예 작품 전시회 : 7월

2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산지정책과, 042-481-4141)

목 표

- ◇ 산지관리 업무의 정보화로 업무 효율성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체계적 징수관리

가. 정책여건

-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 산정, 부과, 환급 등 절차 전반에 대한 효율적 정보화 지원체계 마련
 - 산지전용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은 83.7%*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 요구
 - * 징수율(최근 3년간) : ('20) 83.0% → ('21) 87.4% → ('22) 80.8(평균 83.7%)

나. 기본방향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 협업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한 용역 추진(940백만원)
 - 전국 산지관리기관 서비스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업무담당자 및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관련 영향도 분석 및 개선
 - 시스템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온라인 파일 뷰어 도입

- 신속한 고객 지원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고객센터 용역(159백만원)
 - 유선, 게시판,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창구별 문의 사항 접수 및 처리
 - 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안 도출 및 체계적인 이슈 관리
 - 시스템 이용현황 분석 및 일별·기관별 접수현황 점검
 - 시스템 교육자료 및 사용자 매뉴얼 업데이트

2)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 협업 실시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서비스 연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지방비), 과태료 부과·납부 정보 연계
- 인터넷 지로, 차세대 위택스 서비스 연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온라인 납부를 위한 서비스 연계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 민원 처리 단계별 진행 과정 및 처리결과 등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3) 시스템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

- 산지전용업무 담당 공무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 실시
 - 산지전용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정기, 비정기 오프라인 교육)
 - 민원인·대행업체 시스템 이용 교육(온라인 또는 매뉴얼 이용)

4) 시스템 활용 및 회계부서 협력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계적으로 관리

- 미수납자에 대해 납부기한 알림 문자, 메일 통보 등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현황 관리
- 회계부서와 협력하여 미수납 채권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관리 실행, 행정처분 취소요청권 활용 독려 등 적극 추진

라. 추진일정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객지원센터 용역 계약 : 1월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 : 상반기
- 인터넷 지로 및 차세대 위택스 시스템 연계 : 상반기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 상반기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담당자 교육(권역별) : 반기별
- NAS 스토리지 30TB 용량 증설 : 하반기

22.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 및 국가숲길 활성화

(숲길등산레포트팀, 042-481-8876)

목 표

- ◇ 역사와 문화가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인프라 확충
- ◇ 국가숲길 운영·관리 활성화 및 동서트레일 조성

가. 정책여건

-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숲길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용수요 증가
 - * 등산·트레킹 실태조사(산림청) : ('18) 71% → ('21) 77% → ('22) 78%
- 국가숲길 지정에 따른 숲길관광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확대 필요
-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체계적인 운영·관리 필요
 - * 산악사고 발생건수(소방청) : ('18) 9,502 → ('20) 10,593 → ('21) 12,040
- 장거리 트레일 및 백패킹 등 국민 맞춤형 숲길 수요 증가
 - * 동서트레일 조성('22~'26, 849km, 604억원), 5개 시·도, 55개 구간

나. 기본방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22~2026)」 및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
- 숲길 및 숲길 주변의 환경보전과 숲길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길 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물 설치, 훼손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숲길 환경조성
-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숲길제도 정착 및 효율적 운영
- 안전한 숲길 관리체계 구축 및 장거리 트레일 등 국민 맞춤형 숲길 정책 추진
- 건전한 등산문화의 체계적인 보급·지원 및 산악구조 민·관 공조체계 유지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숲길 운영·관리 활성화 추진

○ 국가숲길 유지관리 철저 및 모니터링 강화

- 유지·관리, 시설물 설치 기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유지관리 철저
- **[신규]** 국가숲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가숲길 정비사업 추진('24.11월)
 - * 국가숲길(국유림 6개소) :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DMZ 편치불둘레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한라산둘레길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지원형태
국가숲길 정비	64.3	2,044	직접

- 기지정 국가숲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피드백으로 문제점 개선 보완
 - * 국가숲길(9개소) :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DMZ편치불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대전둘레산길, 한라산둘레길, 속리산둘레길
- 국가숲길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선 난이도 표시 및 위험지역에 난간·위험표지판 설치(하반기)
 - * 노선난이도 표시 : '22~'23년 지정 국가숲길(대전둘레산길, 한라산둘레길, 속리산둘레길)

○ 국가숲길 브랜드화를 위한 마케팅 등 추진('24.11월)

- 지역 산림자산·관광자원·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숲관광 콘텐츠 개발, 구축
- 숲길 인근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특색에 맞는 식단 개발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숲길 체험·지역 축제·비대면사업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
- 민간기업 및 관광업체 참여로 국가숲길 관광상품화

○ **[신규]** 국가숲길 활성화를 위한 국가숲길 운영·관리·위탁 근거 통과 ('23.10월)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4.5월)

-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위탁 신설 :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7~8 신설
- 국가숲길 위탁 전문기관 신설 :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신설

○ 국가숲길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숲길 체험완주제 추진('24.5월)

- “숲이랑길이랑” 숲길 체험 앱을 기능 보강하여 국민참여 완주제 추진

2) 장거리 트레일인 동서트레일 조성

- 국민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백패킹 전용 숲길로 조성('24.12월)
 - 숲길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청(국유림)과 지자체(공·사유림) 협업 추진
 - *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산림청, 시·도, 전문가) 및 실무협의회(소속기관, 시·군) 추진
- 국가숲길 기준에 따른 품격있는 장거리 트레일 조성(신규)('24.12월)
 - (예산) 국유림 : 1,381백만원(40.1km), 공·사유림 : 지자체 별도 편성
 - * 울진(금강소나무)~봉화~문경~대전·세종~홍성~태안(안면도) 등 849km
- 국민참여를 위한 ESG 기금을 활용한 동서트레일 조성('24.9월)
 - 우리금융그룹 참여 동서트레일의 서쪽 시작인 충남 태안군에서부터 조성
- 지속적 ESG 기금 유치를 위한 ESG 기금 유치 표준안 마련

3) 효율적인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숲길 확충 및 공간정보 정비
 -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조성 정비(35km)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국비)	지원형태
숲길 조성 정비	35	1,113	직접

- 단거리 순환형 등 다양한 탐방수요를 고려한 숲길 정비와 노선도 재정비로 정확하고 편리한 숲길 정보 제공
- 산행안전 지원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숲길안내센터 조성·운영('24.12월)
 - 숲길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안내센터 조성(1개소, 400백만원)
 - 안내센터를 지역과 숲길, 산림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육성
 - 숲길이용자 쉼터 및 숲길 유지 보수 등 안전관리 중심센터로 육성
- 숲길사업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숲길정책자문단 운영
 - * 자문단 구성 : 산림생태, 관광, 산림·등산, 문화 전문가 등 12명('24.2~'26.12.)
- **[신규]** 도시숲길 추진 근거 마련 및 가이드라인 마련('24.12월)
 - * 산림휴양법에 숲길 종류에 포함(산림휴양법 제22조의2 개정)

- **[신규]** 숲길지수 및 숲길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현장 실연 추진
 - “숲길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과학원R&D)” 연계
 - * (숲길인증제) 숲길품질과 숲길 주변 자원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숲길품질을 5단계로 인증하는 제도
 - * (숲길지수) 숲길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단위 지역에 숲길 밀도와 숲길 접근시간, 1인당 숲길 거리 등을 활용하여 지수화 한 것
- **[신규]** 숲길 조성 시 포함되는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령 개정령안 마련('24.12월, 권익위 제도개선 요구사항)
 -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제3항 추가
 - * ③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산림이 사유림인 경우 사용승락 동의를 받도록 하며 동의받아 조성된 숲길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사용승낙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훼손 등산로 정비 및 연결사업 추진

- 대상지의 규모, 훼손 상태 및 주변 산림생태 환경보전을 고려한 설계
 - 등산로 신설(변경)인 경우, 숲길 조성계획을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 후 숲길 지정·고시(사업 전)
- 예비노선에 대한 토지 소유자별 조성 내용을 근거로 반드시 주민설명회 개최
-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정비
 - 가급적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
 - 정비 구간은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돌계단 및 횡단배수로 설치, 안내 및 편의 시설 등 주요 공종을 반영하여 등산객의 민원요구가 없도록 정비
-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물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등 적극적 안전대책 마련
- 등산로 이용도가 높은 등산로는 가급적 상반기에 정비 완료
- 등산로 연결사업으로 설치하는 출렁다리의 설계는 반드시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 준수
 - 녹지공간형은 산림식생복원 등 사업을 통해 경관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안정감과 개방감을 주도록 설계
 - 보행가교형은 노퍽이 좁은 등산로 연결과 산정의 단절된 암석 구간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전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

-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 이용자 만족도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식사업 명칭과 산림청 지원사업 명시
- 단절된 훼손지의 연결 등 녹지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 및 안전성이 강화된 등산로 네트워크 구축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시설 도입 및 안전성, 사후관리 등을 고려
- 관리주체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기·일상·긴급 안전점검 실시

5) 숲길 탐방 서비스 발굴 및 개선

-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용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산행문화 정착
 - 어플을 활용한 스마트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산악단체, 언론 등 활용한 산행문화개선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 * 산행흔적 안 남기기, 플라스틱물병 사용하지 않기, 산악안전 준수사항 등
 - 알려지지 않은 숲길에 대한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한 걷기행사 추진
- 맞춤형 숲길 탐방서비스 지원기반 조성('24.12월)
 - **[신규]** '숲이랑길이랑' 앱 보완하여 다양한 숲길 정보 제공
 - * 걷기좋은 숲길 50선, 국가숲길, 동서트레일 등
 - 주요 숲길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효과 분석하여 정책 반영
 - * 안내판 및 이정표, 편의시설 등 정비, 명품숲길 가이드북 발간 등

6) 숲길등산지도사의 효율적 배치·운영 및 전문성 강화

-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올바른 산행문화 교육·홍보 등을 위해 숲길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치·운영
 - 숲길등산지도사 운영 계획 : 40명
- 국가숲길, 100대 명산 중심 트레킹길의 안내센터에 우선 배치
- **[신규]** 숲길 안전관리를 위한 '숲길관리원' 추진 기반 마련
 - 산행안전지원대 규정 삭제 조항 개정('24.12월)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4항 신설(서삼석 대표 발의)
- 숲길등산지도사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 위탁교육 실시
 - (교육일정) '24. 2~4월중 (교육기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7) 숲길 안전대책 추진

- 숲길 내 차마진입 제한 숲길 지정 제도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차마의 진입금지 제도 시행
- 숲길관리청 및 숲길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지역숲길 단체와 비상연락망 구축
 -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공유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 강화
- 숲길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및 숲길 안전성 평가제 개발('24.12월)
 - 안전 취약지역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이용자 정보제공 및 안전조치 기록
 - 숲길등산지도사(40명) 등을 활용, 숲길별 취약지역 정기 순찰
 - 지역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산림보호협회 등과 협약을 통한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한 정기 순찰 실시
 - 이용객 산행안전 지원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보수
 - * 설치거리는 500m 내외로 설치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소방청 긴급전화와 시설관리기관명을 명시할 수 있음
 - **[신규]** 숲길 안전상태를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성 평가 체크리스트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숲길의 휴식년제 등의 효율적인 운영
 -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휴식년제 및 휴식기간제 운영
 - 산림재해 및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한 숲길의 일시적 이용 통제
 - 「산림휴양법」 개정으로 숲길의 휴식년(기간)제 실시 사전 예고제 실행
 - * 숲길관리청이 숲길에 대하여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려는 경우 시행 1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고
- 산악사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강화로 산악사고 예방 철저
 - (사)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강화로 산악구조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 산행 안전 동영상 제작 등 산행 안전 캠페인 전개
 - 숲길등산지도사 등을 활용한 산악사고 캠페인 등 산악사고 예방 활동 강화

라. 추진일정

- 숲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계약 체결 : 1분기
- 숲길등산지도사 선발·배치 : 1분기
- 숲길사업 추진 점검 : 연 2회(상·하반기)
- 국가숲길 지정 : 4분기
- 조성 및 정비사업 완료 : 하반기
-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 제출 : 12.31
- 2024년도 숲길조성사업 완료보고 : 12.31

23. 산림레포츠 저변확대 및 진흥정책 추진기반 구축

(숲길등산레포츠팀, 042-481-4106)

목 표

- ◇ 누구나 부담없이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레포츠 환경 조성
- ◇ 산림레포츠 제도 정비를 통한 산림레포츠 산업 육성·지원

가. 정책여건

- 국민의 여가시간 및 소득 증가 등으로 산을 찾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가활동으로 산림레포츠 수요가 확산 추세
 - * 산림레포츠시설 이용률 1.4%, 향후 이용의향률 18.7% [’21년 산림청]
- 산림레포츠 활성화, 안전한 산림레포츠 활동 지원 등 증가하는 산림레포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 시설의 안정성(32.0%)을 산림레포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 [’23년 산림청]
- 산림레포츠진흥기본계획(’22~’26)과 제2차 산림복지진흥계획(’23~’27) 수립에 따라 새로운 산림레포츠 정책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산림레포츠 진흥정책 추진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림레포츠·등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올바른 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전문인력 양성, 신산업 창출 및 안전관리제도 정비 등 ‘산림레포츠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추진 기반 구축
- 숲길, 임도 등 산림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다양한 산림레포츠 종목 활성화 정책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레포츠·등산 수요 대응을 위한 지역거점·권역기반 인프라 확충

- (산림레포츠센터) 거점 지역에 산림레포츠 교육·문화 확산 기반 조성
 -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 * (총사업비) 357억 (사업기간) '22 ~ '26, 5년, (사업위치) 경북 문경
 - 지역기반의 ‘산림레포츠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추진
 - * (총사업비) 250억 (사업기간) '23~'26, 4년, (사업위치) 강원 강릉
 - **[신규]** 남부권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신규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 (총사업비) 250억, 국비50%:지방비50%, (사업기간) '24~'28, 5년, (사업위치) 경남 밀양
- (등산학교) 권역별 설립을 통해 등산·트레킹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남부권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공사 준공(4월) 및 개교 준비
 - 중부권 ‘국립보은등산학교’ 조성('23~'25)을 위한 실시설계 및 착공
 - * (총사업비) 80억 (사업기간) '23~'25, 3년, (사업위치) 충북 보은
 - **[신규]** 서부권 공립등산학교 조성 신규사업 예산 확보 및 공모 추진
 - * (총사업비) 80억, 국비50%:지방비50%, (사업기간) '24~'27, 4년, (사업위치) 공모 선정

2) 산림레포츠 제도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 산림레포츠 전담기관인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설립·운영 근거 마련
 - 설립·운영 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2 개정
 - 주요사업 범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3 신설
- 산림레포츠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 (자격기준) 등급별 자격기준·종목(1급·2급) 도입을 통한 자격요건 완화
 - (교육기관)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
 - (결격사유) 산림레포츠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정지 등 규정 마련
- 현장수요 및 여건을 반영하여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운영 매뉴얼」 개편
 - (조성) 종목별 산림레포츠 주요 시설(물) 조성 및 설치 기준 개정
 - (운영) 산림레포츠시설 운영·관리방안 및 안전관리 실무요령 등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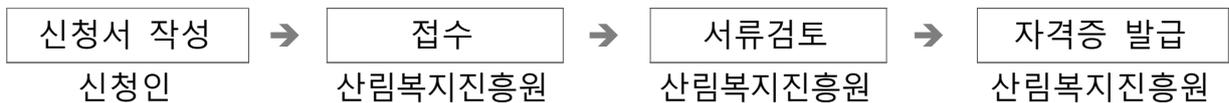
3)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변경 운영(2회)

- 교육기관 : 산림교육원, 국립등산학교 / 교육인원 : 30명
 - * 양성목표(누계) : ('20) 19 → ('21) 45 → ('22) 85 → ('23) 119 → ('24) 149(목표)
- 운영방식 : (현행) 평일 → (변경) 평일 또는 주말 교육과정 운영 검토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 내실화

-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온라인 교육 허용
- 강화된 교육이수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 결과는 산림청 및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업무 위탁기관에 통보
 -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수요 확보 및 홍보 강화

- 산림레포츠지도사 일자리 매칭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해 공·사립 산림레포츠시설 등에 고용기회 제공하여 교육과정 수요 확보
 -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인 국립등산학교에 일자리 매칭 네트워크 개설
- 산림청 누리집, 유관기관 및 관련 협·단체 홈페이지 등에 홍보 강화

4) 산림레포츠대회 개최 및 체험 콘텐츠 강화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산림레포츠 문화 확산

-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종목(5개)을 대상으로 대회 추진하며 체험프로그램 운영(패러글라이딩 VR체험 등)을 통한 청소년 및 일반인 참여 확대 도모
- 산림레포츠대회 주관기관 공모 및 대회 준비를 거쳐 진행
 - * 산림레포츠대회 녹색자금으로 사업 추진('24년 총 50백만원, 개소당 10백만원)

○ 청소년 산림생태탐방과정 운영을 통한 올바른 등산·트레킹 문화 보급

-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등산 교육을 제공하고 산림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국토사랑 정신을 고취
 - * (대상)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기간) 7월 ~8월 초 (주관)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한국산악회

5) 산림레포츠시설 안전관리 강화

- 산림레포츠시설 안전점검 및 산림레포츠 활동 모니터링 실시
 - 산림레포츠 활동이 많은 여름철 대비 산림레포츠시설* 안전점검 실시
 - * (대상) 산림레포츠시설로 조성 및 승인된 공·사립 시설
 -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의 숲,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 등 안전점검
 - *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 점검
 - 산림레포츠 활동인구, 시설현황, 안전사고 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실시('24 상·하반기)

라. 추진일정

- 산림레포츠 진흥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연중
-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공모 : 3월
-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사업 준공 : 4월
- 산림레포츠시설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 5월 ~ 6월
- '24년 상반기 산림레포츠 활동 모니터링 : 6월 말
- 청소년 산림생태탐방 운영 : 7~8월
-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대회개최 : 9월 ~ 10월
- '24년 하반기 산림레포츠 활동 모니터링 : 12월 말

24.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

(숲길등산레포트팀, 042-481-4106)

목 표

- ◇ 공공기관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업무영역 확대 기반 마련
-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평가

가. 정책여건

-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산림레포츠 진흥 기본계획 (2022~2026)’ 등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업무영역 확대 기반 마련 필요
- 현 정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춘 경영목표 수립·이행 필요

나. 기본방향

- 대국민 등산·트레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위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새로운 업무영역 발굴
-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실적평가 실시 및 지도·감독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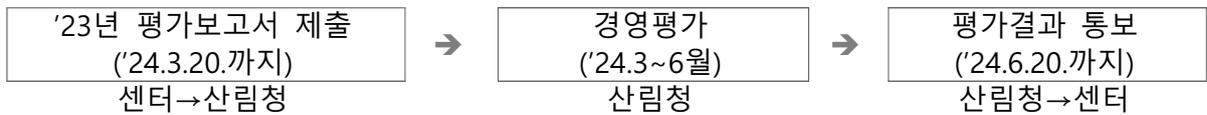
1) 대국민 서비스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위상 및 역할 강화

- ‘국정과제’,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산림레포츠 진흥 기본계획(2022~2026)’ 등 정부 중장기 계획을 지원하는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추진

- 등산·트레킹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자체사업 강화, 녹색자금 등 활용한 사업 확대 및 ESG 사업 추진 등
 - * 숲길 위탁사업 확대, 숲길 조성 사전타당성 평가사업, 동서트레일 사업, 국가숲길 브랜드화, 전문자격증 과정 운영 등
- 국립밀양등산학교 준공에 따른 교육 운영 기반 구축과 시범운영 추진 및 남부권 등산학교 특화사업 등 새로운 업무영역 운영 준비 등
 - * 산악박물관 기획전시 운영 및 시설개선, 등산학교 운영 활성화, 권역별 등산학교 차별화 방안 마련, 산림레포츠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 등

2)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 강화

-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실적평가 실시
 - 2023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평가결과는 성과급 등에 반영하고 경영개선에 활용
 - * 「기타공공기관 평가 운영체계 설정 및 혁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경영평가편람 확정
- < 경영평가 추진 일정 >



3) 경영혁신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기관운영 지도·감독 강화

- 예산집행 투명성,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 과거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비위자는 무관용 원칙처리
- 공공기관 경영혁신 수준 진단을 위한 기관 운영실태 분기별 점검
 - 국고보조 사업 운영현황, 자체 경영혁신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
- 자체 공직기강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라. 추진일정

- '24년도 경영평가 편람 통보 : 2월말
- '23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통보 : 6월
- '24년도 기관 운영 및 공직기강 실태 등 점검 : 분기별

25. 현장 중심의 안전한 산림사업 기반 강화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4136)

목 표

- ◇ 산림사업장에 특화된 안전보건 제도 마련 및 현장 적용
- ◇ 고위험·취약 소규모 사업장 집중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가. 정책여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24.1.27, 50→5인 이상) 확대로 소규모 산림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부여
 - * '18~'22년 임업분야 산업재해 5,002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957건 발생(99.1%)
- 산림현장에 중대재해와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고위험·취약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관리 강화 필요
 - 임업에서 사망사고는 동일·유사한 사고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 * 사망사고('18~'22) 분석 : 나무 맞음(42), 차량·근로자 추락(9), 질병(8), 말벌(5) 등
-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산림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산림분야에 특화된 제도 요구
 - 건설·기계·화공·전기 중심의 안전보건 교육과 건설, 제조에 적합한 안전보건 조치 등은 산림현장 적용 시 실효성 미비

나. 기본방향

- 산림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유도 및 산림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 철저한 사고원인 분석과 사례전파를 통한 동일사고 재발방지 및 산림사업 담당자들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 산림사업장 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업무 수행 및 현장과 제도의 괴리 해소

다. 세부추진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및 산림안전 문화 확산

- 전문기관 합동점검 및 컨설팅으로 안전체계 구축 모니터링(1~2월)
 - 산림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예산(11억)을 활용하여, 전국 국유림영림단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인력·예산 구비, 위험성평가, 의견청취절차 등
 -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및 학습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자기 규율적 안전관리 역량 확보
- 산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추진(1~12월)
 - 산림사업에 특화된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작·배포 및 안전전문 교육기관 확대로 수요자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 * 안전보건 전문가(교수, 기술사) 및 유관기관(고용부, 안전보건공단)과 연계
 - ** 산림전문 안전교육 기관 확대 : ('23) 2개소 → ('24) 5개소(산조 교육원 추가)
 - 기관별 안전결의 대회 추진으로, 산림현장에 안전경영 목표를 전달하고, 쏠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산림분야 안전보건 워크숍, 안전보건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안전보건 정책 전파 및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개선

2) 동일사고 재발방지 및 담당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 안전사고원인조사단 운영을 통한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1~12월)
 - 산림청, 전문가, 자문위원 등으로 조사단 구성·운영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 * '23년 산림분야 안전보건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사례(남부지방산림청)
 - 사고 이력과 원인 등을 포함하는 DB를 구축하여 시기별 주요 재해 사례 공유, 우수·미흡 사업장 상별에 적극적으로 활용

- [신규]산림분야 정확한 사고통계의 구축 및 신속한 사례전파(1월)
 - 사고발생 시 수집항목을 다양화하여, 사고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고사례 및 재발대책 등을 모든 현장에 전파(카카오톡 등 활용)
- [신규]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작업방식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 '23년 안전보건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사례 현장 적용 및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산림 안전보건 연구내용 적극 반영

3) [신규]산림분야에 특화된 안전보건 법률 및 지침 마련

-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으로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의무 구체화(12월)
 - 산림사업종사자 정의 신설, 안전관리비 지급기준,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개정으로 안전 제도의 실효성 확보
 - * 법률 개정 선행 연구(~'23.12) → 관계자 의견수렴(~'24.2) → 개정추진('24.5~)
 - 건설업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탈피하고, 산림사업 특성을 반영한 계상기준 연구
 - * 산림사업 세부 공정, 사업비, 규모, 위험성 등에 따른 요율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위험 공정 중심의 우리나라 산림작업 안전지침 제정(12월)
 - 우리나라 산림 형태와 유사한 주요 국가(미국 오리건, 뉴질랜드, 일본)의 산림작업 안전지침 비교·분석 및 국내 최적화를 통한 한국형 산림 안전 작업지침 제정
 - * 산림안전 법률과 연계하여,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벌칙조항 반영 여부 검토
 - 개별 사업지침에 안전지침 및 매뉴얼의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
- 안전을 반영한 산림품셈 개선 및 감리역할 강화
 - 산림사업 표준품셈 체계를 단위공종 기준으로 개편하고 타 산업 대비 미흡한 할증요인 검토 및 적용 강화
 -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림 기술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인원·품셈 등 분석

라. 추진일정

- 안전사고원인조사단 운영(상시) : 연중
- 안전사고 다발기관·재해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상시) : 연중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지도·점검 : 1~2월
- 산림분야 안전보건 결의대회 : 기관별 산림사업 발대식과 함께 추진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12월
- 산림작업 안전지침 제정 : ~12월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 반기별
- 안전보건 담당자 워크숍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 11월

26.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1)

목 표

- ◇ 일자리 중심의 정책사업 추진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 ◇ 지역주민 창업 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

가. 정책여건

- 현 정부 일자리정책은 경제부문 국정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세우며 공공부문 주도에서 ‘민간부문 주도’로 전환
 - 산림의 사회·지역적 가치를 바탕으로 산림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하여 산촌 문제 해결 시도 중
 - 산림청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전략* 등에 맞춰 수립한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일자리 확대에 총력
- *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8만 개('23~'27)

나. 기본방향

-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산림 분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행
-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산림을 기반으로 한 주민이 주도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산림분야 고유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주체의 성장지원 및 경쟁력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된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체감률 높은 일자리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변화된 사회·환경 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중심의 산림정책 추진

- 현 정부 일자리 대책 발표내용 등 대내·외적 정책 여건, 산림일자리 종합대책('23~'27)에 맞추어 '24년 산림일자리 추진계획 수립(1월)
 - 산림일자리 추진계획에 반영된 일자리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 청년층 등 국민수요를 반영한 신규일자리 발굴 및 지원(1월~)
-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복지부)' 계획 반영 및 확대 추진

2) 산림일자리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및 가시적 성과 창출

- 주민공동체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림분야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로써 경쟁력 강화

<그루매니저>

- 민간활동가(그루매니저)는 주민공동체(그루경영체)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기업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역전문가로 육성
 - 잠재력이 높은 그루매니저를 선발하여 분야별 전문교육 등으로 역량 강화하여 건전한 공동체 발굴이 가능한 인재로 육성(4~12월)
 - * 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사업,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성장지원
- 그루매니저를 산림분야 창업 핵심 인재로 양성하여 산림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민간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 제고(연중)
 - 기본소양, 산림자원·창업 외부 전문가 교육 등 직무 역량 강화와 그루경영체 지원 상시 모니터링, 활동성과 및 사업목표 달성 등 성과관리
 - * 정량·정성 평가항목 : 노력도·성실성, 경영체 발굴·창업 수, 자립성과 등

《 그루매니저 역량강화 단계별 추진전략 》

구 분	목 표	사 업 내 용
1차~3차 년도 * 매년 평가	그루경영체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 수립 · 자원조사 및 지역진단 · 그루경영체 역량강화
	성공창업과 경영개선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루경영체별 맞춤형 자문 및 멘토링 지원 · 창업을 위한 파일럿 사업 운영 지원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 및 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운영 진단을 통한 경영지원 · 그루경영체 네트워크 활성화 · 우수사례 중점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종합평가 (자생력을 갖춘 경영체 선정, 추가 지원)

4, 5차 년도 * 4차년도 평가	지속 성장 및 모범사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다각화 및 수익 확대 ·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영역 확대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	---

<그루경영체>

- 그루경영체 단계별 스케일업(창업+성장) 지원으로 고용 창출과 매출액 증대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1~11월)
 - (창업준비→창업지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림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법인화(창업)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창업초기→도약지원) 조직운영과 재무전략 등 경영분야 지원, 홍보·마케팅 강화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
 - (창업완성→성장지원) 주민사업체 간 협력모델 발굴, 패키지사업 기획, 제품 제작·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네트워크와 판로 활성화 지원
- * 그루경영체를 성장단계별로 진단하고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재구성

3) 산림형 사회적경제 주체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 성장

- 산림분야 기업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추진(2회, 5월·10월)
 - 사회적경제로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연초에 지정 공모 계획을 공고
-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된 국유림영림단 경영 안정화 지원(4~8월)
 - 新 비즈니스모델 개발 컨설팅, 경영자 기업운영 역량 강화 등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정부는 다양한 국민 수요 증가에 따른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을 수립·추진(연중)
 -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산림분야 1천 명의 신규일자리 확충 계획
-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복지부)' 계획 반영 및 확대 추진
 - (1단계^{보육·요양} 등) 숲해설업 687, 유아숲지도업 771, 산림치유업 117명
 - (2단계^{여가·서비스} 등)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73명

라. 추진일정

- '24년 산림일자리 정책 추진목표 수립 : 1월
- '24년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 : 1월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 5월, 10월
- 산림일자리발전소 성과공유 전국대회 개최 : 11월
- 산림일자리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27. 산림일자리 지원 강화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1)

목 표

- ◇ 산림분야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 창·취업 분위기 확산
- ◇ 체감·참여형 중심 재정지원 산림일자리 여건 조성 및 지원

가. 정책여건

-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20.8)」에 따라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1~’25)’과 연동하여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행 의무화 및 국정과제 반영
 - * 국정과제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국정과제 90~92)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지속 지원하고,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민간일자리 전환 및 고용유지율 저하
-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MZ세대 등장 등 이슈 부각으로 인해 일하는 방식 등 환경변화에 대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 등 대응 필요
 - * 일하는 방식 유연화, 고용형태 다양화, 저출생·고령화,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나. 기본방향

- 청년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이 미래 산림분야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지원 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 참여자의 취업교육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이동 촉진
- 청년, 시니어 등 일자리를 찾는 연령별·대상별 수요자 중심의 산림일자리 정보제공 등 홍보를 강화하고 협업 활성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확대

- 청년정책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4년 산림분야 시행계획 수립(1월)
 -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에 따라 '24년 산림분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의 성과 도출
 - * 청년 취·창업, 디지털숲가꾸기, 해외인턴 등 청년정책 중점 추진
 - 청년의 의견을 산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특별위원회 등 산림분야 청년참여 위원 확대 및 소통 강화
 - * 갈등관리, 적극행정, 산림교육, 청년정책조정 등 청년참여 위원회(4개)
- 산림분야 관심자 및 전공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실전 프로그램 지원
 - 산림분야 창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및 공모를 실시하여 전주기(입문→성장→강화) 창업 지원
 - * 창업 경험, 경영 교육, 사업화 자금, 우수기업 벤치마킹 등
 - 산림분야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지원
 - * 취업 아카데미, 일자리 박람회, 취·창업 온·오프 정보제공, 기업연수 등
- 미래인재 육성과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연중)
 -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 확대(2개교 → 5개교)
 - 교육과 현장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무 위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산림분야 인력수급 미스매칭 해소
 - 인사혁신처 노하우플러스 사업의 병행 지원을 통해 부족한 산림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산림일자리 취·창업 정보제공 확대

2) ¹신귀산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력 제도 운영(최초 도입)

- 고용허가제(E-9) 운영을 위한 고용주·외국인근로자 지원 체계 마련
 - (도입대상·규모) 산림사업시행자(법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에 1천여 명 도입(7월~)
 - *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업자
 - ** (단순 종사원)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 *** 방문취업(H-2, 동포취업)도 동일하게 허용 추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협조)

- (도입국가) 소수업종 특화국가 지정('23. 12월~, 고용노동부)
 - * 우리 청 7개국 제안 : 몽골, 우즈벡,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 (교육훈련) 임업분야 대상자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의무교육 (취업기본 16시간, 임업직무 104시간) 4주 실시한 후 고용주에게 인도
 - * [案]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총괄, 강릉·진안·양산 3개 교육원에서 운영
 - ** 교육 기간 임금 지급(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통한 전액 지원 협의 추진)
- (체류관리)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점검·확인(7~12월)
- (행정지원) '24상반기 대행기관 지정 추진(고용노동부)
 - * (업무범위)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개시·고용변동 신고, 출입국 관련 상담, 통·번역지원 및 고충상담, 보험가입, 질병·상해 수습 지원, 산재 신고 등
- (주거지원) 고용주 주거지원 부담 경감을 위한 유희시설 임대 검토(1~5월)
 - *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주거·교통 지원하고, 근로자는 숙소비 부담
- 계절적 요인이 있는 임업분야 직무에 계절근로(E-8) 제도 도입 추진
 - 임산물재배업 계절근로 시범사업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장기 체류자격) 개정을 위해 법무부 협의('23. 12월~)

3)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제도개선 및 공정성·전문성 제고

- '24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제한사항 등 단계별 운영방향 검토 및 사업 담당자 간담회 실시('23.12월)
- 직접일자리 참여자 대상 임업훈련기관 교육이수, 고용서비스기관 취업교육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이동 촉진
- 고용노동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운영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산림분야 재정사업(직접일자리, R&D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5월)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등에 따라 정책방향 개선(상반기)
 - 주요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개선 마련
 - 일모아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복·반복참여자 확인, 반복참여 제한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침 이행

라. 추진일정

- '24년 재정지업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수립 및 배부 : 1~2월
- '24년 산림분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제출 : 1월
- '24년 청년 산림인 취·창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위탁 : 1월
- 임업분야 외국인력제도 운영 계획 수립 : 1월
- '24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제출 : 5월
-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 점검 계획 수립 : 7월
- 창업·취업지원 사업 추진현황 점검 : 6월, 10월
- 산림일자리 메타버스 박람회 개최 : 10월
- 직접일자리 사업 담당자 간담회 : 12월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등 소관사업 정기점검 : 분기별
- 임업분야 계절근로 도입을 위한 법무부 협의 : 연중
- 산림일자리 홍보 : 연중

28. 산림기술분야 운영체계 내실화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4187)

목 표

◇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 다양화 및 전문화되는 산림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필요성 증가
- 산림사업시행업체, 산림기술용역업체(설계·감리업체) 등 산림분야 사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체계적인 제도 운영 필요
-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도모를 위한 정책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 산림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한 「산림기술법」 개정 및 운영체계 내실화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산림사업체 중점관리 활성화
- 기술인력 수급, 사업체 경영 관리 등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기반 구축

- ‘산림기술진흥계획(’24~’28)’ 수립(3월) 및 세부 추진계획 이행(3월~)
 - 안정적 산림기술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분야 법령정비
 - 기술인력 수급 및 사업체의 건전한 경영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 산림 관련 법률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산림기술법」 개정
 - 영림단 등 임업기능인 관련 타법 조문 이관 및 제도 정비(7월 발의)
 - 산림기술자 신규·정기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1월 시행)

- 산림분야 특성을 고려한 품셈체계 구축
 - 산림사업 품셈관리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기준 등 마련
 - 산림사업 표준품셈 체계를 단위공종 기준으로 개편 및 할증요인 강화
- 산림사업 품질 강화를 위한 기술용역 제도 개선
 - 고위험 사업·공종의 선택적 감리 등 새로운 감리제도 개발
 - 산림사업 표준 설계도·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2024년 산림기술개발 연구용역 계획(안) 】

과제명	내용	추정금액	용역기간
품셈제도 체계화를 위한 증장기 개선	품셈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30백만원	6개월
산림사업 표준 설계도·서 마련	산림특수성을 고려한 설계표준안 마련	40백만원	6개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제도 개선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기술법 개정안 마련	30백만원	6개월

2) 산림기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¹⁴⁾ 활성화

-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체 정보화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및 DB 구축을 통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연계
 -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 자격증 발급 내역 및 벌점 등에 관한 관리 서비스 제공
 - 등록된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체의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 산림기술분야 DB 추가 발굴·연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 향상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서비스 향상(연중)
 - 사용자의 건의사항 발굴을 통한 기능 개선
 - 365 민원상담 기능 제공 등 고품질 민원서비스 기능 향상

14) 자료보기 : ftims.forest.go.kr(산림기술정보통합시스템)

3)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리강화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및 자본금 요건 개선
 - 산림기술자 인력 요건 완화를 통해 법인 영업부담 완화
 -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방지
- 산림사업법인 폐업 신고처리절차 개선으로 업체 운영제도 내실화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활용하여 시·군·구 혹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청 간소화
-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지원 및 관리강화(연중)
 - 산림기술자 및 사업체 관련 법정 업무 추진과 산림기술 관련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산림기술자에게 효율적인 정보 전달기능 강화
 -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협회 운영 효율화 도모
- 한국산림기술인회 운영 모니터링 실무협의체 운영(상·하반기 각 1회)
 - 위탁사무, 기술자 교육 등의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운영 모니터링
 - 효율적 직무수행 및 성과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매월)

라. 추진일정

- '24년 산림기술자·용역업 등록·관리 위탁계약 체결 : 1월
- 산림기술진흥계획('24~'28) 수립 : 3월
- 산림기술법 관련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 : 3~11월
- 산림기술법 개정 : 7~12월
-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 3~6월
- 산림기술 관계관 워크숍 : 11월

29. 산림기술자 전문성 강화 및 자격관리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4187)

목 표

- ◇ 산림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원
- ◇ 산림기술분야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가. 정책여건

- 다양화 및 전문화된 산림사업의 품질 유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산림기술자의 확보와 교육·훈련 및 자격·경력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산림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 추진 체계 구축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림기술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분야별 맞춤형 교육·훈련제도 운영
- 임업기능인의 기술능력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 산림기술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적극 활용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현장 점검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양질의 산림기술자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훈련 강화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및 자격·경력 제도 개선
 - 기능등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세부 사항을 고시함으로써 교육·자격 체계 구축
 - 산림기술자 자격·경력 인정 세부기준 수립으로 자격 제도의 효율화 및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실습 및 대면교육 확대 운영
 - 의무 개설과정에 한하여 비대면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수 실습과정 교육과정 부여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8개) 점검 정례화를 통한 제도관리 강화
 - 상·하반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 현장점검(6·12월) 및 지도·감독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현황 및 진행상황 관리(연중)
 - * (교육기관) 산림조합중앙회(4개), 강원대, 산림기술인회, 산림ENG협회, 경상국립대

2) 전문기능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

-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임업기능인 교육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편성하여 현장 적용 능력 강화
 - 교육·훈련 과정 중 현장실습 비율 강화 및 임업기계장비 교육 확대로 장비 활용도 제고 및 노동강도 완화
 - 신규 인력에 대한 기본·안전교육 강화 등 맞춤형 교육 추진
 - * '24년 임업기능인 양성교육 예산 : 2,770백만원 (교육수혜자: 8,805명)
- 기능인영림단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및 교육기관 지도·감독
 - 산림정책, 작업 기술, 임업기계장비 사용법, 안전 요령 등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기술능력 향상 및 작업자의 안전성 제고
 - 교육원별 교육·훈련 관련 사항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상·하반기)

3)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불법행위 근절 도모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산림기술자 관리(연중)
 - 산림사업 현장배치인력 시스템 입력 의무화를 통해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산림기술 인력 체계적 관리
 - 상·하반기 산림기술자의 불법 취업실태 점검 및 관리 강화
- 위법행위 사전 예방 및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 산림사업체 등 순회 교육 및 기술자 불법행위 근절 교육 추진(7월)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교육과정별 기술자제도 교육 편성 반영
- 산림사업법인 자격요건 등 실태조사 강화(연 2회)
 - 권역별 합동조사 및 입찰업체에 대한 자격요건 등 실태조사 의무화

라. 추진일정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계획 수립 : 1월
- 산림기술자 자격, 경력인정 세부기준 고시 : 11월
- 산림사업체 및 기술자 위법행위 사전예방 순회교육 : 7월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점검 : 6월, 12월
-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및 현장실태 일제조사 : 연 2회
- 산림기술자 자격, 경력 등 위탁사업 점검 : 연 2회
- 임업기능인양성 보조사업 및 훈련원 점검 : 연 2회

2024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산림보호국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1)

목 표

◇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계적 보전·관리 정책 추진

- 산림분야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이행
- 고산지역 침엽수 등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체계 강화
- 다각적 접근을 통한 산림생물종의 국민 관심도 및 가치 제고

가. 정책여건

- 기후변화 및 산림면적 감소 등으로 육상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 시급
 - * 산림 감소(만ha) : ('60) 670 → ('80) 657 → ('00) 642 → ('20) 630
-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강화
 - *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 채택('22.12월)
- 분야별 법정계획에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 등 정부 내 인식 확산

나. 기본방향

- 산림생물다양성 중·장기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정책 주류화
 - * 「제4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등
- 산림분야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OECM) 발굴 기반 확보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생물종다양성의 과학적 보전·관리 강화
- 산림생태계 정보 디지털화를 통한 공간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 중요 산림생물종의 정책 접근 다각화를 통한 국민인식 및 가치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분야의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4~'28)」 및 「제4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3~'27)」 등 중·장기 정책의 연도별 이행과제 추진
 - 제5차 국가전략에 반영된 △부처별 OECM 관리기반 마련 △연계 지역사회 혜택 강화 등을 '24년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류화 촉진
- 산림생물다양성의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인식·교육 등 추진
 - 산림생물종에 대한 현황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함으로써 국민적 관심도 제고 및 관련 연구의 과학 기반 근거 지원
 - 국립수목원, 생태관리센터 등 시설을 활용한 지역연계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산림생물다양성 체험 기회 증진

2) 산림 OECM 관리기반 마련 및 지정·발굴 확대

- 「산림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 지속 추진 및 하위법령안 사전 준비
 - 부처협의 등 이해관계자 간 사전 소통강화로 조속한 입법 추진
 - * 공익용산지 등을 OECM으로 관리토록 「산림보호법」 전부개정 추진('23.4)
 - ** OECM 지정기준 및 절차, OECM 대상지 보호·관리사업 내용 등 위임 조항
- 산림분야 OECM 협의체 지속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등 적기 추진
 - * 산림 OECM 개념 정립, OECM 지정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안 마련 등
 - ** 산림 잠재대상지 유형구분, 보호지역 통합DB 관리시스템(KDPA) 등재 등

3)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의 과학적 보전·관리 강화

- 기후변화 취약 고산 침엽수종* 등 산림식물의 생육현황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고도화를 통해 고사 원인분석 및 정책 환류
 - * 총 7종: 구상나무, 분비나무, 주목, 가문비나무, 눈향나무, 눈측백, 눈잣나무
- 중점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현지내·외 보전사업 등 추진
 - * 생육환경개선, 종자채취 및 종자은행 구축, 대체서식지 조성 등(500개소/2년)

- 쇠퇴원인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생육유형별 정밀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등 조사 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검증 추진
 - * 생육우량지, 치수발생 양호지, 대규모 고사지 등 유형별 조사 실행
- 국제 동향 파악 및 보전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추진
- 과학적 현지의 보존원 조성·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보전체계 구축
 - 권역별 복원대상을 고려하여 특화된 현지의외보전원 조성·운영
 - * 현지의외보전원(3개소) : 봉화(3.2ha), 제주(1.8ha), 무주(1.8ha)
 - 디지털염기서열(DNA) 추출 및 유전특성 분석으로 최적배치 및 초기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현지의 보존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
- 「제2차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21.6)」 등 과학적 보전·관리를 위한 산림정책, 연구, 사업 개발 및 활성화 추진

4) 산림습원의 장기적 보전 방안 마련 및 보전 가치 발굴 연구

- 우량 산림습원 247개소(전체 455개소) 중 79개소의 식물상 및 식생 조사 결과 기반 모니터링 지속 추진
 - * 강원 24, 전라 17, 대구·경북 13, 경기·인천 8, 부산·경남 6, 제주 6, 충청 5
 - ** 조사 및 모니터링 내용: 산림습원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및 수질 분석 등
- 산림습원의 생물 보전학적 가치 발굴 위한 산림토양 미생물 분석
-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습원 대상 친환경적 복원 사업 추진

5) 기후변화 취약종 보전·적응 및 산림피해 대응

□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추진

- 취약 산림식물종(130종)의 권역별 개화·개엽 시기 모니터링 추진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복원·적응 등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추진

□ 환경오염에 따른 산림토양 변화 모니터링 지속적 추진

- 전국 산림의 토양·대기·강우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급격한 토양 산성화 예방·대응 및 국가단위의 기초자료 구축
 - * 전국 65개 조사구 운영, 토양(연 1회), 대기(월 1회), 강우(강우 시마다) 조사·분석

□ 석포지역 산림피해지 식생적응력 모니터링 지속 추진

- '21년~'23년 실시한 산림피해지 내 식생적응력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성공적인 복구방안 모색
- 산림복원 추진 전 자연·인위적인 산림피해발생 대비 예방 활동 추진

6) **신귀**보호수의 인문자원화 가치 발굴 및 창출 기반 마련

- 마을단위 관리가 우수한 보호수에 대한 민간주도 인증 체계 구축
 - 인증목은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스토리텔링 후 국가 DB로 관리
 - * 전담 주치의(녹색자금 등 활용) 제도 도입·연계로 인증목 질적 관리향상 도모
- 주요 보호수의 인문자원화 컨테스트를 통하여 우등목을 선정하고 이야기가 있는 산림관광자원으로 특화육성 기반 마련

7) 산림생태환경에 특화된 주제도 제작으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산림 공간계획의 과학적 통합관리 추진

- 산림생태지도 제작 시범사업을 통한 정합성 검증 및 본예산 확보
 - 시범사업을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 및 예산 마련 추진
 - * 산림/환경/국토 등 보호구역 중첩지역 제작 → 현장 검증 + 타 주제도와 비교·분석

8) 산림생태계 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추진

- 국립수목원 인근 생태계 교란식물의 확산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실시로 자생식물 생육환경 개선(국립수목원 4개소*, 2억원)
 - * 국립수목원(포천), 백두대간수목원(봉화), 세종수목원(세종), 한국자생식물원(평창)

9) **신귀**중요 산림식물 후계자원 보전사업 추진

- 천연기념물(식물), 국가지정보호종 등에 대한 후계원 허브를 조성함으로써 중요 산림식물의 유전자원 확보 및 산업·자원화 촉진
 - * (총사업비) 200억원, (지원조건) 국비 50%, (사업기간) 3년('24~'26)

라. 추진일정

- 「산림보호법」 전부/일부개정 추진 : 연중
- 산림분야 OECM 협의체 운영 : 2~12월
-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용역 추진 : 2~12월
- 멸종위기 침엽수 현지외보존원 조성지 관리 : 3~12월
- 산림습원 모니터링 및 활용 모델 개발 등 추진 : 1~12월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추진 : 1~12월
- 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사업 추진 : 1~12월
- 석포 산림피해지 복원 모니터링 : 연중
- 보호수 민간인증 체계 마련 추진 : 상반기
- 보호수 인문자원화 컨테스트 추진 : 하반기
- 산림생태지도 제작 시범사업 관계관 회의 : 3월
- 산림생태계 교란식물 모니터링 및 제거사업 추진 : 2~12월
- 중요 산림식물 후계자원 보전사업 추진현황 점검 : 하반기

2. 산림보호구역 기능 강화 및 관리체계 확립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1)

목 표

◇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적극적 보호·관리

- 산림보호구역 관리·운영(475,845ha) : 465백만원
- 산림보호구역 신규 지정 : 3,000ha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 3개소, 100백만원
-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 9개소, 2,698백만원

가. 정책여건

- 국가온실가스감축,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확대 요구
- 사유림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기여에 대한 산주지원제도 도입 시급
-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역할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림보호구역 유지·확대를 위한 국·공유림의 선도적 역할 이행
-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으로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지원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산림생태관리센터의 기능 활성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보호구역 관리 강화 및 신규대상지 발굴·확대

-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목적에 따라 산림공익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발휘되도록 기관별 운영* 철저
 - * 산림보호구역 내 제한적 행위는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규정 이행
 - ** 공용·공공용 등에 따른 해제 시 산림생태계 보호, 재해, 주민의견 등 종합검토
 - *** 지정목적 달성·상실 등의 해제사유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부문 이행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신규 지정
 - 기존 보호구역 주변, 신규취득재산을 대상으로 발굴·지정
 - 공익용산지, 경영불가임지 등 지정가능 영역 확대 검토·지정
 -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력(지방청)
 - * 신규재산 기초자료 제공(산림청) → 공간분석(과학원) → 검토·지정(지방청)
 - ** 대상지 발굴(지방청) → 검토·공간정보화(수목원) → 지정·고시(지방청)
 - 기지정 공유재산 관리강화 및 확대, 산림보호구역 재지정*(시·도)
 - * 「산림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익사업 등 미착수에 따른 재지정

2)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 추진

- 다양한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 산주에게 공익가치 제공대가를 지급하여 사유림의 공익기능 강화 필요
 -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달리 산림보호구역 산주는 공익을 위해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임업지불금에서도 제외되어 정책지원 필요
 - * 대상 : 산림보호구역(사유림) 소유자 3만명, 9만여ha
 - 「산림보호법」 개정과 연계하여 산림보전지불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
 - *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최춘식 의원('23.5.16.), 서삼석의원('23.7.13)

3)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3~'27)」 이행을 통하여 산림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산림유전자원의 관리체계 강화
 -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 등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 * 유전다양성 평가, 희귀식물 자생지 상보성 평가,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 연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핵심수종의 유전다양성 및 유전적 연결성 모니터링 등
 - ** 정맥, 도서지역, 산림습원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우선 지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담당자 교육 개선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 * 산림유전자원관리과정 : (현행)단일과정 → (개선)관리자, 관리원 과정 등 별도 과정
-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기능증진사업 추진
 - 산림생태관리센터별 차별화된 관리방안 마련(기능증진 매뉴얼 마련 등)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사업종 및 사업방법 등 선정으로 사업효과 증대
 - * 사업종, 사업방향 등 설정이 어려운 사업지는 소속 연구기관의 의견수렴 후 추진

- 관리효과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육환경 개선 등 사업 추진
- * 생육상황 및 현지 내 개체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 선정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사업 지속 지원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사업 지원·관리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 사유림 보호구역 내 식생보호 및 보호시설·안내판 설치 등 비용 지원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 3개소(문경, 나주, 장흥)

소재지	지정유형	지정면적 (ha)	지원예산 (백만원)	주요 분포식물	소유자 (관리자)
합 계		2,322	100		
①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210 외2	유용식물	30	50	비자나무	불회사
②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10-1	유용식물	6	10	비자나무	보림사
③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외1	희귀식물	2,286	40	고란초 등	봉암사

- 사찰림 실태조사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관리협약 사업 확대
 - 우수한 산림생태계와 경관가치를 보유한 사찰림의 체계적 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마련 등(5개소, 2억원)
 - * ('22) 강원 정암사, 충남 마곡사, 경남 해인사, 전남 송광사, 전남 대흥사 / 5개소
 - * ('23) 인천 전등사, 강원 법흥사, 전북 내소사, 경북 운문사, 경남 표충사/ 5개소
 -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사찰림의 경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과 보호·관리협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체계로 편입 검토

5) 차별화된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사업발굴 및 직원역량 강화

- 관리유형별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개선 및 관리 강화
 - 산림생태관리센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방안 마련 및 계획 수립
 - * 탐방로 운영(점봉산), 기후변화대응(소광리), 도서지역(진도) 등
 - 장기 식생조사·모니터링, 식생복원 등 보호구역 관리 강화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행을 위한 정보·연구·방법 등 개발 및 공유, 대중적 접근을 위한 온라인 식물상 작성·홍보
 -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산림보호구역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지역주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센터를 지역거점 기관으로 활용

- 산림생태관리센터 담당자 전문화 등 역량강화
 - 장기 식생조사·모니터링, 식생복원 등 보호구역 관리역량 강화
 - * 연구·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생태관리센터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 산림생태관리센터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및 자격취득 지원
 - * 센터 담당자에 대한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한 전문가 양성

구 분	개소연월	위 치	건축 규모(m ²)	사업비 (백만원)	관리기관
점봉산	2010.10.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218-1	107	235	인제관리소
계방산	2010.10.	홍천군 내면 자운리 12-16	59	121	홍천관리소
민북지역	2012.12.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45	504	1,112	민북지역관리소
가리왕산	2013.12.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53	485	1,338	평창관리소
소광리	2013.05.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29	1,631	3,039	울진관리소
도서지역	2013.12.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산146	594	954	영암관리소
향로봉	2015.12.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2	226	570	양양관리소
DMZ	2016.10.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43	7,495	-	민북지역관리소
제주	2021.12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82	604.5	3,077	서부지방청

라. 추진일정

-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추진 : 연중
-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추진 : 연중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 사업 추진 : 2~12월
- 「2024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 수립 : 2월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 2~12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효과성평가 용역 추진 : 2~12월
- 사찰림 주변 산림 실태조사 추진 : 3~12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 사업지 점검 : 10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 : 10월
- '24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사업실적 및 '25년 사업계획 제출 : 12월

3.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목 표

- ◇ 산림생태계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보호정책 추진
- ◇ 체계적 단속·수사를 통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및 산림피해 최소화
- ◇ 민간의 산림보호 분위기 확산 및 자발적 실천 유도

가. 정책여건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다양한 공익가치 창출의 원천인 산림의 중요성과 역할 강조
 - 산림보호 국민인식 확대 및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 부동산 투기 목적의 산림개발 및 산림휴양·이용에 대한 국민수요 확대로 인위적 산림훼손 및 2차 산림재해 발생 우려 상존
- * 산림피해 사건처리(건) : ('20) 3,291 → ('21) 3,426 → ('22) 2,710

나. 기본방향

-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위법행위 단속 강화 및 피해 차단
- 산림사범 조직체계 구축 및 전담팀 운영을 통한 수사기반 확대
- 효율적 사범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행정지원 강화
- 산림보호지원단, 협·단체, 국유림 보호협약자 등 민간감시단 운영 활성화 및 국민눈높이 맞춤형 홍보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위법행위 단속 강화 및 피해 차단
 - 사회적 이슈 및 현안 위주 기획·합동단속으로 수사 효율성 제고

- 부동산투기 목적 산림훼손,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벌채, 대규모 관광농원 조성 등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
-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산림범죄 선제적 대응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 불법산지전용지의 신속한 원상복구 추진으로 2차 피해 예방
-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국 산림 감시체계 운영
 - AI 활용 전국 산림훼손 의심지 추출 및 수사 기초자료로 활용
 -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입체적 감시·단속
- 온라인, 방송 등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수사 협조
 - 온라인 상 불법행위 의심영상 삭제 유도 및 처벌규정 안내·계도
 - 방송통신위원회 연계 산림 내 위법행위 관련 심의 강화 요청
- 신고자 중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산림재해앱’ 운영
 - 소속기관·지자체 관할구역 신고사항 처리 철저(10일 이내 권장)

2) 사범전담팀 확대 및 산림사범수사대 운영으로 수사체계 구축

- 산림사범 수사 전담인력 효율적 운영 및 지방청별 전담팀 확대
 - 지방청별 산림사범 전담팀 확대 운영(1팀→3팀, 북·남·중부청)
 - * (전담팀) 대규모·조직적 불법산지전용 위주 기획수사 담당
 - ** (관리소) 무허가 벌채, 임산물 무단채취 등 현행범 위주 수사 담당
 - 수사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담당자 소통기회 확대
 - * 남·중부청 전담팀 운영('24년 처음 운영) 안정을 위한 본청·북부청 소통 강화
- 2024년 산림사범수사대 구성 및 산림사범 업무 중점 추진
 - (본청)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불법산림훼손방지 장·단기 계획수립·추진, 기획·합동단속 계획 수립 및 추진, 산림피해 모니터링 등
 - (지방산림청) 기획·합동수사 지원, 중앙수사대 지휘에 따른 산림피해지 현지 확인·수사, 관할구역 계도·감시 및 산지정화 활동 등 수행

3) 산림특별사법경찰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

- 담당검사, 법무연수원 전문강사 초빙 수사지도 및 실무교육 실시(2월)
 - * 수사기록물 조제방법, 산림사범 기소율 향상을 위한 수사방향 등 교육
- 법무연수원, 산림교육원 산림사범실무 사이버교육 의무적 이수

- 지역별 특별사법경찰 자문관 배치(5명)하여 수사업무 자문 수행
 - 수사서류 작성 검토 등 검사 재지회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 소속기관 및 지자체 대상 법률 및 수사절차 자문, 현장조사 등 지원
 - * 자문건수(건) : ('21) 1,331 → ('22) 1,324 → ('23) 1,245

4)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 수사기반 지속 정비·확충

- 불합리한 제도 적극 발굴·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 국민신문고 건의사항·고충민원 등 국민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 추진
- 산림사범 수사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임차료, 유류비 등 예산 현실화 반영
- 영상녹화가 가능한 조사공간 조성 등 수사환경 개선(계속)
 - 사무·조사공간 분리로 피조사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인권보호
 - 증언 번복으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 방지 등 수사증거력 확보
 - *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산림범죄 신고포상금, 참고인 비용지급 활성화
 - 원활한 수사협조를 위해 참고인 여비제도 적극 안내·예산 집행
 -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위반사항 신고·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 *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산림자원법 제66조, 산림보호법 제48조
- 산림보호·단속 우수기관·직원 선정 및 포상금 지급
 - 산림피해 사건처리, 산림훼손 의심지 정리, 특별단속, 산림정화 등 기관별 실적 종합평가 및 우수 기관·직원 산림청장 표창 수여

5) 민간인력을 활용한 산림보호·단속활동 및 협조체계 강화

-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통한 산림사범 업무 지원
 - 산림훼손 행위 계도·감시, 산지훼손 의심지 등 현장조사 및 사후 시정조치, 산림 내 오염물질 수거, 특사경 수사 보조
 - 산림보호지원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 * 현장단속 시 주의사항, 민원인 응대요령 및 안전교육 철저
 - 산림보호지원단 근무복 지급 및 신분증 발급·관리 철저

【 산림보호지원단 구성 및 배치(안) 】

계	본청	북부지방청	동부지방청	남부지방청	중부지방청	서부지방청
64명	1	18	16	12	7	10

* 기관 여건에 따라 배치인원 변동 가능

- 산림청 자체·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산림보호활동 확산
 - 민간감시단 위축 확대 등 참여기관 특성을 살린 협력방안 발굴·추진
 - * 숲사랑 지도원 발급현황 : ('22) 4 → ('23) 12천명
 - 산림보호협회, 산림보호통신원협회 등 민간협업 활성화
-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주민 중심으로 산림보호 협조체계 구축
 - 마을 보호활동 지원을 위한 현수막, 리플렛 제작 지원
 - 마을주민·산림조합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및 보호활동 이행 강화

6) 국민소통 강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 국민소통 강화 및 수요자 중심 홍보 추진
 -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국민접점 강화 및 현장캠페인 실시
 - 산림보호 상식 등 대국민 관심 유도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추진
 - 정책 이해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홍보컨텐츠 제작·배포
 - 산림보호 및 불법행위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컨텐츠 제작
 - *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주요 유형에 대한 적법절차 및 처벌규정 고지
- 주요 시기별 단속계획 사전홍보 및 단속성과 등 집중홍보
 - 단속 시기에 따른 사전 보도자료 및 포스터·리플릿 제작·배포
 - 현장 동행취재, 언론인터뷰 적극 대응으로 산림보호 동참 및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 단속·수사성과 지속적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 단속·수사 우수사례, 시기별 집중단속 성과 등 카드뉴스 제작·홍보

라. 추진일정

- 산림보호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 1월
- 산림사범 직무역량 강화교육 : 2월
- 불법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수립·시달 : 2월
-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단속계획 수립·시달 : 3월
- '23년 산지훼손 실태조사 용역 발주 : 4월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단속계획 수립·시달 : 6월
-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예방·단속계획 수립·시달 : 9월
- 산림보호 유공 포상계획 수립 : 10월
- 산림보호분야 정기보고(통계) 작성 : 12월

4.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기반 조성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131)

목 표

- ◇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산림생명자원 분야 新가치 창출
- ◇ 산림생명자원 정보화 및 관리·공급·활용시스템 마련

가. 정책여건

- 바이오산업의 급성장 및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17.8월)에 따라 생명자원의 주권 확보와 산업화를 위한 경쟁 본격화
- 그러나,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생명자원 해외 의존도는 67%로 매우 높아 생명자원을 활용한 안정적 바이오소재 공급처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 총괄 관리 및 산림생명자원 정보화 기반 구축
 - 기반시설 조성, R&D 및 실용화 등 분야별 협력체계 마련
 - 산림생명자원의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으로 보유자원 제공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수집·관리·이용 기반 마련

-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23.9월) 추진과제 수립에 따른 이행점검
 - 그린바이오산업 견인을 위한 산림분야 산업화 계획('24~'28) 총괄 관리
 - * (전략) ①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강화 및 이용실태 분석, ②산림바이오센터 등 산업화 기반 구축, ③산림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원천기술 확보, ④ 산림바이오산업 기술이전 등 산업화 촉진
- 유용 자원의 체계적 확보 및 발굴을 위한 책임·관리기관의 역할 수행
 - 책임기관(4) : 산림과학원, 수목원, 품종관리센터, 수목원정원관리원
 - 관리기관(45) :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 백두대간·세종수목원, 대학 등

- 「농업생명자원법」과 「종자산업법」에 근거한 산림분야 농업생명 자원 시행계획 및 종자산업 육성계획 수립·추진
 -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업생명자원 시행계획 수립·이행(매년)
 - 산림분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이행(매년)

2) 유용 산림생명자원 공급 기반시설 구축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 추진(지자체 보조, 국비 80억)
 - 바이오산업계의 천연물질 수요와 임가의 안정적 공급을 연계하고, 연구기관 참여를 통한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플랫폼 구축
 - * 개소 : 충북 옥천(운영 중), 전남 나주('20~'23), 경남 진주('21~'24), 강원 춘천('22~'25)
 - 산림청-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위한 '산림바이오산업화협의체' 및 지자체별 바이오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는 '발전협의체' 구성·운영
-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 추진(지자체 보조, 국비 17억)
 - 산림바이오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생산된 원료물질을 전처리, 가공, 품질인증을 수행하는 바이오기업 수요맞춤형 플랫폼 구축
 - * ('23~'26) 충북 옥천, ('24~'27) 전남 장흥(신규) / 잔여 개소는 수요 확보 후 추진 예정
- **[신규]**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 연구 추진(국가 직접, 4억)
 -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구간에 국내 약용식물과 연계하여, 세계 산림(약용)식물을 활용한 국가적 테스트베드 구축 타당성 연구
 - * 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촌 주민 고소득 창출 산업화 방안 연구(4억)

3) 국가 보유자원의 민간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 산림생명자원 분양 및 보유자원 현황 등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23~'25)으로 기업 등 민간 대상 분양 확대 기반 마련
 - 산재된 자원 데이터의 수집·정제·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생명자원 데이터 검색·자원분양·분석·활용서비스 제공
 - * (서비스 체계) 자원검색 → 분양정보입력 → 관리자 처리 → 결과확인(행정단축 14일→7일)

4)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강화 및 신제품 보급 확대

- 부가가치 높은 국유신제품 보급 확대
 - 임업인 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국유제품 통상실시 공고 기간 조정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국유제품보호권 처분(반기별) 실시(1월, 8월)
 - * 가격 결정을 위한 종자위원회 상정 → 처분 품종 수요 조사(과학원·수목원) → 국유제품 통상실시 공고(3개월간) → 신청서 접수 및 계약 → 자원 불출
 - 산림청 직무육성제품의 국유제품보호권 처분방안 및 예정가격, 기본을 결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종자위원회에 상정(분기별)
- 산림용 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조사 강화
 -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종자 및 묘목 생산·수입업체, 유통업체 실태 조사
 - *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등 유통절차 계도
 -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온라인 불법 유통 실시간 모니터링
- 민간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및 홍보
 - 품종보호 설명회, 맞춤형 현장 컨설팅, 해설집 발간 등 지원 강화

라. 추진일정

-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 과제별 이행 점검 : 연중
- 산림바이오센터 업무공유회의(산림청·지자체) : 1월, 4월, 7월, 10월
- 산림바이오산업화 연구협의체 운용 : 6월, 12월
- '24년 농업(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 수립·이행 보고 : 1월
- '24년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이행 보고 : 12월
- 신규 국유신제품 종자위원회 상정 : 분기별
- 국유제품 통상실시 공고 : 반기별
- 산림바이오센터(경남, 강원) 조성사업 추진 : 연중
-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충북) 조성사업 추진 : 연중
-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산업화 연구 추진 : 연중
- 산림생명자원 분양 접수 및 승인 : 연중

5. 산림복원정책 개선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2)

목 표

◇ 산림생태복원사업의 대상, 범위, 공간 등의 지속 확대

- 자생식물을 활용한 백두대간 등 핵심생태축 위주 복원 지속 추진
- 천연기념물, 타부처 보호구역 등으로 산림복원 범위 확대

◇ 산림복원정책 개선으로 전문성 강화 및 산업화 기반 마련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복원소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마련
- 산림복원 현장업무 제고를 위한 체계적 기술인력 양성

가. 정책여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으로 산림복원 수요 확대
 - (국내) 산림훼손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회복·증진을 위한 산림복원 수요 증가
 - *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지대 및 도서해안 산림생태계 훼손, 보호지역 대형산불 피해 등
 - (국외)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제15차 당사국 총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훼손된 산림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
 - * 2030까지 육상·해양의 30%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훼손 생태계 30% 복원 목표 설정
- 산림복원 시 자생식물 사용 의무화에 따른 수요 발생
 - 산림복원 확대에 따라 복원소재인 자생식물의 공급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 「산림자원법」 제42조의9에 따라 산림복원 시 자생식물 사용 의무화

나. 기본방향

-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생태복원의 대상, 범위, 공간 등의 지속적 확대로 산림생태계 생물다양성 회복 및 탄소흡수원 확충
- 산림복원업·기술자격제도 도입 및 산림복원 사후관리 체계 확립으로 산림복원 사업 내실화 및 복원의 목표 달성도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생태복원 활성화

- 핵심 산림생태축, 취약생태계 등 산림생태복원 확대
 - 백두대간, DMZ일원, 섬숲의 핵심 산림생태축 중심 산림훼손지 복원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산림복원 실시설계 및 물길복원 본격 추진
 - * 산림청,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환경부,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 구성
 - ** 지형·물길복원 등 기반조성('24~'25) → 식생복원('26~'28) → 모니터링·유지관리('29~'38)
-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등 보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원방식으로 보호구역 고유기능 회복
 - * (식생회복)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보전·이용) 도시자연공원
 -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시범구 조성 추진
 - *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경북 울진, 159ha)
- 관련부처 협업을 통해 천연기념물 등 복원대상 확대
 - 고산지역 침엽수 쇠퇴지, 대구 도동 측백나무(천연기념물1호)* 등 특정 종 서식지 등 새로운 복원대상 도입으로 생물다양성 유지·증진에 기여
 - 국토부, 국방부 및 환경부 등과 협업 강화·확대
 - *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타 부처 지정 보호구역으로 사업공간 확대

【 보호구역 지정 목적 및 이용행태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원방식 도입】

협업기관	복원대상지	복원방향
국토부·지자체	폐고속도로 등 미활용도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고려한 옛길복원
국 방 부	폐군사시설·폐작전도로 등	DMZ일원 등의 복원을 통해 동서생태축 연결성 강화
환 경 부	국립공원·자연공원·습지 등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문 화 재 청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등	천연기념물 후계목 등 특정종 서식지 복원

2) 산림복원사업 전문성 강화 및 품질향상 도모

- 산림복원업 도입 및 전문교육 기반 마련으로 전문성 강화
 -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업 도입으로 사업 수행체계 개편

- 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 (현행) 산림공학기술자 / 산림토목법인 / 산림생태공학전문업
 - (개편) 산림복원기술자 / 산림복원법인 / 산림복원전문업
- 전문교육기관 신규 지정 및 복원 전문교육 확대로 기술자 양성
 - * '(사)한국산림복원협회'를 산림복원 등 산림교육 전문기관으로 등록 추진
 - ** 산림복원 전문교육 확대('23 1회 → '24 5회) 및 대학 교과과정에 산림복원 과목 편성 추진
- 현장 컨설팅, 토론회 등으로 담당자 역량 강화
 - 맞춤형 컨설팅, 워크숍 등 개최로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3) 산림복원 사업지 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 품질향상 도모

- 대상지 선정 및 계획 강화로 산림복원사업의 내실화 제고
 - 사업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한 대상지 선정
 -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청 주관의 중앙설계심의 추진
 - * 중앙설계심의(5ha 이상, 백두대간 생태축 및 대규모 산림복원)
- **[신규]**산림복원지 사후관리 강화로 복원 효과 극대화 도모
 - 산림복원 시행기관 주도의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 연계성 강화
 - * (기) 산림청 총괄 → (변) 국가사업은 산림청, 지자체사업은 시·도 주관
 -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산림복원지 유지·관리사업 신설
 - * ('23년) 자체예산, 소극적 관리 → ('24년) 예산편성, 적극적 관리
 - ** (1단계) 관수, 풀베기 등 기본적 관리 / (2단계) 교란종 제거·보식 등 보완적 관리
 - 산림복원지 이력관리 체계화를 위한 산림복원정보시스템 구축(3차)

4) 자생식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생식물 공급 안정화

- 국가·지자체 수행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민간부문 자생식물 산업화 추진
 - * 인증센터 1개소, 공급센터(누계) : ('23) 1 → ('24) 2 → ('27) 6개소
- 자생식물에 대한 국내산 인증으로 산림복원 소재의 신뢰성 확보
 - * 자생식물 인증 마커 개발(누계) : ('24) 40 → ('27) 94종
- 기후대별 생산·공급을 위한 민간대행 생산 활성화 체계 구축
 - * 사립수목원, 종묘생산업자가 공급센터를 대행하여 종자 생산
 - ** 산림자원법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등 신설

5) 기술개발 및 법령 정비 등으로 산림복원 활성화 기반 마련

- 산림생태복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기술대전 개최
 - 사후·관리 공중 및 실행지침 개발, 고산수종 복원방안 등 연구용역 추진
 -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개최로 신기술·아이디어 발굴·보급
-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적기 마련('24.5.1.시행)
 - 공급센터 및 대행생산자 지정요건, 인증 심사항목 및 이력관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산림복원 관련 매뉴얼 제정 및 고시 개정 추진
 - 산림복원 유형별 실무매뉴얼 제정·보급으로 수행능력 제고
 -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및 모니터링 수행체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 * 타당성평가 및 모니터링의 조사(평가)항목, 야장 변경 등 고도화

6) 산림복원 국민참여 확대와 홍보 강화로 대국민 인식제고

- 국민참여형 산림생태복원 '기부자의 숲' 확대
 - 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서 DMZ일원 등으로 영역 확대
 - * ('23년) 산불피해지 → ('24년) 산불피해지 + DMZ 일원
- 다양한 국민시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로 정책 신뢰도 제고
 - 언론보도,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산림복원정책 공감대 형성
 - * 전문가 기고, 기획보도, 보도자료,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라. 추진일정

- 산림복원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 : 1월
- 산림복원 담당자 시책교육 : 2월
- 산림복원사업 대상지 선정심의회 : 2월, 7월
- 산림복원대상지 조사 및 제출 : 1월, 11월
- 산림복원 실무과정교육 : 3월
- 산림복원사업 현장컨설팅 실시 : 3월~11월

- 산림복원분야 재정집행 및 현장점검 : 4월, 8월
- 제19회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개최 : 5월~9월
- 산림복원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고시 개정 : 6월
- 산림복원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개정 : 6월
- 제19회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시상식 : 10월
- 산림복원사업 워크숍 실시 : 10월
- 산림복원사업 중앙설계 심의회 : 연중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실시 : 4월~11월

6. DMZ일원 산림복원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58)

목 표

- ◇ DMZ일원 산림의 체계적 보전·복원을 위한 산림관리
- ◇ DMZ일원 훼손지, 산림습원 등 산림생태복원 지속 추진
 - 사업량 : 산림복원 38ha, 실태조사 623,973ha, 모니터링 103ha(42건) 등
 - 사업비 : 4,317백만원(사업비 4,142, 타당성평가 175)

가. 정책여건

- 백두대간 및 도서지역과 함께 한반도 3대 생태축으로 DMZ 중요성 부각
- 기후변화로 자연적·인위적 훼손 요인 증가로 DMZ일원 산림관리 필요
- UN총회에서 생태복원에 대한 10개년 계획(2021~2030)을 의결하여 산림복원 패러다임 확산 추세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22.12월)’으로 산림복원 필요성 증대

*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훼손 생태계의 최소 30%를 복원 필요

나. 기본방향

- 동·서 생태축 연결성 강화를 위한 DMZ일원 산림훼손지 지속 복원 추진
- DMZ일원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산림관리대책 추진
- DMZ일원 군(軍)·지역사회·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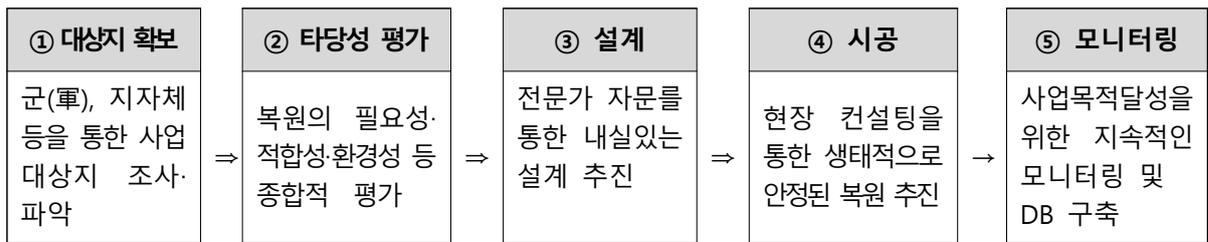
1) DMZ일원 지역의 체계적·종합적 산림관리 정책 추진

- 「제3차 DMZ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23~’27)」 세부추진계획 이행 강화

- 중장기 추진전략에 따른 DMZ일원 종합 산림관리 대책 시행
- DMZ일원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산림관리 추진
- '24년 DMZ일원 산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24.2월)
 - DMZ일원 합리적 보호·관리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 단기 산림관리
 - * DMZ일원 자원실태 변화조사 및 관리, DMZ일원 산림생태계 보호·관리 강화 등
 - DMZ일원 자원실태 조사·관리 및 산림생태계 보호·관리 강화 등

2) DMZ 일원 산림생태복원 체계 정착 및 사업 지속 추진

- DMZ일원 특수성을 고려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산림복원 추진
 - DMZ 동·서 생태축 연결을 고려한 산림복원 추진
 - DMZ일원 훼손지, 산림습원, 불모지 등 중점 복원 추진
- 사업 품질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DMZ일원 산림복원사업 체계 정립



- 관련 법률*에 따른 DMZ일원 산림훼손지 각 기관별 연 1회 실태조사 추진
 - DMZ일원 산림훼손지, 계류 및 산림습원, 황폐지 등 실태 조사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3) 산림복원 소재식물 증식 및 복원 기술

- 'DMZ일원 생태교란지 식물복원 연구'와 연계한 복원소재식물 증식 추진
 - '24년 복원사업지* 및 인근 남북산림협력센터를 활용한 소재식물 증식
 - * 산림복원사업시 복원소재식물을 직접 파종하여 차년도에 종자 수집 추진
 - 복원용 소재 식물 54종 확보 및 추가 발굴(국립수목원)
- DMZ 야생화벨트 유형별 시범사업지 조성 및 모니터링
 - 육군본부 등 군(軍)과 협의를 통한 야생화벨트 복원* 시범사업지(Test bed) 조성
 - * 국립수목원에서는 DMZ내 불모지 야생화벨트 복원 연구를 통해 식생기반재공법(SSAF-SOIL)을 이용 토질별(성토, 절토, 토사, 암반), 기반재 특성별 新복원공법 개발 중
 - 현장적용을 위해 시범사업지별 성장상태 모니터링 및 유형별 주요인자 분석
 - 시범사업지에서 수집된 자생종자 확보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 시 적용

4) 산림생태복원 적극 추진을 위한 민·관·군협력 네트워크 운영 강화

-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운영('24.5월)
 - DMZ일원 산림복원사업 추진시 정책적 개선사항 및 협의사항 등 논의
 - 주요 논의 사항 : ①복원 방향 논의, ②대상지 공동조사, ③진·출입 문제, ④폐군사시설 사전 철거 문제, ⑤사후관리, ⑥기타 건의사항
 - * 산림청, 학계(교수), 설계자, 군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
- DMZ일원 산림생태복원 사업과 연계된 군 관련기관과 '상시 협의회' 운영
 - 산림복원, 실태조사 등 업무 추진을 위한 DMZ 출입 승인 관련 협조 강화
 - * 육군본부와 체결한 'DMZ 일원지역 생태보전 업무협약('19.1.5.)에 따른 협업 추진

5) DMZ일원 산림생태복원 사업 체계적 홍보

- 정책홍보 컨설팅을 통한 산림생태복원 사업 홍보전략 수립
 - DMZ일원 산림생태복원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유도
 - DMZ일원 산림훼손 및 복원 관련 상황분석, 홍보메시지 개발, 콘텐츠 제작·배포

라. 추진일정

- DMZ일원 훼손지 산림복원 추진(38ha) : 1~12월
- 산림생태복원 기술 교육 및 현장 컨설팅 : 1~12월
- DMZ일원 훼손지 산림실태조사 추진(623,973ha) : 2~12월
- '24년 DMZ일원 산림관리 시행계획 수립 : 2월
- 'DMZ일원 산림복원 정책협의회' 운영 : 5월
- DMZ일원 산림복원 워크숍, 우수사례지 현장견학 : 6월
- DMZ일원 산림복원지 현장자문(산림생태복원 정책자문단) : 4~11월
- DMZ일원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추진(103ha) : 4~11월
- 육군본부와 '상시 협의회' 운영 : 연중
- '23년 산림복원사업지 점검 및 '24년 산림복원사업지 현장 지도 : 연중

7. 섬숲 산림복원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4)

목 표

- ◇ 훼손된 섬숲을 산림생태복원하여 한반도 생태계 건강성 회복
- ◇ 섬숲 산림복원의 유기적 체계 구축으로 산림복원품질 제고

가. 정책여건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산림생태계 복원 포함
 - 희귀·특산식물의 보고(寶庫)인 섬 지역 산림을 탄소흡수원으로 활용
- DMZ, 백두대간과 더불어 섬숲은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으로 복원 필요
- 기후변화와 방목·경작 등 개발행위로 섬숲 훼손 지속 및 가속
- 독도를 비롯한 섬숲경관복원에 대한 지자체와 국민적 관심 급증

나. 기본방향

- 생물다양성 증진 및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섬숲경관복원 실시
- 섬숲 고유의 생태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복원 추진
- 복원 설계에서 시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시스템 구축
- 독도 산림생태복원 추진으로 국민기대 부응 및 독도 영유권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1) 생물다양성 증진 및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섬숲경관복원 추진
 - '20년 수행한 실태조사 기반으로 심각한 섬숲 훼손지 우선 복원 추진
 - 섬면적 373,000ha 중 섬숲 훼손지 2,718ha(인위적 999ha, 자연적 1,718ha)
 - 전남은 훼손지 2,718ha 중 58.3%인 1,584ha로 가장 복원이 시급

- 독도 산림생태복원 추진을 통한 국토 영유권 강화
 - 제1차 기간 ('11~'14)에 이어 제2차 기간 ('21~'24) 지속 추진
 - 대상지 확대 및 사업지속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
 - 사업규모는 2개소(440m², 550m²), 독도 고유종인 사철, 섬피불, 보리밥을 채종·삽목 등으로 기후가 유사한 울릉도에 증식하여 생태복원
-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인 섬숲을 복원하여 산림생태계 기능 증진
 -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섬숲을 산림복원으로 탄소흡수원 확보
 - * 낙엽송(9.5tCO₂/ha/yr)보다 우수한 탄소흡수능력을 가진 붉가시나무(11.7tCO₂/ha/yr)와 같은 난대 상록활엽수종 이용 복원('20,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 섬의 지형과 식생을 고려한 맞춤형 자생식물 복원 추진

2)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및 후속 보완사업으로 복원목표 달성

- 첨단과학 기술 기반 모니터링으로 섬숲 경관복원 추진
 - 드론, 인공위성 등 원격 탐사 기반의 공간정보수집·관리 체계 마련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대응 능력 확인 후 복원 사업 확대 추진
 - 모니터링 기관의 수고·홍고직경 성장량을 활용하여 탄소흡수능력 확인
- **[신규]** 식생 회복력 및 복원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풀베기, 관수, 유해종 제거
 -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유지·관리 사업 추진으로 복원 목표달성
 - * 유해종은 생태계 교란종인 칩, 덩굴류 등

라. 추진일정

- 섬숲 산림복원 추진(74.3ha) : 연중
- 산림탄소흡수원복원 국고보조금 교부 : 1월
- '25년 산림복원사업 대상지 선정심의회 : 2월
- 섬숲 복원대상지 실태조사 : 3~11월(3월 계획 수립, 상·하반기 보고)
- 섬숲 복원사업 중앙설계 심의회 : 9월
- 섬숲 일원 산림 사업지 현장지도·점검 : 4월, 8월, 9월

8. 백두대간, 정맥 보호·관리기반 강화

(산림생태복원과, 042-481-8814)

목 표

- ◇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보전·복원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
- ◇ 백두대간 주민지원을 통한 소득 향상 및 보호·관리 주체 육성

가. 정책여건

- 백두대간은 DMZ, 도서지역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
 - 자연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고
-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호지역 보전·관리의 중요성 증대
 -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22.12월)에서 2030년까지 육상의 30%를 보전·관리함을 목표로 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나. 기본방향

- 백두대간의 체계적 보전·관리 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지속
- 기존의 백두대간 보호활동 및 주민지원사업의 내실화 추진
- 산림청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단위의 긴밀한 협력

다.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과 정맥의 체계적 보전·관리 기반 구축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백두대간법 시행령」 개정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누리집 게재
-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 '23년 백두대간보호 주요사업 평가 및 '24년 시행계획 수립
-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전협의 제도 운영 강화
 - 광역·지역협의체를 통한 산림훼손 최소화 및 이해갈등 조정

- 백두대간·정맥 자원실태변화조사로 보전·복원 정책 추진
 - 「백두대간과 정맥 자원실태변화 조사방법 가이드라인('19)」에 따라 표준화된 조사방법 적용
 -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백두대간(정맥) 보호 정책 수립

구분	'21	'22	'23	'24	'25	'26
백두대간	설악산 117km (향로봉-양양)	태백산 157km (강릉-태백)	속리산 172km (봉화-문경)	덕유산 154km (괴산-무주)	지리산 101km (장수-하동)	설악산 117km (향로봉-양양)
정맥	낙동 419km	호남,금남호남 520km	금북, 한남금북 465km	낙남 237km	한남, 금남 329km	한북 185km

2) 백두대간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 창출 확대

- 백두대간 개발제한으로 소득증진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사업 추진
 - 단기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으로 생산기반조성(6개도 32개 시·군)
-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소득감소분 지원 추진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벌채 유보지 이자 지급으로 산림자원 보호
-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를 통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지원
 - 다양한 백두대간 가치에 대한 홍보 및 교구자료 제작 배포(6개도)
- 단절된 한반도 산림생태축 복원으로 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
 - 관계부처 합동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 * 자고개, 한치재, 밤머리재 3년차 3개소 / 모래재, 밀목재 1년차 2개소

3) 백두대간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맥 인식 강화

- 심포지엄 개최 및 정책 기관 간 소통으로 합리적인 백두대간(정맥) 관리방향 제시
 - 백두대간(정맥)의 산림자원 중심으로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규명
- 백두대간 협·단체, NGO,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파트너십 대국민 홍보 강화
 - 협회 지역행사 및 토론회 등 홍보 추진을 위한 전시, 리플릿 지원 추진
- 백두대간의 다양한 가치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과 함께 백두대간 사랑운동 실시
 - 지역주민, 대학생, 관련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보호의식 증진 및 홍보

5) 백두대간 사업 현장점검으로 품질제고 및 정책점검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6개도 현장점검
 - 사업추진 진도,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백두대간·정맥 자원실태조사 용역 현장토론회 개최
 - 용역 진행 상황 확인, 애로사항 청취, 담당자 역량 강화 등

라. 추진일정

-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추진(5개소) : 연중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운영 : 연중
- '23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 1월
- 백두대간보전분야 담당자 시책교육 추진 : 2월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한 표준입목가격 통보 : 3월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홍보자료 및 교구 지원 : 3월
-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지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 3 ~ 11월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5월
- 백두대간 및 정맥 자원실태변화 조사 현장토론회 : 6월
-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대상지 선정심의회 : 7월
- 백두대간(정맥) 생태축복원 중앙설계 심의회 : 9월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현장 지도·점검 : 10월
- 백두대간 사랑운동 추진 : 11월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확정 : 12월

9.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관리

(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목 표

- ◇ 기후위기 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대
- ◇ 도시숲 조성사업 사후관리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추진

가. 정책여건

- 미세먼지, 폭염, 환경오염, 휴식공간 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으로서 도시숲의 기능 부각
- 탄소흡수 및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내 숲 조성 필요성 인식 증가
 - * 나무 1그루당 연간 이산화탄소 2.4kg, 산림 1ha당 온실가스 6.9톤 흡수
 - * 숲은 한여름 도시의 기온을 3~7℃ 낮추고, 습도를 9~23% 높임
- 우리나라의 생활권 도시숲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여 지속적인 확충 필요
 - * '21년말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11.48㎡이며, 서울(4.97㎡), 경기(8.84㎡) 지역은 평균 이하로 조사됨

나. 기본방향

- 온실가스 흡수,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휴식·건강증진 공간 제공 등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적 조성·관리 강화
- 도시숲의 환경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경관개선 및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디자인 등을 통해 도시숲의 품질 향상
- 산림과 도시숲의 복합적인 기능 발휘, 지역활성화 기여 등을 위한 다양한 목적형 도시숲 확대 및 타부처 연계사업 확대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도시 및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

□ 국유지 도시숲 조성(착수 1~3월, 완료 12월)

- 이용도가 높은 도심의 국유지를 활용하여 녹색 인프라 확충
 - (사업규모) 조성 25ha, 관리 10ha, (사업비) 조성 62.5억, 관리 1.2억
 - *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 지역과 광역도의 시 지역 사업지 우선 선정
- 산림훼손지 복원, 생태네트워크 연결, 탄소흡수원 확충, 기후변화 대응,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기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시숲 유지보수 및 체험활동 강화
 - 도시숲 내 안내판과 산책로 등 보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 제고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착수 1~3월, 완료 12월)

- 도시열섬·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 생활권 및 주변 지역에 숲 조성
 - (사업규모) 17개 광역시·도 117개소 174ha, (사업비) 870억
 - * 조성단가: 1ha 당 10억원(국비 5억원), 개소당 평균 조성 면적: 1.5ha
 - * '23년 이후 사업으로 명칭 변경(미세먼지 차단숲 → 기후대응 도시숲)
-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열섬 완화숲, 도시 탄소저장숲 등 유형별 추진
 - 미세먼지 저감숲 :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
 - 도시열섬 완화숲 : 도심 고온지역 및 포장공간(도로, 광장 등)을 활용한 숲 조성
 - 도시 탄소저장숲 : 도시지역 대규모 유휴지 숲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 산업단지, 도로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도심 고온지역 내 유휴지 및 포장지역, 도시 주변 대규모 유휴공간에 숲 조성

□ 도시바람길숲 조성(착수 1~3월, 완료 12월)

-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를 목적으로 도시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바람길숲 조성
 - (사업규모) 전국 19개 도시, (사업비) 도시당 100~200억('22~'25년)
 - * **[신규]** 도시당 200억(설계 10, 시공 190), **[보완]** 도시당 100억(설계 5, 시공 95)
 - * '22~'25년 8개소(도시당 200억), '23~'25년 9개소(도시당 100억), '24~'27년 2개소(200억)

- 바람 생성숲(외곽산림) - 디딤숲·확산숲(도시내 거점숲) - 연결숲(생성숲과 거점숲 연결)을 조성하여 도시 내에 맑은 공기 순환
 - 생성숲 : 도시 외곽 산림으로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는 역할
 - 연결숲 : 찬공기가 도시내부로 잘 유입되도록 하는 바람통로 역할
 - 디딤·확산숲 : 도심 내 거점숲으로 찬공기의 원활한 이동 지원
- 17개 도시에 시범사업('19~'22년) 후 2차 사업('22~'25년) 추진
 - '24년 : 17 도시 시공, 2개 도시 설계(국비 462억)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착수 1~3월, 완료 12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숲 조성을 통해 교통안전, 미세먼지와 폭염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및 체험의 장 제공
 - (사업규모) 69개소, (사업비) 74억(개소당 1~4억, 국비 50%)
- 도로 다이어트, 아파트·공공기관 담장 없애기, 보도 및 가로녹지 정비 등과 연계하여 넓은 폭의 숲 조성
 - 차도를 좁히고 자투리 공간에 숲을 조성하여 인도와 차도 분리 가로 띠녹지, 계절별 꽃피는 관목 식재, 옹벽 벽면녹화 실행

2) 도시숲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후관리 강화

- **[신규]**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 제정 및 배포(상반기)
- 사업 추진실적 모니터링(분기별) 및 현장점검(수시)을 통한 현장의 문제 해결 지원 및 사업 품질 관리
- '23년 조성 사업지에 대한 도시숲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상·하반기)
 - 수목 생육상태, 관수, 시비, 제초, 시설물 관리 등 현황 점검
 - 차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사업품질 등에 대한 점검 결과 반영
 - * 도시숲지원센터, (사)가로수협회 등 도시숲경관과 소관 전문기관 활용
- 안전사고 예방 추진상황 지도점검 및 예산 집행관리 감독 강화
 - 전년도에 사업지 사전 선정 및 지방비 편성 적기 완료
 - * 보조사업 수요조사(5~6월) → 적정성 검토 → 사업지 선정(9월)
 - 수요조사 시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및 갈등 해결 선행
 - 분기별 광역지자체(영상) 및 기초지자체(대면) 집행점검회의 개최

3)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연계사업 추진

-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산업부) 등 부처 협업과제 적극 참여
 -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추진
 - * 참여부처: 산업부, 국토부, 법무부, 기재부, 중기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 소방청
 - * 협업사업 참여 : '21년 0.5ha → '22년 5.3ha → '23년 30ha → '24년 38ha
- ‘다부처 연계형 지역 활성화 사업’ 등 지역발전 협업사업 지속 참여
 - 자녀안심 그린숲 등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활성화 협업사업 추진
 - * '22년 부처 협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 * 참여부처 : 행안부, 교육부, 농식품부, **산림청**, 경기도, 화성시, 의성군 등
- 지자체 역점사업 등 도시숲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강화
 - 미군부대 반환 부지 등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 적극 지원
 - * 사례 : 춘천시 캠프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인천시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
 - 도로, 철도 등 활용 지자체 명품 도시숲 조성사업 등 지원
- **[신규]** 공공기관 ESG와 연계한 탄소흡수원 확대 협력사업 추진
 - 공공기관 소유 도시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숲 조성 추진
 - * MOU 체결 : 한국자산관리공사('23.6.8.), 한국도로공사('23.9.19.), 한국토지주택공사('23.11.23.)

라.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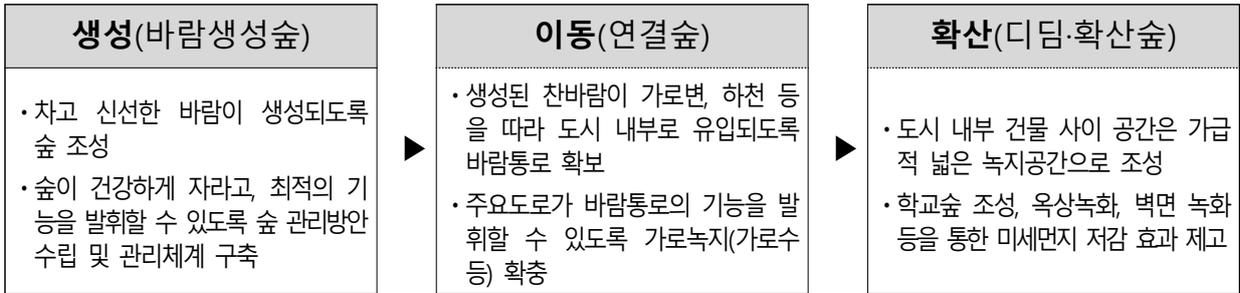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 제정 및 배포 : 상반기
- '24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 2~12월
- 도시숲 조성사업 집행점검 회의(광역 및 기초) : 분기별
 - 광역 지자체(영상) : 1월, 4월, 7월, 10월
 - 기초 지자체(대면) : 5월, 11월
-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 지도·검증 : 연중
- 도시숲 조성사업 관리현황 실태조사 : 상·하반기(연 2회)
- 산단대개조, 지역활성화 사업 등 타부처 협업사업 추진 : 연중
- '25년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 6~12월
 - 기후대응 도시숲 대상지 수요 조사 : 5~6월
 - 기후대응 도시숲 적합성 검토 : 7~9월
 - 기후대응 도시숲 차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 9월
 - 국유지 도시숲 수요 조사 및 사업대상지 선정 : 10~12월
- 도시숲 조성사업 실적 평가 : 12월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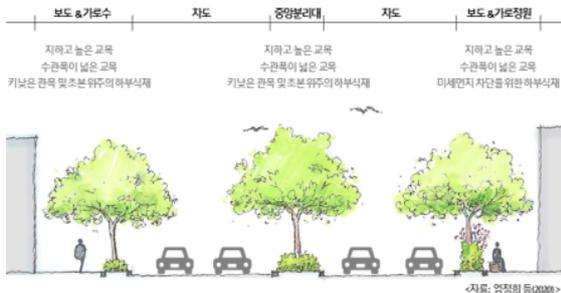
도시바람길숲 구성요소와 조성방식

- (생성숲) 도시외곽의 대규모 산림 등 녹지지역으로 숲의 산소 발생, 온도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해 맑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는 역할
- (연결숲) 도시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맑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내부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의 통로 역할
- (디딤·확산숲) 도시내부에 조성된 대규모 녹지로 미세먼지를 흡수·흡착, 저감하고 도시내부로 유입된 찬공기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

<도시바람길숲 구성요소별 조성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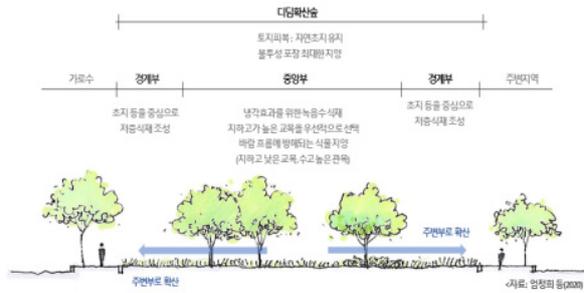


<도시바람길숲 구성요소>



<연결숲 조성방식>

<바람생성숲 조성방식>



<디딤·확산숲 조성방식>

10. 도시숲 등의 질적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도시숲경관과, 042-481-4226)

목 표

- ◇ 「도시숲법」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정사업 추진 및 제도 정비
- ◇ 도시숲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지표 측정·평가 운영

가. 정책여건

- '19년부터 도시숲의 양적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조성된 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도 증가
- 전국에 조성된 도시숲등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측정·평가를 통해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필요
- 도시숲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숲의 질적 향상 유도 필요

나. 기본방향

- 도시숲등 제도·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시숲법」 등 제도 정비
-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 실시
- 모범도시숲 인증제 운영을 통해 지자체 도시숲 품질 향상 유도
- 도시숲 실태 및 현황조사 등 법정 사업의 실효성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도시숲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도시숲법」 등 제도 정비

- [신규]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제도를 선정 제도로 변경해 규제완화
- 모범도시숲 인증제도를 도시숲의 품질 평가제로 변경

- 전년도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Q&A를 포함, 매뉴얼 및 교육 자료 보완(1월)
 - 표준지 선정 기준, 지표별 측정자료 확인 방법(사례) 등 추가·보완
- '23년 제정된 고시에 대한 현장 적용결과를 반영하여 개선사항 발굴(11월)

2) 도시숲의 질적관리 등 도시숲 정책 법정 사업 추진

-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측정·평가 체계적 운영(1월)
 - 측정평가 매뉴얼 제작, 모니터링 및 교육 실시(도시숲지원센터, 산림과학원)
 - * ('23)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24) 광주, 전남, 전북 (국비 17.6억 지원)
 -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지표 측정·평가 미비점 및 개선방안 도출
 - * 관리지표 4개 분야 24개 지표에 대한 동일한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도시숲등 실태조사·공간DB구축 위탁(3년차) 시행 및 지속 보완(3월, 4.5억)
 - 영상·위성을 활용한 전국 도시숲등 실태조사를 통해 공간 정보를 구축하여 행정통계, 관리지표 측정평가 기초자료 활용
 - * (1년차) → 서울, 부산, 인천, 강원 → (2년차) 경기 → (3년차)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 (4년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5년차) 경북, 경남

3) 모범도시숲 인증제 운영을 통한 도시숲 품질향상 유도

-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도시숲지원센터 위탁 운영(5월, 1.5억)
 - 인증심사단 구성, 매뉴얼 마련 및 인증 운영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 도시숲 가꾸기와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정책 시너지효과 제고
- 모범도시숲 인증제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평가단 적극 참여 유도
 -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 구성 및 현장평가단 구성·운영

라. 추진일정

- 도시숲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1~12월
- 모범도시숲 인증 사업계획 수립 : 1~2월
-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업무 매뉴얼 개정 : 1월

-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담당자 사전 교육 : 1월
- 전국 도시숲 현황조사 통계 작성지침 시달 : 2월
- 도시숲등 실태조사·공간DB 구축(3년차) 사업 착수 : 3월
- 관리지표 측정·평가 보조금 교부 및 사업자 교육 : 2~5월
- 모범도시숲 인증사업 공모 및 접수 : 5월
- 모범도시숲 인증사업 서류 및 현장심사 : 5~8월
- 모범도시숲 인증 : 10~11월
- 관리지표 측정·평가 및 운영 모니터링 : 연중
- 도시숲 공간정보(3년차) 구축 및 현황 실태조사 완료 : 12월

□ 개요

- 근거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도시숲등에 대한 관리지표를 측정·평가하고,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매 10년)에 반영하도록 함

【 도시숲등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단계별 업무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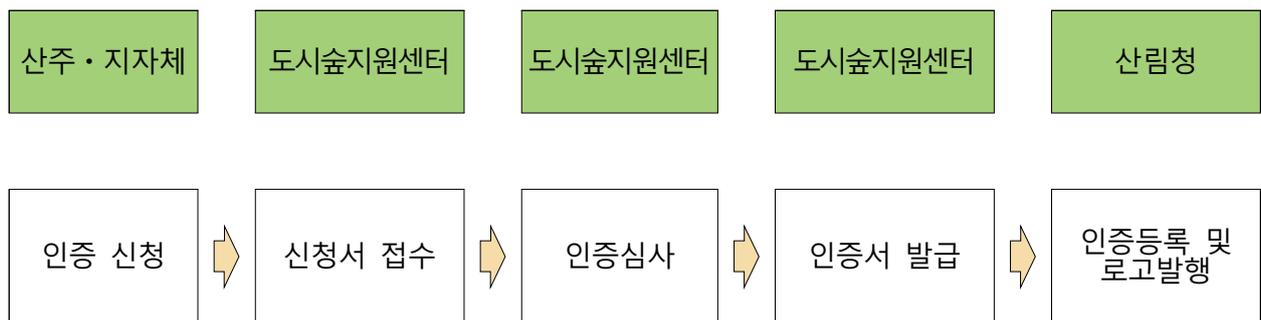
순서	단계별업무	관련법	주요내용		
도시숲등 기본계획(10년마다 산림청장)법 제5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10년마다 지사체장)법 제6조	세 부 운 영 내 용	실태조사 현황통계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시행령 제6조	○ (실태조사) 정기조사(10년) 수시조사 실시 * 조성관리계획 수립 직전년도 실시 ○ 현황통계조사(2년마다) * 행정통계→공간통계로의 이행을 위한 DB구축 ('22~'26)
			↓		
			기본계획 조성관리계획	법 제5조 법 제6조	○ 제3차 도시숲 기본계획('28~'37) 수립 * 자치단체장이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		
			도시숲 기능구분	법 제 6조 시행령 제3조	○ 7대 기능 - 기후보호형, 경관보호형, 재해방지형, 역사·문화형, 휴양복지형, 미세먼지 저감형, 생태계 보전형
			↓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관리	법 제6조 법 제11조 법 제14조	○ 기능별 도시숲 조성관리 지침 ○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도시숲 표준품셈 적용 등 체계적 조성·관리			
↓					
관리지표 측정·평가	법 제11조	○ 도시숲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고시 ○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수행 (5년 주기) ○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반영			

□ 개요

- 근거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
- 도입목적 : 도시숲의 조성·관리를 촉진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 등 도시숲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대상 :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 심사위원 :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 심사(모범도시숲 평가단 참여)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 및 선정
 - * 인증 기준 : 현장심사 결과 70점 이상, 인증 평가단 및 인증위원 의견 반영

□ 인증절차 및 규모

○ 인증절차



- 인증제 운영 : 5년주기 재심사를 통해 인증의 신뢰성, 영예성 유지
- 인증 규모 : 연간 5~10개소 (인증 안내판 설치 포함)

11. 도시숲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도시숲경관과, 042-481-1817)

목 표

- ◇ 도시숲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추진
- ◇ 국민 참여형 도시녹화운동·캠페인 확대 및 홍보 강화

가. 정책여건

- 「도시숲법」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도시숲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및 상호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필요
 - * 도시숲지원센터(3개소) : (사)산지보전협회, (사)생명의 숲, 국립세종수목원
- 정부·지자체 등 관 주도에서 벗어나 시민·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의 활성화 필요
- 코로나로 위축된 도시숲사랑 캠페인 및 실무 워크숍을 도시숲 우수 조성지에서의 현장 중심 행사로 변화 필요

나. 기본방향

- 도시숲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및 센터별 역할 강화
- 개인·단체·기업의 도시녹화 참여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 다양한 콘텐츠 운영 및 기획보도 등을 통해 도시숲 정책 홍보 강화
- 온-오프라인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도시숲 정책 공유·소통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도시숲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센터별 역할 강화

- 센터별 설립목적 및 특성에 따른 역할·임무 차별화
 - 센터의 수행역량(조직·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 특성화

- 산지보전협회(공간정보구축, 모범도시숲 인증), 생명의숲(도시숲아카데미), 국립세종수목원(관리지표 측정·평가 운영)
- 도시숲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연중)
 -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와 연계 지자체별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운영
 -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 : 경기 안산시- 안산환경재단('22.12.27)
 - 도시녹화운동 전개 및 기부채납사업 주도 등 비예산 사업 활성화
 - * 기업·시민 참여 설명회 및 파트너십 체결,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도시숲지원센터별 특성에 맞는 도시숲사랑 캠페인 추진
 - * 도시숲 열린세미나, 어린이 대상 시민탐사대, 도시숲 걷기행사, 도시숲아카데미 등

2) 국민 참여형 ‘도시숲사랑 캠페인’ 및 홍보 확대

- 도시숲지원센터 함께 온라인 ‘도시숲사랑 캠페인’ 실시
 - 국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 및 대상별 도시숲사랑 캠페인 전개(연중)
 - * 유튜브 제작,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이벤트 등 산림청 인스타, 유튜브 채널 활용
- 신문·방송사와 공동으로 도시숲의 중요성·효과 기획홍보 추진(연중)
 - 대상별·테마별 홍보 아이템 개발 및 캠페인과 연계한 홍보활동 전개
- ‘국민의 숲’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활용하여 도시숲 사랑운동 실시

3) 도시숲 우수사례 전파, 아이디어 발굴 공모사업 추진

-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선정 및 공유(7~10월)
 - 도시숲, 가로수, 기후대응 도시숲 등 3개 부문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등을 종합 평가
 -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및 우수 지자체 포상
- ‘제16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1~9월)
 - 도시숲 계획·설계 등에 관심 있는 일반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
 - * 대학생 등의 학기 수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초에 대상지 수요조사 및 공모전 추진
 - 7개 작품을 선정(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입선 2)하여 시상 및 상금 지급

4) 교육훈련·워크숍을 통해 도시숲 정책 역량배양 및 소통 강화

- 2024년 도시숲 정책 담당자 및 도시녹지관리원 교육과정 운영
 - 도시숲정책 담당자(2월), 도시녹지관리원(3월) 현장 교육 실시
 - 도시숲정책분야 공무원 대상 교육일정을 확대 개편(2일→3일)
- 2024년 도시숲·정원 정책 담당자 워크숍(12월)
 - 도시숲 정책·사업 발전방향 토론 및 우수사례 정보교류 등 소통 기회 마련
- 도시숲 정책담당자 공무 국외 정책연수(5월)
 - 녹색도시 우수사례 기관, 도시숲 유공자 우선 기회 제공, 정책 자료 수집

라. 추진일정

- 산림청 지정 도시숲지원센터 간담회 : '23. 12월
- 설계 공모전을 위한 도시숲 대상지 선정 : '23. 12월
- 제16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추진 : 1~9월
- 도시숲 정책 담당자 및 도시녹지관리원 실무교육 : 2~4월
- 도시숲지원센터별 도시숲사랑 캠페인 추진 : 연중
- 국민참여형 도시숲 정책 기획홍보 추진 : 연중
- 도시숲 정책담당자 공무 국외연수 : 5월
-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및 선정 : 7~10월
- 2024년 도시숲 정책담당자 워크숍 : 1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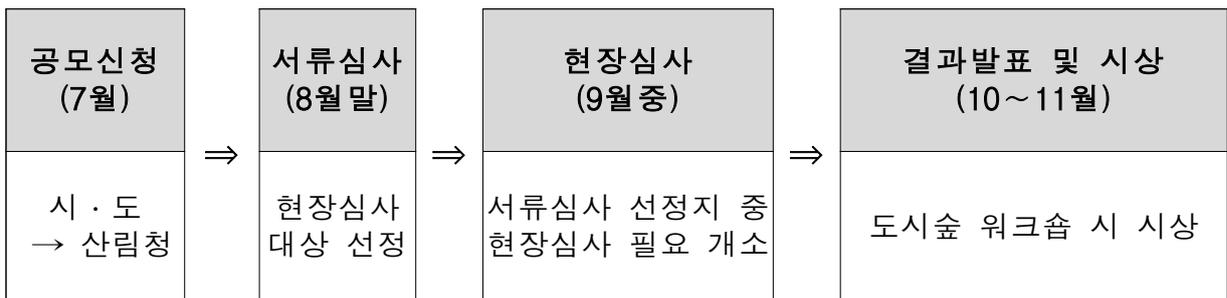
□ 배경 및 목적

- (배경) 도시숲·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고 있는 우수사례 선정
- (목적)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사업품질 향상에 기여

□ 개요

- 대상 : 최근 10년간 지자체에서 조성한 도시숲 및 가로수
 - 2014년도 이후 국비나 시비, 민간참여 등으로 조성한 도시숲(도시숲, 공원 등), 가로수, 기후대응 도시숲
 - * 도시숲(1ha이상), 가로수(구간 500m이상), 기후대응 도시숲('24.7.31. 이전 준공)
- 기간 : 2024년 7월 ~ 10월
- 주최 : 산림청

□ 추진일정



- * 현장심사 :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곳 중 현장심사 필요 개소에 대해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 후 최종 순위 결정

12. 가로수 조성·관리 체계 강화

(도시숲경관과, 042-481-4227)

목 표

- ◇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로 다양한 기능 극대화
- ◇ 지역 특성·기준을 고려한 관리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홍보

가. 정책여건

- 열섬효과 완화·미세먼지 저감 등 가로수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관리의 중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로 가로수의 다양한 기능 발현
- 가로수길 명품화를 통한 지역별 관광 자원화 기반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 역할을 강화한 가로수 정책 추진

- [신규] 「도시숲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지침 제정 및 마련
 -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될 사항, 진단조사 대상 및 방법·절차
 - * 수종 선정·수목 규격·식재 방식, 가지치기 노선 등 / 경관영향, 수형·피해 분석·진단 등
 - 가로수 연차별 시행계획·진단조사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시
 - *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타법에 의한 가로수 사업 시 산림부서 사전 협의 등
- [신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국유지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객관성·실행력을 강화
 - 지자체 도시숲·가로수 계획, 가지치기 등 주요 정책·사업 심의 강화

2) 가로수 조성·관리 교육 및 연구 강화

- 가로수 담당자·사업자 대상 실습 교육 및 5개 권역별 교육(2~5월)
 - * 산림교육원·지방공무원 교육기관, 온라인교육(상시) 실시
- 연구기반 정책 수립 및 신규 연구 과제 실행(산림과학원, '23~'25년)
 - (정책) '가지치기 유형별 활력도에 따른 관리 기준' 제시
 - [신규] '가로수 통합관리 지침마련을 위한 관리 기준·지표 개발' 연구
 - * 가로수 공간관리 기술, 건강성 평가지표, 현장 적용 유지·관리 체계 등(산림과학원)

3)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현장 교육 및 소통 강화

- 지자체담당자 토론회 및 교육, 현장 점검으로 문제점 방지
 - 계절별 간담회(상하반기), 정기 교육(교육원 2회), 현장 점검(30회)
- 가로수 관련 시민단체와의 정기적 소통 실행(간담회 등 참여)

4) 도시 위험목 재해예방·관리 시스템 운영

- [신규] 태풍·호우 대비 위험목 쓰러짐 예방 안전진단 신규사업 발굴
 - * 분기별 정기 및 긴급점검 실행, '비파괴 기법을 활용한 위험목 진단' 예산반영
- '가로수 관리시스템¹⁵⁾' 활용성 강화로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추진

5) 선제적 가로수 홍보로 긍정적 이미지 확산

- 계절별 가로수 관리 문제점 대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 * (겨울철) 강한 전정으로 인한 불량한 가로수 경관,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한 가로수 도복과 보행자 및 차량 피해 발생,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약취 발생 등
- 가로수 관리 교육 영상 보급 및 가로숲길 명소 지속 발굴·홍보

15) 자료보기 : map.forest.go.kr/portalo에서 '가로수 관리시스템' 확인

라. 추진일정

- 도시숲등 표준조례(안) 마련, 제시 : 1월
- 가로수 기술자과정 교육(산림교육원) 및 권역별 교육 실시 : 2~8월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23년말) 보고 : 2월
- 가로수 조성·관리 간담회 개최 : 반기별
- 도시숲법 시행령 개정 추진 : 6월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우수사례 선정 : 10~11월
- 관련 부처 간 가로수 업무 협의 및 법령·규정 개정 : 연중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장 점검 : 연중

13. 산림과 도시의 다양한 경관서비스 기반 조성

(도시숲경관과, 042-481-4227)

목 표

- ◇ 산림의 경관기능 활성화로 다양한 경관서비스 기반 구축
- ◇ 국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경관지도 제작

가. 정책여건

- 국민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산림경관 수요 증가
- 도시경관, 산림치유·관광·재해예방 등 경관의 활용범위 확대

나. 기본방향

- 가치있는 산림과 도시경관 창출 및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 경관정책 연구·시범사업을 병행하여 단계별 통합 시스템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도시 경관 분석·활용 체계 구축

- 산림경관 통합관리 체계 및 지도 제작 방법 등의 매뉴얼 제작
 - 경관 가치 요인·가중치 적용 등 공간 분석 방법 및 관리방안 등
 - * 우수경관 관리지역, 경관개선관리지역, 경관유지 관리지역
- 산림경관 통합관리 시스템(도면) 구축('25~'27년) 기반 마련
 - 지자체 경관 정책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 경관분석·유형 개발('23) → 지침마련·예산확보('24) → 전국지도 구축('25~'29)
 - 5년간 연차별로 전국 산림경관 현황도 작성

2) 국가·지자체의 경관 수요·정보와 연계한 우수경관지 확대 발굴

- 경관·인문가치 등이 우수한 산림 경관지 발굴, 관광상품화
- 산림경관과 산림재해·산림복지 등과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 제공

<단계별 추진체계>

	기존 연구·정책	1단계('23)	2~3단계('25~'29)	산림·도시경관통합관리(가칭) 숲 2030 View Plan
과제 (용역)명	- 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09) - 국가산림경관벨트 구축 기본계획('12) - 산림경관 종합대책('18)	산림경관 통합관리 계획 및 시스템(지도) 구축 방안	통합 산림경관관리 플랫폼 구축	
주요 내용	- 경관 개념과 정의, 기준 - 유형별, 지정지역(100개소) 조사, 특성분석, 관리계획 -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사업기준 - 경관자원 육성, 우수지역 '국가산림경관벨트' 선정 관리	- 도시포함 경관분석 (도시생태 도시기본경관계획 등) - 경관 전문가 의견조사 - 경관요인·공간분석, 관리 기준·평가 기준 마련 - 인벤토리별 맵 시범구축	- 산림·도시 통합 경관 운영·관리 세부 계획 - 전국 경관 도면 구축 완료	
사업 관리	- 복합경관숲 산림조경숲(군특) - 백두대간 대관령 경관숲('18) - 파주헤이리 경관숲('19)	- 관리지역 지정, 활용,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경관관리 신규사업 발굴 추진	
시스템 구축	- 자원목록화, 산림경관지도 구축, 정보제공(미실행)	시각(지도) 시스템 구축 (청주, 대전 등 시범구축)	AI기반 시스템 구축	

라. 추진일정

- 경관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1분기
- 산림경관 통합관리 시스템(지도) 매뉴얼 및 관리 방식 개발 : 12월
- 산림경관 통합관리 시스템(지도) 제작 예산 요구 : 연중

14. 나라 꽃 무궁화 보급 확대 및 국민 인식 제고

(도시숲경관과, 042-481-4227)

목 표

- ◇ 생활권 주변 무궁화 보급 확대와 관리 강화
- ◇ 다양한 콘텐츠와 진흥사업으로 국민 친화적 무궁화 실현

가. 정책여건

- 무궁화 진흥계획('23~'27)¹⁶⁾에 따른 무궁화 정책 체계적 이행
-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볼 수 없어 국민 선호도가 낮은 실정
- 무궁화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콘텐츠 활성화 필요

나. 기본방향

- 생활권 주변 우선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다양한 콘텐츠 개발·운영으로 화제성 및 이슈화
- 무궁화 도시 등 무궁화로 특성화된 신규사업 발굴

다. 세부추진계획

1) 식재 확대 및 관리강화

- '무궁화 진흥계획('23~'27)'에 따른 연차별 계획 수립('23.12월)
 - * 생활권 무궁화심기 확산, 수요 확대 및 산업화 기반 마련, 정보제공 서비스체계 구축, 축제·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 민·관협력 및 상징성 강화
- 이용객이 많은 지역 내 다양한 규모·형태 무궁화동산 조성(12월)
 - * 17개소 조성(개소당 0.5~2억원 / 소속기관 2개소, 지자체 15개소)

16) 자료보기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휴양복지→'무궁화 자료실' 에서 확인

- 설계·품종선정 등 실무담당자 맞춤형교육 및 동산 조성사업 점검
- 학교 대상 무궁화 무상보급 후원 협력기관(기업·단체) 신규 발굴
- 무궁화 명소 발굴·선정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및 포상 실시

2) 진흥사업을 통한 국민 인식 제고

- 지자체 행사와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화제성 및 이슈화¹⁷⁾
 - 지역행사 개최지와 공동으로 새로운 콘텐츠의 소규모 축제 개최
 - * 무궁화 품종 및 콘텐츠 전시회, 무궁화 공예작품 체험관 등
 - 품종 다양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무궁화 품종 품평회’ 개최
 - * 반려식물, 정원·조경 소재 활용 유도, 지자체 축제와 연계 추진
- 연중 무궁화 행사 지속 추진 및 신규행사 발굴
 - 숨은 무궁화 명소 발굴 공모(2~9월),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4월),
찾아가는 무궁화 축제(4~7월), 무궁화 전국축제·무궁화 품종 품평회(8월)

3) [신규]‘무궁화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무궁화 도시 지정 및 운영·평가 지침 기초안 마련(12월)
 - * 무궁화 도시 정책 방향, 지정기준, 운영·평가 지침 마련

4) 무궁화 올바른 정보 제공

- 무궁화의 올바른 식재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 (일반국민) 무궁화 바로알기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연중)
 - (담당공무원) 무궁화 식재 관리 전문교육 과정 연 2회 운영
 - (초등학생) 무궁화 바로알기 체험·교육 ‘찾아가는 무궁화축제’(6개교, 3천명)
 - * 실물재현 무궁화와 유물 전시, 만들기체험 및 특별 강연 구성
-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무궁화 품종식별 기준 핸드북’ 제작
 - * 주요 50여 품종 대상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기준 정립(과학원 공동)

17) '23년 추진실적 :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중앙행사(전남 순천), 지역행사(부산, 경기 수원, 전북 완주)

라. 추진일정

- '23년 무궁화 동산 조성 및 관리실적 보고 : '23. 12월
- '24년 연차별 무궁화 진흥계획 수립 : 1월
- 제34회 나라 꽃 무궁화 축제 추진 : 2~9월
- 내 곁의 무궁화(숨은 무궁화 명소 발굴) 용역 : 2~9월
- '24년 무궁화 동산 조성 실무담당자 간담회 : 2월
- 무궁화 식재 관리 실무자 시책교육과정 운영 : 3월, 9월
- '24년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지 점검 : 반기별
- 찾아가는 학교 속 무궁화 축제 추진 : 4~7월
- 제11회 나라 꽃 무궁화 명소 선정 : 7~9월
- 무궁화 품종 품평회 개최 : 8월
- '25년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 7~9월
- 무궁화 품종식별 기준 핸드북 발간 : 12월

15. 지속가능한 수목원 운영·관리 기반 구축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1831)

목 표

- ◇ 국가차원의 산림생물자원 체계적 보전·관리·이용
- ◇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회 확대

가. 정책여건

- 생물다양성협약(CBD) 발효 이후 식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자국의 유용식물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가속
- 영국, 미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식물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식물 수집·관리 전략 미흡
- 세계식물보전전략(GSPC) 등 국제협약 이행요구에 따라 수목원은 국가생물다양성보전의 공공기능을 이행하는 공간으로 인식
- 2023년 국내 등록 수목원은 73개소로 각 수목원의 역할분담과 기능강화 필요
 - * 국립수목원 4개소, 공립수목원 37개소, 사립수목원 29개소, 학교수목원 3개소

나. 기본방향

-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산림 식물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확립
- 수목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산림식물자원의 보전·이용 활성화
- 기후·식생대별 국가수목원의 확충과 지역별 국·공립수목원의 특성화, 사립수목원 운영 활성화
- 수목원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향상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다. 세부추진계획

1) 희귀특산식물 등 국가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기반 마련

- [신규]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 지정·지원 제도 시행('24.6월)
 - 희귀·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복원·정원 소재 공급
 - * (지정절차) 신청 → 현지조사 → 전문가조사(필요시) → 지정·고시(5년/갱신)
 - 희귀·특산식물 권역별 조사·수집 및 중복보존 운영관리사업 추진
 - * 140종/년 종자·생체수집 → 권역별 6개 수목원에 중복보존
- [신규] 국립수목원 및 등록수목원이 보유한 식물자원 현황조사 및 수집
 - 수목원보유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5년마다 조사·수집하여 DB구축
 - * (수목원 현황) '23년 기준 73개소(국립 4, 공립 37, 사립 29, 학교 3)
 - **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고도화로 관련 정보 대국민 개방 추진
- 시드볼트 종자확보 다각화로 자생식물 종다양성 보존 강화
 - * ('24목표) 희귀 338종(59%)→69%, 특산 186종(52%)→62%, 자생 1,907종(65%)→68%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온실 및 증식온실 신축
 - * 건축비 등 예산(1,590백만원) 확보로 식물자원 보존·관리기반 강화

2) 기후변화 대응 국·공립수목원의 산림식물자원보전 역할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물자원의 다양성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식생대별 국가수목원 특성화

수목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국립세종 수목원	국립한국자생 식물원	국립새만금 수목원	국립난대 수목원
특성화	백두대간 산림생물자원 보전·활용	온대 중부 산림생물자원 보전·활용	자생식물 및 멸종위기식물 보전·활용	해안·간척지 산림생물자원 보전·활용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 보전·활용

- 지역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립수목원 특성화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모니터링 네트워크 참여로 역량강화
 - 지역 자생식물 및 희귀·특산식물 중심의 현지 외 보전·관리 강화
- 수목원·식물원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 강화
 - 식물원·수목원협회, 대학교수 등 민간단체 및 전문가 정책 참여 활성화
 - 각 수목원의 기능·특성을 고려한 역할분담 및 지원방안 마련

3) 산림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문화 확산 및 소재 발굴

- 자생식물 활용기반 지역발전·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상생사업 추진
 - 지역농가 위탁재배 식물을 이용한 지역상생형 문화행사 개최
 - * 자생식물활용 지역상생사업(40억원) : 야생화축제 개최(경북 봉화, 세종시)
- 산림식물자원의 수요중심 산업화 소재·정보·기술 민간협력 강화
 - 정원분야 자생식물소재 발굴, 활용기술 개발로 산업계 지원 확대
 - 도시숲, 개인정원 등 새로운 녹색공간에 자생식물 식재를 유도
- 자생식물활용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확대 등 산업화 기반 마련
 - 지역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재배기술 보급 및 현장기술지도, 유통 네트워크 구축하여 판로지원

4) 공·사립수목원의 지속가능한 경영 활성화를 위한 수목원서비스 강화

- 수목원 미래인재를 양성하여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요구에 대비
 - 수목원전문가를 양성하는 인재양성사업 추진(50명)
 - *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 천리포수목원, 신구대학교식물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 양성인력(누적) : ('13) 46명 → ('17) 234명 → ('20) 379명 → ('23) 528명
- 지역 산림식물자원을 보전하는 공·사립수목원의 경영 활성화 지원
 - 지자체의 각종 축제, 행사 등에 참여(식물전시·관리)하는 등 공·사립수목원 연계 방안 제시
 -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증식·보전 및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수목원코디네이터(63명/년) 지속 지원
- 공·사립수목원의 교육프로그램 서비스 확대·강화 지원
 - 수목원교육프로그램의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공·사립수목원의 지속가능한 경영활성화 지원 필요
 -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공·사립수목원에 보급(3.4억원)
 - * 프로그램 선발 및 매뉴얼 제작(5개), 프로그램담당자 교육 및 운영(5개소)
- 식물종보전 등 수목원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수목원전문가와 경영주체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
 - 자생식물 활용 생태복원사업과 지역 사립수목원 연계 방안 마련
 - 해외 수목원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해 사립수목원 선진화 유도

라. 추진일정

- 수목원정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연중
- 국·공·사립 수목원 간담회 개최 : 연중
- 사립수목원 경영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연중
- 수목원 보유식물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DB구축 : 연중
- 2023년 수목원진흥 시행계획 수립 : 3월
- 수목원코디네이터 교육(국립백두대간수목원) : 4월
- 풍수해(태풍·호우) 대비 수목원·식물원 점검 : 6~9월
-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 현장 지도·점검 : 9월
- 우수 수목원교육프로그램 선발 및 보급 : 9월

16.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민간협력 플랫폼 강화 및 경영개선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1831)

목 표

- ◇ 수목원·정원 정책의 현장지원을 위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역할 강화
- ◇ 수목원·정원 ESG 기반의 민간성장 지원 및 경영혁신 이행

가. 정책여건

- 수목원·정원 정책 실현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현장지원 이행 필요
- 정부의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에 기반한 조직운영과 민간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요구
- 자율·책임·역량 강화에 따른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주무부처의 감독범위·권한 확대에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 수목원·정원 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 정책지원 이행 강화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도·감독을 통한 기관 발전방안 마련
- 직무·성과 중심 조직운영으로 생산성·효율성 제고
- 수목원·정원 ESG플랫폼 기반 상생·협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1) 수목원·정원 정책 지원을 위한 산림생물자원과 정원 기반의 플랫폼 역할 강화
 - 산림생물자원의 보전·복원·활용 체계 강화

- 현지내·외 보전을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산림복원 지원 확대
- 산림생물자원 활용 및 인프라·기술 지원으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도모
- 수요자 맞춤형 전시·관람·교육 확대 및 지역상생 협력 강화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연계 대상별 맞춤형 전시·관람·교육 확대
 - 지역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사업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 사업 다양화 추진
- 국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 지원
 -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K-가든 브랜드화 및 정원분야 미래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운영관리 내실화를 위한 주요업무 지도·감독 강화

- 산림청-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상호발전방안 모색
- 예산집행, 인사, 사업운영 현황, 경영혁신 등 기관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 기타 공공기관 평가편람에 따른 한수정 경영실적평가 실시
 - *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경영개선에 활용

3) 생산성·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 이행

-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보수체계 고도화 및 조직·인력 운용
 - 직무급 비중 및 성과급 차등폭 확대 등 성과 중심 보수체계 방안 마련
 - 신설기관 운영, 핵심 기능 강화 등 인력 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운용
- 고유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체수입 확대방안 마련
 -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수입구조 다각화 등 자체수입 증대
 - 중장기 재무 위험단계별 대응전략 수립으로 재무관리계획 환류 체계 구축·운영

- 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 디지털화 추진
 - 공공활용을 위한 종자·식물정보 빅데이터 구축·공개 및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수목원별 특화된 보존원 관리
 - 디지털 예약·결제시스템 고도화 등 대국민 수목원·정원 서비스 접근성 제고

4) 수목원·정원 기반 ESG플랫폼 구축으로 민간성장 지원

- 수목원·정원 기반 ESG협력사업을 통한 플랫폼 역할 수행
 - 기업별 맞춤형 사업 발굴로 사업 다각화 및 민간 ESG경영 지원
 - 공·사립수목원 ESG역량 강화 및 민간협력 프로세스 구축 지원
 - * ESG 내재화 교육지원 및 재정적 자립 선순환 모델 발굴

라. 추진일정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관운영 지도·감독 : 연중
- 산림청-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간 소통간담회 : 분기
-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연중

17. 정원으로 도시를 녹색생활공간으로 전환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목 표

- ◇ 정원인프라 지속 확대와 조성·운영관리 품질 제고
- ◇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으로 국민 체감과 활용도 확대

가. 정책여건

- 국민 관심 증가로 정원에 대한 인식이 문화·예술·치유 등 복합공간으로 확장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으로 정원도시 선언, 관련 조직 신설 및 조례 제정 등 지자체의 정원 관심 급증

나. 기본방향

- 국민 일상에서 언제든지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속 확대
- 생활밀착형 실내·외 정원 조성으로 녹색생활공간 확충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정원 운영·관리 강화로 품질 제고

- 국가정원 확충 및 운영성과 관리 내실화를 위한 기반 마련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 관리기관-산림청간 정기적 실무협의회를 통한 집행·운영점검
- 국가정원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결과 개선으로 이용 만족도 제고
 - 국가정원 평가지표를 고려한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실시
 - * 정원관리 및 활용, 시설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구성
- 평가지표별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개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 시설물 안전·위생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2)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컨설팅 지원 및 품질평가 실시

- 지방정원 조성 단계별(설계·조성·운영) 모니터링·컨설팅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정원 조성·운영 지원
- 품질평가 지방정원 확대로 정원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운영자 요청 시 평가를 실시하여 정원 운영 및 품질평가 효과성 제고
 - * (최초평가) 등록일로부터 3년 운영 이후 실시, (평가횟수) 3년에 1회 정원 운영자 요청 시
- 정원 조성과 운영·관리 실행능력 제고를 위한 매뉴얼 마련
 - 실무협의체 구성 등 국가정원 운영·관리 노하우, 아이디어 공유

3) **신규** 민간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정원 활성화 추진

- 민간정원 운영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정원 TF를 신설하여 민간정원 등록기준·운영관리·활성화 전 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
 - 주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민간정원 운영 활성화 및 발전방안 마련
- 민간정원 특화·운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 정원 분야 신기술 보급·브랜드 전략·식물관리 등 민간정원 현장 컨설팅
 - * 디자인, 식물, 시공, 프로그램, 홍보·관광 분야 컨설팅 현장 운영
 - 민간정원 발굴 및 등록 편의 제공을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지원
- 민간정원 브랜드화 및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 계절별 정원특성과 정원주의 스토리가 있는 대표적인 민간정원의 정보안내방송(SB) 시리즈 제작·홍보로 민간정원의 브랜드화 추진
 - * 민간정원 21개소, 개소당 2주동안 매일2회 방영(총48회) / YTN(영상기획팀)
 - 신규 등록 민간정원에 대한 표준 현판 BI('21년 개발) 제작 지원
 - * '23년 신규 등록된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현판 제작·보급
 - 대국민 정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원지도' 및 '민간정원 핸드북' 보완 제작·배포를 통한 집중홍보 추진
 - 아름다운 정원의 신규발굴과 오픈가든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아름다운정원 공모전' 및 '민간정원 콘텐츠 공모전' 등 추진지원
 - 민간정원의 지속가능한 방문 유도를 위한 정원멤버십제도 개발·운영
 - * 멤버십 혜택 기준 마련 및 지역별 정원패키지 상품 개발(입장할인, 연간 가드닝 자문, 가드닝 서적 지원, 멤버스데이 운영 등)로 정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 도시숲·정원관리인 인력을 민간정원에 우선 배치하여 정원관리 인력난 해소
 - * 23개단 115명(시민정원사·취업취약계층), 3~11월 운영(8개월간), 사회적기업 등 참여
- 국립수목원, 국가정원 등의 잉여식물을 분양하여 민간정원 식물 다양성 제고
 - * 공급 가능 식물자원 조사 → 민간정원 식물 수요조사 → 민간정원 식물 분양

4) 녹색생활공간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

- 탄소저감 및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조성
 - * '24년 : 26개소(직접 6, 보조 20), 개소당 5억원(국비 50%~100%), 단년도 사업
- 「수목원정원법」 개정('21.6.23 시행)에 따른 생활정원 내 참여형 정원 조성 및 자생식물 도입 의무화
 - * 시민참여로 정원을 조성하여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 유지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식재식물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정원 품질 확보와 식재비용 절감 및 자생식물 확산 기반을 구축

※ 생활정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 1) 일반 공중이 접근가능한 장소 또는 건축물의 유휴공간에 설치할 것
- 2)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 3) 정원의 구성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정원을 갖출 것
- 4) 정원의 식물 중 자생식물의 비중이 20퍼센트(종수+본수) 이상일 것

- 가드닝 활동을 통한 치유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생활정원에서 이용자 참여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
- 자생식물 중 정원소재로 활용가치가 높은 식물종을 선별하여, 직접 조성하는 생활정원 사업지 6개소에 자생식물 3만본을 공·사립수목원 등을 통해 증식하여 보급

5) 지역활력도 상승을 위한 소읍지역 실외정원 조성

- 인구감소지역(지역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도 상승을 위한 실외정원을 조성
 - * '24년 : 40개소, 개소당 5억원(국비 50%), 단년도 사업

- 정원조성 품질향상을 위해 정원전문가(정원작가, 수목원·식물원·민간 단체 전문인력 등) 참여 제안 및 전문분야 자문을 활용하여 계획·설계·조성 단계별 컨설팅을 통한 정원품질 제고
- 사업의 이해도 향상 및 원활한 정원조성을 위한 사업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사업매뉴얼 내용 : 관련사례, 설치여건, 주요수종, 식물관리 등 가이드
- 생활정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 준수(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6) 다중이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시설 실내정원 조성

- 병원·도서관·역사 등 공공시설 내 실내·옥상정원 조성으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원문화 확산
 - * '24년 : 23개소, 개소당 0.5~10억원(국비 50%), 단년도 사업
 - ** 실내정원 단가를 개소당 5억~10억 → 0.5억~10억(국비 50%, 사업면적에 따라 차등지원)으로 개선하여 소규모 시설 및 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 탄소저감 효과 증대 및 녹색생활공간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과 연접된 외부공간(테라스, 필로티, 중정, 옥상 등) 포함사업 국비 우선 지원
 - * 실내정원 단독사업은 국비 25억원 이내, 실내+외부(옥상 등) 복합사업은 국비 5억원 이내
 - ** 옥상정원 단독사업도 신청가능하며, 국비 5억원이내 지원, 단, 옥상 등은 정원 조성에 있어 구조안전진단이 완료된 대상지로 제한
- 사업의 이해도 향상 및 원활한 정원조성을 위한 사업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사업매뉴얼 내용 : 관련사례, 설치여건, 주요수종, 식물관리 등 가이드
- 생활정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 준수(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7) [신귀]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원기반 정원도시 조성

- 서남해안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정원에 기반한 자족적 생활 정원도시(해남) 조성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및 관광 활성화
 -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6월), 1차년도 시설공사 추진(6월~)
 - *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 '23~'27, 전남 해남지역
- 정원문화·산업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 등 지역특색을 반영한 정원도시(공모) 사업 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라. 추진일정

- 산림청-국가정원 운영 지자체 간 실무 협의회 개최 : 분기별
-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TF 운영 : 분기별, 연중
- 생활정원 조성사업 매뉴얼 배포 : 3월
- 생활정원 컨설팅 및 모니터링 : 3월~10월
- 지방·민간정원 컨설팅·모니터링 : 3월
- 국가정원 만족도·인지도 조사 실시 : 5월·7월·10월
- 민간정원 정기 협의회 실시 : 6월·11월
- 민간정원 브랜드 및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 4월~12월
- 국가정원·지방정원 품질평가 실시 : 9월
- 국가정원·지방정원 품질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 12월
-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설계 및 시설공사 추진 : 연중

18. 정원산업 생태계 구축과 성장역량 강화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8800)

목 표

- ◇ 정원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으로 활성화 기반 마련
- ◇ 정원소재 육성 등 정원진흥 기반확충으로 정원시장 확대

가. 정책여건

- 수목원정원법 개정('21.6.23)으로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의무화
- 정원 관련 국민 관심으로 인프라는 증가했으나, 산업화와 연계 부족
- 정원산업 중 정원소재(식물, 자재)가 차지하는 시장 비중이 89.6%이나 관련정책의 추진은 미흡한 상황

나. 기본방향

- 정책추진 및 발전 기반 마련 정원산업 실태조사·통계 작성 체계 정립
- 정원산업과 문화의 연계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정원산업 박람회 개최와 정원지원센터,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사업 추진
- 정원식물, 소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정원시장 개척 및 수요에 대응

다. 세부추진계획

1) 체계적 정원정책 수립을 위한 정원산업 실태조사 시행

- 정원산업 분류체계 정립 및 정원산업 시범조사 결과에 따른 정원산업 실태조사 추진
- 정원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별도의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고 향후 정원산업 특수산업분류체계로 활용

2) 제5회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 대한민국 정원정책의 국제적 홍보를 위하여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행사 연계 개최
 - * 기간 : '24년 10월, 장소 : 서울 독섬한강공원 일대, 주최 : 산림청·서울시
-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창업·경영지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술전수, 산업동향, 기업연계 및 사업상담 등 맞춤형 정보제공 지원
 - 정원산업전, 정원컨퍼런스, 정원전시, 정원문화프로그램 등
- (차년도 개최지 선정) 지역별 정원산업·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발
 - * 계획수립(4~5월) → 공모 공고(6~7월) → 평가(8월) → 개최기관 선정(9월)

3)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 정원식물소재, 자재·용품 특화 정원산업 진흥 전담기관 설립 착공
 -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건립공사('24~'25년) 1차년도 시공분 착공
 - * 총사업비 214억원(국비 165.5억원, 지자체 48.5억원)
- 관계기관 간 건립협의회 운영을 통해 각 기관 간 추진현황과 계획공유 등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 (구성) 산림청(주재), 강원도, 춘천시, 한수정 / (기간) 개원 전까지 / (시기) 수시

4) 「울산 정원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 태화강 국가정원을 거점으로 영남권역 정원후방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울산 정원지원센터 건립 추진('23. 9월 ~ '24. 12월)
 - *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21~'24, 울산광역시
- '25년 상반기 개원 목표에 따라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준비(울산시)

5) 「한국정원문화원」 건립공사 준공 및 시범운영

- 체계적인 정원 전문인력 양성과 한국정원 문화 보급·확산을 위한 정원문화 전문기관 건립 공사추진
 - '23. 8월 착공이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24년 연내 개원
 - * 총사업비 196억원(국비 136)^{*} 지방비 60^{별도}, '21~'24, 전남 담양군 일원 / 산림청 조성, 한수정 위탁관리
- '24년 하반기 개원 목표에 따른 사전준비 및 시범운영 계획 수립(한수정)
 - * '24년 한국정원문화원 운영 관련예산(11.8억원, 3개월) 편성

6) **신규**정원소재 산업 육성대책 및 발전방안 수립

- 정원산업 실태조사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식물소재·용품 등 정원소재산업 중점 육성을 위한 현장 정책 수립
 - 정원 1차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향후 2·3차 산업의 육성 및 발전, 정원 6차산업화의 기반 마련
- 산림청·국립수목원·한수정·정원산업 관련단체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정기 간담회·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립 및 정원산업 육성·발전 정책 수립

7) 생활 속 녹지인프라 확충과 관리를 위한 보급형 모델정원 개발·보급

-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정원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모델정원을 개발·보급(3억)
 - * 개발유형 설정(1~3월), 모델개발(6월), 모델정원 실증 및 가이드라인 마련(7~12월)
- 벽면, 베란다, 실내 등 생활 속 다양한 공간을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정원을 개발·보급하여 정원 인프라 확충에 기여
- 정원 조성·관리에 스마트 기술, 신기술, 신소재 등 개발·보급

라. 추진일정

- 정원소재 산업 육성대책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 : 3월~12월
- 제5회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 10월
-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건립공사 착공 : 8월
- 보급형 모델정원 개발결과 보고 및 성과공유 : 11월
- 한국정원문화원 개원 및 정원전문교육 시범운영 : 12월
- 울산 정원지원센터 건립공사 준공 : 12월

19. 정원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8904)

목 표

- ◇ 우수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정원 전문인력 양성
- ◇ 정원시장 확대에 대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 정책여건

- 국민의 정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정원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필요
- 정원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조성관리를 위한 현장 인력은 부족

나. 기본방향

- 정원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실습 기회 제공 등 지원 확대
-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원유지·관리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다. 세부추진계획

1) 미래 정원작가를 꿈꾸는 청년대상 정원드림 프로젝트 추진

- 지자체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정원분야 전공자들이 취·창업에 필요한 현장중심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실습정원 조성
 - 참여자가 정원작가 멘토링을 통해 정원을 계획·시공·관리 전과정 참여로 현장전문기술과 노하우 습득 등 전문인력 육성
 - * 5개 권역 25개소(팀) 조성, 참여청년 125여명 참여
 - 지역의 자투리 공간이 개성있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민에 제공(25개 정원)

- 주요 관련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운영(1~2월)
 - 설명대상 : 참가학생·관련학과 교수 등
 - 신규 지자체 선정시 학교추천서를 받아 지역내 학생들의 참여 유도
- 프로젝트 참여자 DB구축 및 취·창업 현황 등 진로 상시 모니터링
- 기존 조성지('23년까지 총 10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
 - 시민정원사 양성, 도시숲·정원관리인 사업과 연계하여 연중 모니터링
- 대상지 신청시 인접시·군 연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 확대
 - 권역별 3년간 지원에서 여건에 따른 지원연장 여부결정으로 제도보완

2) 정원사 고용인력 확대를 위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 민간정원과 생활밀착형 정원 등에 배치(23개단, 115명)하여 정원관리 현장기술 배양
 - * 23개단 115명(정원전문인력·취업취약계층, 3~11월 운영(8개월간), 사회적기업 등 참여
 - 정원전문인력과 취약계층을 매칭(1개단 : 시민정원사 1명 + 취약계층 4명)하여 권역별 조성된 도시숲·정원 관리대상지* 가꾸기 추진
 - * (중점관리) 민간정원, 정원실습보육공간, 생활밀착형 정원, 스마트가든
 - * (일반관리) 지자체 정원(마을·공동체 정원, 지방정원 등), 미세먼지 차단숲 등
 - 정원사업지 물량 등을 고려한 사업물량 신규배정 등 사업효과 제고
 - * '24년 지자체 배정 :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남, 서울, 울산, 강원, 경남, 충북, 경북, 전남
 - 채용된 인력 중 우수인력은 등록된 정원 또는 개인정원을 유지·관리 하는 정원관리 인력으로 채용 유도
- 사업집행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자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유 및 사전교육 실시(1월)
- '23년도 사업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침」을 개정(1월)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등 사업관리 강화
 - 중점관리 대상지 변경, 사업비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부여, 안전관리, 운영실적 점검 등 관리운영에 관련한 사항

3) 정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제도 추진

- 정원전문관리사 교육과정 개발('23)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 교육과정 내용 보완 및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시범 운영(하반기)
 - * 교육 기본가이드로 활용되도록 관련기관 배포(정원관련 교육기관)
 - 한국정원문화원 등 정원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운영 연계

- 직업군으로서 정원전문가 자격제도의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자격제도 준비기 → 관련 법제도 개정안 → 자격제도 실시(3단계)
 - 자격제도 신설에 대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그룹 의견수렴 등

4) 코리아가든쇼를 통한 우수 정원작가 인지도 제고와 신진 정원작가 발굴

- 코리아가든쇼 위상 격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 추진계획 수립(3~4월) → 공모(5~6월) → 1차 심사(7월) → 작품 조성(9월) → 2차 심사(9월) → 전시회, 시상식, 프로그램 운영(10월)
 - 수상자들의 입지 향상·동기부여를 위한 가든쇼 운영내용, 장·단기 계획 수립
 - 코리아가든쇼 운영을 위한 관련 작가 워크숍 추진
- 정원작가 공모전 추진, 수상작품 전시회, 부대행사 프로그램 운영
 - 공모전 위상 제고를 위한 공모조건, 심의방식 등 세부 운영 계획 수립·운영
 - 국내 정원작가들 활동 확대와 다양한 분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 개최를 통해 관람객 유입 효과 등 시너지 증가

라. 추진일정

- 정원 실습보육공간 대상지 선정 : '23. 12월
-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 1월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기관·참여자 공모 및 선발 : 1월~2월
-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배포 : 3월
- 정원 실습보육공간 참가팀 공모·선발 : 2~3월
- 정원 실습보육공간 발대식 개최 및 사전교육 실시 : 4월
- 정원 실습보육공간 디자인·설계 : 4~5월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기관·참여자 교육 : 3~5월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가드닝 활동 : 3~11월
- 정원 실습보육공간 정원 조성 : 5~7월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실태 현장점검 : 6월~7월
- 2023 코리아가든쇼 개최 : 10월
- 정원 실습보육공간 가드닝 활동 : 7~9월
- 정원 실습보육공간 최종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 : 11월
- 도시숲·정원관리인 활동 종료 및 사업실적 보고 : 12월

20. 국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8904)

목 표

- ◇ 정원치유 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 속 면역력 증진
-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가. 정책여건

- 정서적 측면에서 정원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됨에 따라 정원활동은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정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확대 필요

나. 기본방향

- 정원치유 프로그램 활동 지원을 통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 다양한 정원문화행사 개최로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정원문화 대중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신규] ‘정원 치유’ 를 생활 속 정원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확산

- 정원치유 프로그램과 교육을 국가정원(순천·울산), 지방정원(인천, 부산, 양평, 영월 등), 정원도시 등과 연계하여 효과 실증 및 확산
- 정원치유 매뉴얼 보급 및 R&D(제도 도입, 치유프로그램 개발, 국민건강정책과 연계 방안 등) 기획 연구용역 수행으로 정원치유 체계 구축
- 시범사업('21년~'23년 33개소) 결과를 토대로 정원치유 확산을 위한 요양병원, 사회복지관 등 대상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추진
- 가드닝 프로그램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과 매뉴얼 보급으로 지자체 및 민간정원 등으로 사업 확산

2) 국민 체감형 정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 찾아가는 정원 식물 클리닉·컨설팅을 통해 반려식물에 관한 정보·교육 제공 등 국민체감형 정원서비스 저변확대
 - 주민센터, 복지시설,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권역별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 * 매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식물전문가 3명과 나무의사 1명 참여
- 이동식·고정식·온라인 반려식물 클리닉 상시운영

■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체계 ■

온라인 상담소	+	이동형 클리닉	+	고정형 클리닉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국민 누구나 • (장소) 온라인 웹페이지 •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려식물 통합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별 세부정보 종합 제공 ② 반려식물 및 정원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별 적합 식물 추천 토양, 정원용품, 관리법 등 ③ 식물클리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육상태 진단 및 해결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이동식 센터 방문자 • (장소) 17개 시·도 공공시설 •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려식물 및 정원상담소 ② 식물클리닉 ③ 반려식물 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려지는 식물 입양 및 치료 - 가드닝 용품 및 재료 수거 ④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수목원 방문객 • (장소) 백두대간·세종수목원 •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반려식물 및 정원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분갈이 등 서비스 ② 식물클리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입원 및 관리 ③ 반려식물 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을 통한 식물 관리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가치) 버려지는 식물 입양 → 치료 → 식물기부(사회복지시설 등) • (창업모델) 고정형 및 이동형 클리닉을 통한 창업 아이디어 등 제시 				

3) 정원 분야 DB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망 구축·운영

- 정원 DB 구축 범위 확대(12월)
 - 정원 교육기관·교육프로그램, 정원 소재(식물·재료·시설물) 등 정원 인재 육성 및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정원종류별 현황소개(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 등), 정원산업(정원작가·반려식물키트 등 관련업체 현황 등), 정원문화(정원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발간물 등
- 정원분야 대국민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정원 교육, 정원소재 등
웹페이지 추가 제작·유지관리(12월)
 - 정원의 정보망 구축을 위해 정원 교육기관·프로그램, 정원 식물·재료 등의 데이터 수집 및 조사
 - 구축된 데이터의 온라인 정보 제공을 위한 웹페이지 추가 개발
 - 정원 홈페이지 기능 구현과 정보 최신화 등 유지관리
- 정원 사업의 정보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12월)
 - 생활정원·실습정원 등의 정원사업 기획, 계획, 설계, 조성, 관리의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등록

5)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소통채널 정원 TV 운영

- 정원 TV의 방향성, 목적, 타겟을 구체화·세분화
 - 정원 정책·정보 제공, 매니아층 확보, 정원문화 확산의 통로, 소통의 장으로 활용
 - 민간정원 소개 콘텐츠 확대하여 민간정원 홍보 효과 제고
 - * 매회 정원TV Ending에 30초 내외의 영상으로 민간정원 소개
- 국민의 관심·흥미 요소를 반영한 콘텐츠 운영으로 정원의 일상화 유도
 - (콘텐츠) 반려식물, 실내 정원식물, 식물관리 기초 콘텐츠 강화하고, 식물백과사전 콘텐츠 제작 방향 개선, 계절별 키워드로 기획
 - (활성화) 구독자 이벤트 실시로 구독자 수 확대, 셀럽 출연 확대

라. 추진일정

- 정원치유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제작·보급 : 상반기
- 정원DB 구축을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 3~10월
- 정원분야 정보제공을 위한 웹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 3~12월
- 반려식물 이동식 클리닉 운영 : 상시

21. 정원정책 제도지원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8)

목 표

- ◇ 정원 기능 강화와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연구 강화
- ◇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지원 추진

가. 정책여건

- 정원에 대한 국민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추진을 위한 연구는 부족
- 국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연구 및 정책 기반 필요

나. 기본방향

- 정원도시 세부 규정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 해외 한국정원, 정원도시 등 신규사업 제도지원을 위한 연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신규]정원분야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의 조성·지정·운영 제도의 분석 및 개선
 - 정원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책 수립 근거자료 마련
 - 학계·지자체 담당자·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 수립 및 방향 설정
- 정원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기본원칙과 방향성 수립

2) 한국정원의 세계화 및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 해외에 설치된 한국정원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가 시급한 개소에 대한 보수·복원 추진

- 정기적인 실태조사, 국내외 민간단체·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 '15년 조사결과 국가·지자체 조성 29개소 중 10개소 보수필요(시급 4, 시설노후 6)
- 한국정원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제화 추진
 - 정의, 신규 조성시 부처협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 한국정원 기준정립 → 전수 및 관리실태조사 → 유사입법례 → 개정(안) 마련

3) 「수목원정원법」 등 정원 관련 규정 개정

-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상 주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정원도시, 해외 한국정원(K-가든) 등의 사업을 수목원정원법에 반영
-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지방정원 확대 시행 및 점검
 - 지방정원 품질평가 및 결과 분석으로 품질 제고 및 지원정책 마련

라. 추진일정

- 산림청 조성 해외 한국정원 운영현황 실태점검 : 2월
-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추진 : 1~11월
- 실내외 정원 조성 탄소고정 효과의 정량적 분석 연구 : 3~11월
- 정원분야 종합계획 수립 연구 : 4월~12월

22.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수목원조성사업단, 042-481-8831)

목 표

- ◇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기본계획, 난대림에 최적화된 기본설계 수립
- ◇ 지역협력체계 강화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차질없는 이행

가. 정책여건

- 기후 온난화 가속에 따라 한반도는 난·아열대기후로 변하는 중이며, 2050년까지 전세계 생물다양성 약 10% 감소 및 2100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의 5.7℃ 상승이 예측되는 등 기후 위기 직면
- 한반도 생태계 서식지가 아고산림·침엽수림·온대림의 감소, 난대림 서식지 북상·확장, 아열대림 출현이 예상되어 산림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난·아열대 식물자원 보전·활용 연구 필요

나. 기본방향

- 지구 온난화를 대비한 국립난대수목원의 선도적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기본계획 수립 및 수집증식, 전시, 보전, 교육, 연구, 관광 등 수목원 기능이 최적화된 기본설계 수립 추진
- 지역협의회(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역정치권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로 발전방안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109-1 등 106필지
○ 면 적 : 381ha(건축 연면적 2.8ha)
○ 총사업비 : 1,475억원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8년간)
○ 주요시설 : 난대식생보존 주제원, 난·아열대 전시온실 등

〈 연차별 추진계획 〉

'23~'26	'27~'30	'31
《계획 및 설계》	《시공》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관리사업 등록 - 자문위원회, 지역협의회 운영 - 기본계획 수립('24. 3월) -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24. 4월) - 입찰 공고('24.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24~'26년) - 지장물 보상('24~'26년) - 사유지 매입('24~'26년) - 행정 인·허가 협의('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27.1.)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공사 - 국내·외 도입 식물 확보·식재 - 법령 개정사항 등 설계변경 - 총사업비 조정·관리 - 관리·운영 계획 수립 - 확정측량 및 준공('3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운영 및 개원 준비(상반기) · 시설·전시원 운영 및 보수 · 운영·관리시스템 점검 · 운영·관리인력 채용 · 각종 내부규정 마련 · 대국민 홍보 - 개원(하반기)

2)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난대수목원 특화 Mision, Vission 설정, 토지이용계획, 5대 랜드마크 등 핵심 공간 및 시설, 기반시설 등에 대한 확충 방향 정립
 - * 5대 랜드마크 : 주제전시원, 모노레일, 전망대, 트리탑데크로드, 레이크가든센터
- 토목·건축·조경 등 시설공사, 토지 매입, 지장물 보상 등에 대한 사업비 산출, 연차별 투자계획, 개원 후 운영관리비 등 비용 산출 등

3) 기본계획 총사업비 협의, 행정 인·허가 추진, 국·공유지 교환, 지장물 및 구축물 보상 등 행정사항 추진

-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에 대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협의
 - *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13조 및 제14조
- (행정 인·허가)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등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 (국·공유지 교환) 교환 토지 감정평가 및 가격결정, 재산 명도 등기, 무상사용허가(산림청 → 전남도) 등
- (지장물 및 구축물 보상) 보상대상물 조사 → 보상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산림청·전남도·완도군) 업무협약 → 감정평가 → 보상금 지급
 - * 보상금 지급은 '24~'26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분할 지급
- (사유지 매입) 협소한 주차장 확충(80→500대)을 위한 사유지 매입
 - * 현장 조사('24. 1.) → 매입대상지 확정('24. 2.)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24. 2~3.) → 완도군 매입위탁 협약('24. 4.) → 보상 등('24. 5.~'26. 12.)

4) 대형공사 입찰 방법 결정 및 입찰 발주

- 대형공사 입찰 방법(턴키 등) 국토부 협의('24. 3월) 및 심의('24. 4월)
 -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3조 제7항에 따라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협의
- 대형공사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24. 5~6월)
 - (심의 통과 시) 턴키 입찰 발주
 - (심의 부결 시) 턴키 재심의 추진 또는 기본설계 입찰 공고

5)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수립

- 5대 랜드마크에 대한 공간·시설 배치 정립, 조경·토목·건축·기계·전기 등 공종별 설계도면 작성,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VE) 등
- 대상지 정밀 측량 및 지반조사 등으로 정확한 현황 분석 등
- 건축·토목·조경 등 시설공사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6) ‘지역협의회’ 중심의 참여형 수목원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 지역관계자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 * 지역협의회 구성 : 23명(지역주민 5, 시민단체 8, 전문가 5, 행정기관5)
-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 추진단계별 현안사항 논의, SNS 정보제공 등 소통 활성화

라. 추진일정

- 행정 인·허가 추진, 국·공유지 교환, 지장물 및 건축물 보상 등 : 1~12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3월
-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 : 4~5월
- 국내·외 유사 선진사례 조사 : 6월
- 기본설계 용역 착수 : 8월
- 제2차 지역협의회 개최 : 11월

23.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수목원조성사업단, 042-481-8831)

목 표

- ◇ 국내·외 해안식물자원 보존을 위한 새만금수목원 조성공사의 내실 있는 추진
- ◇ 지역협력체계 강화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차질없이 이행

가. 정책여건

- 수목원은 식물자원 보존의 중추이며 대표적인 녹색생활 인프라로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안정적 해안·염생식물 보존·관리로 국제적 의무 이행 필요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정책 기조에 따른 새만금의 역할 재정립,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등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에 대한 범정부적 개발의지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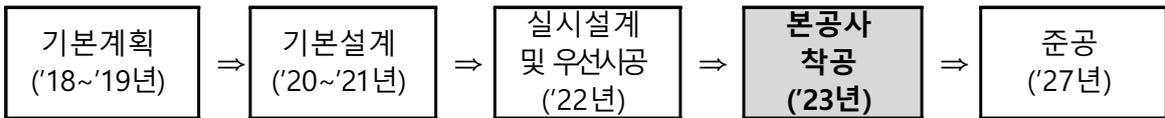
나. 기본방향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4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19~2023)」의 ‘기후대·식생권역별 국립수목원 확충 계획’에 따라 조성하는 해안형 수목원의 3년차 공사 추진 - 수목 생육에 불리한 현장여건(해풍 및 토양염분) 극복을 위한 방풍림 조성지역 성토 및 건축 기초공사 등 기초공정 집중 추진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24~’25년)에 따른 수목원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지역협의회(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및 현안사항 청취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 면 적 : 151ha(건축 연면적 2.1ha) ○ 총사업비 : 1,844억원 ○ 사업기간 : 2018년~2027년(10년간) ○ 주요시설 : 해안식물돔, 해안사구 식물원, 자연천이 연구지, 증식온실 등



○ 연차별 추진사항

'18~'22	'22~'27	'27
《계획·설계 단계》	《시공 단계》	《개원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관리사업 등록 - 조성 거버넌스 구성·운영 - 조성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기본계획 수립 및 관보 고시('19.9) - 기본설계 착수('19.12) -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20.12) - 실시설계·시공 일괄입찰('21.7) - 기술제안 완료 및 적격심의('22.2) - 실시설계 착수('2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시공 착공('22. 6) - 개발실시계획 등 인·허가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 본공사 계약 및 착공('23. 5) - 주요 시설공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공사 추진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설계 변경 추진으로 완성도 제고 - 도입 가능식물 수집·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식물 확보·식재 - 총사업비 조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안전 관련사항 협의조정 및 물가변동분 자율조정 등 - 관리·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 준공심사 및 준공('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측량 및 준공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운영 및 하자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전시원 운영 및 보수 · 운영·관리시스템 점검 · 운영·관리인력 채용 · 각종 내부규정 마련 · 대국민 홍보 - 개원(하반기)

2)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공사 추진

- 현장토 준설·성토 등 토목공사 및 건축 기초공사 등 착수(165억원)
 - 공사비 확정(154억원)에 따라 공정 확대(토목→토목, 건축공사) 추진
 - * ('24) 토목 : 현장토 준설 및 외부토 반입, 우수관로/ 건축 :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 ** ('25~'27) 토목·건축 : '24년 미실행 공사는 '25~'27 추가 실행/ 조경 : '25.2~'26.9월 완료
- 현장 관리 강화를 통한 공사품질 제고 및 안전관리 철저
 - 정기 공정회의(주·월별) 개최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주요 공사(토목 우수관로, 건축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타설 등) 중에는 직원 상주
 - * 공사기간 : '23.5~'27.2, 공사비 : 1,389억원, 시공사 : 디엘이엔씨 컨소시엄
 - 태풍 등 자연재해 사전 대비, 주기적인 현장 안전교육 및 점검 강화
 - 시공단계 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설계 미비점 개선·설계변경
- 행정 인·허가 관련 공사 중 법정 의무 이행사항 수행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환경대책 이행사항 자체 점검
 - 해양환경영향조사(6월·12월) 및 결과 통보('25.1월)
 - *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1조

3) 수목원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24~'25년) 시 수목원 오수 처리 방향 변경(새만금 외해→내해 방류)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수목원 준공('27년), 원거리 입지(외해와 16km 이격)를 고려한 내해 방류 허용
 - * 국조실 주관, 산림청, 환경부, 농식품부, 새만금청, 농어촌공사 등

4) 지역협의회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 강화 및 대내외 협력 강화

- '20년 구성한 지역협의회¹⁸⁾ 운영을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방안 논의, 지역기업·주민의 애로사항 등 현안 사항 청취
 -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갈등 발생 선제 대응
 - 지역상생 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지역협의회 : 연 1회 개최(총 8회 개최 완료),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 등

18) 구성현황(20명) : 지역주민(7명), 시민단체(5명), 전문가(3명), 공무원(5명) /임기 : '22.10.1~'24.9.30

5) 해안 산림자원 다양성 사전 확보 및 간척지 수목 관리 기술 개발

-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예정지 생육적응성 및 생육기반 연구 용역 지속 추진
 - * 용역비 : 150백만원/년, 용역 수행기관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국립새만금수목원 보호지구 간척지 생태계 변화 연구
 - 시험연구지·조성지 식물생육, 생물·비생물환경 모니터링
 - 수집된 해안 식물 종자 및 생체를 활용한 현장 적응시험 실시
 - * 자체 종자 수집 15종, 계약 재배(지역 주민 참여) 18종 등 활용
 - 해안·염생·내염성 식물 유전자원 확보, 자생지 환경 조사
 - * '24년 종자 및 생체 수집 : 목본 27종, 초본 100본 등 127종
- 개원 후 안정적인 수목원 운영을 위한 간척지 수목 관리 기술 개발
 - 간척지 환경(염분, 해풍, 건조 등)으로 인한 수목의 성장 저해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목 관리 기술 개발

라. 추진일정

- 현장토 준설·성토 및 외부토 반입 등 토목공사 : 1~12월
- 3차년도 조성공사 계약 체결 : 2월
-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건축공사 : 2~11월
- 수목원 예정지 생육기반 연구용역(3단계) 착수 : 4월
- 상반기 내염성식물 종자 수집 : 6~8월
- 생육 기반 연구용역(3단계) 중간보고회 개최 : 8월
- 하반기 내염성식물 종자 수집 : 9~11월
- 제9차 지역협의회 개최 : 11월
- 생육 기반 연구용역(3단계) 최종보고회 개최 : 12월
- 수집 내염성식물 종자 종자은행 입고 : 12월

참고

새만금수목원 조감도 및 주요시설



[위치도]



[조감도]



[해안식물돔]



[주 출입구]



[갯골]



[가든라운지]



[다락원]

2024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산림재난통제관실

1. 산불예방대책 추진

(산불방지과, 042-481-4255)

목 표

- ◇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 강화 및 자발적 참여 확대
- ◇ 산불예방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 확산

가. 정책여건

-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증가하여 국민 안전까지도 위협
- 산불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 감시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산불대응 필요
- 숲이 우거져 산불 시 연료 역할로 산불을 확산시키고, 숲 주변 도시화로 강풍·야간 산불시 대규모 산불피해 우려 증가
- 입산자실화, 농·산촌 소각산불 등의 예방을 위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요구
-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산불예방 홍보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 입산자실화 및 관행적 불법소각 등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소각 등 산불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강화
- 산불예방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소각 차단을 위한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 산불예방 활동을 확산
- 산불예측·감시 시스템 고도화하고 기상여건 등에 따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산불위기경보’의 발령으로 사전대응 강화
- 산불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및 제도 개선 등으로 감시역량 제고
- 산림과 인접한 민가, 문화재 등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및 산불소화시설 설치 지속 추진
- 지역·시기·원인·대상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입산자실화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주요 원인별 대책 마련

- 입산자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조치 등 감시 강화
 - * 산불취약지 입산통제 183만ha(29%), 등산로 폐쇄 6,887km(24%)
- 산불위험지 관리와 국민휴양 수요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 균형 있게 입산통제구역 등*을 조정하고, 웹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불편 해소
 - * 산불위험도를 고려하여 이용도 높은 곳, 감시 관리 가능한 곳은 가급적 개방하는 등 필요한 장소만 지정하고 연 2회 업데이트(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 봄철 영농기에 일시 집중되는 소각산불 저감을 위해 산불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확대하고 불법소각 단속 강화
 - '24년 농진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사업(139개소)과 협업 추진
 - 기관별로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자체 기동단속 및 산불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그물망 단속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림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강화*
 - * 시군단위 산림·농정·환경부서의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단속
-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재투기에 의한 산불방지를 위해 동해안 지역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과 보일러 사용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2)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산불예방 참여 확산

- 영농부산물, 군사격장 등 발화원인 사전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산림청	농진청	환경부	산업부	국방부	문체부
산림 내 인화물질 제거	영농부산물 파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송전선로 주변 산불위험지 점검	군 사격장 산불차단	언론사 활용 홍보

- 마을이장 및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고령자에 의한 소각 감시 등 밀착형 계도활동 전개(소각 금지 안내 문자발송, 마을회관 방송 계도)
- 임업인 단체, 산림조합, 봉사단체 등의 산불예방 활동을 확산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으로 마을의 자발적 참여 강화*

- 소각 근절 및 자발적 산불예방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선정하고, 현판·표창 수여로 참여주민의 자긍심 고취

* 캠페인 참여마을 지속 확대 : ('21) 23,422마을 → ('22) 23,193 → ('23) 23,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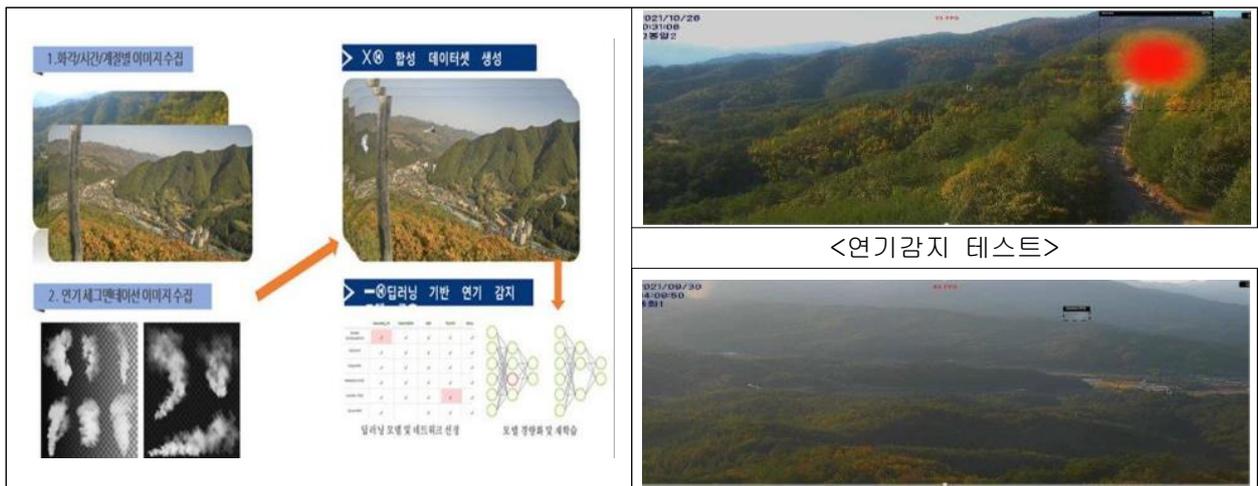
3) 첨단기술 기반 산불감시 체계 구축하고 '산불위기경보'의 선제적 운영

- 인공지능으로 산불 발생 여부를 실시간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 (~'22) 6식 → ('23년까지) 10식 → ('24년까지) 30식

- 위험시기 및 산불취약지에 드론 감시단(32개단) 투입 및 감시인력 (2만2천명*) 탄력적 운영으로 산불 사각지대 최소화

* 감시인력 : 산불감시원 12,497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604명



<플랫폼 구성 모식도>

<실제 감지화면 표출>

- 산불위험예보 시스템 중·장기예보 본격 운영하여 산불위험 사전 예측력을 강화(3일 → 7일, 1개월)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위기경보 판단기준에 따른 적기·탄력적 발령*, 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비상근무자 및 순찰·단속 철저

* 건조 및 강풍특보 발효시 탄력적인 경보발령 등으로 선제적 대응

- 특히, 산불경보 '경계' 이상 발령 시에는 불농기 및 입산허가 중지, 소각 행위 금지, 군부대 사격훈련 연기 등 조치사항 이행

4) 산불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및 제도 개선 등으로 감시 효율성 제고

- 노후된 산불감시카메라는 제반규정에 따라 교체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산불조심기간에 정상 운영하도록 조치*

* 24년 계획 : (교체) 39개소, 972백만원(지자체 38개소, 소속기관 1개소)
(유지보수) 809대, 825백만원(지자체 661대, 소속기관 148대)

- 산불감시카메라 교체시 교체 최저사양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최근 운영되는 ICT 플랫폼과 연계 강화를 위해 카메라 교체 및 최저사양 기준* 개정

*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최저사양기준(2013.12.31.)에 대하여 카메라 기능, ICT 플랫폼과 연계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지침 개정

- 지방자치단체 및 타기관 영상 공유를 통한 신속한 산불상황 관리에 활용하고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요원 배치로 활용률 제고

5) 주요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공간 조성 및 산불소화시설 지속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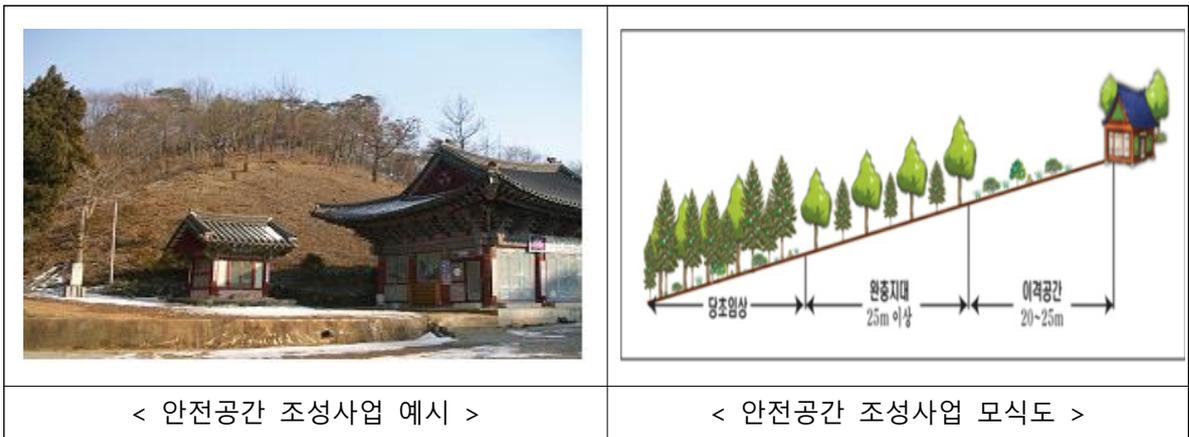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 주요 보호시설 및 주택단지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대상지 선정

* '24년 조성계획 : 20개소, 1,331백만원(지자체 15개소, 소속기관 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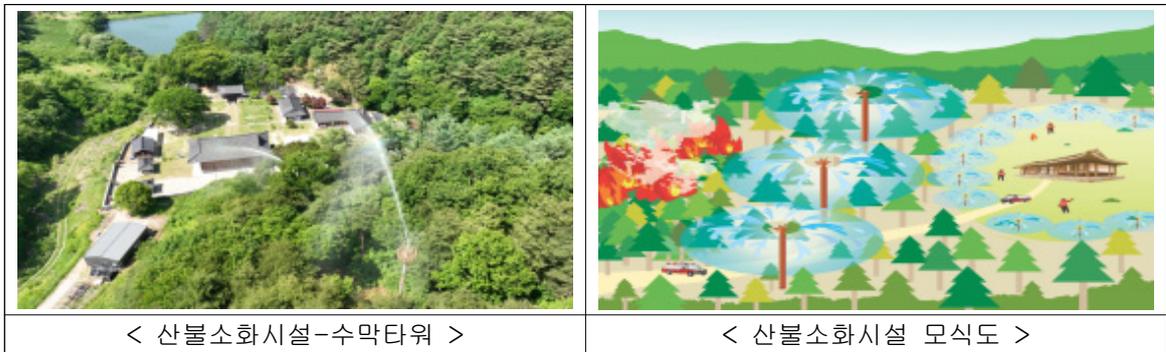
- 대상지 선정 후 현지조사와 사업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실행

- 설치대상지 선정시 산주 및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로 당해연도 시설 완료
- 공원 또는 문화재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협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사전 이행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지침을 준수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사업 실시



□ 산불소화시설

-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내 문화재, 자연휴양림, 주요 시설 등 보호대상 시설물 주변에 산불소화시설 설치*로 안전성 확보
 - * '24년 시설계획 : 22개소, 1,861백만원(지자체 16개소, 소속기관 6개소)
 - 시설물 품질 향상과 함께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시공 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심의회 개최 의무화
 - 엔진, 펌프 등 장비는 정기·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 (건조기) 사전 살수로 시설물 주변 산불발생 위험 저감
 - *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송수관 퇴수 및 장비 보온 등 관리 철저



6) 지역·시기·원인별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및 협력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홍보 실시
 - TV·라디오 등 산불 공익광고 방송을 통한 홍보
 - 인터넷 뉴스, IP TV,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및 SNS 매체 활용 확대
 - 지하철, 고속터미널, KTX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공익광고 송출
 - 언론에 산불 진행상황, 투입자원, 산불규모 등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 시기별 산불예방 기획프로그램 제작 및 온라인 캠페인
 - 산불예방, 진화(지상·공중 진화), 단속(무단입산, 산나물 불법채취 등) 등 시기별·유형별 기획프로그램 제작 및 지원
 - 건전한 산행문화 만들기 온라인 캠페인(밴드, 페이스북, 유튜브 등)
- 중앙부처, 산하단체 등 산불방지 유관기관 홍보 협력 강화
 - 청사, 반상회보(행안부), 정부 전광판(문체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농식품부),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한국도로공사) 등을 활용한 홍보

- 산불방지기술협회(특), 365 산림화재예방협회(사), 숲사랑지도원 등 민간단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자율적 산불예방 도모
- 산불예방 및 진화현장의 선제적 홍보* 강화
 - * 산불 발생에서 진화까지 대응사항 수시 전파 등 선제적인 언론대응으로 산불 홍보에 언론을 적극 활용(홍보 전담요원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알기쉬운 산불대국민 행동요령 배포, 산불예방 V비즈링* 활용
 - * 스마트폰 통화연결 시 통화대기 중 산불예방 공익광고 영상 송출

라. 추진일정

- 영농부산물 수거·과쇄 추진 : 1~3월, 11~12월
- 산불방지인력(산불감시원) 운영 : 2~5월, 11~12월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운영 : 2~5월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 2~12월
- 산불방지 ICT 플랫폼 구축사업 시행 : 2~12월
-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가능 등산로 웹서비스 : 2~5월, 11~12월
- 산불예방 대국민 홍보 : 2~5월, 11~12월

2.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로 연중·대형화 산불 방지

(산불방지과, 042-481-4257)

목 표

- ◇ 산불 지상진화 및 현장 통합 지휘역량 강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 신속한 동원체계, 첨단 진화장비 확보로 산불재난 대응력 고도화

가. 정책여건

- 산불 신고 접수 지연으로 초기대응이 늦어져 산불피해 확대
- 대규모 산불 진화부터 체계적인 수습까지 일관된 관리 필요
-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산불진화 전략 마련 요구
- 진화장비 노후 등에 따른 첨단 장비 도입 필요성 제기
-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산불방지 인력 전문화 요구

나. 기본방향

- 긴급신고 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산불신고 접수시간 단축
- 산불 현장 통합지휘역량 강화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산불 대응 단계 조정 및 선제적 산불진화 전략 마련
- 노후 장비를 고성능 장비로 교체 및 신속·정확한 상황 관리
- 산불 가해자 검거율 향상 및 산불재난 전문교육·훈련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ICT를 활용한 산불신고 접수시간 단축과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 **[신규]** 신속한 산불 신고 전달을 위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에 산림청 연계하여 산불신고 접수시간 단축(4분→2분)

* 행정안전부와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이 긴급신고번호를 통합·연계 운영

-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24시간 산림재난 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장애 등에 신속히 대처
 -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국가중요시설(발전소, 문화재 등) 147천개소 탑재 및 관제
 - * 보호시설물 5km이내 산불 접근 시 긴급대응 비상 알림(긴급회의 개최)

2) 산불 현장 통합지휘역량 강화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통합지휘권자는 산불 초기 진화 및 안전한 진화를 목표로 지휘
 - 통합지휘본부장은 실시간 산불상황정보가 탑재된 산불지휘차를 이용하여 산불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현장 대책회의 개최
 - * 주요역할 : 소방(인명 및 시설보호), 군(진화지원), 경찰(교통통제 및 가해자 검거) 등
 - 통합지휘본부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해 산림부서장이 보좌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을 공동 보좌관으로 지정
- 주택 등 일정규모 이상 시설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사고수습을 총괄 담당하기 위해 산불재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 (재난안전법) 중수본 설치·운영, 지원 요청,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시·도지사 지휘 등 규정
- 대형산불재난에 일관된 대응을 위해 설치시기 규정
 - 주택·문화재 등 중요시설 20동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대형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 결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산림청장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하고, 실무반을 구성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하고 피해조사는 산림 외 시설물까지 확대

3) 산불대응 단계 조정 및 선제적 산불진화 전략 마련

- 진화자원 동원 강화를 위해 확산 대응 4단계를 3단계로 조정·통합
 - 초기대응(10ha 미만), 1단계(10~30ha) 2단계(30~100ha), 3단계(100ha 이상)
- **[신규]**산불 확산단계 발령 기준에서 주택 등 시설물 피해 추가
 - 주택 등 중요시설 피해 3동 미만(산불 1단계), 3동 이상 20동 미만(산불 2단계), 20동 이상(산불 3단계) 발령

-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대응을 위해 일반공무원 진화대 편성·운영
 - 광역·기초자치단체별 10명 내·외 15개조 일반공무원 진화대를 편성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개인보호장비 지급 추진
- **[신규]** 대도시주변 주요 산에 대한 산불대응 전략체계 마련
 -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장소 및 진화자원 투입 등을 위한 진화전략 사전 마련
 - * 진화전략 : 산불발생시 진화자원 진입로, 이동 저수조 설치장소, 주요 시설 등

< 산불대응 단계별 발령 기준 개선안 >

구분	초기대응	확산대응		
		산불 1단계	산불 2단계	산불 3단계
대응 단계	-	산불 1단계	산불 2단계	산불 3단계
지휘권자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피해면적	10ha 미만	10~30ha 미만	30~100ha 미만	100ha 이상
풍속	3m/s 미만	3~7m/s 미만	7~11m/s 미만	11m/s 이상
지속시간	5시간 미만	5~10시간	10~48시간	48시간 이상
시설피해	우려 없음	중요시설 3동 미만	중요시설 3~20동 미만	중요시설 20동 이상
인력 (명)	계 50명 예방진화대 45명 산림공무원 5명	계 150명 예방진화대 120명 특수진화대 20명 산림공무원 10명	계 350명 예방진화대 150명 특수진화대 50명 공무원진화대 50명 군인+의소대 100명	계 650명 예방진화대 200명 특수진화대 100명 공무원진화대 150명 군인+의소대 200명
헬기	관할 100%	관할 100%, 광역 50%	관할 100%, 광역 100%	관할 100%, 광역 100%,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국 헬기
○ 브리핑 권한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 브리핑 시기 : 확산대응 단계 발령 이후 2시간 이내				
○ 브리핑 장소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산불 지휘차량 또는 상황판 준비)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동원자원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

4) 험준지·야간산불 진화에 특화된 특수·예방진화대 역량 강화

-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대원의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
 - 진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 합동 운영
 -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광역 단위로 국·사유림 모든 산불진화 투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중심으로 기계화진화대 2개팀 이상 운영
 - 산불발생 시 기계화진화대 1개팀은 산불현장에 배치

- 산불진화훈련장 운영 및 진화대 자체 훈련을 통해 지상진화 역량 강화
 -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5개 지방청에 ‘산불진화훈련장’ 운영
 - 특·광역시·도, 지방청별 자체 진화훈련 실시로 산불진화 요령 숙달(연 1회 이상)
- 진화대원 안전을 위한 규격화된 보호장비 등 지급
 - 산불진화대원 복제지침에 따라 방염성능 등이 확인된 제품 구입

5) 노후 장비를 첨단 장비로 교체하고 산불대응 태세 구축

- 노후된 산불진화장비 교체·보강으로 산불진화 대응능력 향상
 - 산불방지 시설·장비 등 유사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 * '24년 교체계획 : 지휘·진화차 90대(19억), 기계화시스템 65세트(3억), 개인진화장비 16억
- 산악지형에 적합하고 고압방수가 가능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산림청 관할 관서에 배치하여 산불재난 대응 역량 강화
 - * 도입계획 : ('23) 18대 → ('24) 29대(11대 추가) → ('27년까지) 100대
- 산불진화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운영
 - 사업비는 센터 설치 장소 확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설치가 완료된 기관은 진화대원의 운영 물품(진화장비 등) 비치
 - * ('23년까지) 140개소 → ('24년) 148개소 (8개소 신설)

6) 신속·정확한 산불상황 보고체계 유지 및 산불 가해자 검거 철저

-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유지
 - 헬기 지원 요청 지연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재불 발생 시 신속히 보고
 - * 산불신고 시 산불방지인력은 ‘산불재난안전통신기’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 및 산불 상황 제공
 - 산불이 명백함에도 산불이 아닌 것으로 허위보고, 피해면적 축소·자체 사건 종결처리 또는 보고 누락 주의
- 산불방지인력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침 등을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근무기강 확립

○ 산불상황 보도요원 지정·운영

-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기관의 명칭(산림당국), 투입장비(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차, 산불지휘차 등), 산불 규모 등 보도 용어 사용을 위해 취재기자·언론사 협조 요청
- * 지휘본부는 산불현장 조망 및 언론사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언론보도 용어 통일】

- 1) ○○도 산불방지대책본부
- 2) 산불진화헬기(산림청 ○대, 지자체 ○대, 소방 ○대),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 3) 산불진화인력(산불특수진화대 ○명, 전문진화대 ○명, 군 ○명, 소방 ○명)
- 4) 산림당국 / 5) 사진·영상(출처 : 산림청 제공 또는 ○○도 제공)

7)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철저

○ 산불 발화지 확인 및 보존, 가해자 검거 철저

- 발화지 보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가해자 특정, 불법 행위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의 조사·감식 실시

- 정확한 조사·감식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용역 수행
- * '24년 사업개요 : 사업량 1식, 사업비 1,138백만원

○ 방화성 산불과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관리기관장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 * 구성 : 산림부서, 관할 경찰서

8) 체계적인 산불방지 교육·훈련 확대 및 민간전문가 양성

○ 산불방지 정책 방향과 현장 여건에 맞는 산불방지 교육·훈련 실시

-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교재를 활용하여 차별화 교육
- 산불강사가 현장을 방문,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한 산불예방·진화 교육

○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을 위한 민간전문가 양성

- '산불방지 교육·훈련 위탁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강사 자격기준 준수
- 산불 전문강사 평가제,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한 강사 전문화
-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강화된 자격기준과 자체 기준에 따라 강사 선발
- 기관별 산불조사·감식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 양성
- * 교육 강화 : ('22) 2개과정(기초, 전문가) → ('23) 4개과정(기초, 심화, 활용, 전문가)

라. 추진일정

- 보고체계 구축 및 통합지휘본부장의 현장 지휘 : 연중
- 산불지상진화대, 드론진화대 편성 및 운영 : 연중
- 산불지휘차 고도화 및 산불대응센터 구축 : 연중
- 산림재난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 연중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지휘차, 산불조사·감식반 교육 실시 : 연중
- 산불전문조사반 및 방화범 검거팀 운영 : 연중 운영(산불발생시 대응)
- 시·도 주관 자체 산불진화훈련 : 10월
-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 1~6월

참고

2023년 산불발생 현황 (1.1.~12.15.)

□ 산불발생 원인

(단위 : 건, ha)

구분	2023년			2022년			예년('13~'22)		
	건수	[%]	면적	건수	[%]	면적	건수	[%]	면적
총계	589 (547)	100 (100)	4,983	738 (594)	100 (100)	24,792	522 (448)	100 (100)	3,552
① 입산자실화	169	29 (31)	1,390	247	33 (41)	1,305	174	33 (39)	550
② 소 각	126	22 (23)	1,013	102	14 (17)	941	136	26 (30)	254
▪ 논·밭두렁	56	10 (10)	264	43	6 (7)	32	69	13 (15)	56
▪ 쓰레기	70	12 (13)	749	59	8 (10)	909	67	13 (15)	198
③ 담뱃불실화	54	9 (10)	1,469	51	7 (9)	13	29	6 (6)	30
④ 성묘객실화	23	4 (4)	51	14	2 (2)	17	16	3 (4)	11
⑤ 건축물화재	40	7 (7)	38	45	6 (8)	39	28	5 (6)	43
⑥ 작업장실화	38	6 (7)	314	38	5 (6)	296	16	3 (4)	38
⑦ 재처리부주의	37	6 (7)	425	50	7 (9)	342	15	3 (3)	56
⑧ 방화 등	60	10 (11)	173	47	6 (8)	20,973	34	7 (8)	2,415
⑨ 원인미상	40	6	105	144	22	866	74	14	155
⑩ 조사중	2	1	4	-	-	-	-	-	-

※ ()는 원인미상·조사 중인 건수를 제외한 산불원인에 대한 비율

□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2023년			2022년			예년('13~'22)	
	건수	[%]	면적	건수	[%]	면적	건수	면적
계	589	100	4,982.85	738	100	24,792.43	522.2	3,552.22
서울	4	0.7	6.05	9	1.2	2.78	11.1	1.21
부산	17	2.9	4.43	21	2.8	27.71	13.1	17.36
대구	8	1.4	2.42	24	3.3	136.72	10.2	14.36
인천	11	1.9	24.01	8	1.1	1.11	18.6	4.47
광주	9	1.5	4.54	4	0.5	0.24	3.3	0.37
대전	6	1.0	1.17	3	0.4	0.03	7.0	2.05
울산	9	1.5	1.69	27	3.7	19.71	12.6	90.26
세종	10	1.7	1.58	7	0.9	0.67	3.6	1.13
경기	107	18.2	98.64	154	20.9	70.29	114.3	40.07
강원	64	10.9	241.99	76	10.3	5,272.39	73.8	1,073.92
충북	33	5.6	138.42	24	3.3	15.55	23.1	19.99
충남	78	13.2	2,561.42	65	8.8	188.68	31.4	28.42
전북	46	7.8	22.85	51	6.9	36.88	26.2	8.85
전남	52	8.8	952.13	54	7.3	62.61	41.6	17.55
경북	75	12.7	583.96	110	14.9	17,407.50	86.0	2,062.02
경남	60	10.2	337.55	100	13.6	1,549.36	45.8	169.83
제주	-	-	-	1	0.1	0.20	0.5	0.36

□ 규모별 산불현황

(단위 : 건)

합계	1ha미만	1~10ha미만	10~30ha미만	30~100ha 미만	100ha이상
589(100%)	477(81.0%)	81(13.8%)	12(2.0%)	11(1.9%)	8(1.4%)

3. 공중진화체계와 항공안전 강화

(산불방지과, 042-481-1237)

목 표

- ◇ 산불진화헬기 가동률 제고 및 신규 도입으로 공중진화역량 강화
- ◇ 산림항공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로 헬기사고 제로화

가. 정책여건

- 러시아산 헬기(KA-32) 부품수급 제한으로 산불진화헬기 가동률 저하 전망
- 산불 대형화 대응을 위해 대형 중심의 산불진화헬기 확충 필요
- '22년, '23년 산불관련 임무 수행 중 지자체 임차헬기 사고 발생으로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 공중진화 역량강화를 위한 헬기 조기 도입 및 가동률 제고
- 러시아산 헬기(KA-32) 가동률 저하에 대비한 국외 진화헬기 임차 운영
- 국가-지자체 공조로 산불 초동진화 및 대형산불 사전 차단
- 산불진화헬기 항공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로 항공기 사고 예방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진화헬기 확충 및 산불진화헬기 가동률 제고

- 대형급(8천ℓ 이상) 위주의 진화헬기를 확충*하여 공중진화 역량 강화
* 헬기 도입 : ('24) +2대(중형) → ('25) +1대(대형) → ('26) +1대(대형) → ('27) +2대(대형 1, 중형 1)
- '산불특별대책기간' 야간 이동정비팀 운영으로 진화헬기 가동률 제고
- 러시아산 헬기(KA-32) 불가동에 따른 헬기 운영 대책 이행
- [신규]봄철 산불대응을 위한 국외 산불진화헬기 임차(대형 5, 중형 2)
* (대형) CH47D, 9,463ℓ, '24.21~4.30, 승무원 28명 (중형) AS332L, 4,250ℓ '24.21~5.31, 승무원 5명

- 해경 운항중지 헬기부품과 유관기관 가용 부품 활용하고, 국내 민간 업체가 보유한 유용부품 등 확보로 카모프 헬기 가동률 제고
- 동절·갈수기 대비 헬기 담수시설 확충 및 급수체계 확보
 - 봄철 가뭄 대비 하천 굴착 등을 통한 담수지(3,608개소) 정비와 동절기 취수장 얼음깨기 등 헬기 취수장 사전확보
 - 결빙 및 원거리 담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이동식 저수조 확대 운영
 - * 이동식 저수조 77개 확보(산림청 12, 지자체 65)
 - 겨울철 담수지 확보를 위한 결빙방지장치 6개 기관 47개소 운영
 - * 결빙방지장치 47개소(지방산림청 2, 강원 33, 경북 8, 충북 3, 경기 1)
 - 비상시 씨스노클을 이용한 S-64 내륙·해수 담수 운용
- 산불확산 차단을 위해 지연제 살포로 방화선 구축 준비
 - 지연제(리타던트) 49ton 경북·강원 동해안 지역 등에 분산 배치·살포

2) 국가-지자체 공중진화 공조체계 구축

- 산불진화 시 민간헬기 및 유관기관 헬기(소방, 군) 공조 강화
 -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시 임차헬기와 유관기관 헬기 신속 동원
 -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 구축으로 진화역량 및 안전관리 강화
- 국가-지자체 산불진화 공조체계 구축
 - **[신규]** 재정여건 등이 열악한 지자체 임차헬기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요구(20대)
 - * ('21.4)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근거마련 / ('22.8) 기재부 보조사업 신설 적격성 통과

3) 적극적인 항공 안전관리로 헬기사고 제로화

-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실질적 현장점검 및 「산림항공 안전대책」 이행 철저
 - 산림항공 인적요인, 장비개선, 안전관리시스템 혁신 등 3분야 지속 이행
 - * 주요 추진전략 : 승무원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예방(5개 과제), 항공기 및 장비 분야 개선(4개 과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혁신(3개 과제) 등
- 모든 산림항공기에 운항품질보증제도*를 적용하여 비행 모니터링
 - * FOQA(Flight Operation Quality Assurance) : 담수과정의 비행습관 및 승무원간 기내 의사소통 등 집중분석

- 민간 임차헬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지원
 - 헬기 운항품질보증(FOQA) 기술 노하우 공유 및 민간업체 도입 유도
 - 악기상 및 비상상황 대처 등 고난도 훈련을 위한 모의비행장치(FFS : Full Flight Simulator) 민간·유관기관 공동활용 확대
 - 산불진화헬기 통합지휘를 위한 진화역량 및 안전관리 강화
 - * 민간헬기 조종사 산불진화 교육 연2회 실시
- 산불진화헬기 현장계류 시 계류장 사전확보 및 안전성 제고
 - 산불진화현장 계류 시 일몰 전 계류장 사전확보
 - 전진 배치지역 및 항공방제 현장의 이·착륙장, 계류장 최우선 안전성 확보
 - 산림헬기 계류 시 헬기 안전관리를 위해 보호펜스(폴리스라인) 등 설치
 - * 대형헬기 대당 안전구역(33.5m×33.5m) 이내 장애물 금지
- 헬기담수 시 '표준담수절차' 준수 및 실전형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4)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헬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야간 산불진화 헬기(2대) 확충 및 산림항공 야간산불진화 교육
 - * 헬기 확충(2대) : ('22) 1년차(계약) → ('23) 2년차(제작) → ('24) 3년차(도입)
- 수리온 헬기 조종사 NVG 자격 숙달 및 야간 진화훈련
 - * NVG(Night Vision Goggle : 헬기를 이용한 야간비행을 위하여 조종사가 헬멧에 착용한 야간 시각보조 장비)

5)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산불진화헬기 부품수급 및 관리 철저

- 화물운반 등 산림사업 지원 최소화로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에 헬기가 최대 가용될 수 있도록 관리
 - 다만, 인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는 적극 지원 예정

라. 추진일정

- 산불진화헬기 가동률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 : 연중
- 겨울철 산불진화용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운영 : '23. 12월~'24. 3월
- 해외 임차헬기 운영 : 2월~5월

4.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강화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목 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 강화와 철저한 관리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

가. 정책여건

- 기후, 지형·지질, 인위적 원인으로 한반도 내 산사태 재난 취약성 증가
- 산림분야 재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대책 필요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체계적 관리 필요
- 산사태 현장 점검·관리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체계 강화 요구

나. 기본방향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의 산사태 예방·대응체계의 긴밀한 운영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발굴·조사 및 취약지역 확대·관리 강화
-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확립 및 인력 역량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신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 기후변화로 다양·대형화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비하고 국민 보호를 위해 산림재난관리에 특화된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
 - 산사태 예방·조사, 주민대피, 산악기상관측망 등 현 법률상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치 추진

- '24년 전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
 - 상위 계획 성격인 '제3차 산사태방지 장기계획',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 대책'과 연계성 있는 '24년 전국 산사태 예방대책'을 수립
 - * 제3차 사방사업 기본계획('24~'28)과 연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심으로 사업 실행

2) 산림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으로 비상근무 24시간 체계 유지 및 기관·부서 간 역할* 수행
 - * 상황실(전국 산사태 상황 모니터링), 과학원(산사태 예측), 지자체(현장대응), 치산협회(현장조사)
- 신속한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소방청, 경찰청,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간 협업체계 구축
 - * 소방(인명구조), 경찰(대민대피, 도로통제 등), 조합(복구·수습을 인력·장비 지원), 치산기술협회(산사태 발생시 원인조사 및 복구사업 현장자문 등)
- 산사태예방지원본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중대본 비상 2단계(경계-심각) 발령 시 우리 청 소속 기관 직원 파견근무 조치(중부지방청, 국립휴양림관리소 등 6명)
 - * 지자체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대규모 산사태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단계로 신속 전환

3) 산사태 취약지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확대 기반 마련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재선정 등 현행화
 - 인위적 변화지* 정보를 반영하여 현행화한 산사태위험지도, 토석류 피해 예측지도를 기반으로 기초조사 대상지 모집단 선정기준 재정립·대상지 산출
 - * 산사태·산불피해지, 산지전용지, 목재수확지, 임도 개설지 등 반영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철저
 - (기초조사) 산림청에서 33,131개소를 수행하고 실태조사 필요여부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산림청·지자체)에 통지(상반기, 하반기 2회)
 - * 기초조사 물량 확대 : ('23년) 18,000 → ('24년) 33,131개소
 -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기초조사 모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지역 민원, 산사태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기초조사 대상지로 추천 가능(수시 공문추천)

- (실태조사)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 차질 없이 추진
 - * 실태조사 물량 확대 : ('23년) 7,400 → ('24년) 12,027개소
 -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기초조사 없이 실태조사가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 발주시 품질관리, 전문성, 신뢰성 고려, 투명·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참여 유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 준수
 - 실태조사 실시 후 주민 의견수렴, 열람공고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지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취약지역 지정대상 확대(산림 외 지목)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 현재 산림에만 지정되어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림연접지*까지 확대
 - * 정밀 시뮬레이션으로 시면붕괴 피해우려가 높은 마을, 농지 등을 발굴하여 지정(「산림보호법」 개정)

4)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중점관리를 통한 피해 최소화

-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취약지역 내 예방사업 확대·관리
 -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응급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제1항)
 - * 산사태취약지역 일상점검표 활용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전국 190개단, 760명) 등 자체 가용인력을 운영하여 현장점검·정비
 -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결과는 반드시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현장 상태 및 조치사항 이력 관리 철저
 -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재난우려지역 주민에게 홍보(「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9항)
 -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거주민의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과 포스터 개시, 리플렛 배부를 통한 교육·홍보(6월말까지)
 -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대피명령, 강제대피, 통행제한 등 피해예방조치 권한이 있음 (「산림보호법」 제45조의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제42조·제43조)
 - ** 유사시 주민 연락 방법 :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마을방송, 직접방문 등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장시일 소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취약지역 외 인가가 밀집하여 토석류 피해가 우려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상지로 조사·지정토록 지자체에 자료 제공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가 공동이용될 수 있도록 공유

- 산사태취약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인위적 개발지 주변, 사방사업지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위험지역에 대한 시기별 점검
 - (해빙기) 봄철 기온변화에 따른 낙석, 붕괴 등 징후 점검 및 보완조치
 - (장마철) 여름철 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태풍) 한반도 영향 예상 시 선제적 점검·응급조치로 피해 최소화
 - * 산사태 등 피해우려지역 긴급점검, 산림복지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
- 산림 분야 소관 주요시설 및 관리지역 집중안전점검
 - 산사태취약지역, 임도 등 피해우려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스템을 활용한 점검결과 이력관리 및 신속한 보수·보강조치로 산림재난 예방

5) 재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정보시스템 등 예방·대응 분야, 사방담 등 사방사업 분야 및 산사태 피해지 복구 절차 등 조사복구 분야별 맞춤형 교육 제공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및 「재난안전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산사태 및 재난 담당자별 법정 교육 이수 시간 이수 여부 확인 철저
 - * 「산림보호법」 교육계획 수립(12.31), 산사태담당자 예방교육을 10시간 이수
 - ** 「재난안전기본법」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는 신규 및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함
 - 신규(6개월 이내) : 관리자 7시간, 실무자 14시간, 정기(신규 이후 2년 마다)
- 실전 상황을 가정한 산사태 재난 상시·상황 조치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 점검을 점검하고 현장 대처 능력을 강화
 - * 우기전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주관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 참여 대피 훈련 실시

6) 산사태 대응역량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산사태 위험성에 대한 인지 방법,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대피 방법, 산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홍보
 - 산사태 방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신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SNS, 유튜브 등 노출 방식을 다각화하여 적극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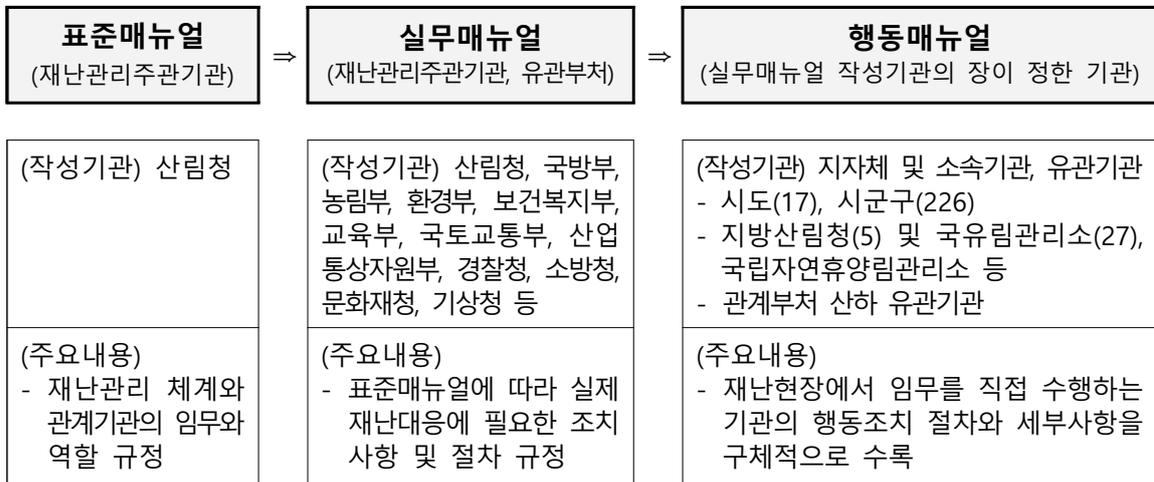
7) 내실 있는 현장관리를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강화

- 산사태 방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운영기간 : 5.15.~10.15., 5개월(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운영규모 : 전국 760명(지자체 163개단 652명, 지방청 27개단 108명)
 - 주요임무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점검·응급조치, 주민대피 및 교육·홍보 등 지원, 일상점검표·근무일지·차량운행일지 등 작성
 - * 기상여건에 따라 생활권 중심의 취약지역 고정배치 및 위험시설물 집중 점검 등
- 산사태현장예방단 조기선발과 실습 중심 직무교육(상반기)
 - 우기 전 선발 후 전문기관 직무교육을 통해 주요임무 숙지, 안전교육, 현장 실습을 통한 재난우려지 응급조치법, 점검표 작성방법 등 연습
 - * 경북사방기술센터(경상권), 한국치산기술협회(경상권외)에서 상반기 실시(변동 가능)
 - 산사태현장예방단 활동상황 및 채용현황에 대한 수시·정기 보고 및 분기보고(6월, 9월, 12월) 등을 통한 관리 철저
 - * 근무상황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8) 산사태 매뉴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지속 발굴·개정

-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 검토 및 실제 재난상황에 대응 가능하도록 보완(상반기)
 - 매뉴얼(표준-실무-행동)간 수직·수평적 상호 연계체계와 작성대상기관을 검토하고, 상위 매뉴얼에서 규정한 임무와 역할을 하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작성
 - 안전한국훈련 등 훈련과정에서 발굴된 과제, 재난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주요 조치사항 등을 매뉴얼에 반영하여 매뉴얼 현장 작동성 강화

< 산사태 재난대응 매뉴얼 운영체계 >



라. 추진일정

- 산사태방지 담당자 시책교육 : 1~2월
- 중앙부처 재난관리평가 대응 : 1~3월
- 해빙기 산사태 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 실시 : 2월(잠정)
- 산사태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개편 : 1~5월
- '24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 : 3월
- 여름철 산사태 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 실시 : 4~5월(잠정)
-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및 직무교육(집합) : 5~6월
- 산사태예방 대국민 홍보 : 4~10월
- 사방공학 전문가 과정 교육 : 5월, 10월
- 산림분야 집중안전점검 추진 : 8~9월(잠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 조사 : 1~12월
-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 별도 통보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구성·운영 : 5~10월
- 산림분야 집중안전점검 추진 : 8~9월(잠정)
- 산사태 예방점검반 운영 : 5~10월(집중호우, 태풍내습 전)
- 산림분야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수립·시행 : 11월

5. 산사태 정보체계 고도화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목 표

- ◇ 산악기상관측망 확충, 범부처 사면정보 통합관리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산사태 정보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 산사태 발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정보통합과 활용이 요구
- 극한호우 일상화에 대비한 정밀도 높은 산사태 예측 정보제공 필요

나. 기본방향

- 사면위험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
- 정밀·정확도 높은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산사태 예방·대응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악기상망 확대 구축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측 공백지 최소화

- 관측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측망 신설(16개소)
 - 산림재난위험지(산사태+산불), 타기관 기상관측시설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유지 또는 지자체 소유지에 지방산림청에서 신규 구축
 - * 신규 구축지 선정 및 변경 시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
- 산악기상관측망 시설유지보수 등으로 기상관측 데이터 품질도 확보
 - 국립산림과학원(산사태연구팀) 주관으로 정기유지 보수 및 긴급유지보수
 - * 유지보수 비용을 활용하여 노후센서 신규 교체 및 산악기상관측망 유지관리
 - ** 인근지역 산림작업 시 관측센서, 측기탑 등 주요 시설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유지보수업체에 인계하여 신속히 보완
 - '23년 신설된 16개소는 우기 전·후(각 1회)로 하자보수 점검을 진행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를 통해 하자보수 실시

- 산림청-기상청 협력으로 산악기상정보 활용도 강화
 - '09년 산림청-기상청간 MOU 체결 이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 협의회 개최(연 1회)
 - 산악기상 관련 교육과정을 기상청(기상기후인재개발원 강사요청)과 함께 운영하여 산사태 담당자의 기상변화 분석 능력 향상
 - * 산림청 주관으로 산림교육원에서 10~11월 중 실시

2) 범부처 사면정보 통합관리로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

- [신규]산지 위주의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타부처 관리하는 사면정보까지 통합·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
 - 각 부처의 사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사면위험 예보를 일원화하여 발령하는 통합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시스템으로 개편(~12월)
 - * 산림청(산지), 행안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환경부(국립공원), 문화재청(문화재) 등
 - **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되어 파악하기 어려운 도로, 농지 등 각종 사면의 산사태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 범부처 사면 위험정보를 통합하여 시범운영중인 행안부 급경사지·국토부 도로비탈면은 현행화된 정보 요청하여 시스템에 지속 업데이트
 - * 급경사지(1.8만건), 도로비탈면(3만건) 등 타부처 사면정보 4.8만건 산사태정보시스템 탑재('23.2)
 - 농경지·농로 등 산림 내 인위적 변화지에서 유발되는 토사유출 우려 지역 1만6천건을 현장조사와 위험성 분석 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탑재
 - 토석류 위험지도 내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에 탑재 후 해당 부처·지자체에 제공

3) 산사태 예측정보 정밀·정확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신규]실시간 강우를 반영한 산사태 위험도 서비스 제공 등 시스템 고도화(2월)
 - ICT 기술 활용 KLES(Korea Landslide Early-waring System)와 산사태위험지도를 매시간 통합분석한 '실시간 산사태위험도' 서비스로 고위험지역 산사태 예측정확도 향상
 - * 예측단위 : (기존) 읍면동 단위 → (개선) 리단위(유역별 대피 우선순위 제공)
 - 산사태 중기 예보시스템을 KLES 기반으로 개편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최대 48시간 전 산사태 대응 효율성 제고

- **[신규]**현 2단계(주의보, 경보)로 제공되는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하고, ‘예비경보’ 시 대피 명령으로 주민 대피시간 조기 확보(5월)
 - * 산사태 예측체계 :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 ^{추가}예비경보(90%) → 경보(100%)
- 산사태 발생 예측 48시간 전 선제적 경계피난 체계 구축(5월)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예보발령, 주민대피 등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를 최대 48시간 전 조기 제공
 - * 예측정보를 '산사태 특보(1~12시간)', '예비특보(12~48시간)'로 구분하여 제공
 - 기상청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하여 기상특보, 기상속보, 레이더영상 조회 서비스 제공
- 인위적 개발지 등 최근 산지변화를 반영하여 산사태위험지도 현행화
 - **[신규]**소규모 산림유역(5ha 이하)에 대한 토석류 피해예측지도 구축과 산지변화를 반영하여 토석류 피해예측지도 현행화(12월)
 - * 기존 토석류 피해예측지도는 산지유역(집수면적) 5ha이상 구역 대상 전국 189,008개소 구축
 - * 과거 일본의 토석류 피해지 현장조사 결과 집수면적 5ha 이상인 지역이 토석류 발생위험이 높음(토석류 재해, 1999, Iketani, p.221)
 - 인위적 변화지 정보를 반영하여 현행화된 산사태위험지도 제공('24. 2월~)
 - * 산사태위험지도를 매년 갱신(2월)하여 최신 정보 대국민 서비스(사전 공지)

4) 주민대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강화 기반 마련

- 현장 공무원 대상 산사태정보시스템 등 산사태 교육 제공(4~5월)
 - 산사태 예측·예보발령, KLES 모델, 실시간 산사태위험도, 사면정보, 산사태취약지역, 기상정보, 중기예보시스템 등 달라진 기능 중점 교육
 - * 권역별 순회 교육, 산림교육원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시스템 활용능력 제고
 - ** 신규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 및 담당자 역량강화
- **[신규]**체계적인 취약지역 DB구축 및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5월)
 - 기초조사 단계부터 하나의 ID를 가지고 각 단계의 정보들이 연계 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정보입력 지연 및 누락 방지
 - * 기초조사, 실태조사, 취약지역 지정, 대피소 지정, 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체계 구축,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등

- 산사태정보시스템 상 관련 정보 수신 현행화로 선제적 대피체계 구축
 - 대피소, 시스템 담당자 및 취약지역 관리대장(지역주민, 담당자, 지정·심의결과, 점검이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현행화(수시)
 - *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등의 산사태 재난업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기상상황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 ** 현행화 및 개선된 기능을 최대한 활용 주민대피명령 등 지자체 상황판단 시 활용도 제고
- 모바일 웹 기반 차세대 산사태 위험정보 알림서비스 제공(5월)
 - * 모바일에서 내 위치기반 산사태위험지도, 실시간산사태위험도, 예측·예보정보 조회

5) 산사태정보시스템-NDMS 간 산사태 재난 정보 연계 체계 구축

- [신규] API*로 제공되는 사망뎀 및 산사태 예측·예보 정보를 ESB 방식**으로 변경(5월)
 - 제공 형태 개선으로 시스템 안정성 개선과 실시간 정보의 동시성 보장
 -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 : 해당 정보만 선별적 조건으로 수신, 정보제공 간편
 - ** ESB(Enterprise Service Bus)형태 : 안정적·유연한 정보 수신(실시간, 생성주기 구애x)
- [신규]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 토사유출 등 산사태 관련 신고정보 연계(5월)
 - NDMS를 통한 산사태 관련 신고 키워드 연계로 상황관리 체계 구축
 - * (현행) [구조-자연재난] 신고정보를 '재난 신고정보 공유 서비스'를 통해 문자 알림 (개선) 산사태 관련 키워드(산사태, 토사 유출 등) 신고 접수 시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

라. 추진일정

-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연중
-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실무협의회 : 1월
-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개선, 시스템 연계를 위한 행안부-소방청 업무협약 : 2월
 - * (NDMS) 행정안전부-재난정보통신과 / (신고 분류체계 개선) 소방청-상황실, 정보통신과
- 산사태정보시스템 교육 : 4월~5월
- 산림청-기상청 협업 실무협의회 : 5월(잠정)
- 산사태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신고정보 수신 기능 탑재 : 5월
- 산악기상관측망 신규 설치 완료 : 11월
- 기상청과 함께하는 산악기상 교육과정 운영 : 11월
-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 개편 : 12월

6. 기후위기와 대형재난에 대비한 사방사업 실시

(산사태방지과, 042-481-4271)

목 표

- ◇ 산림피해 예방 및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방사업 확대 추진
- ◇ 유역통합형 사방사업 확대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 최적 발휘
- ◇ 다목적 사방댐 유지관리 기준 마련 등 내실있는 관리로 기능 연속성 유지

- 사업량

산지사방 300ha	계류보전사업 400km	사 방 댐 510개소
다목적 사방댐 4개소	산림유역관리 68개소	해안방재림 10ha
해안침식방지 12km	사방시설 외관점검 7,809건	사방댐 정밀점검 380건
사방댐 관리 457개소	사방댐 안전진단 20건	안전조치 64건

가. 정책여건

- 기후위기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과 봄·가을철 가뭄기간 확대로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 증가
- 여름철 지속적인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권과 유역단위 사방사업 요구 수요 증가
- 규모가 크고 상시 정수압을 받는 다목적 사방댐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기준 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 체계적인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제3차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시달
- 생활권 위주의 사방사업으로 산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사전 예방
- 산림유역 단위로 통합적인 재난예방과 산림환경을 고려한 산림 유역관리사업 확대 추진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 유지·증진
- 다목적 사방댐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 및 사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로 체계적인 사방시설 관리

다. 세부추진계획

1) [신규] 제3차 사방사업 기본계획('24~'28) 시행

- 시·도 및 지방산림청은 제3차 사방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사방사업 기본계획('24~'28) 수립·제출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물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심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절차 이행 철저
 - * 지역 사방사업 기본계획('24~'28) 수립 후 2월까지 산림청에 보고
- 국민 안전을 고려한 사방사업 추진
 - 생활권 및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 *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비율 확대(기존 54% → '28년까지 70%)
 - 생활권 내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이에 따른 민원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 *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을 야계사방으로 통합하고 횡구조물에 의한 계류 단절 최소화 및 생태적 연속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2) 사방지 해제요건 완화 등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4월)

- 사방지 해제요건 완화, 사방시설 점검 주기 현실화 등 규제개선
 - 사방지 해제 시기를 단축(전문가 검토)하여, 산주의 재산침해 최소화
 - * 사방시설 설치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산림기술자, 전문가 등 사방지 해제 의견을 받은 사방지는 해제 절차 추진
 - 다목적 사방댐의 정밀점검 주기 마련,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으로 지정 해제된 계류보전 사업지 등의 점검 방법 개선

3) 대상지 선정부터 체계적인 사방사업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

- 생활권과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이행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과 산사태취약 지역(이하,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
- 체계적인 사업준비로 우기 전 사방사업 집중 추진
 - 사업실행 전년도부터 대상지 선정, 사전설계, 이해관계자 설명(주민 설명회 포함), 토지 소유자 동의 등 시기별 사업 추진

- 사방지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
 - * 설계변경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방사업 이후 사방지 지정
-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의 견실성 등의 관리를 위해 주요 공종(콘크리트 타설, 돌쌓기 및 뒷채움 등) 시공 시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자 현장 입회
- 산사태 등 재난예방 효과 극대화와 산림의 다양한 기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산림유역관리사업 확대
 - 산림유역 단위의 산기슭 고정과 토석류 발생 억제 및 계곡의 안정을 위해 종·횡 공작물을 계통적으로 배치
 - 필요한 공작물 누락·축소 또는 과다 설계 등의 사례가 없도록 현지 여건에 부합된 실소요액을 반영해 설계 추진
 - * 단위(ha·개소·km) 당 기준 단비는 개소별 현지 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
 -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 등은 주계류(主溪流)뿐만 아니라 소계류(小溪流) 까지 사방시설을 반영하여 산림유역 완결 시공

4) 친환경적인 사방사업으로 국민 공감 확대와 인식 제고

- 산림환경과 주변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사방사업
 - 생활권과 도시공원 등 도심지 내 사업 시에는 구조적 안전성과 더불어 환경성·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
 - 계곡 종단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경사각을 조정하고 생태통로 등을 반영하여 생태 연결성 확보
- 친환경 사방사업 확대·보급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 및 경진대회 개최
 -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림공학회, 한국치산기술협회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 사방 기술의 원활한 국내 보급과 국외 선진사례 공유
 -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사례 전파로 친환경 사방사업 확대 유도
-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산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
 - 사방사업 추진 전 설계심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시행하고 사방사업 기술능력이 입증된 산림기술인이나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참여 유도
 - 사방댐 설치 대상지가 농경지 주변일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불투과형으로 사방댐을 조성하여 농업용수 확보
 - * 단, 사방댐 설치 시 낙엽퇴적에 따른 수질오염·악취 등이 예상되는 곳은 제외

5) 집중호우·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의 대응능력 강화

- 다목적 사방댐 시설로 산림재난(산사태, 산불 등)의 선제적 대응
 - 산사태, 산불(담수지 확보) 등 재난관리와 갈수기 농·산촌 생활용수 공급 등을 위한 다목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 산림과 수생태계를 고려하여 어도 등 생태통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담수에 따른 수질 악화 방지대책 마련

6) 사방사업 품질향상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사방사업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사전설계 심의제도’ 운영
 - ‘자체 사전설계 심의회’는 사방전문가(산림공학회, 산림기술사 등), 산림생태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
 - * 현장 여건에 따라 심의위원에 산림생태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음
 - 구조적 안전과 더불어 환경과 조화로운 사방시설이 되도록 설계 자문
- ‘사방사업 현장기술자문단’^(참고) 운영으로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결
 - 사방시설 공작물의 위치선정, 시공 방법 및 공사감독 요령 등 설계부터 시공까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기술 자문
 -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은 자체 ‘지역 사방사업 현장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업무 지원 실시
- 사방기술의 공유, 교육 등을 위한 ‘사방사업 실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사방사업의 기술, 품질, 유지보수, 시설관리 등을 위한 논의 및 토론
 - 시·도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자체 사방사업 담당자 역량교육 시행

7) 체계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사방시설 기능 유지

- 사방시설 기능연속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필요한 사방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
- 우기 전 사방시설 점검 등을 집중하여 산사태 재난예방 효과 제고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외관점검과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우기 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시행

- 다목적 사방댐(구 물가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매년 정밀 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 철저
 - * 다목적 사방댐의 점검 방법 등 유지관리 방안 마련 예정
- 사방댐 준설과 노후 사방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
 - 준설 여부는 외관점검 결과와 ‘사방댐 준설 대상지 평가표’에 따라 결정
 - * 사방댐 준설 대상지 평가표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별표4
 - 사방댐 준설은 우기 전(6월말)까지 실행 완료하고, 준설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미실행 사유를 명기한 표지판 설치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사방댐 중 정밀점검을 1회도 실시하지 않은 사방댐은 외관점검의 등급과 관계없이 정밀점검 실시
 - 균열·누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시설은 보수·보강 조치
 - * 안전조치 계획 : 사방댐 47개소(16억원), 사방시설 17개소(5억원)
- 사업 시행 후 관할 행정청이 변경된 경우 이관 등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사방시설 관리 이관 시, 사전 현장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시설관리 이력 등 해당 자료 및 현장 인계·인수 철저
 - 관리 이관 시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유지·관리 철저 및 이관 사항을 산림청에 보고(인계·인수 공통)
- 사방지의 지정·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 신규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대한 행정절차 적기 추진(토지이음 등재 등)
 - 사방사업지는 산사태취약지역과 별개로 사방지 지정·관리
- 사방댐 D/B 현행화의 달(6, 12월말) 운영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소관 기관별 사방댐 관리대장 현행화(위치, 사업량, 사업비, 설계서 등)
 - * 사업 완료 즉시 사방댐 등 시설관리 이력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
 - 계류보전 및 산지사방 등은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중 (2.6절 사방시설 관리대장¹⁹⁾)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 후 비치

19) 자료보기 : 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방시설의 유지관리지침 [별표 1]’에서 확인

8) 기타사항

- 사방사업의 계약체결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경쟁 비율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17.11.24)」
- 사방사업 설계 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고려한 사방사업 공기 산정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19. 4. 1.부터 적용됨에 따라 공사 기간 산정 시 반영
- 하천부지 등 임야 이외의 지목이 사방지에 편입될 때 사업착수 이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 등 필요한 협의 후 착공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5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라. 추진일정

- 제3차 사방사업 기본계획 시행 : 1월
- 제3차 지역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제출 : 2월
- 사방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제출 : 2월
- 사방사업 실무자 현장 워크숍 개최 : 2~3월
- 사방사업 현장기술자문단 구성·운영 : 3~12월
- 사방댐 D/B 현행화의 달 운영 : 6월, 12월
- 제7회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 8~10월
- 사방사업 추진현황 제출(3월부터) : 해당 월·분기 익월 5일
- 사방사업 추진실태 및 보조금 집행현황 지도·점검 : 반기별
- 한국치산기술협회 운영현황 등 사무점검 : 반기별

7. 체계적인 산사태 피해조사와 적기 복구

(산사태방지과, 042-481-4274)

목 표

◇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복구로 2차 피해 최소화 및 국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 '23년 피해 복구물량

- 산 사 태 : 459ha

- 임 도 : 41km

- 계류보전/사방댐 : 2km/2개소

- 기타(수목원 등) : 4개소

가. 정책여건

- '22년 최다 시우량의 기록적 집중호우, 23년 역대급 강우강도의 장마가 기록되는 등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증가 추세
- 산사태 등 산림피해지의 경우 추가적 재난발생 취약성 증가, 2차 피해 우려가 높으므로 신속 조사·복구 및 사후관리 필요성 증대
- 과학적 산사태 조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산사태 재난 대응 필요

나. 기본방향

- 신속한 피해·원인조사로 체계적·과학적 산림피해 복구계획 수립
- '23년 산사태 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우기전(6월말) 복구 실행
- 산사태 피해복구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관리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 등 산림피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산림·토목·지질 등 민간분야 산사태 전문가로 '산사태원인조사단' 구성·운영
 - 인명피해 및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지자체·지방청 조사 요청 시 전문적 원인조사·분석을 통한 복구방안 제시

- 지역별·기간별 동시 다발적 산사태 발생에도 상시 대응 가능하도록 지역·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사전 구성
- **[신규]**행안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산사태 재난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합동조사로 조사결과 객관성·신뢰성 유지
 - * '산사태원인조사단' 인력풀 구성시 행안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문가 포함
- 대형산불(100ha 이상) 발생 시 산림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진단' 실시
 - 민가 및 공공시설 등 생활권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사면 및 산불 영향유역 분석을 통한 산사태 예방사업 필요 대상지 선정
 - * 위험성 및 재해취약성 등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연내복구 및 항구복구지 제시
 - 긴급진단 결과에 따른 연내복구 대상지는 여름철 호우 대비 응급조치 시행 후 연내 복구 완료, 항구복구는 차년도 사방사업 반영
- 산사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1차 현장조사 후 '산림피해 조사·복구 추진단' 운영으로 피해물량 및 복구액 등 복구계획 확정
 - 처음 산사태 피해 신고접수 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산사태 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피해정보(위치, 규모 등) 즉시 입력·보고
 - * 대규모 산사태 또는 인명피해 발생시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042-481-4119)로 직접 보고
 - 1차 현장조사 후 지정된 기한 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 * 산림피해(공공시설)는 재난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조사 결과 입력
 - 2차 조사는 피해복구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조사 실시하여 최종 피해·복구물량 및 복구액 확정
- 대규모 산사태 피해발생시 드론, LiDAR 등 최신기술 적용·활용하여 현장대응력 강화 및 과학적 복구계획 수립
- 산사태 피해조사시 피해 위치, 면적 등 공간정보 및 D/B 구축을 통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산사태 피해지 관리
 - 과거 산사태 피해지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자료를 활용하여 공간자료 구축하고 피해 통계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산림분야 복구계획서 확정·통보 후 산림재해대책비를 활용한 즉시 예산배정으로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 구축

2) '23년 산사태 피해지 관리 및 위기 전 복구 완료

- 산사태 피해지의 체계적인 복구사업 추진을 통한 적기 복구 완료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장마기 이전인 6월 말까지 복구 완료
 - * 복구물량(산사태:459ha, 임도:41km 등), 복구금액 142,822백만원(국비 88,717, 지방비 54,105)
 - 피해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신속히 복구
 - * (1순위) 민가생활권·산업시설 주변 → (2순위) 경작지·도로가시권 → (3순위) 일반산지
- 해빙과 동시에 복구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동절기(1~2월)에 복구인력, 장비, 공사자재 확보 등 사전 준비
 - 복구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전협의 후 추진
- 복구 추진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지도·점검 강화
 - 월별 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 사업장의 경우 상시 현장 점검

3) '23년 산사태 피해 발생 시 대응력 강화 및 적기 복구를 위한 대비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이전 맞춤형 교육실시로 일선 담당자의 조사·복구업무 직무능력 향상 도모
 - '산림피해 조사·복구 매뉴얼'을 활용한 피해조사, 재해대장 작성방법, 복구계획 수립 요령 등
- 행정절차 사전 이행을 통해 신속한 산림피해 복구사업 추진
 - 산림분야 복구계획 확정·통보 시 성립 전 예산집행제도 등 적극 활용
 - 설계완료 즉시 공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 등 사전준비
 - * 피해조사 즉시 토지사용 동의서 징구 등 피해복구 사전준비 우선시행
 - (당초) 피해발생 → 피해조사 → 설계 → **동의서 징구** → 시공 → 준공
 - (변경) 피해발생 → 피해조사 → **동의서 징구** → 설계 → 시공 → 준공
- 산사태 발생원인 및 피해유형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설계·복구
 - 피해지역의 지형·지질별 붕괴유형 등에 적합한 복구공법 적용
 - 생활권, 일반산지 등 여건에 따른 설계 차등화를 통해 경제적·효율적인 복구
 - * 산사태 피해지의 지역성, 경제성, 피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구 실행
- 복구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전설계 심의제도” 운영
 - 복구금액 5억원 이상 대형피해지의 경우 자체 설계심의 후 복구 시행

4) 산사태 복구지 사후 모니터링 및 산사태 대응·평가 강화

- '23년 자연재난 복구사업지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소관부서 : 산사태방지과(총괄), 목재산업과, 도시숲경관과, 사유림경영소득과 등
 - 점검대상 : 산사태, 임도 등 복구사업지(특별재난선포 및 우심지역 중심)
 - 점검기간 : 연중 상시(합동 현장점검 계획 수립 후 시행)
 - 점검내용 : 복구계획에 따른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산사태 대응 평가단 구성·운영
 - 구성 : 단장 1명, 간사 1명, 산사태 분야 전문가 10명 내외
 - 운영 : 산사태 발생 시 평가 대상지 선정을 통한 평가 수행(연중)
 - * 「산사태 대응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참고
- 산사태 피해복구지 현장점검 결과, 추진현황 등을 DB로 구축하여 복구사업지 사후관리에 활용

라. 추진일정

- 산사태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 연중
- 산사태 복구지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 1~6월
- 산사태 대응 평가단 구성·운영 : 5~12월
- 산림피해 조사·복구 추진단 운영 : 산사태 발생 시
- 산사태 피해지 복구계획 수립 및 지원 : 산사태 발생 시
- 산림피해 복구사업 추진현황 제출 : 해당 월 익월 5일

8. 땅밀림 등 새로운 유형의 산사태 대비

(산사태방지과, 042-481-4274)

목 표

◇ 지진·해일로 인한 땅밀림, 해안지역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사업량
 - 전국 땅밀림 우려지 실태조사(2,000개소)
 -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운영·유지관리(40개소)
 - 땅밀림 복구사업(7개소)
 - 해안사방사업(해안방재림 10ha, 해안침식방지사업 12km)

가. 정책여건

- 강원 동해('23.5.15. 규모 4.5), 전북 장수('23.7.29. 규모 3.5), 충남 공주('23.10.25. 규모 3.4) 등 지진 빈발에 따른 땅밀림 발생 선제적 대응 필요
- 땅밀림은 이동속도는 느리나 산사태 대피 피해규모 20배에 달하므로 체계적 조사 및 예방 차원의 신속·견고한 복구 요구
- 땅밀림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응을 위해 조사·발굴된 땅밀림 우려지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필요
- 동해안(동해), 서해안(거문도)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발생하는 지진 빈도수 증가로 지진·해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나. 기본방향

- 땅밀림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전국 단위 관리대상지 발굴
-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으로 사전 예방대책 마련
- 땅밀림 피해지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추진으로 2차 피해 예방
- 해안사방사업 확대를 통해 지진해일·해안지역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다. 세부추진계획

1) 땅밀림 우려지역 실태조사·연구·우려지 점검(연중)

- 땅밀림 우려지 실태조사(2,000개소)를 추진하여 판정표를 활용한 위험등급 결정 및 전국단위 땅밀림 관리대상지 발굴
 - * 땅밀림 우려지역 조사결과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시 지질분야 전문가 참여
- 땅밀림 우려지 조사기법 및 관리방안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병행
 - * 땅밀림 우려지 조사(외관상태평가, 물리탐사 등) 및 체계적 사후관리 지침 개발
- 땅밀림 위험등급에 따라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등 관리방안 제안
 - 인명·재산피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땅밀림 복구사업 필요대상지 발굴
 -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및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 * 기발굴된 땅밀림 우려지(184개소)는 현장점검 현황 등 D/B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 시행

2)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시범운영 및 유지·관리(연중)

- 땅밀림 우려지역의 위험성 조기감지를 위한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시범운영
 - 40개소에 대한 계측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
 -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계측기 구성 및 주민대피 권고 기준 등 시스템 기준 정립
 - * 땅밀림 계측·수집장비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한국형 무인원격감시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 전문기관을 활용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한 외관 육안점검 및 측정 기기 활용, 시스템 통신상태 이상여부 등 점검
 - 무인원격감시시스템 내 계측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 * 실시간 모니터링 중 계측 데이터 이상 변위 발생 시 긴급점검 및 원인분석 실시
 - 노후 계측센서 등 교체로 신뢰성 있는 상시모니터링 실시
 - * 내용년수 경과된 센서 및 노후 시설(16개소)은 교체 병행 추진
- 무인원격감시시스템 계측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
 - 필요시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에 실시간 계측 데이터 및 분석 결과 시범 제공과 관련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선제적 예방·대응 체계 마련

3) 땅밀림 우려지 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사업 추진(연중)

- 생활권 인근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 대상지 선정 후 사업 이행
 - 땅밀림 우려지 실태조사로 발굴된 대상지 중 민가 유무 등 우선순위 선정
- 정밀지반조사 등 기본설계 사전 실시로 복구사업의 효과성 제고
 - 시추조사 등을 통한 지반 분석을 선 실시하여 땅밀림의 근본적 원인 해결
 - * '24년 추진계획 : 7개소(기본설계 4개소, 복구공사 3개소)
- 전문가 현장 자문 등을 실시하여 땅밀림 현상에 부합하는 복구공정 선정
- 땅밀림 복구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후 모니터링 철저

4) 해안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해안방재림·해안침식방지사업(연중)

- 지진해일의 피해가 우려되는 동해안 지역 등에 중점 추진
 - * ('24년) (해안방재림) 10ha, 700백만원, (해안침식방지) 12km, 2,770백만원
- 해안방재림 사업은 객토 등을 감안하여 2년차 사업으로 시행
 - (1년차) 객토 시행 → (2년차) 대묘식재·울타리 설치 등
 - * 해안사방 조성·관리계획<산사태방지과-4442호(2013.11.18.)>에 따라 추진
- 해안침식방지 사업은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
 - 침식의 정도 및 유형에 따라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공법 적용
- 해안방재림과 해안침식방지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해안방재림의 기능유지를 위해 기 조성된 사업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관리 철저
 - 2년차 사업 완료 대상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 * 보식, 울타리 보수, 토양비옥도(시비) 증진, 덩굴 제거, 병해충 방제 등

라. 추진일정

- 땅밀림 우려지 실태조사 추진(2,000개소) : 2~10월
-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연중
- 땅밀림 피해지역 복구사업 추진 : 연중
- 해안사방사업 추진현황 등 모니터링 : 5~10월

9.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 및 실행기반 강화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목 표

- ◇ 수목진료전문가 체계적 양성 및 수목진료 산업 활성화
- ◇ 수목진료 분야 규제·제도 개선 확대

가. 정책여건

- 수목진료 전문가의 지속적인 배출로 역량강화 등 교육수요 증대
* 자격자 배출현황('23.11월, 누계) : 나무의사 1,383명, 수목치료기술자 4,784명
- 나무의사 제도 경과조치 종료('23.6.27.)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수목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지속 필요

나. 기본방향

- 중장기적인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의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
- 나무의사 역량강화 교육 등 수목진료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 위법행위 근절, 규제개선 등으로 나무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다. 세부추진계획

1) 나무의사 자격시험 정례화(연 1회) 및 응시생 편의 개선

- 「2024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시험 관리 철저
* 제10회 1차시험(2.24), 2차시험(7.13), 최종합격자 발표(9.13)
- [신규]자격시험을 연 1회(1·2차 시험 각 1회) 시행으로 정례화
* '24년부터 연 1회차 시행 예정임을 '23년 시행계획에 사전공지('22.12.1)
- [신규]시험시간 내 화장실 이용 허용(2월, 제10회 자격시험)
* 120분 이상 진행되는 시험 대상 화장실 이용 허용(시작 60분후~종료 30분전)
- [신규]응시자의 '양성교육이수증명서' 제출 사항 폐지
* (현행) 응시자가 증명서 발급 제출 → (개선)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보 확인

2) 지역별 양성기관 지정·운영 등 안정적 교육환경 마련

- 양성교육 실태 분석으로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교육기회 확대
- **[신규]**경쟁률 높은 서울, 미지정 道 경북 양성기관 추가지정(1월)
 - * 양성기관(13): 서울(2)·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3) 수목진료 실태조사 및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단속 강화

- 수목진료 정기 실태조사 실시(3~11월)하고, 정책 효과 환류
 - 나무병원, 나무의사등 자격자, 지자체·학교·공동주택 등 방문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수목진료 현황과 산업 규모 조사·분석
 - 방문조사시 수목진료 컨설팅 및 제도 홍보 병행 실시
- 공동주택 대상 수목진료 사업 실태 모니터링(3~7월)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수목진료 입찰·계약 현황 모니터링
- 자격증 대여, 기술인력 이중등록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3~7월)
 - 수목진료 계약 수요가 많은 봄철부터 지자체, 협·단체와 합동 단속
- 나무의사 제도의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 기획보도, 기고, SNS 및 유관 협·단체를 통한 홍보 확대

4)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지원

-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운영 및 보수교육 관리 강화
 - * 「산림보호법」제21조의13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3년간 20시간 의무교육
 - *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1개소) : 한국나무의사협회
- 수목진료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 교육
 - 산림교육원에 연 2회(9월, 11월) 나무의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 나무병원 창업, 진단·처방전 및 설계서 작성, 수목피해 진단·치료 등 장비 실습 등

5) 국·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국·공립나무병원에서의 수목진료 연구를 통해 기반 강화
 - 지역별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효과분석, 변화상 모니터링 등 수행
 - 수목 방제용 농약등록 확대를 위한 시험연구 및 직권등록 실시
 - * 국립산림과학원, 12개 시·도(부산·대구·대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지역거점 대학을 수목진단센터로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교육
 - 수목병해충 관련 실연연구, 수목진료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등
 - * 서울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순천대·경북대·경상대·제주대

6) 수목진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23년 시행)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기간 감경
 -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0 범위 이내 감경
- 영업정지 처분을 2,000만원(매출규모에 따라 변동)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 * 변경등록 위반, 조사·검사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가 대상
-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수목치료기술자에 요구되는 경력요건 완화(4년→3년)
- 나무병원의 기술자 선임사항 변경시 변경신청 기간 확대(14일→30일)
-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상장형 자격증 발급서비스(무료출력) 제공

7) 「산림보호법」 개정 등 규제·제도개선 계속 추진

- **[국회심의중]** 행정처분 전 계약된 수목진료 사업의 계속이행 여부 명확화
 - 발주자(처) 의사 확인 후 계약완료시까지 계속이행 가능(고의·중과실 위반 제외)
- **[국회심의중]** 국가·지자체 등의 나무병원 이용 확대
 - 국가·지자체도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병원 이용
 -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미만 자치관리의 경우에만 예외 인정
- **[국회심의중]**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
 - 기술자·나무병원의 경력·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명서 등 발급 지원
- **[국회심의중]** 수목진료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나무의사 등 의무배치
 - 국·공립 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 근거, 나무의사 등 참여 확대
- **[신규]** 나무병원의 행정처분 회피 방지 근거 마련
 - 행정처분 받은 자가 폐업 이후 재등록 시 처분을 승계하도록 함
- 수목진료발전협의회 운영으로 협회·학계 등 소통 강화하고, 개선과제 발굴
 - 양성교육(양성기관·보수교육기관), 진료지원(국공립나무병원·수목진단센터), 기술산업(협·단체) 분야별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으로 소통 확대

라. 추진일정

- 제10회 제1차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 2월
- 국·공립 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 실태 점검 : 3월
- 생활권 수목진료 위반사항 계도·단속 등 : 3~7월
- 생활권 수목진료 실태조사 : 3~11월
- 수목진료발전협의회 : 6월
- 제10회 제2차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 7월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운영 실태 점검 : 8월

10.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8)

목 표

- ◇ “심”이상 피해지역 감소 및 경미 지역 청정지역으로 전환
- ◇ 방제 사각지대 해소 및 집단발생지 관리체계 마련

가. 정책여건

- 최근, 봄철 고온 현상과 산불피해 증가, 예찰 누락, 방제 자원 한계 등으로 '22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증가 추세
 - * 일반 방제구역의 재발생률은 감소, 집단발생지는 증가 예상
- 피해 확산을 위해 과학적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유관 기관과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방제 예산 감소 등으로 방제 여건은 쉽지 않은 상황
-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기존 고사목 단목 방제방식으로는 방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새로운 방제방법 도입 필요
 - * '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기존방제작업 한계에 다라, 재선충병 방제작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나. 기본방향

- 빈틈없는 입체적 예찰(헬기-드론-지상) 및 신속한 진단체계 구축
-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 형태에 따라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 부실 방제 관리 강화로 재발생률 감소 및 방제 품질향상
- 피해 확산저지를 위한 예방·연구개발 확대
- 스마트 이력 관리 및 안전 방제를 위한 교육·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빈틈없는 입체적 예찰(헬기-드론-지상 3중 예찰) 및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 (헬기) 연 2회(1월, 9월) 광역 단위 예찰을 통해 거시적인 피해 상황과 국가선단지·미발생지 및 집단발생지·누락지 파악
 - 방제전문가 탑승, 지자체 노선도의 사전 적절성 검토(모니터링센터)
 - [신규]뷰어앱 + 외부영상 촬영 장치를 활용한 영상 취득 → DB 구축
- (드론) 비가시권에 대한 예찰, 헬기예찰 결과의 추가 모니터링
 - 특별방제구역(1월), 험준지 등 예찰 사각지대·일반 피해지역(8~9월)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분석
 - 고사목 추출 등 의심목 GPS 위치좌표 취득 → 방제 설계에 반영
- (지상) 근거리 정밀예찰로 예찰방제단(1.5천명)이 소나무류 고사목 여부 등 확인 후 시료 채취 및 QR코드 등록
 - 방제기간 내 월별 미방제 감염목 현황 도면 제공(모니터링센터)
- (검경·진단) QR코드를 활용한 시료채취·검경의뢰·진단까지 철저한 이력관리, 유전자진단키트 현장 보급으로 신속한 감염 여부 확인
 - [신규]유전자진단키트 활용을 방제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진단율 제고
 - * 진단주체 : (기존) 5개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확대) 방제사업자, 4개 시도 산림환경연구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 (재발생률 조사) '24.4월까지 방제한 사업지에 대하여 현장 표준지 조사하여 재발생 현황 파악, '24.11월까지 피해량 및 방제 성과 평가
 - 단목벌채, 소구역(소군락)모두베기, 모두베기 등 벌채방식과 파쇄·훈증·매몰 등 방제 방법별 표준지 조사 실시
 - 방제효과 검증을 위해 고정 조사구로 설정하여 분기별 시계열 촬영

2) 피해 발생구역별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 (국가선단지) 시·군·구별 방제전략 수립 및 책임관리구역을 설정
 - 항공예찰·정밀드론 예찰구역으로 반영하여 월 2회 이상 정기적 예찰
 - 책임 예찰원 지정 및 NFC 전자예찰함 설치·운영

- 선단지 외곽지역은 자연 고사목 사전 제거 등 소나무류 밀도 관리
- 고사목은 반드시 시료채취하여 검경의뢰, 감염목 확인 시 우선 방제
- (일반발생지) ‘수집·파쇄’ 중심의 방제로 재발생을 최소화하고 신규·1년 이상 미발생 지역은 집중관리하여 청정지역으로 환원*
 - * '24년 목표: ‘경미’ 10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청정지역으로 환원
 - 내륙지역은 3월까지, 제주도는 4월까지 감염·우려목 전량 방제를 목표로 동일 사업장에 대한 2~3회 반복 작업 실시
 - 가을철 방제는 감염목·감염우려목 방제, 이듬해 봄철 방제는 지난해 방제사업장 주변 및 추가 발생한 감염목 위주 방제
 - 가시권 및 감염목 수집이 가능한 지역은 직경 2cm 이상 잔가지까지 수집하여 방제 기간 내에 파쇄처리
- (집단발생지)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반복·집단적 피해지는 지역완결 방식의 복합방제 실시
 - **[신규]** 집단발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고시(1월)
 - * 대구 달성, 안동 임하, 고령 다산, 성주 선남, 밀양 상남, 포항 호미곶 등 40,483ha
 - 중·장기적인 방제전략 수립 및 정기적 유·무인항공기 예찰
 -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반복·집단적 피해지는 임업적 기술과 재선충병 방제를 접목하여 지역완결 방식으로 복합방제
 - 외곽에서부터 방어선을 구축하여 압축방제 실시
- (도서지역) 도서 간 거리, 보전 등을 고려한 방제 우선순위 설정
 - **[신규]** 한려해상·다도해 도서지역(40개 섬)에 대한 드론정밀예찰 실시('23.9월) 하여 규모 산출(약 9천그루)
 - 피해정도, 유인 도서, 경관, 완전방제 가능성 등을 감안, 방제 순위 설정
 - 지형적 여건에 따라 벌채 최소화 → 예방사업 확대 및 매개충 밀도조절
 - 지자체 중심 유관기관(국립공원공단 등) 방제협의회 구성하여 공동 대응

3) 부실 방제 관리 강화로 방제 품질 제고

- (책임방제 운영·평가) 책임방제구역 지정·운영으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방제사업 추진 및 부실 사업 방지를 위한 **[신규]** 평가제도 도입
 - 피해 전 지역에 대하여 책임방제구역 지정, 방제 완료 시까지 책임성을 부여하여 방제 품질 관리

- 책임방제 시행업체를 대상으로 ‘책임방제구역 평가 기준’에 따른 방제 품질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우수·미흡 사업자는 혜택·페널티 부여
 - * (우수) 우수사업자 인증서 발급, 수의계약 우선협상 대상자 검토(가점) 등
 - (미흡) 입찰참가자격 제한(벌점), 행정처분 및 중대과실의 경우 형사처벌 등
- (관리주체 책임강화) 국립공원 등 방제에 소극적인 지역은 관리주체* 대상 방제명령 제도 적극 활용 → 방제명령 미 이행시 적법 조치
 - *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청), 철도·도로변(국토부) 등
- (재발생 평가) **신규**방제완료 후 재발생 정도를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포상(12월)
 - 우수 기관·담당자는 표창·포상금 지급, 타 지자체로 우수사례 전파
 - 사업장 부실 관리 지자체는 기관장 면담 및 경고로 경각심 제고
- (점검) 집중방제기간 현장점검 인력을 확대하여 품질향상에 총력
 - 현장대응반* 운영하여 조사·설계 단계부터 컨설팅·점검 실시
 - * 본청, 5개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20명), 현장특임관(11명) 등
 - 방제 협업, 현장점검 운영실적 등 방제 노력도를 지자체 합동평가 및 소속기관 평가에 반영
 - * (지자체) 방제협업·현장점검 실적 평가, (소속기관) 방제컨설팅 운영실적 평가

4) 유관기관 방제협의회 운영 및 기관별 소통 강화

- 시·군·구 단위 방제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정례화(2주마다)
- 연접 시·도, 시·군·구 간 지역방제협의회 운영 및 기관별 예찰·방제 현황 공유하여 사각지대 및 누락 방지
 - (지방청·관리소) 방제협의회 주관, 관할 지역의 예찰·방제기관 가교 역할
 - * 지자체 자체 방제사업으로 피해 경감이 어려운 지역은 공동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국유림관리소에서 방제 지원
 - (지자체) 시군구 단위 방제전략 수립, 합동예찰을 통한 연접지 누락방지
 - (모니터링센터) 기관별 예찰·방제계획에 대한 컨설팅, 드론 촬영지원
- 산림청-유관기관 방제협의회 운영(9월) 및 공동·협력방안 협의(9월)

기 관 명	협조 요청사항
국 방 부	· 군부대 지역 내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강화
문 화 재 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협조 · 중요 문화재 보호지역 등에 대한 나무주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경 찰 청	· 인위적 확산 저지를 위한 전국 소나무류 불법이동·단속 협조체계 유지
농 촌 진 흥 청	· 농지(전·답 등)에 생육하고 있는 소나무류 벌채·이동 시 관리 강화
국 립 공 원	· 경주, 도서지역 등 국립공원구역 내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강화
도로 주택 전력공사	· 도로공사, 공동주택 및 송전선로 관리 시 발생하는 소나무류의 이동관리 철저

5)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사업 확대

- 전문기관의 사전 적절성 검토를 통한 약제 사용 안전성 강화
 - 항공(헬기) 방제는 중지하고 정밀드론(무인헬기, 무인멀티콥터)·지상 방제 등으로 전환 실행
 - * 연막방제기를 사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지상 방제는 금지
 - 방제기관은 약제살포 계획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전 적절성 검토요청
 - 방제 대상지 선정기준과 사용 약제에 대한 적절성을 사전 검토하여 약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방제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외
 - * (검토기관)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검토내용) 대상지 선정기준, 완충구역 설정, 사용약제·대상수종 및 병해충, 약제안전사용기준(살포시기, 살포방법, 살포장비 등)
 - 나무주사 종류에 따른 천공수·약량 기준을 준수하고 식용 잣, 송이 채취지역 등 약해 우려지역은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
 - 약제살포 적절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장에 한하여 약제 사업 추진
 - 산림청 ‘약중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제를 사용
- 반출금지구역 내·외 소나무림 관리로 사전 재해예방
 - (반출금지구역 내) 방제사업과 병행하여 매개충의 산란처가 될 수 있는 피압목, 자연 고사목 등을 최대한 제거
 - * 벌채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 직경 2cm이상은 파쇄 등 방제처리
 - (반출금지구역 외) 국가선단지 외곽, 피해지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숲가꾸기 등 벌채 허가 시 정밀예찰 의무화, 재선충병 미발생 확인 후 착수
 - (대형산불 피해지) 고사목 주변 모두베기 및 외곽지역에 20m 폭으로 매개충 나무주사 실시

6) 소나무류의 인위적 확산 방지

- 벌채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방제기간 동안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감염목등 원목의 무단 이동을 사전 차단
 - 화목농가 등 취급업체 목록 현행화, 유관기관 합동 일제단속(상·하반기 연 2회)
 - 단속 전 전단지·현수막·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재선충병 피해확산 및 무단 이동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무단이동 적발 시 방제명령 및 과태료·사법 조치 등 엄정대응
- 모바일 미감염확인증 도입으로 위·변조 방지 및 편의성 제고
 - QR코드·워터마크·OCR 3중 위변조 방지 체계를 도입하여 종이 형태의 미감염확인증에 대한 ‘글자’ 단위의 검증 → 위변조 원천 차단
 - 소나무류 이동 차량 DB 구축으로 소나무류 이동 모니터링 강화
- 산림 내·외 훈증처리목 수집으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 도로변, 민가·등산로 주변, 관광지 등 경관 중요지역, 계곡부 등 재해 위험 지역, 산불취약지역, 민원 발생지역은 우선 수집
 - 우선 제거 대상지가 아닌 지역의 3년 이상 지난 훈증처리목을 지면에 낮게 깔아 자연 부식 촉진
 - 수집된 훈증목은 파쇄 또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 약병, 훈증포는 전량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처리

* 훈증더미 해체 후 제거일시, 처리방법 등 정보를 QR코드 입력하여 이력 관리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고도화 등 연구개발 지속(국립산림과학원)

- 소나무재선충병 유전자 진단키트 고도화 연구('23~'27)
- 수종별 월별 고사율 구명을 통한 발생예측 고도화 연구('24~'25)
-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품종 육성 및 대량증식 보급 기술 개발('24~'27)

8)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감염우려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 재질이 우수한 경우 고부가가치를 지닌 원목으로 활용
- 대량방제시설(열처리) 시설* 및 노지 훈증(14일 이상) 등을 활용하여 피해목 적기 처리 및 자원화

- 열처리, 노지 훈증 후 미감염 확인 절차없이 산업용재로 활용
 - * 열처리 : 중심온도 56.6℃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시 재선충 및 매개충 구제 효과
 - * 대량방제시설(3개) : 경북 포항, 경남 밀양, 제주 서귀포
- 재선충병 방제와 무관한 나무가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산물처리로 인해 발생된 수익은 산주에게 환원하여 산주 소득 보전
 - * 계약자가 산주와 협의토록 계약조건에 명시하거나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 정산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 검토

9) 소나무재선충병 스마트 이력 관리

- 고사목 1개체별(그루단위)로 예찰부터 방제까지 전(全) 과정과 벌채 산물의 이력을 QR코드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
 - 예찰 고사목 정보와 진단 결과, 방제작업 상황 등을 연계하여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눈에 확인
 -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시스템’을 통한 고사목 검경 신청 및 결과 입력, 감염 여부 등 세부 데이터 통합관리
 - 고사목별 방제 정보(설계·시공·감리), 나무주사 정보(사용약제 등), 벌채산물(훈증더미·그물망·매물) 설치·제거 정보 등 등록
- 고사목 등의 방제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기관별·사업장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현황 관리
 - (5월~9월) 방제 통계 정비·확정, 지상·정밀드론 방제 계획에 대한 사전 적절성 검토 및 기관별 실적관리
 - (10월~4월) 주간 단위로 기관별·사업장별 발생 및 방제 정보* 관리
 - * 감염목, 기타고사목, 비병징목에 대한 발생 및 방제 현황, 발주기관, 사업장 위치, 발생정보, 방제 방법, 벌채방법,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 등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실적으로 방제기간 종료 시까지 주간 단위로 제출(매주 목요일까지 입력)
 - (입력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기관(시·군·구, 국유림관리소)
 - (입력기간) 2023.10.12. ~ 2024. 3월말까지(제주는 4월말까지)
 - (입력내용) QR코드 시스템 자동 집계 및 수기 입력
 - *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병해충방제정보시스템에 게시된 매뉴얼 참조

10) 전문성 강화 및 안전 방제를 위한 교육·훈련

- (예찰방제단) 재선충병 예찰 방제 전문성 확보로 방제 품질 제고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1.5천명) 중 신규자, '23년도 이전의 교육 수료자 중 재교육 희망자 대상 전문 기술교육 실시
 - 기관별로 예찰방제단 모든 업무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 실시(예찰·방제 필수사항 중심), 매월 첫째 주 안전교육 정례·의무화
- (방제사업자) 설계·시공·감리업체 및 국유림영림단 등 방제 현장 인력(200명)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
 - 사업시행자는 교육훈련 이수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우선 배치하고 방제 사업 위탁·대행 시 교육훈련 이수업체 대상 인센티브 부여
- (담당공무원) 지자체 등 방제 실행기관 공무원 대상 기술교육 실시
 - 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방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방제기간 전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정책 등 집합교육
 - 방제 정책, 방제 기술 정보, 우수·미흡 사례 등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권역별 공동 대응 및 인접 지역 간 협업 강화
- (안전관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등 안전수칙 준수
 - 방제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후 작업에 투입, 중장비가 사용되는 작업장에는 신호수 등 안전요원 배치
 - 농약 사용사업장은 농약사용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라. 추진일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중앙·지역) 운영 : 연중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23. 10월 ~ '24. 3월(제주도는 4월)
- 소나무재선충 우화 전망보고서 작성·배포(과학원) : 1월말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예찰 : 1월, 9월(지상 예찰은 연중)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합제나무주사 : '23. 11월 ~ '24. 3월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나무주사 : 3월~4월
- 소나무류 이동 전국 일제 특별단속 : 3월, 11월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과학원) : 4월~10월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유인트랩 설치·운영 : 4월~10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살포 : 4월~8월
- 유관기관(지자체등) 합동 정밀예찰 : 5월~10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인력 직무역량 강화 교육 : 5월~9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 수립 : 9월

<참고 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군·구 현황(23.12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		청정전환 (현재 미발생)	발생 누계
계	141		18	159
서울	1	서초구	노원, 용산, 성북, 중랑	5
부산	13	북구,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 남구, 영도구, 부산진구, 사상구, 부산서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동구	15
대구	6	달성군, 북구, 동구, 서구, 달서구, 수성구	남구	7
광주	4	광산구, 서구, 남구, 북구		4
대전	1	유성구		1
울산	5	울주군, 남구, 북구, 중구, 동구		5
세종	1	세종		1
경기	20	광주, 남양주, 포천, 성남, 용인, 양평, 하남, 연천, 가평, 양주, 안성, 의왕, 이천, 여주, 평택, 동두천, 파주, 화성, 과천, 안성		20
강원	9	춘천, 정선, 원주, 횡성, 홍천, 삼척, 동해, 화천, 철원	강릉, 인제	11
충북	5	단양, 청주, 제천, 진천, 충주	옥천, 영동	7
충남	14	보령, 서천, 천안, 논산,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태안, 서산, 홍성, 공주, 아산, 당진		14
전북	10	임실, 순창, 군산, 김제, 익산, 정읍, 전주, 남원, 부안, 완주		10
전남	12	여수, 순천, 광양, 무안, 보성, 고흥, 담양, 구례, 장성, 함평, 화순, 나주	목포, 영암, 신안, 해남, 곡성	17
경북	20	구미, 칠곡, 포항, 경주, 청도, 안동, 경산, 영덕, 고령, 성주, 상주, 영천, 김천, 영주, 의성, 군위, 봉화, 예천, 문경, 청송	영양, 울진	22
경남	18	함안, 진주, 통영, 사천, 양산, 거제, 김해, 밀양, 창원, 하동, 창녕, 고성, 의령, 남해, 거창, 함양, 합천, 산청		18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2

* (밑줄) '23.1.~23.12. 신규 발생지역, (진하게) '23.1.~23.12. 청정 전환 지역

<참고 2>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지정 현황('23.12월 기준)

(단위 : ha)

구분	지정			해제('23년)			비고
	시군구	행정동·리	면적	시군구	행정동·리	면적	
계	147	7,094	3,978,390	6	98	31,084	
서울	3	8	3,029				
부산	14	220	72,368				
대구	6	133	73,714	1	6	939	남구 (23.1)
광주	3	16	26,370				
대전	1	4	8,104				
울산	5	159	95,848				
세종	1	37	16,491	1	32	2,991	조치원 등 (23.9)
경기	20	906	578,530				
강원	9	542	313,502				
충북	6	2	80,829	1	34	14,556	영동군 (23.2)
충남	14	403	197,331				
전북	10	487	165,236				
전남	14	481	254,686	1	3	3,922	곡성군 (23.12)
경북	21	2,040	1,173,820	1	6	5,322	울진군 (23.11)
경남	18	1,481	736,348	1	17	3,354	남해군 (23.10)
제주	2	175	182,184				

11. 3대 산림병해충 피해 안정화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269)

목 표

◇ 주요 3대 산림병해충 맞춤형 관리로 피해 확산 저지 및 안정화

가. 정책여건

- 주요 3대 산림병해충은 '18년 이후 피해 발생 면적 및 발생비율 감소 추세
 - 발생면적(천ha) : ('19) 40 → ('20) 34 → ('21) 32 → ('22) 26 → ('23) 21
 - 발생비율(%) : ('19) 58 → ('20) 54 → ('21) 53 → ('22) 44 → ('23) 36
- * 주요 3대 산림병해충 :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나. 기본방향

- (솔잎혹파리) 강원·경북 주요 피해지 대상 집중 방제 추진
 - * '24년 방제계획 : 나무주사 4,887ha, 천적방사 650ha
- (솔껍질깍지벌레) 해안가 등 피해 취약 지역 종합 방제 시행
 - * '24년 방제계획 : 나무주사 2,662ha,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 274ha
- (참나무시들음병) 매개충 생활사, 피해지 여건 등 고려 복합방제 추진
 - * '24년 방제계획 : 피해목제거 401ha, 끈끈이롤트랩 2,610ha, 소구역골라베기 61ha

다. 세부추진계획

- 1) 피해 발생지의 리·동별 특별관리체계를 통한 산림병해충 정밀 관리
 - 주요 3대 병해충의 리·동별 발생상황, 경급, ha당 본수, 사업실행 등 이력 기반 방제계획 수립 및 적기 방제 추진
 - * 솔껍질깍지벌레(5월), 솔잎혹파리·참나무시들음병(9월) 정기 발생조사·작성
 - 피해지역 50ha 이상 지역은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 예찰 및 방제 실시, 담당공무원 변경 시 특별관리조서 등 인계·인수 철저

2)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유무에 따른 방제방법 차별화

-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 중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혼생 지역은 재선충병 방제방법에 따라 처리
- 재선충병 미발생지역은 피해 심한 곳을 중심으로 임업적 방제를 통해 밀도 저감 및 서식처 사전 제거
 - * 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방제 산물은 가급적 수집·파쇄

3) 산림병해충별 중점 추진계획

□ 솔잎혹파리 적기 나무주사 및 천적 방사 시행(5~6월)

- 지역별 우화최성기 예측 및 적기 나무주사 방제로 방제효과 제고
 - 산림과학원 「지역별 우화최성기 예측모델」, 고도 및 지역 여건 등 고려 적정시기에 나무주사 실행(5월~6월)
 - * 나무주사(천ha) : ('20) 2 → ('21) 2 → ('22) 2 → ('23) 3 → ('24계획) 5
- 솔잎혹파리먹좀벌 등 천적 활용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 추진
 - 솔잎혹파리 우화 시기에 맞춘 천적 방사 시행(5월중~6월말)
 - * 천적방사(ha) : ('20) 692 → ('21) 650 → ('22) 633 → ('23) 631 → ('24계획) 650
 - * 경북 산환연은 기생봉 2종(솔잎혹파리먹좀벌, 혹파리살이먹좀벌) 자체 사육·방사

□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에 대한 종합적 숲 관리 추진

- 해안가 등 피해 취약 지역 종합 방제로 밀도 저감
 - 남·서해안 중심으로 예찰·방제를 집중 추진하고, 가급적 사전 임업적 방제 실행 후 나무주사 적기 시행(1월~2월, 11월~12월, 후약충기)
 - * 나무주사(천ha) : ('20) 3 → ('21) 2 → ('22) 2 → ('23) 2 → ('24계획) 3
-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사업' 지속 추진 및 대상지 발굴(7~8월)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공원구역, 문화재보호 구역 등은 해당기관(부서)와 사전 협의 후 사업 실행
 - * 종합방제(개소) : ('20) 13 → ('21) 14 → ('22) 14 → ('23) 14 → ('24계획) 14
 - 피해도 조사·대상지 선정 시 페로몬트랩 활용(밀도조사) 가점 부여
 - * 설치시기 및 조사기간 : 2월 중순, 수컷 발생시기

□ 참나무시들음병 매개충 생활사 및 현지 여건에 맞는 복합방제

- 매개충 잠복시기(11월~익년 4월)
 - 집단발생지역으로 벌채를 통한 근원적 방제가 가능한 지역은 소구역골라베기 실행, 반출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사목은 신속히 벌채·훈증처리
- 매개충 우화시기(5월~10월)
 - 매개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끈끈이롤트랩, 고사목 벌채·훈증, 대량포획장치법, 약제줄기 분사법, 유인목 설치 등 현지 여건 고려 방제 추진
 - * 끈끈이롤트랩(천그루) : ('20) 297 → ('21) 316 → ('22) 227 → ('23) 189 → ('24계획) 261

라. 추진일정

-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 솔껍질깍지벌레 : 4~5월 / 참나무시들음병 : 7~9월 / 솔잎혹파리 : 8~9월
-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추진 : 5~11월
 - * 나무주사·천적방사 : 5~6월 / 임업적 방제 : 6~11월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 추진 : 연중
 - * 임업적 방제 : 9~10월 / 나무주사 : 11월~이듬해 2월 / 종합방제사업지 대상지 선정 : 7월
-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제 추진 : 연중
 - * 발생조사 : 7~9월 / 고사목 벌채 : 7월~이듬해 4월 / 끈끈이롤트랩 : 4~6월 중순

12. 기타(돌발·외래 등) 산림병해충 대응 강화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269)

목 표

- ◇ 병해충 발생예보, 산림병해충 위험평가 제도개선으로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 ◇ 농림지 동시발생, 외래병해충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가. 정책여건

- 주요 3대 산림병해충 제외 기타병해충 피해면적은 '21년부터 증가추세 전환, 기후변화 영향으로 돌발병해충 발생·외래병해충 유입 지속
 - 발생면적(천ha) : ('19) 29 → ('20) 29 → ('21) 29 → ('22) 33 → ('23) 37
 - * 최근 미국흰불나방 발생면적(ha) : ('22) 3,568 → ('23) 6,624 / 186% 증가
 - ** 최근 3년간 외래병해충 유입 : ('19→'22확인) 노랑알락하늘소 ('21) 느릅나무
- 돌발 산림병해충의 국지적 발생과 가로수, 공원, 도시숲 등 생활권대발생 증가
 - 생활권 대발생 : ('20) 매미나방_전국 ('21) 벗나무사향하늘소_서울, 대벌레_수도권 ('23) 미국흰불나방_제주제외 전국, 노랑알락하늘소_외래_제주

나. 기본방향

- 예측분석을 통해 발생을 대비하고 예찰을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로 돌발·외래 등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 저지
- 농림지 동시발생병해충 등 부처 협력체계 강화로 방제사각지대 해소

다. 세부추진계획

- 1) 주요 이슈 병해충에 대한 예보제 및 돌발·외래 대응 조치 강화
 - 산림병해충 발생예보 발령기준 개선·발령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6월)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 대상 확대를 위한 발령 기준 개선
 - * (기존) 발생면적 중심 → (개선) 신규·외래병해충 국내 정착 가능성 등 반영

- [신규] 기존 발령 정보 외 발령 구분별 조치 신설(전문가 현장진단, 방제방안 등 후속조치)
 - *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6조(병해충 발생예보)
- 미국흰불나방 지속적인 예찰·적기 방제 실시로 피해 최소화
 - 생활사, 피해지 현장 여건 등 고려 물리적·화학적 방제 적기 시행
 - * '23년 피해 증가로 '24년 피해 지속 예상, 월동기 예찰 및 5~7월 총소(어린 유충군집) 사전 제거
- 해외 산림병해충 발생동향 모니터링으로 외래종 유입 대비 체계 구축
 - [신규] 국내·외 발생 동향·피해 정도, 방제사례 등 정보 제공(3~10월)
 - 외래병해충 유입 관련 검역본부·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권 주변 돌발병해충 집중 관리
- 돌발·외래병해충 발생·정착·확산 특성 구명 및 예측 연구 지속(과학원)
 - 국내 미분포 산림해충의 국내 정착·확산 가능성 분석
 - * 국내 정착 외래 곤충 74종에 대한 기후적합성 모형 기반 정착 가능성 예측

2) 농림지 동시발생병해충 등 관계부처 합동 예찰·방제 체계 강화

- 농림지 동시발생병해충 공동예찰·방제 정례화(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 협의회 구성(4월), 약·성충기 발생조사(7~8월), 방제(5~10월)로 피해 저감
 - *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4종(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매미나방) 조기 대응
- 아시아매미나방,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해충 유·출입 합동 예찰(검역본부 등)
- 과수화상병 발생지 주변 적기 방제로 농산촌 피해 최소화

3) 산림병해충위험평가 개선 및 임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제 지원

- 산림병해충위험평가 결과 반영 대상 병해충 발생관리 및 방제방법 신설
 - [신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내 방제 대상 산림병해충으로 관리
 - * '23년 위험평가 결과 : 노랑알락하늘소(중위험), 맵시혹나방(중위험), 호두나무 갈색씩음병(고위험)
- 밤 생산 임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지원(연 1회)
 - 복숭아명나방이 밤나무 종실을 주로 가해하는 시기인 7월~8월 시행
 - * 헬기 지원을 통해 자력방제가 힘든 밤 생산 임가의 어려움 해소 ('22) 17 → ('23) 15천ha

4) 약제 방제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림생태계 유지·건강성 확보 체계 마련

-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 담당자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전문성 강화
 - 올바른 약제사용 등 약제 관리 컨설팅, 방제사업장 안전교육(수시)
 - *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방제규정 준수, 방제작업 실행 전·후 수시 안전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 ** 약제 수불내역, 빈병회수·처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 관리 철저
- **[신규]**방제용 약제 생태계 영향 분석 및 평가지침 개발 연구 추진(과학원)
 - 나무주사 등 산림병해충 약제 방제 방법에 따른 영향 시나리오 설정
 - * 산림생태계 대상 공간별 지표종 설정을 위한 생물상 조사

라. 추진일정

- '24년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 조달 단가계약 체결 요청 : '23. 12월
- 농림지 동시발생병해충 공동 예찰·방제 : 연중
 - * 알집제거 : 1~4월 / 약충기방제 : 5~7월 / 발생조사 : 7~8월 / 성충기방제 : 9~10월
- 일반병해충 방제·약제관리 컨설팅 : 연중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6~8월
- 주요 항구 주변 아시아매미나방 협력 공동예찰·방제 : 7~8월
- 밤나무해충(복숭아명나방) 항공방제 지원 : 7~8월
- '24년 산림병해충 발생 및 '25년 방제계획 조사 : 8~9월
-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중심의위원회 개최 : 11월

13.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체계 강화

(중앙산림재난상황실, 042-481-1201)

목 표

- ◇ 산림재난 컨트롤 타워로 신속 정확한 판단 및 대응
- ◇ 체계적인 운영 및 역량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가. 정책여건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중·대형화하는 산림재난의 발생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체계에 대한 요구
- 4차산업 기술에 기반한 체계적인 산림재난 대응 시스템 활용으로 맞춤형 상황관리 필요
-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활성화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관리 강화 필요
-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 산불발생 시 효율적인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상황대응 기반구축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림재난 및 사고에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상시 대응태세 확립
- 산림재난관리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상황관리 효율성 및 체계성 강화
- 유관기관 간 협업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산림재난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
- 산림재난 시 신속한 현장지휘 무선통신망 확보 및 현장대응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 1) 산림재난 및 사고에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상시 대응태세 확립
 - 산림재난·사고에 대한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정보분석, 현장조정·지원 등)
 - 산불, 산사태, 병해충, 산악인명구조, 산림산업 안전사고 등

- 산림재난 발생지역 주변 국가핵심시설, 중요문화재에 대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전파
-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 산불발생 시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상황대응 기반구축 필요
 - 도서지역, 군사격장(DMZ 포함), 대도시 지역 산불 상황조치 매뉴얼 마련
 - * 산불상태(① 산불의심 신고~산불확인 전, ② 산불확인 후, ③ 주불진화 후)에 따른 상황별 투입자원 확인 등 상황판단 및 대응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

재해 구분	상황실 체계	운영기간 및 내용
산 불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조심기간(2.1 ~ 5.15, 11.1 ~ 12.15) * 연중관리 및 여건에 따른 조심기간 탄력조정
산사태	산사태예방지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난대책기간(5.15 ~ 10.15)
산림병해충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병해충 긴급사항, 항공방제모니터링
기 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내 인명사고 등 각종 상황 위기관리

2) 산림재난관리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상황관리 효율성 및 체계성 강화

- 산림재난관리시스템 등을 상황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현장대응력 제고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3D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산악기상 등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고도, 지형, 진화인력 접근성 분석을 통한 입체감 있는 상황판단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의 확산경로, 강도 예측을 통한 확산방향의 선제적 주민대피 및 효과적 진화전략 수립에 활용
 - (영상모니터링시스템) 산림청·소방청·지자체 헬기 영상, 드론 영상, CCTV를 활용하여 현실감 있는 상황판단으로 산림재난현장 지원
 - (산불상황관제용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활용한 스마트 현장정보 수집으로 효율적인 산불진화전략 수립 및 야간산불 대응력 강화
 - (산사태정보시스템) 산사태예측정보 및 KLES(Korea Landslide Early-warning System)모델을 활용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 (산사태중기예보시스템) 중기예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하여 재난 발생 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 (기타 시스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태풍, 지진 등 산림 재난 관련 특이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부서 신속 전파

3) 유관기관 간 협업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산림재난 컨트롤 타워 위상 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다양한 회의채널 운용 등 협업·소통으로 산림재난의 종합적 상황판단 및 대응력 제고
 - 국가지도통신망, 국가재난영상회의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기적인 협력 강화
- 산림재난상황 언론대응을 통한 산림재난 주관기관으로서의 중점적 역할 홍보 및 재난현장 주변 국민에게 안전 유의사항 전파
 - 산불, 산사태 발생 시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부서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언론 보도자료 신속 배포

4)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재난 관리를 위한 소통 및 역량 강화

- 산림재난분야 전문교육을 통한 상황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이수
 - * 재난 업무 맡은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
 - 신규 전입자에 대한 자체 상황 반원 업무 교육(1주간)
 - * 산림재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상황전파 및 보고, 재난관리시스템 활용 등
-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활용 산림재난상황보고 훈련 실시(분기별 4회)
 - 정기훈련 2회(행안부 주관 1회, 자체훈련 1회), 불시훈련 2회(행안부주관 2회)
 - * 훈련대상 : 재난관리 주관기관(본청), 재난관리 책임기관(5개 지방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통합재난문자시스템 활용 긴급재난문자 송출 훈련(월 1회)
 - 산불위기경보 경계·심각 발령, 산불확산에 의한 주민대피 등 / 단, 평가 훈련 시
- 산림재난관리분야(산불) 상황조치 훈련(연간 1회)
 - 참여기관 : 행안부, 국방부, 소방, 경찰, 지자체
- 지자체 산불담당자와의 소통간담회를 통한 현장대응 역량 및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 마련
 - 산림재난 관련 시스템(산불, 산사태) 활용교육 및 시스템 개선방안 토론
 - 산림재난 발생 시 현장대책본부-상황실 간 효율적 소통방법 토론 등

라. 추진일정

- 산림재난 대응 및 산불상황관리시스템 운영 : 연중
- 산림재난관리분야(산불) 상황조치훈련 : 연간 1회
- 상황관리 요원 역량 강화 : 연중
- 산림재난상황 보고훈련 : 분기별 4회
-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 : 월 1회
- 영상회의 채널 운영 및 관리 : 연중